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1994. 12

제 4 권

7. 유통·가공 및 수출지원
8. 소득원다양화·생활환경개선
9. 임업·산촌지원사업
10. 어업·어촌지원사업

농림부 도서실



0001245

농림수산부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1994. 12

제 4 권

7. 유통·가공 및 수출지원
8. 소득원다양화·생활환경개선
9. 임업·산촌지원사업
10. 어업·어촌지원사업

농림부 자료실

등록번호: 1245

등록일: 2004년 7월 21일

기증:

농림수산부

일 러 두 기

1.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은 모두 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수산청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 1권의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01호)에는 각종사업들의 절차와 방법이 2~4권에는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니 해당 사업의 페이지를 확인하신 후 찾아보시면 됩니다.
3. 사업계획수립 안내기관은 농·어촌지도소, 시·군, 읍·면, 농산물검사소 출장소,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 농·수·축·임협으로 지정되었으니 가까운 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4. 축산발전기금사업 등 '95년도 시도별 배분액이 일부사업은 잠정치로써 그 사실이 개별사업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 별	내 용
총 괄 편	제1권	1.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농림수산부훈령 제 801호) 2.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해설 3. 참고자료 (농어촌투융자계획, 정책자금대출안내, 농지전용안내등)
세 부	제2권	1. 정예농수산인력 육성 2. 농업생산기반정비 3. 경영규모확대 (농지대매, 임대차, 교환·분합사업) 4. 농업기계화
사 업	제3권	5. 품목별시설 현대화 (원예, 축산, 잠업, 특용작물) 6. 기술개발·보급
지 침	제4권	7. 유통·가공 및 수출지원 8. 소득원다양화 및 농촌생활환경개선 9. 임업·산촌지원사업 10. 어업·어촌지원사업

목 차

〈총괄편〉

내 용	권	쪽
1.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농림수산부훈령 제801호)	제 1 권	17
2.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해설	"	67
3. 참고자료	"	97
① 농림수산사업 추진 흐름도	"	99
② 농어촌 투융자계획		
- 42조원 조기투융자계획	"	102
- 농어촌 특별세 투융자계획	"	107
③ 농림수산 정책자금대출 안내	"	110
④ 농지전용 허가·신고 안내	"	122
⑤ 농업용시설 건축 허가·신고 안내	제 1 권	127

〈세부사업별〉

※ 표시예) 농어민자율추진사업 : 자율
 공공계획추진사업 : 공공계획

세 부 사 업 명	권	쪽
1. 정예농수산인력육성	제 2 권	
○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자율)	〃	19
○ 전업농어가 육성(자율)	〃	62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right: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 밭작물 ├ 과수 ├ 화훼 ├ 특작 └ 어업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어가 교육훈련(공공계획)... ○ 선도농어가 지원(공공계획) ○ 농업전문인력 양성(공공계획) ○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공공계획) ○ 농지관리위원 교육(공공계획) ○ 농업전문대학 지원(공공계획) ○ 농업기술전문학교설립 지원(공공계획) ○ 농과대학 시설장비 지원(공공계획) ○ 자영농수산고 육성지원(공공계획) ○ 자영농과생 급식비지원(공공계획) </div> </div>	〃	104
○ 선도농어가 지원(공공계획)	〃	107
○ 농업전문인력 양성(공공계획)	〃	116
○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공공계획)	〃	122
○ 농지관리위원 교육(공공계획)	〃	124
○ 농업전문대학 지원(공공계획)	〃	127
○ 농업기술전문학교설립 지원(공공계획)	〃	128
○ 농과대학 시설장비 지원(공공계획)	〃	130
○ 자영농수산고 육성지원(공공계획)	〃	133
○ 자영농과생 급식비지원(공공계획)	〃	136
2. 농업생산기반정비	〃	
○ 10ha미만 농지개발사업(자율)	〃	141
○ 농지 생산기반종합정비 조사사업(공공계획) ...	〃	144
○ 농어촌용수개발 일반사항	〃	149
○ 대·중규모 용수개발사업(공공계획)	제 2 권	153

세 부 사 업 명	권	쪽
○ 소규모(지표수)개발사업 (공공계획)	제 2 권	163
○ 보강(지표수)개발사업(공공계획)	“	168
○ 지하수개발사업(공공계획)	“	185
○ 지하수조사(수맥조사)사업(공공계획)	“	191
○ 제주도 지하수개발(공공계획)	“	195
○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공공계획)	“	201
○ 발기반정비사업(공공계획)	“	217
○ 농조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공공계획)	“	234
○ 방조제 개보수사업(공공계획)	“	240
○ 저수지건설사업(공공계획)	“	262
○ 수해복구사업(공공계획)	“	267
○ 경지정리사업(공공계획)	“	271
○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공공계획)	“	283
○ 배수개선사업(공공계획)	“	287
○ 서남해안간척사업(공공계획)	“	320
○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공공계획)	“	332
3. 경영규모확대	“	
○ 농가영농규모적정화사업(자율)	“	343
┌ 농지매매사업	“	
├ 농지 장기임대차사업	“	
└ 농지의 교환·분합사업	제 2 권	

세 부 사 업 명	권	쪽
4. 농업기계화	제 2 권	
○ 농기계구입자금지원(자율)	“	439
○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자율)	“	481
○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설치 지원(자율)	“	499
○ 농업기계 기술훈련(공공계획)	“	503
○ 농업기계 사후관리(공공계획)	“	511
○ 농기계수리 및 운전요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공공계획)	“	530
○ 시설농업기자재생산 지원(공공계획)	“	534
○ 농기계 생산비축자금 지원(공공계획)	제 2 권	536
5. 품목별 시설현대화	제 3 권	
(1) 원예작물생산·유통지원	“	
○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	“	19
○ 양념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	“	40
○ 고냉지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	“	48
○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	“	54
○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	“	74
○ 고품질 우량채소종자 개발·보급지원(공공계획) ...	“	92
○ 채소 유통활성화사업(공공계획)	“	97
○ 화훼수출용 유통시설 지원(공공계획)	제 3 권	100

세 부 사 업 명	권	쪽
(2) 축산 경쟁력제고 지원	제 3 권	
○ 한우 경쟁력제고 사업(자율)	〃	105
○ 한우 특화사업(자율)	〃	119
○ 경주마 생산지원 사업(자율)	〃	122
○ 젖소 경쟁력제고 사업(자율)	〃	126
○ 돼지 경쟁력제고 사업(자율)	〃	134
○ 닭 경쟁력제고 사업(자율)	〃	140
○ 축산단지조성 사업(자율)	〃	146
○ 기타 가축육성 사업(자율)	〃	153
○ 가축계열화 사업(공공계획)	〃	156
○ 축산농가 해외연수(공공계획)	〃	163
○ 축산기자재 생산시설지원 사업(공공계획)	〃	173
○ 양돈 기술교육 시설지원(공공계획)	〃	177
○ 축산경영개선 상담 및 지도(공공계획)	〃	178
○ 축산경영진단 지도(공공계획)	〃	179
○ 축산물 생산비 조사(공공계획)	〃	180
○ 한우 개량단지 사업(공공계획)	〃	181
○ 강화도 한우육용화 사업(공공계획)	〃	194
○ 가축 인공수정 사업(공공계획)	〃	196
○ 학교 우유급식(공공계획)	〃	199
○ 사료제조시설 지원(공공계획)	〃	204
○ 축산물내 유해잔류물질 검사사업(공공계획) ...	〃	208
○ 국내산 및 수입축산물중 유해잔류물질 공동조사사업(공공계획)	제 3 권	216

세 부 사 업 명	권	쪽
○ 가축방역사업(공공계획)	제 3 권	218
○ 축산분뇨처리시설(공공계획)	"	264
○ 공수의 위축(공공계획)	"	274
○ 동물병원 시설개선자금 지원(공공계획)	"	279
(3) 경종농업지원	"	
○ 토량개량제 공급(자율)	"	282
○ 어린모 공동육묘장설치 지원(자율)	"	287
○ 공동 퇴비제조장설치 지원(자율)	"	292
○ 중소농 고품질농산물생산 지원(자율)	"	298
○ 책토사업(자율)	"	304
○ 농약 안전사용장비 지원(자율)	"	308
○ 감자 원종 망실재배(자율)	"	314
○ 생산비 절감 및 농산시책 종합시장(공공계획).....	"	323
○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지원(공공계획)	"	328
○ 공동·항공방제(공공계획)	"	330
○ 유채 차액보상(공공계획)	"	337
(4) 잠업·특용작물 지원	"	
○ 잠업종합단지 조성(자율)	"	340
○ 잠종생산(자율)	"	345
○ 특작생산·유통사업 지원(자율)	"	348
○ 원잠종 생산(공공계획)	제 3 권	357

세 부 사 업 명	권	쪽
6. 기술개발·보급	제 3 권	
○ 현장애로 기술개발(공동계획)	〃	363
○ 첨단기술 개발사업(공공계획)	〃	368
○ 농림수산 정보화사업 지원(공공계획)	〃	373
○ 농지전산화 사업(공공계획)	〃	377
○ 농어촌개발 시험연구 사업(공공계획)	〃	381
○ 축산종합개발센터 건립(공공계획)	〃	383
○ 축산사업 교육·홍보(공공계획)	〃	385
○ 축산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공공계획)	〃	388
○ 세계축산학회개최 지원(공공계획)	〃	401
○ 양계박람회개최 지원(공공계획)	〃	403
○ 양돈박람회개최(공공계획)	〃	404
○ 축산설계도 개발보급(공공계획)	〃	405
○ 한우 능력검정 사업(공공계획)	〃	406
○ 한우 고급육생산기술 개발시험(공공계획)	〃	411
○ 한우 고급육생산사업 사후관리(공공계획)	〃	413
○ 한우개량 추세조사(공공계획)	〃	415
○ 젖소 후대검정 사업(공공계획)	〃	416
○ 젖소 산유능력검정 사업(공공계획)	〃	419
○ 돼지 능력검정 사업(공공계획)	〃	422
○ 닭 능력검정 사업(공공계획)	〃	424
○ 재래닭의 고품질 육용화사업(공공계획)	제 3 권	426

세 부 사 업 명	권	쪽
○ 국산종계 개발 지원사업 사후관리(공공계획) ...	제 3 권	428
○ 종축 등록사업(공공계획)	"	429
○ 가축개량 신기술보급 사업(공공계획)	"	431
○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공공계획)	"	436
○ 가축개량기관 전산망구축 사업(공공계획)	"	437
○ 유해잔류물질검사 장비지원(공공계획)	"	439
○ 축산물검사원 교육(공공계획)	"	440
○ 원유검사장비(세균수·체세포수검사기) 지원 (공공계획)	"	442
○ 원유검사장비 검증(공공계획)	"	443
○ 수의사 연수교육(공공계획)	"	445
○ 사료기술연구소 지원(공공계획)	"	446
○ 지역특화작목시험장 설치(공공계획)	"	<u>447</u>
○ 농업특정연구개발 사업(공공계획)	"	451
○ 농촌지도소의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 (공공계획) ...	"	453
○ 지역특화 시범사업(공공계획)	"	456
○ 지도시설·장비 지원(공공계획)	"	460
○ 새기술보급 시범사업(공공계획)	"	464
○ 주요농작물 원원종 생산(공공계획)	"	468
○ 잠상지역 적응시험(공공계획)	"	470
○ 도농촌진흥원 연구기반조성(공공계획)	"	<u>472</u>
○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공공계획)	제 3 권	474

세 부 사 업 명	권	쪽
7. 유통·가공 및 수출지원	제 4 권	
(1) 유통구조개선	"	
○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자율)	"	19
○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자율)	"	28
○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자율)	"	38
○ 쌀 생산·유통지원사업 계획(공공계획)	"	51
○ 농산물공판장 건설(공공계획)	"	62
○ 청과물종합처리장 건설(공공계획)	"	67
○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공공계획)	"	79
○ 농수산물 포장센터 건설(공공계획)	"	94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사업(공공계획)	"	108
○ 공동규격출하 촉진사업(공공계획)	"	112
○ 매취사업 지원(공공계획)	"	122
○ 농협 유통사업 지원(공공계획)	"	124
○ 생산자(단체)출하조절 지원(공공계획)	"	127
○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조직(공공계획)	"	128
○ 출하촉진자금 지원(공동계획)	"	130
○ 축산 관측사업(공공계획)	"	132
○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공공계획)	"	136
○ 기타가축 생산물 수매사업(공공계획)	"	140
○ 축산업 자조금 지원사업(공공계획)	"	142
○ 식육처리 전문인력 양성(공공계획)	제 4 권	143

세 부 사 업 명	권	쪽
○ 축산물공판장 건설(공공계획)	제 4 권	145
○ 위생도축시설 확충(공공계획)	"	146
○ 한우 전문판매점 설치사업(공공계획)	"	150
○ 냉장육 판매업소 시설개선 사업(공공계획)	"	162
○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공공계획)	"	164
○ 가축시장 정비(공공계획)	"	170
○ 축산물 등급제 판정(공공계획)	"	172
○ 축산물공판장 출하활성화 자금(공공계획)	"	175
○ 쇠고기 수입(공공계획)	"	176
○ 돼지고기 구매(공공계획)	"	177
○ 닭고기·계란 구매(공공계획)	"	179
○ 한우 유통활성화 자금(공공계획)	"	181
○ 군납 출하조절 작업(공공계획)	"	185
○ 축산물가격 및 유통량 조사(공공계획)	"	186
○ 소·돼지도체 및 부위별 수출조사(공공계획) ...	"	187
○ 축산물 가격안정대 자금(공공계획)	"	188
○ 부정축산물 유통지도 단속(공공계획)	"	189
○ 축산물 작업장지도 및 검사업무감독강화(공공계획)...	"	195
○ 원유위생관리 강화(공공계획)	"	197
○ 축산물위생용기 관리개선(공공계획)	제 4 권	199

세 부 사 업 명	권	쪽
(2) 가공지원	제 4 권	
○ 도계장 시설현대화 및 도축·도계부산물처리시설지원(자율)	“	200
○ 임도정공장 통폐합(자율)	“	202
○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공공계획)	“	205
○ 유가공시설 지원사업(공공계획)	“	263
○ 부분육 가공공장 건설(공공계획)	“	266
○ 육가공시설 지원(공공계획)	“	267
○ 계란가공·유통시설 지원(공공계획)	“	269
(3) 수입관리 및 수출지원	“	
○ 해외(싱가폴)농수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공공계획)	“	270
○ 국제농산물박람회참가 지원(공공계획)	“	273
○ 해외시장 정보사업(공공계획)	“	277
○ 해외시장 개척사업(공공계획)	“	282
○ 농산물 비축 및 수출수매지원(공공계획)	“	286
○ 벌꿀 수입(공공계획)	“	292
○ 과실·화훼 판매촉진 사업(공공계획)	“	293
○ 과실수출업체 시설자금 지원(공공계획)	“	297
○ 돼지고기 고급육생산 지원(공공계획)	제 4 권	299

세 부 사 업 명	권	쪽
8. 소득원다양화 및 농촌생활환경개선	제 4 권	
○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자율)	"	317
○ 휴양단지개발 사업(자율)	"	345
○ 관광농원개발 사업(자율)	"	357
○ 농어촌 민박마을조성 사업(자율)	"	386
○ 관광목장 조성(자율)	"	395
○ 농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자율)	"	400
○ 농공단지 조성(공공계획)	"	405
○ 농어촌 특산품판매장 설치(공공계획)	"	415
○ 농업경영자금 지원(공공계획)	"	418
○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공공계획)	"	422
○ 일반정주권개발 사업(공공계획)	"	434
○ 집단마을조성 사업(공공계획)	"	450
○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공공계획) ...	"	462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공공계획)	"	470
○ 양축자금 지원(공공계획)	"	474
○ 축산운영자금계정 지원(공공계획)	"	478
○ 재해대책(공공계획)	제 4 권	479

세 부 사 업 명	권	쪽
9. 임업·산촌지원사업	제 4 권	
(1) 임업인력 육성	”	
○ 임업후계자 육성(자율)	”	487
○ 산림개발사업단 및 작업단(공공계획)	”	491
○ 임업기능인 훈련(공공계획)	”	494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	”	
○ 민유림 조림사업(자율)	”	496
○ 민유림 육림사업(자율)	”	500
○ 간벌(자율)	”	504
○ 조림용 묘목생산(공공계획)	”	507
○ 산림 병해충방제(공공계획)	”	510
(3) 임업경영기반 확충 및 기계화	”	
○ 사유림 협업경영(자율)	”	514
○ 산림 경영장비지원(자율)	”	517
○ 임도시설(자율)	”	520
○ 국유림 확대 집단화(공공계획)	”	523
○ 영림계획(공공계획)	”	527
(4) 환경임업의 육성	”	
○ 사방사업(공공계획)	”	530
○ 산림환경기반조성(공공계획)	제 4 권	534

세 부 사 업 명	권	쪽
(5) 임산물생산·유통·가공	제 4 권	
○ 단기소득 임산물생산 및 시설(자율)	〃	536
○ 조경수·분재 소재생산(자율)	〃	539
○ 임목생산사업(자율)	〃	542
○ 임산물가공이용시설 지원(자율)	〃	543
○ 임산물이용 원자재구입 자금(자율)	〃	545
○ 표고재배시설 현대화(자율)	〃	547
○ 밤 저장시설(자율)	〃	549
○ 평 이용가공시설(자율)	〃	551
○ 임산물 유통구조개선(공공계획)	〃	553
○ 임산물 포장개선(공공계획)	〃	556
○ 표고 종균생산시설(공공계획)	〃	558
○ 임산물종합처리장 설치(공공계획)	〃	560
(6) 산지의 관광자원	〃	
○ 자연휴양림 조성(자율)	〃	562
○ 산림박물관 건립(공공계획)	〃	565
○ 지방수목원 조성(공공계획)	〃	567
○ 산촌종합개발(공공계획)	〃	569
○ 산림종합전시관 건립(공공계획)	〃	571
(7) 기타	〃	
○ 산지이용체계 개편(공공계획)	〃	573
○ 해외 산림개발(공공계획)	제 4 권	576

세 부 사 업 명	권	쪽
○ 임업기술지도(공공계획)	제 4 권	578
○ 임업기술개발(공공계획)	〃	580
○ 임업협동조합 육성(공공계획)	〃	582
○ 산불방지 대책(공공계획)	〃	584
○ 헬기운영(공공계획)	〃	586
○ 야생조수 보호(공공계획)	〃	587
○ 산지정화(공공계획)	〃	591
○ 간벌재(소경재)활용장비 지원(공공계획)	〃	592
○ 다목적 산림경영 시범단지 조성(공공계획)	〃	594
○ 임업통계조사(공공계획)	〃	596
○ 특정연구개발(공공계획)	〃	598
○ 임업기술전문학교 설립(공공계획)	〃	599
10. 어업·어촌지원사업	〃	
(1) 수산자원 조성	〃	
○ 내수면 어업개발(자율)	〃	603
○ 수산 양식사업(자율)	〃	604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공공계획)	〃	605
○ 어장 환경정화 사업(공공계획)	〃	606
○ 어항조성(공공계획)	〃	607
○ 수산자원 조성(공공계획)	〃	608
○ 지도선 건조사업(공공계획)	〃	609
○ 굴 패각처리공장 건립(공공계획)	제 4 권	610

세 부 사 업 명	권	쪽
(2) 기계화·시설현대화 및 기술개발	제 4 권	
○ 경제성 어선건조(자율)	〃	611
○ 어선장비 및 설비개량(자율)	〃	612
○ 어선기관대체(자율)	〃	613
○ 노후어선대체(자율)	〃	614
○ 어선용 기계공급(자율)	〃	615
○ 양식용 기자재공급(자율)	〃	616
○ 어선용 기자재생산업체 지원(공공계획)	〃	617
○ 수산기술개발 사업(공공계획)	〃	618
(3) 수산물 유통 및 가공	〃	
○ 수산물유통구조 개선(자율)	〃	619
○ 수산물유통보급 시설(자율)	〃	620
○ 수산물산지가공 시설(자율)	〃	621
○ 수산물처리·저장 시설(자율)	〃	622
○ 수산물종합가공단지 조성(공공계획)	〃	623
○ 수산물가공업체운영 자금(공공계획)	〃	624
(4) 소득원다양화와 생활환경개선	〃	
○ 어촌관광개발 사업(자율)	〃	625
○ 어촌종합개발 사업(공공계획)	〃	626
○ 어민복지회관 건립(공공계획)	제 4 권	627

7. 유통·가공 및 수출지원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자율)

1. 목 적

- 산지출하는 대부분 산지수집상이 주도하고 있는바 이를 생산자조직에 의한 공동출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를 적극 지원
- 소량, 다품목의 농산물은 농가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쉽게 집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
- 집하뿐만 아니라 간이선별, 포장, 임시저장, 세척도 할 수 있는 시설을 병행하여,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 집하된 농산물의 경우, 햇벌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때로는 양곡 수매장소, 회의장소 등으로도 다양하게 사용하여 농어민의 편의를 도모

2. 추진방향

가.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 마을 또는 작목반, 어촌계 단위로 '97년까지 4,000개소를 설치
- 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건설하는 집하장 사업은 '94-'97 간이집하장 사업 (농특세자금)으로 흡수 지원
 - '94년도의 경우 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건설중인 집하장은 제외. 다만, 추가로 필요한 지역의 집하장 건설은 가능
- 출하물량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임시저장시설, 포장결속기, 근채류 세척기 등 간단한 장비를 다양하게 설치
- 농(수)협중앙회에서 규모별로 표본모델을 개발 이를 참고로 하여 자율적으로 설치
- 설치효과를 매년 분석하여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나. 사업목표 및 장기계획

구 분	'93년까지	'94	'95	'96~'97	계
사업량	- 개소	1,250	810	1,940	4,000
사업비	- 억원	500	420	680	1,600
국고보조	-	250	210	340	800
지방비보조	-	250	210	340	800

3. 사업대상 및 선정

가.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단위조합 (영농회, 작목반, 어촌계),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의 기초조직을 대상으로 선정
- 현재 간이집하장 시설이 있으나 교체를 희망하는 사업대상자도 포함

나.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부지확보가 가능한 조직 (사용승낙서를 받은 경우는 임차도 가능)
- 작목반, 영농조합 등 생산자의 공동 출하비율이(위판율)이 50% 이상인 조직
- 관내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의 출하량이 많아 순회수집 활동이 활발한 조직
- 조직원의 협동심이 강하고 공동기금이 상당히 조성되어 있는 조직

다. 설치지역의 입지 선정시 고려사항

- 여러마을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 (수산물은 호안 및 접안시설이 완비된 지역)
- 20호 이하의 마을은 대상에서 제외
- 포장센타, 청과물종합처리장 등과 연계되는 지역에 우선 설치
- 채소, 과수단지의 인접지역에는 규모가 되도록 크게 설치유도
- 장기적으로 농업구조가 규모화된 전업농 중심으로 변화 되더라도 소규모 영세농으로 남게될 지역 (소규모)

라. 사업대상자 선정

- 단위조합, 영농회, 작목반, 어촌계, 영농조합법인 등 사업 희망대상은 사업시행 계획서 (붙임1)를 작성 농(수)협 시.군지부에 제출
- 농(수)협 시.군지부장은 "사업대상 및 입지선정기준"을 토대로 시장.군수에게 추천
=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사업대상자 심의중에 적격대상자를 추천.심의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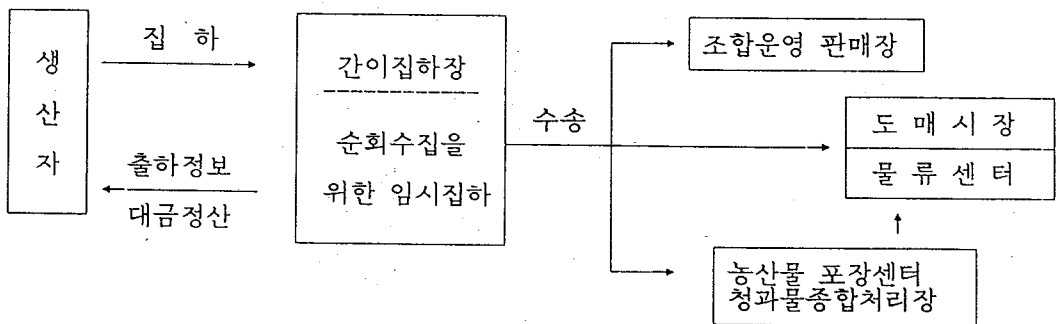
- 시장.군수는 설치예정지역이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관련법규상의 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않는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농어촌발전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서(붙임1)와 사업대상자 명단 (붙임2)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검토한 후 전년도 3월 30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붙임1,2) 제출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운영방법

- 간이집하장 설치조직이 집하시간, 작업시간, 순회수집시간, 시설과 장비의 관리 등에 대한 세부운영요령을 제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활용도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함.
- 출하처의 결정은 조합운영 판매장, 도매시장, 물류센터, 농산물포장센터, 청과물 종합처리장, 가공공장 등 보다많은 수익이 기대되는 곳으로 정함

<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운영체계도 >



- 순회수집은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조직이 다양하게 할 수 있음

나. 설치규모 및 방법

- 설치지역의 경지면적, 교통여건, 농어의 호응도 및 수집가능한 생산량등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과잉투자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규모로 설치
 - 설치규모는 50~200평 수준으로하여 규모별 표본모델을 고려하여 설치(표본모델 설계중)
 - 수산물 간이집하장의 경우는 200평 이내로 설치
- 설치방법도 지역특성과 사업대상자의 취향에 따라 표본모델 중에서 선택
 - 바닥은 농수산물의 보관이 용이하도록 포장하고
 - 규모가 큰 간이집하장은 차량출입이 자유롭게 되도록 설치
 - 표본모델은 지역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시설장비도 품목별 생산량을 감안하여 겸비토록 함.

구 모	50 평	60	80	100	150	200
시 설	임시저장고, 포장결속기, 근채류 세척기 등 (수산물은 간이 저온저장고, 세척 및 처리시설(건조시설), 포장장비 등)					

다. 개소당 지원한도

- 농산물 간이집하장의 건설비는 평당 250-1,000천원 범위내에서 신속적으로 설치하되 개소당 160백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 평당 건설비는 표본모델에 따라 차등 적용함.
- 수산물 간이집하장의 건설비는 평당 1,250천원 이하로 설치하고 개소당 200백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라. 사업비 보조

- 건설비의 80%를 지원하되 국고 40%, 지방비 40% (농특세 교부금)로 보조
- 부지구입은 자부담으로 하되, 농(수)협에서 용자금 적극지원

마. '95 시도별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백만원)

시도별	사업량	사업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담
	개소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계	810	52,500	21,000	21,000	10,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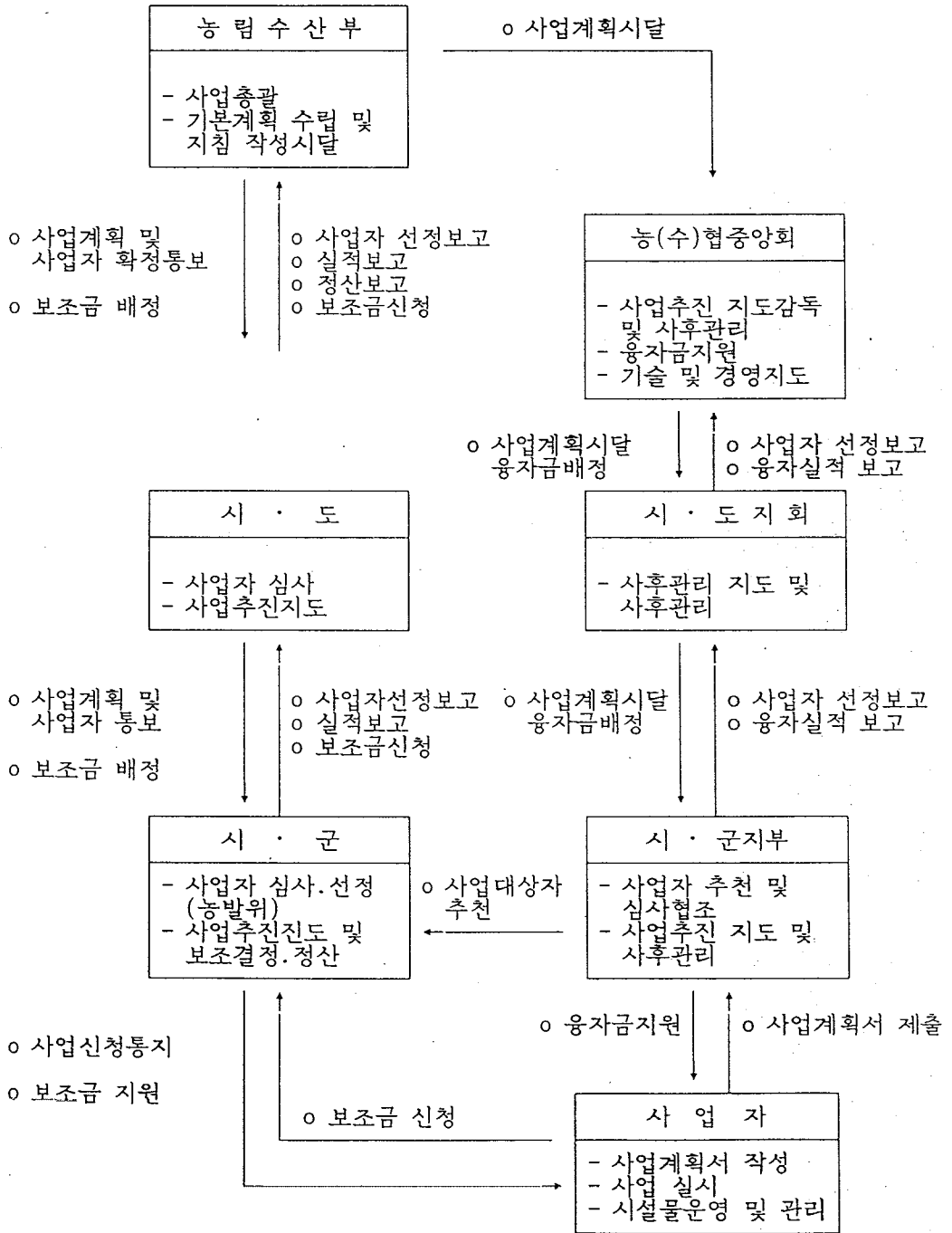
5. 사업효과

- 순회 수집판매를 통해 소량 다품목의 농수산물 판매의 안정된 판매확대
 - 조직원의 신뢰를 축적하여 결속력을 강화
 - 공동출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
 - 절감된 노동력 활용으로 타 소득작목 및 타사업 참여기회가 부여되어 농가소득 증대
 - 수산물을 어획되는 항포구에서 저장·처리가공 등 선도유지를 위한 간이처리집하장을 시설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
- ⇒ 산지수집상에 의한 출하를 생산자조직에서 출하로 전환

6. 기타사항

- 본 사업에 대한 문의처
 - 중앙 : 농림수산부 농산물유통국 유통과
 - 도 : 각시.도 유통과, 농협 시.도지회 경제사업부
 - 군 : 각시.군 산업과, 농협 시.군지부

7. 사업추진 체계도



< 붙임1 >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세부사업 시행계획서

1. 사업대상자(조직)

2. 입 지

위 치 : 도 시 동 번지 [위치약도(1/5,000축적지형도) 첨부]
부지면적 :
지목 및 지역(지구)명 :

○ 입지선정 사유 :

○ 토지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

3. 시설 설치계획

구 분	규 모	사 업 비				비 고
		계	국 고	지방비	자 담	
부 건 지 물 기 타 시 설 및 장 비	m' "	백만원				

* 건물은 평형·유형별로 구분하고 부대시설은 명칭을 기재하여 시설별로 사업비 계상

4. 사업추진 일정 :

5. 주변 현황 :

6. 사업운영방안 :

※ 첨부서류 :사업예정지의 토지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

< 붙임 2 >

사업계획서 첨부자료

1. 간이집하장 이용 마을 및 농가수

○ 마을명 :

○ 마을별 농가수 :

2. 취급품목 및 재배면적

3. 생산량 및 공동출하량 (출하율)

4. 주거래 출하처

5. 기타 참고자료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자율)

1. 목 적

- 농산물 규격화. 공동출하의 조기정착과 국산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민 또는 생산자단체가 추진하는 규격포장자재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2. 추진 방향

가. 기본방향

- 표준규격품 유통관리와 지원대상자 선정, 사후관리를 연계함으로써 규격화 및 공동출하 시범효과를 극대화
- 품질에 따른 가격차별화에 주력
- 공동선별, 공동선과, 공동출하의 활성화를 통한 규격화 분위기 확산

나. 연차별 사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93까지	'94	'95	'96- '98	'99-2004	계
사 업 량	천매 218,344	35,759	76,048	314,683	547,746	1,192,580
사 업 비	90,260	13,350	28,670	143,810	250,320	526,410
국고보조	11,317	2,670	5,734	28,762	50,064	98,547
지방비보조	8,920	2,670	5,734	28,762	50,064	96,150
자부담	70,023	8,010	17,202	86,286	150,192	331,713

3. 사업신청 자격

가. 신청자격

- 표준출하규격이 제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조직 (단, 쌀 및 보리쌀 종류와 콩, 팥, 녹두, 울무 제외)

나. 우선순위

- (1) 품질인증품, 표준규격품 생산 농가.조직에 우선 지원

단, 공동선별(과)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동 시설을 이용할 능가나 조직 (이용가능품목에 한함)

- (2) 사업을 신청한 농가.조직의 규격화 실적, 의지 등을 종합평가하고 그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4. '95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 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

나. 사업내용 : 규격출하를 위한 포장재비 일부 보조

다.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업비			
	계	국고	지방비	자담
76,048 천매	28,670	5,734	5,734	17,202

라. 지원기준 : 국고 20%, 지방비 20%, 자담 60%

5.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가. 선정절차

- 읍.면장, 농협장은 농가.조직으로 부터 신청을 받아 시장.군수에게 신청내역을 통보
- 시장.군수는 농검출장소장과 협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
- 대상자 선정에는 신청 농가.조직의 생산품목, 재배면적, 출하예상량, 포장재 소요량 등을 고려하고 다수농가에 대한 분산적인 소액보조를 지양
- 소액.분산지원으로 규격화 촉진효과가 미흡할 경우 차년도 예산편성시 당해 시.군 및 시도지원액 감소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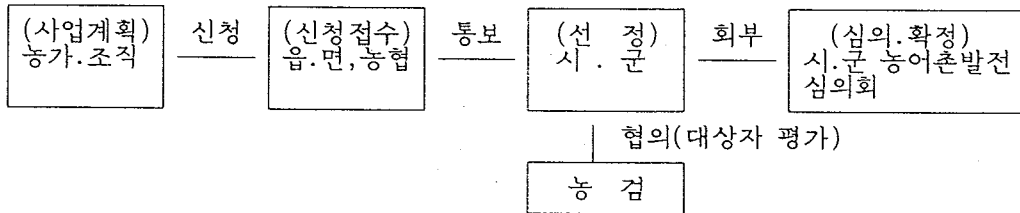
나. 선정 시한 : '95. 1말까지

<< 생산 능가.단체의 평가기준 >>

항 목 \ 평 점	수 (10점)	우 (7점)	양 (5점)
○ 조직의 결속력	강 합	보 통	약 합
○ 규격화사업에 대한 이해도	높 음	보 통	낮 음
○ 자율검사 활동	활 발 함	보 통	미 흡 함
○ 공동출하, 공동선별 (포장센터 이용 등)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 용이함	공동수송 수준임	미 약 함
○ 농검의 유통관리 (품질평가)결과	위반 사실 없음	위반 사실이 경미함	위반이 반복적임
○ 표준규격품 출하의향	강 합	보 통	약 합

※ 각 항목별 평점을 합계하여 종합평점을 산출. (세부평가지침은 추후 시달 예정임)

<< 선정 절차 >>



6. 사업 시행

가. 자금 집행

- (1) 시.도지사는 시.도에 확정배분된 예산을 농검지소장과 협의를 거쳐 시.군별로 배분
 - 농검지소장은 시.군별 규격화 실태, 지원이 필요한 부문 등 협의자료를 사전에 시.도지사에 통보
- (2) 타용도 사용방지를 위하여 현금지원 지양

- (3) 기준보조율(국고 20%, 지방비 20%) 보다 낮게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되 불가피한 경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 (4) 시장.군수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품목간 사업변경 또는 지원대상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검 출장소장과 협의하여 변경 시행
- (5) 자금배정 즉시 집행하여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정변경시 신속히 전배 집행하여 미집행 발생을 방지

나. 규격포장재 구매공급

- (1) 반드시 농산물 표준출하규격에 따른 규격포장재 구매 공급
(품종, 등급, 생산자 등 표시사항이 품목별 규격에 합당하도록 인쇄)
- (2) 원칙적으로 시.군 단위 또는 읍.면 단위로 공동구매 공급
- (3) 시장.군수, 농검출장소장은 사전에 포장 외부에 인쇄하는 그림.문구.표시사항 등을 합동 심의하여 부적절한 그림.문구.표시를 조정
- (4) 납품검사는 시.군이 실시하되 농검, 농협이 입회 확인하여 불량품 공급을 방지하도록 각별히 유의
- (5) 품목별 출하시기를 감안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조기확보 공급
- (6) 포장재 지원대장 비치
 - 시장.군수, 농검출장소장은 농가별 지원상황을 기록하여 대장으로 비치
 - 기록사항 : 농가별 품목명, 재배면적, 재배양식, 생산량 및 출하량, 포장재 소요량, 지원수량, 지원금액, 유통관리실적 등

다. 추진실적 보고

- (1) 시.도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 : '95. 7. 15 한
- (2) '95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실적 보고 : '96. 1. 20 한

7. 기 타

○ 사업안내기관

- 중 앙 : 농림수산부 유통과, 농검 검사관리과
- 시.도 : 시.도 유통과, 농검지소 검사관리과
- 시.군 : 시.군 산업과, 읍.면, 농검출장소
- 읍.면 : 단위농협

< '95 예산(안) >

	사업량	사업비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재정용자금	자부담
계	천매 76,048	백만원 28,670,000	5,734,000	5,734,000		17,202,000
서울	312	117,545	23,509	23,509		70,527
부산	981	369,845	73,969	73,969		221,907
대구	943	355,510	71,102	71,102		213,306
인천	-	-	-	-		-
광주	1,248	470,190	94,038	94,038		282,114
대전	859	323,970	64,794	64,794		194,382
경기	7,536	2,841,195	568,239	568,239		1,704,717
강원	3,878	1,462,170	292,434	292,434		877,302
충북	4,624	1,743,135	348,627	348,627		1,045,881
충남	8,996	3,391,660	678,332	678,332		2,034,996
전북	5,217	1,966,760	393,352	393,352		1,180,056
전남	10,016	3,775,840	755,168	755,168		2,265,504
경북	17,894	6,746,050	1,349,210	1,349,210		4,047,630
경남	9,757	3,678,360	735,672	735,672		2,207,016
제주	3,787	1,427,770	285,554	285,554		856,662

< 보고 양식 >

'95 농산물 가격출하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1. 사업추진실적

가. 총괄

시간별	사업계획						실적						비율			
	조합수	농가수	사업량		사업비		조합수	농가수	사업량		사업비		출하량	사업량	사업비	
			출하량	포장재	국고	지방비			출하량	포장재	국고	지방비				
계	개	호	본	매	천원	계	호	본	매	천원	계	천원	%	%	%	

나. 품목별

	사 업 계 획						실						비 율													
	조합수	농가수	사 업 량			사 업 비			조합수	농가수	사 업 량			사 업 비												
			출하량	포장재	매	계	국	고			지	방	비	출하량	포장재	매	계	국	고	지	방	비				
계	개	호	톤	매	천원	천원	개	호	톤	매	천원	천원	개	호	톤	매	천원	천원	%	%	%	%	%	%	%	%

2. 정산내역

가. 정산액

1) 총괄

(단위 : 천원)

시군별	'95 예산				국고보조금 교부확정액 (예산집행액)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A - B)	치인 반환액		
	사업량	'95 예산액			계	국고 (B)	지방비	지 답	부 답 율 (%)				
		출항량	포장재	지방비					지 답			국고	지방비
계	총	천	매	계	국고	지방비	지 답	국고	지방비	자	담		

- ※ 1) '95 예산중 사업량은 당초 사업계획이며, 예산액의 국고는 예산으로서 미배정액과 교부액을 합한 것.
- 2) 국고보조금 교부액 : 예산액중 자금배정된 것
- 3) 국고보조금 교부확정액 : 교부액중 실제 사업비 집행된 것
- 4)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 교부액중 집행되지 않은 것 (불용액)
- 5) 치인 반환액 : 정산잔액으로서 국고에 반환하여야 할 금액

2) 품목별

	'95 예산				국고보조금 교부액(A)	국고보조금 교부확정액 (예산집행액)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A - B)	차인 반환액	
	사업량	'95 예산액				국고 (B)	지방비	자담	부담율 (%)					
		출하량	포장재	본 진매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나. 불용액 발생사유
1) 불용액 발생내역

시군별 품목명	'95 예산 (사업계획)						'95 예산						국고보조금 교부액(A)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A-B)			
	사업량		예산액			시업 집계	예산			행							
	출하량	포장재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국고	지방비	자담	국고	지방비			자담		
계	본	매	계	천원													
○○○	○○○	○○○	○○○	○○○	○○○	○○○	○○○	○○○	○○○	○○○	○○○	○○○	○○○	○○○	○○○	○○○	○○○

2) 불용액 발생사유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자율)

1. 목적

〈 산지 쌀 유통의 중심체로 육성 〉

-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 및 판매과정을 일관처리함으로써 농가에 편익시설 제공과 노동력 생력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임.
-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한 고품질의 지역특산미 생산공급
- 수확기 농가보유 물량흡수를 통한 산지가격 지지

〈 산지 쌀 유통구조(건조·저장)를 획기적으로 개선 〉

2. 추진방향

가. 기대효과

- 수확기 벼를 종합적으로 일관처리함으로써 노동력 및 비용절감
⇒ 쌀의 가격경쟁력 제고
-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한 고품질의 "얼굴있는 쌀" 생산으로 농가수취가격 제고
⇒ 쌀의 품질경쟁력 제고
- 민간유통기능의 활성화로 농가의 쌀 판로확대 및 산지가격 지지효과 거양
⇒ 쌀의 산지유통기능 혁신
- 절감된 노동력 활용으로 타 소득작목 개발 및 타 산업 참여기회 부여
⇒ 농가소득 증대

나. 연차별 설치계획

	'91~'94	'95	'95~'98	소 계	'99~2004	합 계
○ 사업량(개소)	152	50	98	300	100	400
○ 사업비(억원)	1,486	500	1,070	3,056	1,500	4,556

< 미곡종합처리장설치 기본방향 >

- 생산자단체와 민간도정업체를 중심으로 미곡생산 거점지역에 설치
 - 생산에서 유통까지 연계된 산지 쌀산업의 중심체로 육성
- 생산자단체와 민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경영합리화 추구
- 도정시설에 대한 과잉투자 최대억제
 - 기존도정시설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 인근 도정시설의 인수 또는 공동투자 적극권장
- 가급적 기존도정업체와 원료확보에 마찰이 없는 지역으로서 주위에 개량공간, 보관창고가 확보된 지역에 우선설치
- 미곡종합처리장의 연계시설 개발추진
 - 공동퇴비제조장, 농기계, 산물콤바인, 산물수송차량등 연계시설 개발 추진
- 작목반, 위탁영농회사·영농조합법인등 영농조직과 연계하여 원료확보가 확실시 되는 지역특산미 생산지역 우선설치
 -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들판을 중심으로 우선설치
- 설치개소수보다 처리능력 위주로 설치규모의 다양성 부여·경영합리화
 - 경지면적등 지역여건, 원료수집능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시설규모 조정
- 국익적 차원에서 가급적 국내에서 생산되는 기자재 적극 활용
 - 불요불급한 시설의 설치지양 및고가의 외국산 기자재는 경영합리화후 설치유도

3. '95년도 사업계획

가. 사업기간 : '95. 1. 1 ~ 12. 31(가급적 벼 수확기 이전 완료)

나. 시·도별 사업계획

- 배정기준 : 시·도에서 신청한 사업량과 시·도별 '93년산벼 생산량을 감안 배정
- 시·도별 사업량(잠정)

(단위 : 개소)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계	8	1	4	8	9	9	6	5	50
생산자단체	5	1	2	5	5	5	4	3	30
일반사업자	3	-	2	3	4	4	2	2	20

※ 사업신청 추이에따라 시·도간 또는 생산자단체와 일반사업자의 사업물량(개소) 조정가능

다. 시설설치 기준

(1) 시설규모

- 설치지역의 농경지면적, 교통여건, 농가의 호응도 및 수집가능한 원료곡 생산량, 사업자의 자금조달능력과 경영능력등을 고려하여 과잉투자가 되지 않도록 기본 시설규모 (I 형, II 형)를 감안 적정규모의 시설을 설치하되,
 - 생산자단체는 기본시설 II형, 일반사업자는 기본시설 I형으로 설치 유도
- 기존도정시설과의 거리등 지역실정과 경제성, 사업자의 경영능력을 고려하여 설치
 - 기본시설규모를 하한선으로 하며, 기본시설 규모이상 설치가능

- 기본 시설 규모 -

	사 업 자	처 리 능 력		
		건 조	저 장	가 공
I 형	일반사업자 (민간)	1,000톤	600톤	20톤/일
II 형	생산자단체, 일반사업자	1,800톤	1,200톤	20톤/일

※ 가공시설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
 ※ 가공능력 : 1일 8시간 가동기준임(단위 : 정곡, 톤)

- 평야지, 준평야지, 원료확보 가능량등을 감안하여 시설규모의 탄력적 배치 및 운용

(2) 기계설비 기준

- 입고 및 출고 : 기계적으로 농가별, 품종별, 수분함량별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산물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는 구조
- 품질검사 시스템 : 수분측정, 계량 및 제현작업등을 자동화된 기계(일반사업자는 선택설치)로 처리하여 벼의 품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
- 건조 : 반입시설과 연계, 통풍건조 또는 열풍건조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품종별, 수분함량별로 구분 건조가 가능한 구조
- 저장 : 산물형태로 장기간 안전저장이 가능하고 품종별, 품위별로 구분저장이 가능하며, 저장중 식미유지가 가능한 구조
 - 앞 "가 항의 기본시설규모" 내에서 옥외 사일로를 설치할 경우, 단열, 송풍, 곡온측정이 가능한 시설이어야 함.
- 제어시설 : 입고, 건조, 저장, 출고, 품질검사등을 연계 또는 단독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구조

국익적 차원에서 국내생산 기자재를 적극 활용토록 하며, 특히 기자재는 가급적 KS 규격을 사용하고, 불요불급한 고가의 시설은 경제성을 감안 필요한 시기에 추가 설치

4. 사업비 지원

가. 재원

- 보조, 용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계정)
- 용자조건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연리 : 생산자 단체 5%, 민간 8%)

나. 지원부문 : 건조·저장 기계설비 및 건축

다. 개소당 기준사업비 및 지원비율

(단위 : 백만원)

사업자별	전체	보조	용자	자담
생산자 단체	1,400(100%)	700 (50%)	420 (30%)	280 (20%)
일반사업자	400(100%)	-	200 (50%)	200 (50%)

※ 지원한도액 (보조 및 용자)이상 초과액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과잉투자 지양

5. 사업추진 체계

가. 사업총괄(사업자 선정의 적정여부 심사등) : 농림수산부장관

나. 사업대상자 선정 : 시·도지사

다. 사업주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라.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일반사업자(민간인)

마.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및 보고

- 자율방식에 의거 사업대상자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2배수로 추천하며,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심의 추천한 대상자에 대한 정밀심사후 도 농어촌발전심의회 또는 시·도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생산자단체와 일반사업자가 동일지역에 배치되지 않도록 조정

바. 사업협조 및 기술지원 : 농협중앙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대한곡물협회, 한국양곡가공협회, 학계 및 전문가

6. 시설업체 선정

가. 시설업체의 자격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환경등 시설별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를 가진자, 다만 기계시설 부문에 대하여는 미곡종합처리장의 설비업체로 한다.
- 시설장비 및 기술이 우수하고 성실한자로 하여 설비 및 A/S가 신속하고도 지속적으로 보장되도록 한다.
- ※ 단, 기계설비 부문의 설치에 대하여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자, 부득이한 경우 일반면허(종합면허)가 있는자중 자산, 기술자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가 확실한 자에 한하여 설비에 참여토록 한다('96. 1. 1부터 시행)

나. 시설업체의 선정방법

- 생산자단체는 단체장(농협중앙회장등)책임하에 자유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유도등 공정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 설치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

- 생산자단체는 시설업체 선정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를 받아야 한다
(시설을 한 업체가 감리를 할수 없음)

라. 안전관리

- 농협중앙회와 대한곡물협회는 회원 사업자에 대한 시설안전설계 설치 및 시설후 안전점검(월 2회)에 차질없도록 책임조치 하여야 한다

7.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가. 일반적인 충족요건(생산자단체, 일반사업자 공통)

(1) 대상지역

- 벼 수확작업의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생산기반이 조성된 지역으로서 미곡생산량이 많은 넓은 들판의 농업진흥지역
- 관내 농가의 벼 생산기술이 높고 평준화되어 있어 고품질쌀 생산이 가능한 지역
- 관내 생산미곡의 상품화율이 높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
- 가급적 기존도정시설과 마찰이 없는 지역으로서 주위에 개량곳간등 건조시설, 보관창고가 확보된 지역
- 각종 영농조직 및 위탁영농회사와 연계하여 원료 확보가 확실한 지역특산미 생산지역

(2) 사업자

- 공장설치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자 또는 부지확보가 확실한자
- 관내 농가에 대한 재배품종 통일, 계약재배등을 통하여 적정 건조·저장·가공 물량확보가 가능토록 생산농민에 대한 조직력을 갖출수 있는 자
- 시설비(자부담과 담보능력), 원료확보, 공장운영 등에 필요한 상당한 자금력이 있는자
- 산지 및 소비지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고 경영능력을 가진 자
- 소비지의 판매선을 확보하고 있거나 판매선 확보가 가능한 자

나.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생산자 단체

(1) 대상자

- 앞 "가항의 일반적인 충족요건(대상지역, 사업자)"을 갖추고, 농민과의 계약재배 또는 각종 영농조직, 위탁영농회사등 생산자조직과 연계하여 원료벼(물벼, 산물벼, 농가건조벼)수집이 확실시 되는 생산자단체
- 미곡종합처리장의 설치개소수가 적은 시·군지역에서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우선
- 다만, 고도기술의 벼농사종합시범단지 조성 및 시·군 농어촌발전계획등으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설치 가능
- 농가와 건조·저장등 공동작업에 대한 합의가 상당한정도 이루어진 생산자단체

(2) 선정 우선순위

- ① 고도기술의 벼농사종합시범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거나 인접한 생산자단체
- ② 관내농가, 도정공장 또는 각종 영농조직, 위탁영농회사등 민간인과 공동출자한 생산자단체
- ③ 양곡판매사업이 활발하고 취급양곡이 지역특색미로 인정받고 있거나 정착되어 있고 관내 기존도정시설의 인수 또는 연계출자 방식을 취하는 생산자단체
- ④ 2개 이상의 조합 또는 회사가 합병또는 공동출자한 생산자단체
- 단, 미곡종합처리장의 운영을 독립회계로 실시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곳에 한함.
- ⑤ 신규 고정투자과 운영자금조달 여력이 있는 생산자단체
- ⑥ 지도자의 사업추진 열의도가 높고, 양정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산자단체

일반사업자

(1) 대상자

- 앞 "가항의 일반적인 충족요건(대상지역, 사업자)"을 갖추고 농민과의 계약재배 또는 생산자단체, 위탁영농회사등 생산조직과 연계하여 원료벼(물벼, 산물벼, 농가건조벼)수집이 확실시되는 자로서(타미곡종합처리장과 중복설치 지양)
 - 다만, 고도기술의 벼농사종합시범단지 조성 및 시·군 농어촌발전계획등으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설치 가능
- 관내 기존도정공장과 건조·저장시설을 갖추수 있는 1급이상의 평창고 100평이상을 인수한 자
- 미곡종합처리장의 설치개소수가 적은 시·군지역에서 희망하는 자 우선
- 건조·저장시설을 갖추수 있는 1급이상의 평창고를 100평이상 보유한 자

(2) 선정 우선순위

- ① 설치 예정지역이 고도기술의 벼농사 종합시범단지내 또는 인접지역에 위치한 자
- ② 정부의 조곡매출사업 또는 조곡공매사업에 다년간 참여하여 미질향상과 민간의 쌀유통기능 활성화에 공헌이 가능한 도정업자
- ③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 통합 및 현대화사업 추진계획('79~'85)"에 의거 통합한 공장 또는 시설이 현대화된 정부양곡 도정업자
 - 다만, 정부양곡 임도정업자가 미곡종합처리장에 참여할 경우에는 정부양곡 임도정(쌀)을 포기(공사 완료일 기준) 하여야 함.
- ④ 5개이상의 일반 도정공장이 합병또는 공동출자하는 도정업체
 - 합병 또는 공동출자하는 일반도정공장은 미곡종합처리장 사업대상자로 선정됨과 동시에 기존 도정업 등록취소
- ⑤ 관내농가, 영농조직 또는 위탁영농회사 등과 공동출자하는 자.

8.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 협의회 구성·운영

가. 시·도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 협의회

(1) 구성

- 위원장 : 농수산국장(농산국장)
- 위 원 : 농산과장, 농어촌개발과장, 농촌진흥원 관련과장, 농검지소 관련과장, 사업주관 시·군 산업과장, 농수산통계사무소장, 농협도지회 담당부장, 농어촌진흥공사 관련부장, 관련민간단체 임직원, 전문지식을 가진 학계 및 전문가

(2) 기능

- 사업대상지역 및 대상자 심의·선정(대상지역 배정시 사전심사후 배정 포함)
- 선정모델의 타당성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 여부 검토
- 각종 기자재 설치의 적정성 여부검토(불요불급한 시설의 과잉투자, 불필요한 외국산 기자재 설치억제등)
- 농지전용등 행정지원 협의
- 기타 미곡종합처리장사업 지원에 관한사항 협의 및 처리장별 경영분석 평가지도

나. 시·군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 협의회

(1) 구성

- 위원장 : 시장·군수
- 위 원 : 산업과장, 건설과장,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또는 기술담당관), 농검출장소장, 농수산통계사무소장, 농협군지부 담당과장, 사업시행자, 관련민간단체 임직원, 전문지식을 가진 학계 및 전문가

(2) 기능

- 사업대상자 추천 예비심사
- 선정모델의 타당성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 여부검토
- 각종 기자재 설치의 적정성 여부검토 (불요불급한 시설의 과잉투자, 불필요한 외국산 기자재 설치억제등)
- 농지전용 및 설치에 따른 인허가 지원 협의
-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지원방안 협의
- 농가와의 계약재배 추진상황 확인 감독
- 기타 미곡종합처리장사업 지원에 관한사항 협의 및 처리장별 경영분석 평가지도

9.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가. 농림수산부

- 사업총괄(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작성시달)
- 사업 대상지역 및 대상자 선정의 적정여부 합동심사(농림수산부, 농협, 연구기관, 관련 민간단체등)

나. 시·도

- 사업대상지역 및 사업대상자 심의·선정, 설계심의, 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 선정 관리감독
 - 사업내용의 지침대로 이행여부, 원료비 매입자금의 적정활용실태 확인등
- 농지전용등 각종 인·허가 행정지원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정산
- 시·도단위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 협의회 구성운영
- 사업추진 지도·감독

다. 시·군

- 사업대상자 심의·선정 추천, 설계심의, 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 선정 관리감독
- 각종 인허가등 행정지원
- 사업추진 지도·감독, 매입자금 지출 확인 및 감독
- 계약재배 추진·확인·감독
- 시·군단위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 협의회 구성운영
 - 미곡종합처리장별 사업추진일정 확인 및 공사진행 지도

라. 생산자단체 (농협중앙회장, 시·도지회장, 시·군지부장), 관련민간단체장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지도
- 자금지원 및 운영관리 지도
- 사업대상자 심의·추천 및 선정 협조
- 기술지원단 운영
 - 건축 및 기계설비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
 - 설치모델 개발·선정 및 설치규모의 적정성 검토등 전문적 기술지도와 행정지도
 - 설치공장별 경영분석 및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

10. 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자가 시설관리 및 원료벼 매입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담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비치등 사후관리 및 감독책임을 진다
-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하고, 시설물을 농민들의 교육장으로 최대한 이용토록 조치한다
- 시·도지사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를 조사·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한다.
- 시·도지사,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검사소장, 농협중앙회장은 원료확보, 자금운용, 미질향상, 기술향상, 운영활성화등을 위하여 미곡종합처리장별로 각 기관별 전담책임자를 배치한다.
- 안전관리 : 시설설치후 농협중앙회, 대한곡물협회 및 사업자는 안전관리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시설의 안전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1. 사업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추진기관	비고
○ '95사업대상자 추천	'95. 1월	시·군	
○ '95사업추진 설명회 개최	'95. 1월	생산자단체 민간단체	
○ 사업대상자 확정통지	'95. 1~ 2월	시·도	
○ 농지전용, 설계(기계·건축),형질 변경 추진	'95. 1~ 2월	사업자	
○ 각종허가 취득	'95. 1~ 3월	사업자	○ 농지전용허가, 공장설립 허가, 공해방지시설허가, 건축허가등
○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 계약 및 공사실시	'95. 3~ 10월	사업자	
○ 준공 및 가동시험	'95. 11월	사업자	

12. 보고사항

항목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기한	보고서식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시·도지사	농림수산부 장	선정완료후 10일 이내	'94서식에 준함
○ 사업시행계획 변경보고	"	"	변경후 10 일 이내	"
○ 사업추진 실적보고	"	"	매익월10일 이내	"
○ 사업실적(정산)보고	"	"	사업종료후 30일 이내	"
○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협의회 구성결과 보고	"	"	'95. 1월	"

'95 쌀 생산·유통지원 사업계획(공공계획)

(쌀 관련사업 종합 지원방식)

1. 목 적

- 사업별로 분산지원하던 쌀 관련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2001년까지 쌀생산비 절감과 고품질쌀 생산에 기여

2. 기본방향

- 사업기본 모델을 설정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의 종류를 열거
- 기본 모델에 열거된 사업중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 선정
- 확보된 예산을 시·도에 배정하면 시·도지사는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 중앙에서는 사업계획을 심사, 예산과 자금지원

3. 도별 들면적 현황

(단위 : 개소)

	계	50-100ha	101-200	210-300	301-400	401-500	500이상
합 계	2,489	1,482	658	171	65	43	70
경 기	438	218	128	38	18	14	22
강 원	126	82	30	7	2	2	3
충 북	77	38	25	9	2	3	-
충 남	191	74	52	14	10	14	27
전 남	474	222	153	58	21	7	13
경 북	575	398	144	27	6	-	-
경 남	608	450	126	18	6	3	5

4. '95 쌀 관련 주요사업 투자계획

사 업 명	사 업 량	단 가	사 업 비
○ 경 지 정 리	30 천ha	16.8백만원/ha	503,730 백만원
○ 대구획 경지정리	30 천ha	21.5백만원/ha	290,518
○ 기계화 농작업로 확포장 사업	200km	91 백만원/ha	18,200
○ 용 수 개 발			
- 대규모용수개발	10		45,000
- 중규모 용수개발	92 지구 (31,460ha)	4,768천원/ha	150,000
- 일반 용수개발			33,665
· 지표수개발	5,483ha	4,863 "	26,665
· 지하수개발	5,483ha	1,277 "	7,000
- 한발대비용수개발	1 천ha	1,000 "	1,000
○ 배수개선	23천ha	3.4백만원/ha	78,000
○ 농기계 공급			
-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직	796 개소	100백만원/개소	79,600
- 전업 농	10,000농가	23.5 "/농가	235,000
- 일반농기계	213 천대	4.6	980,820
○ 토양개량			
- 규산질 비료	118 천톤	61.6천원/톤	7,269
- 객 토	19천ha	1,200천원/ha	2,200
○ 어린모공동육묘장	3,600개소	2.8백만원/개소	10,080
○ 공동방제	170천ha	28 천원/ha	4,760
○ 항공방제	40천ha	20 천원/ha	800
○ 전업 농			
- 규모화사업	10 천농가	28백만원/농가	280,000
- 기계화 자금	"	23.5 "	235,000
○ 미곡종합처리장	50 개소	농협1,400/개소 민간 400 "	58,600
합 계			3,047,907

5. 표준사업(Model)에 고려할 사항

□ 들녘크기 : 50ha

* 들녘크기가 다양하므로 사업계획 수립시는 실면적에 단가 적용
(예) : 450ha 들일경우 : $50\text{ha} \times 9 = 450\text{ha}$

□ 미곡종합처리장 : 1,000ha 또는 1,000ha 이상 기준

□ 표준사업(Model)에 포함된 세부사업

- 생산기반 정비사업
 - 경지정리(재경지정리 포함)
 - 배수개선
 - 일반용수 개발
 - 수리시설 개보수
 - 토양개량, 객토 등
- 기계화
 - 경영체별 기계화
- 경영규모확대
- 생력재배
 - 육묘장, 직파기(탈망기 포함)
- 가공사업
 - 미곡종합처리장 등

* 미곡종합처리장은 사업자의 요구가 있어야 되는 사업이므로 1,000ha 규모로 권역화
하되 50ha 기준모델을 묶어 사업실시

* 대규모 용수개발, 항공방제, 공동퇴비장은 수혜대상 면적등을 고려 개별 사업으로
추진

□ 사업기간

- 당년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토목, 시설사업 등 공정상 당년에 마칠기가 곤란한 사업은 2~3개년 계획으로 추진

6. 예산배정 및 집행

- '95년 예산은 Package 예산사업의 초기년도를 감안 전체 들면적을 감안 시.도에 예산배정, '96년이후는 년초 시도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예산확보.배정
- 개별사업별 사업지침은 해당부서에서 작성
- 시.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감안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Menu선택
 - 농민들이 사업계획서를 수립할수 있도록 지도강화
- 기 지원되었거나 불필요한 Menu는 시.도지사가 전체 예산범위내에서 조정하되 종합지원(Package사업)의 목적을 감안 농가별 분산지원이 되지않도록 유의
- 쌀농사 시범지역 및 농가에 자금 우선지원
-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후 예산지원

7. 사업평가

- 도단위 비교평가회 개최, 우수시군 시상 및 일정율의 사업을 우선지원

표준사업

	사업량	단가	사업비	지원율
계			4,373,000	
		천원	천원	%
○ 경지정리				
- 일반 경지정리	50ha	19,270	963,500	100
- 대구확 경지정리	50ha	21,500	1,075,000	100
○ 기계화 농작업로 확포장 사업	1.4km	91,000	127,400	100
○ 용수개발				
- 중규모 개발	50ha	4,768	238,400	100
- 일반용수 개발				
· 지표수 개발	20ha	4,863	121,575	100
· 지하수 개발	20ha	1,277	31,925	100
· 한발대비용수개발	10ha	1,000	10,000	100
○ 배수개선	50ha	3,400	170,000	100
○ 농업기계화				
-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 이용조직	1개소	100,000	100,000	90
- 전업농	2농가	23,500	47,000	90
○ 경영규모확대(전업농)				
- 농지매매	1ha	48,000	48,000	100
- 임대차	1ha	17,000	17,000	100
○ 생력재배				
- 어린모 공동육묘장	1개소	2,800	2,800	90
- 직파기(탈망기 포함)	1대	2,600	2,600	70
- 공동방제	50ha	28	1,400	100
○ 토양개량				
- 규산질비료	13ha	61.6	800	50
- 객토	13ha	1,200	15,600	100
○ 미곡종합처리장	1개소	1,400,000	1,400,000	80

표준사업 작성 기초자료

< 50ha 기준 모델설정근거 >

- 들 개념으로 50ha 이상이 되어야 하고
- 경지정리는 50ha 미만 사업지구가 가장 많고 중규모 용수개발사업 최소단위가 50ha 임
- 농기계 기준시 연간 작업시간이 트랙터 20ha, 이앙기 3ha, 직파기 10ha, 콤바인 10ha 수준으로 현 농기계 보급 (기계화율 91%)을 감안시 50ha 면적에 기종별 1~2대 공급이 적정

< 사업별 근거 >

- 경지정리
 - 경지정리 : 봄마무리 단가 18,350천원/ha
가을 착수 단가 19,270천원/ha } 가을 착수단가적용, 표준사업모델
100% 경지정리
 - 대구획 경지정리 : 단가 21,500천원/ha 적용
 - 기계화 농작업로 확포장 사업 : 경지정리지역 ha당 28m 적용
 - 규모화 사업은 50ha 표준사업 모델에 2농가 육성
 - 3~5ha 농가중 1ha 규모확대 전체
 - 기계화 사업은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직 1개소(50ha 규모)와 전업농 2농가 (10ha 규모) 배치
 - 토양개량제와 객토는 전체 면적의 25% 기준 13ha 적용
 - 어린모 공동육묘장은 '95년도 완료사업으로 50ha에 1개소(20ha 적용) 배치
- * 지원을 : 국고, 지방비, 용자

쌀 관련 투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94 예 산		'95 예 산		비 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2,061,611		2,688,206	전체예산 중 29.6%
대규모 용수개발 사업	10천ha	34,300	10	45,000	
농지생산기반 종합 정비조사		1,600		1,600	
경지정리	30	503,730	30	506,340	
대구획 경지정리		31,965		290,518	
배수개선사업	27	62,700	23	77,500	
농조수리시설 개보수	410개소	50,516	400	77,389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39 "	14,400	40	15,120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87	8,334	90	8,199	
대규모 용수개발	10천ha	34,300	10	45,000	
중규모 용수개발	33 "	82,467	31	150,000	
일반용수개발		34,127		36,861	
지표수 개발	14 "	26,665	5	26,665	
지하수 개발	882ha	5,980	1,040	7,000	
수맥조사	2,045ha	1,482	3,400	2,482	
농어촌 용수조사	230개소	250	250	300	
한발대비 용수개발	1,000개소	1,000	1,000	1,000	
영산강(Ⅱ)용수개발		11,000		12,000	
대호지구 농업종합개발		13,500		8,500	
금강(Ⅱ)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8,000		12,000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94 예 산		'95 예 산		비 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미호천(Ⅱ)지구 농업종합개발 사업		6,000		8,000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6,000		23,000	
영산강(Ⅲ-1) 농업종합개발사업		-		2,000	
영산강(Ⅲ-2) 방조제 축조		17,000		11,000	
새만금 방조제 축조		87,000		97,100	
농기계 이용조직 육성	위탁영농 300개소 영농단 3,000개소	34,872	위탁영농 회사 및 공공이용 조직 796개소	79,600	
일반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858,794		980,820	
토양개량제 공급		18,061		9,922	
어린모 공동육묘장	4,000개소	11,200	3,600개소	10,080	
공동퇴비 제조장	100	45,000	100	48,200	
공동방제	160천ha	4,400	170천ha	4,760	
항공방제	50천ha	800	40천ha	800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	-	100개소	25,000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		4,418		4,100	
미곡종합처리장		60,000		58,600	
임도정공장 총 폐합 시설대체 지원		1,750		1,750	
전업농 육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94 예 산		'95 예 산		비 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 유기농업 지원 >		63,061		83,122	
토양개량제 공급		18,061		9,922	
공동퇴비 제조장	100	45,000	100	48,200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	-	100개소	25,000	
< 공해방지설 지원 >		48,295		48,200	
축산공해방지시설		95,040		123,450	
집단마을 오폐수처리시설		3,200		6,400	
공동퇴비 제조장	100	45,000	100	48,200	

도별 들면적 현황

(단위 : 개소)

	계	50-100ha	101-200	210-300	301-400	401-500	500이상
합 계	2,489	1,482	658	171	65	43	70
경 기	438	218	128	38	18	14	22
강 원	126	82	30	7	2	2	3
충 북	77	38	25	9	2	3	-
충 남	191	74	52	14	10	14	27
전 남	474	222	153	58	21	7	13
경 북	575	398	144	27	6	-	-
경 남	608	450	126	18	6	3	5

도별 들단위 권역화 현황

(단위 : 개소)

	계	500 - 1,000 ha	1,000 이상
합 계	263	133	130
경 기	56	29	27
강 원	10	6	4
충 북	23	11	12
충 남	49	34	15
전 남	52	19	33
경 북	37	18	19
경 남	36	16	20

농산물공판장 건설 (공공계획)

1. 목 적

- 중소도시지역의 농산물유통량 증가에 따른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 도모
- 관내농산물의 처리능력제고 및 공정거래로 상거래질서 유지의 선도적 역할

2. 추진방향

- 농산물유통량이 많은 중·소도시지역에 '98년까지 67개소의 공판장 건설
- 도매시장내에 건설되는 공판장은 제외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3년까지	'94	'95	'96-'98	계
사업량	44	3	4	16	67
사업비	16,825	6,250	20,300	33,600	76,975
- 국고보조	3,126	2,500	8,120	13,440	27,186
- 지방비보조	1,267	1,250	4,060	6,720	13,297
- 용 자	1,873	1,250	4,060	6,720	13,903
- 자 담	10,559	1,250	4,060	6,720	22,589

※ '93년까지 44개소중에는 농협 자체확보분 33개소가 포함됨

3. 사업대상 및 선정

가. 신청대상

- 중소도시지역의 농협 회원조합

나. 신청 우선순위

- 시지역으로 공판장이나 도매시장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우선
- 공판장이 기 설치되어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거나 차량출입이 원활하지 않고 인근 주택가 등에 공해유발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
- 기존 공판장 및 도매시장이 있으나 유통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기존시설의 확장이 불가하여 추가로 공판장 건설이 필요한 지역

다. 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 사업신청 우선 순위별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 관내 주변에 농산물 생산량이 많은 지역
- 사업기간내에 완공이 가능한 대상
- 조합의 투자여건 및 운영능력

라. 사업대상자 선정

- 중소도시지역의 사업희망 농협 회원조합은 입지선정, 사업규모, 사업자금 조달계획 및 운영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서(붙임1)를 작성하여 수시로 시장에게 제출
- 시장은 사업대상자의 적격여부 및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시농어촌 발전심의회의를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추천
- 도지사는 사업지역의 적정, 사업수행능력, 사업효과, 지방비 부담능력 등 적격여부를 검토, 도 농어촌발전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전년도 3월 31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수산부장관이 사업대상자를 확정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운영방법

- 농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 위탁받은 농산물을 경매방식을 통하여 판매 처리하고 상장수수료를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기능과 유사한 사업형태

나. '95 사업규모 및 지원액

	사업규모		사업량	개소당 사업비				
	대지	건물		계	국고	지방비	용자	자담
일반공판장	1,250 ^평	500 ^평	개소 3	백만원 2,100	840	420	420	420
대형공판장	10,000	4,100	1	14,000	5,600	2,800	2,800	2,800

※ 용자조건 : 연리 5%, 3년거치 7년상환

- 사업규모는 지역여건에 따라 결정

다. 지원조건

- 농산물공판장 건설부지 구입비 및 건축비 지원
- 국고보조 40%, 지방비보조 20%, 용자 20%, 자담20%

라. '95 예산(안)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전 남	1개소	2,100	840	420	420	420
경 북	2	4,200	1,680	840	840	840
제 주	1	14,000	5,600	2,800	2,800	2,800
계	4	20,300	8,120	4,060	4,060	4,060

※ '95사업대상 : 전남 순천시, 경북 경주시, 영천시, 제주 제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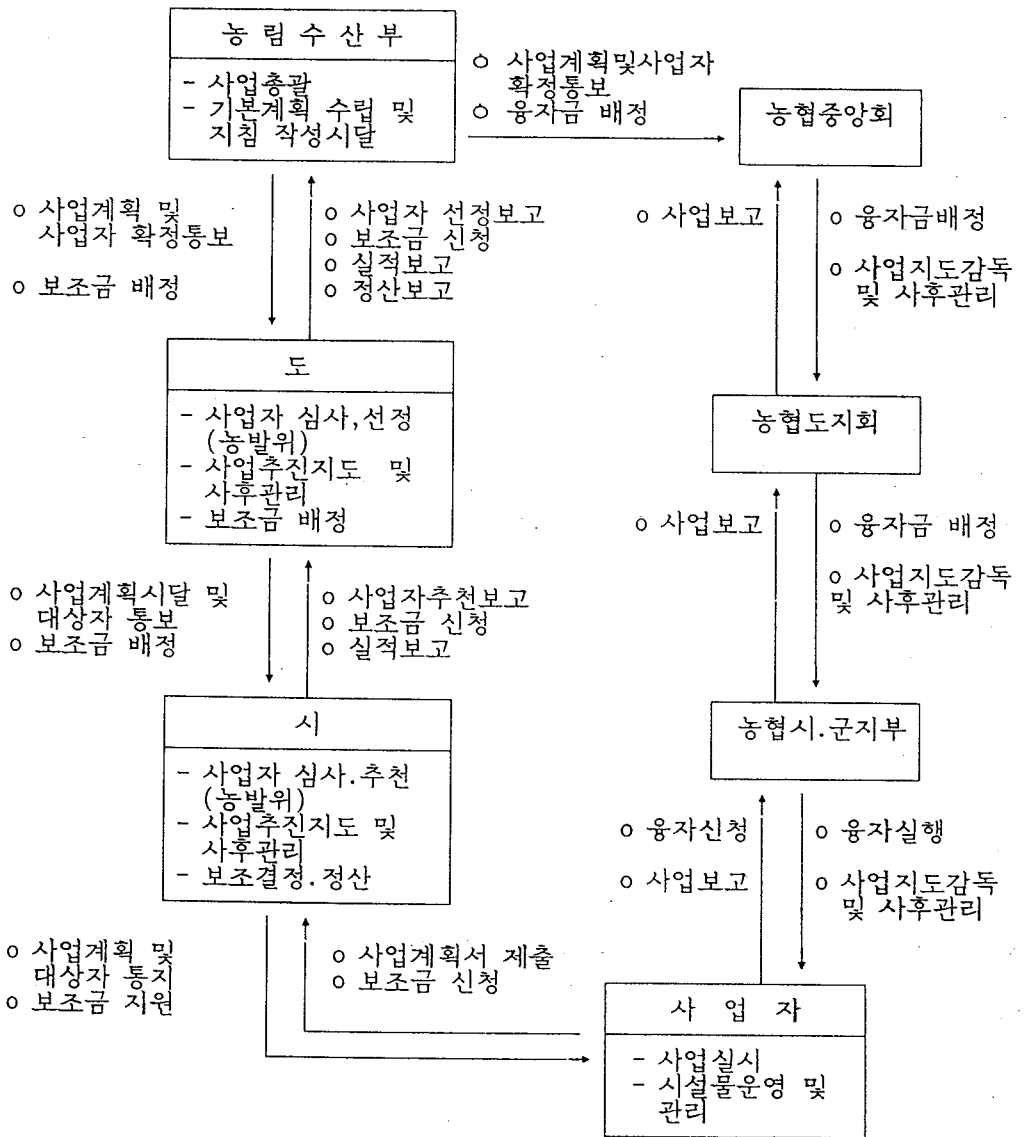
5. 사업효과

- 농산물유통량이 많은 지역의 유통원활로 농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
- 산지농협의 출하편의 제공 및 소비자 구매편의 도모

6. 기타사항

- 본사업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다음기관으로 문의하도록 함
 - 중 앙 : 농림수산부 농산물유통국 유통과
 - 도 : 각도 농정국 유통과
 - 시 : 각시 산업과

7. 사업추진 체계도



< 별표 1 >

농산물공판장 세부사업 시행계획

1. 위 치

- 위치 : 도 시 동 번지 (위치약도 첨부)
 - 입지선정 사유
- 부지면적 :
- 관련법상 지목 및 지역(지구)명 :
 - 토지관련 법령상 설치가능성 검토의견

2. 시설 설치계획

	규모	사 업 비					비고
		계	국고	지방비	용자	자담	
부 지 건 물							

※ 건물에 따라 구체적인 시설명과 규모를 비교란에 기재

- 시설규모 설정사유 : 시 지역내 기존도매시장, 공판장 및 유사도매시장 현황과 유통량을 비교하는 등 적정시설규모 검토의견

3. 사업추진일정

4. 사업운영 및 관리방안

5. 연차별 수지전망 (손익추정)

※ 첨부서류 : 사업예정지의 지적도면, 도시계획확인원

청과물종합처리장 건설 (공공계획)

1. 목 적

- 농산물을 산지에서 집하, 세척, 선별, 포장, 예냉, 가공, 저장, 판매 등 일련의 과정으로 처리하여 소비지 물류센터, 도매시장, 백화점 등 대량수요처에 판매
- 우수한 신선농산물의 선별 규격포장화로 좋은 값을 받고 나머지 농산물을 가공제품화 하여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 종합처리를 통한 경영의 합리화를 촉진하고 산지 생산자조직의 광역화를 유도하여 자율적 생산출하 조절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2004년까지 24개소에 1,200억원 (국고 840억원, 지방비 366억원) 투자
- 사업대상자는 주산지의 생산자단체(광역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운영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대상자인 경우 운영은 생산자단체가 담당
 - 1개 시군단위로 하되 필요시 2개군 이상이 연합하여 협의체 구성운영
- 매취자금, 공동규격출하자금, 포장자재비, 가공원료, 수매자금 등 우선지원

나.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93년까지	'94	'95	'96~'98	'99~2004	계
사업량	- 개소	-	3	9	12	24
사업비	- 억원	-	90	450	660	1,200
국고보조	-	-	63	315	462	840
지방비보조	-	-	27	135	198	360

- 개소당 사업비 : 건물 및 시설비 50억원 (부지구입비는 자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70%, 지방비보조 30% (지방비 보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다. '95 사업대상자 및 예산내역 (개소당 총사업비 50억원)

- 1차년도 총사업비의 60% 추진
- 2차년도 총사업비의 40% 추진

(단위 : 백만원)

시 도 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고	지방비
전남 나주시	1 개소	3,000	2,100	900
경북 안동군	1	3,000	2,100	900
경남 거창군	1	3,000	2,100	900
계	3	9,000	6,300	2,700

3. 사업대상자 선정

가. 사업신청자격

- 사업대상자는 군단위이상의 광역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종합 처리할 수 있는 주산지의 생산자단체중 광역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사업대상자의 우선순위 결정기준은 출하형태, 편익비용(B/C) 분석, 기존 유통시설 이용실적, 공동기금(출자금)규모, 생산·유통지원 사업추진여부, 이용품목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

나. 사업대상자 선정 고려사항

- 관할구역내의 해당품목의 생산량 대비 이용계획량
- 부지확보여부 또는 확보가능성과 주산단지 지정현황
- 지방비 부담능력 또는 생산자단체의 경우 총사업중 경제사업 비중
- 지역내 타조직의 기존 유통시설과의 관계

다. 사업대상 선정절차

- 사업희망 대상자는 사업계획서(신청서류 :붙임1,2,3)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수시로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수행능력, 자부담능력, 지방비 부담능력, 부지확보, 사업효과 등 적격여부를 분석하여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추천
- 도지사는 도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전년도 3월 31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대상자를 제출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확정
 -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는 설치 예정지역이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의 제한구역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제출
 - '95년도 사업대상자는 '95. 1. 20까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

4.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가. 설치규모 및 시설내역

- 설치규모 : 부지 10,000평 내외, 건물 2,500평내외
- 사업기간 : 2년 계속사업
- 시설내역 : 집하장, 선별.포장시설, 저장.예냉시설, 가공시설, 직판시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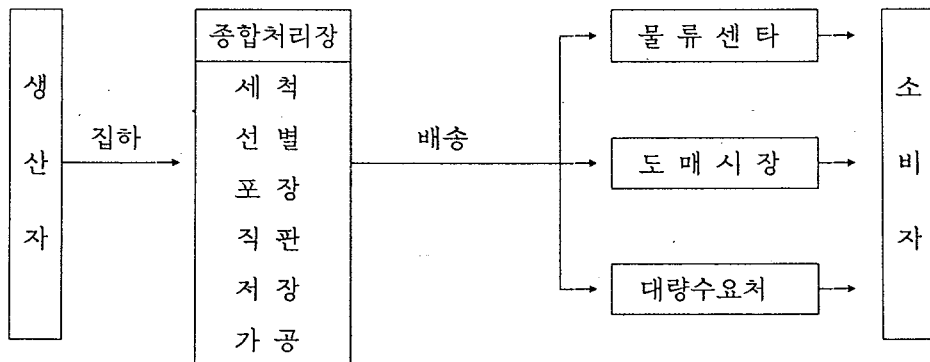
나. 개소당 시설 및 사업비 내역 (예시)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단 위	사 업 량	단 가	사 업 비	비 고
집 하 장	평	600	1.2	700	수집, 작업장, 경매장 등
선별.포장시설	평	500	2	1,000	건물 및 선별포장기
예냉.저온저장고	평	600	2	1,200	건물 및 냉장기계설비
가 공 시 설	평	300	3.3	1,000	건물 및 가공기계설비
직 판 장	평	300	2	600	건물 및 판매대 등 판매설비
사무실 및 휴게실	평	200	1.5	300	건물 및 집기
부대시설 및 장비	-	-	-	200	위생시설, 주차시설 및 지게차.팔레트 등 장비
계	평	2,500		5,000	

- 총사업비 50억원 범위내에서 시설별 규모조정이 가능하며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자체부담으로 충당
- 품목별, 지역특성상 필요에 따라 시설의 선택과 예시되지 않은 시설도 설치 가능하나 사업단가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도록 할 것.

다. 운영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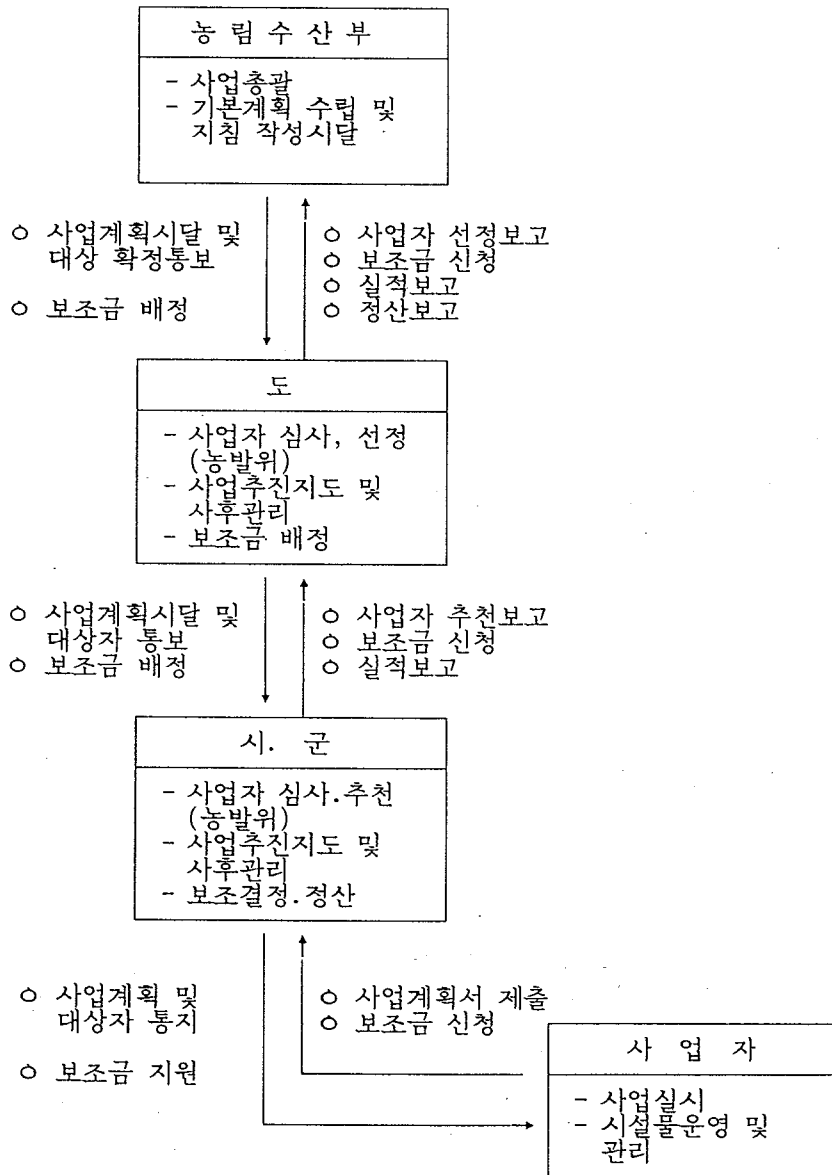
5. 사업효과

- 산지에서 농산물(청과물)을 종합적으로 일괄 처리하여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생산자 수취가격 제고
 - 청과물의 신선도 유지로 부가가치제고 및 유통비용 절감
 - 청과물의 출하조절로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소비자 물류센타를 통한 직거래는 물론 도매시장에서의 상장경매 촉진

6. 기타사항

- 사업안내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농산물유통국 유통과
 - 지방 : 도 농정국 유통과, 시·군 산업과

7. 사업추진 체계도



(붙임 1)

청과물종합처리장 세부사업 시행계획서

1. 사업대상자 (조직명) :

2. 입 지

위 치 : 도 시 동 번지 부지면적 : 지목 및 지역(지구)명 :
--

○ 입지선정 사유 :

○ 토지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

3. 시설 설치계획

구 분	단위 (규격)	면적 (수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고	지방비	자담	
부 지 (자담) 건 물 - 집하장시설 - 선별포장시설 - 예냉·저온저장 시설 - 가공시설 - 사무실및휴게실 - 기타부대시설 등	m'		백만원				○ 선별기의 경우 제작 회사 기재 (수입시 수입국 및 제작회사, 수입회사 기재) - 중량선별의 경우 몇조식(몇라인기재) ○ 예냉시설의 경우 강제통풍식, 차압 통풍식 등을 표시

○ 선과(별)기별 이용품목 및 선과종류 (중량, 색깔, 형상, 속도 등) :

○ 가공시설의 가공품목 및 생산품

○ 능력 : 저장 톤, 선별시설 톤 (1일 8시간 기준)

○ 연간 이용계획 : 저장 톤 (보관적수 누계기준), 선과 톤

4. 사업추진일정

5. 사업운영방안 : - 사업방식 (매취 또는 수탁구성비율), 수탁의 경우 수수료, 포장센터 운영
인력확보 및 자부담 조달방안, 소비지 판매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기초조직이 연합하여 운영할 경우 연합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투자 및 운영방법 등)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대상자인 경우 운영주체인 생산자조직과의 역할분담을
명백히 기재

6. 사업책임자 선정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 경영인이 필요, 실질적인
경영인의 확보방안 (내부 선발 또는 고용)

7. 주변현황 : 주산단지의 각종 유통시설 등 종합적인 여건

8. 연차별 수지전망 (편익비용분석)

※ 첨부서류 : 사업예정 토지의 등기부 등본 및 지적도 (시.군 보관)

사업신청자 (인)

확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인)

사업계획서 첨부자료

1. 사업대상지역의 조직 현황 (대상품목별로 작성)

하부조직명	조직결성 년월일	농가 수	재배면적	생산량	청과물중합 처리장이용계획	관할시·군 명칭	단위조직	기구조성금액 (단위,특수조합 은금,용자산)	현행 출하형태
00 단협 (개소)		호	ha	톤			하부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 조직개소수	천원 (증빙서류 첨부)	본 " " " " " " 계
00 법인 작목회									

※ 청과물중합처리장 이용계획은 하부조직 단위로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기재하고, 관할조직 이외에서 물량을 확보할 경우

구체적인 확보물량 및 방법을 별도 표시

※ 단위조직은 작목반의 경우 선진, 일반, 기초 등 조직단계별 개소수 기재하고, 작목회와 단협은 중복되지 않게 작성

2. 기존 유통시설 이용실태

(단위 : 톤, 일)

시설명	규모	설치연월일	1일능력	연간취급량 (보관적수누계)	연간가동일수 (보관장고체의외)	소유자	구입방법
						단협 법인 개인 · · ·	국고, 지방비보조, 자담등

※ 선과시설 능력은 1일 8시간 기준

※ 시설설치가 1년미만인 경우 그동안 취급실적 및 연간계획을 구분 기재하고 L/C 개설 등으로 설치중인 경우 계획을 기재 (본사업에 따른 계획은 제외)

※ 사업희망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유통시설을 대상으로하되 일반 저장시설은 제외하고, 저온저장시설과 각종 선별·세척·포장시설 등을 시설별로 기재하되 선별·세척·포장시설이 동일장소의 1개 라인에 설치된 경우에는 선별기로 일괄기재

3. 사업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기타 참고자료 (구체적으로 기재)

- 생산·유통지원사업 등 주산단지육성사업 지역일 경우 위치, 사업년도, 사업규모 및 세부사업계획별 추진실적 (시·군에 확인하여 기재하되 1항의 기초조직일 경우 군단위, 광역조직일 경우는 군단위 또는 사업대상 수개군의 현황기재)
- 사업대상 품목별 주산단지 현황
- 협동조합의 경우 년간 총사업비 및 경제사업비 내역 등

< 붙임 3 >

편의비용 (B/C) 분석

비용 (C)	고정비용	사업 년도	1 차 년도	2 차 년도	-----		합 계
					9차년도	9차년도	
	토지구입비 간물기계보합비 화전기소 구입비 계						
	직접비용 직접노무비 직접재료비 직접관리비 직접수입비 직접경비 직접세비 계						
	합계 (가)						
	현재가치	가	$가 \times \left(\frac{1}{1+r}\right)$	$가 \times \left(\frac{1}{(1+r)^2}\right)$	$가 \times \left(\frac{1}{(1+r)^9}\right)$	TC(총비용)	
편의 (B)	수탁사업 선별·포장 등 각종수수료 저장수수료 계						
	판매사업						
	합계 (나)						
	현재가치	나	$나 \times \left(\frac{1}{1+r}\right)$	$나 \times \left(\frac{1}{(1+r)^2}\right)$	$나 \times \left(\frac{1}{(1+r)^9}\right)$	TB(총편익)	
B/C	나/가					TB/TC	

< 작성시 유의사항 >

○ 고정비용

- 토지구입비는 전액을 사업년도에 일괄 계상하고 1차년부터 9차년도까지는 공란으로 하되 토지 임차시에는 임차료를 매년 기재
 - 건물구입비는 국고 및 지방비 보조를 제외한 자부담금 (융자포함) 금액을 사업년도에 일괄 기재하되 1차년도부터 9차년도까지는 공란
 - 각종 기계구입비는 건물구입비 기재요령과 같음
 - 전속 인건비는 가동율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불되는 직원 인건비를 매년 기재
 - 화재보험료와 기타는 매년 발생하는 금액을 매년 기재하되 지불이자(자기자본금 이자포함)와 감가상각비는 제외
- ※ 기존유통시설(토지, 건물, 각종기계 등)을 활용할 경우 구입당시가격을 사업년도에 기재

○ 가변비용

- 직접노무비, 원료구입비, 전기료, 수도료, 일반관리비, 각종세금 기타는 모두 매년 발생예정액을 매년 기재

○ 판매사업

- 가공 및 판매사업 인한 조수입액을 매년기재

○ 현재가치

- 미래 비용과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임
- r 는 0.06으로 계산

○ 기 타

- TC : 비용의 현재가치의 합계
- TB : 편익의 "
- B/C : $\frac{TB}{TC}$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합계만 기재

농수산물 물류센터건설 (공공계획)

1. 목 적

- 기존 도매시장과의 다른 새로운 형태의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유통경로의 다원화로 출하처 확대
 - 농어민의 출하선택의 폭을 넓혀 안정적인 상품공급과 계획적인 생산체계 유도
 -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과 판매처리 능력을 확대
- 산지 생산자조직과 소비지 소매상과의 직접연결로, 중간상인을 배제하여 유통단계 축소
 - 산지와 소비지간의 새로운 직거래방식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자의 수취가격 제고와 소비지의 가격안정 도모
 - 소비자의 수요변화가 생산자에게 직접 전달되어 농수산물의 생산·출하조절 가능
- 산지유통시설 (청과물종합처리장, 포장센터 등)과 연계하여 종합 물류시스템을 구축
 - 산지유통시설과 예약상대 거래로 가격결정에 생산자의 의사반영으로 시장교섭력 제고
 - 농수산물의 주문, 배송의 전산화로 신속한 정보전달
- 농수산물 유통시장의 개방화에 대응한 선지유통기법을 도입하여 유통환경의 변화에 적응
 - 소매상의 업태가 좌판, 구멍가게, 행상 등에서 백화점, 슈퍼, 편의점 형태로 변화하고 1차 농수산물 외에도 가공식품, 생활 필수품까지 취급하는 Onestop-shopping 이 가능한 도소매기능이 복합된 유통체계로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충족

2. 추진방향

가.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 생산자단체로부터 농수산물을 수집 유통가공, 소포장하여 직영점, 가맹점등에 배송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 도시교통체증 완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결하는 물류센터 건설 확대
 - 대도시 유통권을 중심으로 2004년까지 16개소를 확대 건설
 - 농수산물과 공산품 (생활필수품)도 함께 취급 가능토록 확대운영

- 정부가 부지를 조성, 기간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생산자단체, 민간유통업체 또는 생산자단체와 합작한 민간유통업체 등을 입주시켜 일정기간 무상임대하는 대규모 물류단지 건설
 - 단지관리는 정부, 생산자단체, 입주업체가 공동출자한 『법인』이 담당
 - 입주업체는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고, 운영은 개별 업체별로 자율운영

-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개발제한지역』내에서도 물류센타 등 농수산물 유통시설 건설을 허용하여 입지선정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개발부담금 감면 (건설부 협조)

나. 사업목표 및 장기계획

구 분	'93년까지	'94	'95	'96~'98	'99~2004	계
사 업 량	- 개소	1	3	7	5	16
사 업 비	- 억원	200	824	5,477	3,716	10,217
국고보조	-	-	453	3,461	1,952	5,866
용 자	-	200	371	2,016	1,764	4,351

※ 연차별 투자계획 (개소수 및 지원규모)는 사업실적을 감안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조정가능

3. 사업대상 및 선정

가. 사업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민간유통업체, 콘소시움을 대상으로 조직규모, 경영상태, 재무구조 및 소비지 소매조직과 산지출하조직과의 연계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나. 사업대상자의 운영형태

- 운영형태는 사업의 공익성과 경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4개유형으로 설정
 - < 1유형 > 생산자단체 (유통자회사가)가 직접 건설하여 운영
 - 농협의 경우 중앙회가 건설하고 운영은 유통자회사가 담당
 - < 2유형 >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유통업체가 공동 출자하여 물류센타를 건설 운영하거나 생산자단체와 민간유통업체가 공동출자 (콘소시움 형태)하여 운영
 - < 3유형 > 민간유통업체가 독자적으로 물류센타를 건설하여 운영
 - < 4유형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도시 권역에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부지를 임대 또는 분양하고 물류센타 시설은 사업대상자가 건설하여 운영

다. 입지선정시 고려사항

- 농수산물 물류센타의 건설은 소비지 유통권을 중심으로 대도시의 외곽에 건설하되 권역별의 농수산물 소비량, 인구,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입지선정
- 산지유통시설과 연계되는 지역으로서 도매시장이나 공판장 등 소비지 유통시설과 연계하여 설치

라. 사업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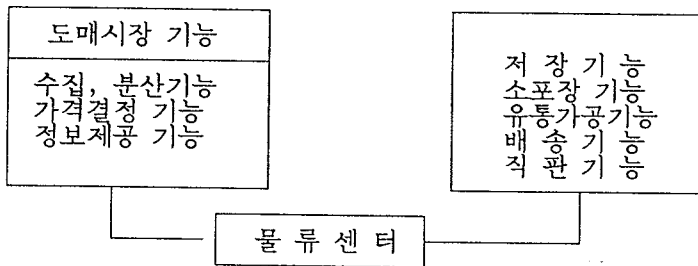
- 사업희망 대상자는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서(붙임1,2)를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수시로 제출
 - 생산자단체(유통자회사)가 사업대상자일 경우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직접 제출 가능
 - 사업시행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사업비 산정은 건설업자, 기계제작회사등의 견적가격을 조사하여 기재하고 부지구입비(자체보유분포함)은 감정가격 등을 참고하여 기재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의 적격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전년도 3.31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 (전년도 3.31이후 접수분은 차년도 계획으로 검토)
 - 시도지사는 설치 예정지역의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관련법규상의 제한규정에 저촉여부를 검토하여 제출
 - 단, '94년도 농특세 추경과 관련된 창동 물류센타의 사업계획서는 '94. 12. 31까지 '95년도 사업대상분은 '95. 1. 31까지 제출
-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생산자단체장에게 통보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농림수산부 또는 시·도지사

나. 주요기능

- 농수산물 물류센타는 기존의 도매시장 기능을 보완하면서 저장, 소포장, 유통가공, 직판기능까지 겸하여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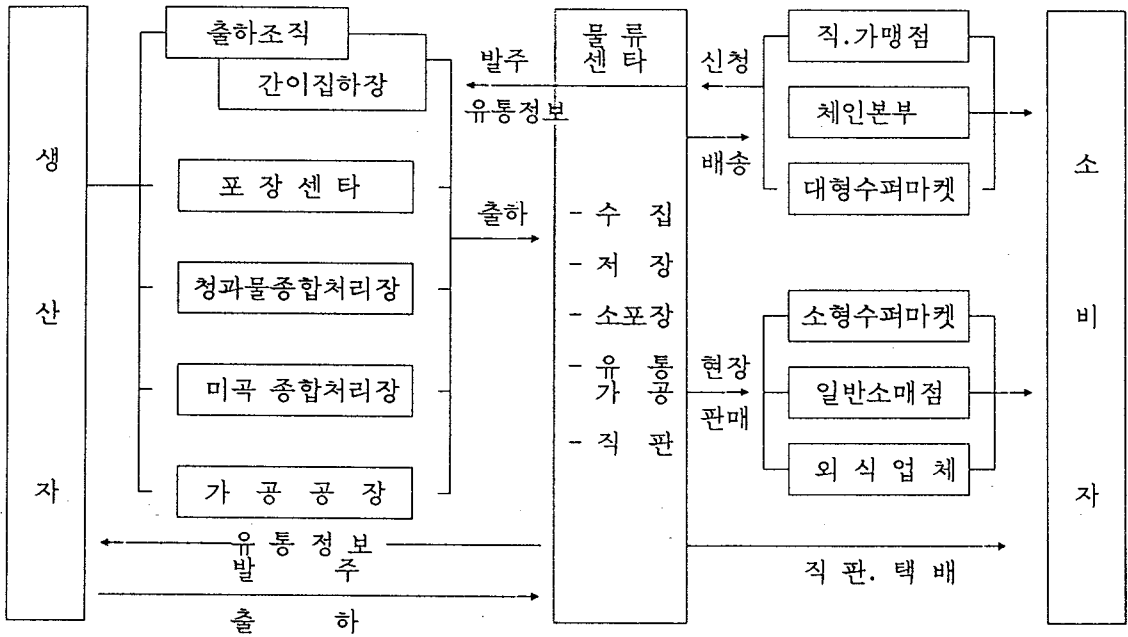
- 수집기능 : 생산자로부터 계약에 의해 수집 특히 청과물종합처리장, 포장센타, 간이집하장을 적극 활용하여 표준규격품 취급을 원칙으로 함
- 가격결정기능 : 수요자의 주문가격과 생산자조직의 희망가격 (물류센타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을 거래전에 결정
 - 직판가격은 생산자의 희망가격 (예약 수의매매가격)으로 함
- 유통정보제공 : 취급품목의 소매장별 가격, 도매가격, 유통량 등을 전광판, 유인물, PC, FAX 등을 통해 생산자조직과 소매상에 전달
- 저장기능 : 수집된 물건을 배송전까지 저장 보관하고 매잔품은 판매전까지 저장, 보관하여 신선도 유지
- 소포장기능 :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소포장시설 확보
- 유통가공기능 : 육류의 부분육가공, 곡류의 정선, 배합 등 가공시설 확보
- 배송기능 : 직접배송 또는 배송회사와 용역 계약체결로 배송의 효율성 제고, 상하차, 센타내의 운반 등을 위한 기계설비 확보
- 직판기능 : 회원권을 소유한 자에 한하여 물류센타에서 직접구매

다. 설치규모 및 주요시설

- 건설규모는 취급물량과 직영점, 가맹점 및 인근 이동가능권역내 상권이나 소비여건을 고려하여 과잉투자가 되지 않도록 설치
 - 부지 10,000 - 30,000평, 건물 5,000 - 30,000평 규모로 설치
 -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대상자는 농수산물 유통시장 개방화에 대응한 선진유통기법이 적합하도록 설계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건설
 - 팔레트, 냉동탑차 및 컨테이너 수송체계 도입
 - 포크리프트에 의한 기계식 상하차 시설
 - 집배송장의 저온시스템 도입, 전산망 구축에 의한 자동, 수.발주 및 유통정보 시스템 시설
 - 농수산물 물류센터는 집하장, 배송장, 저장고, 소포장실, 가공실, 직판장 등의 주요시설을 갖추어 설치
 - 집 하 장 : 입하된 농수산물을 품목별로 분류진열해 놓는 기본시설
 - 배 송 장 : 농수산물을 상품목록과 대조 상차하기 위해 대기하는 공간으로 Deck system 도입
 - 저 장 고 : 입하된 농수산물의 선도유지를 위해 일시 저온·냉동·보관 또는 재고 농산물을 상당기간 보관하기 위한 장소
 - 소포장실 : 열채류 과일류 등을 기계 또는 인력에 의해 소포장하는 작업실
 - 가 공 실 : 농·축·수산물의 단순가공 (절단, 분쇄 등)하는 작업장
 - 직 판 장 : 회원권을 갖인 소비자에게 농·축·수산물을 소매하는 시범매장
- ※ 사업특성 및 지역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사업내용에 예시되지 않은 시설의 보완 및 조정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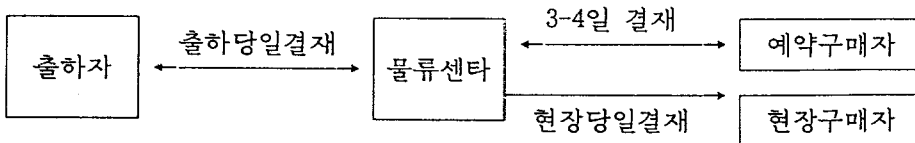
라. 운영방법

(1) 물류흐름도



(2) 가격결정

- 결정방법 : 생산자 희망가격, 수급동향, 시황 등을 감안, 예약상대거래 방식에 의하여 결정
 - 산지 유통시설 (청과물종합처리장, 포장센터) 및 공동출하조직에 사전가격제시
- 적용기간 : 품목에 따라 (1일, 1주, 15일, 1월 등) 탄력적으로 적용
- 대금결제방법



마. 지원조건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 물류센타를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용자 지원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정후 종합물류단지내 입주업체의 지원규모는 건물비의 일부보조 또는 용자지원

○ 지원기준

-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 : 부지구입비 용자70%, 건축비 국고보조70% 지원
- 민간유통업체 : 건축비 용자50% 지원
- 콘소시움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민간유통업체의 지원조건을 각각 적용
- ※ 용자조건 : 연리3% (민간5%), 5년거치 10년상환

○ 공사기간 : 3년 이내

바. '95예산(안) 및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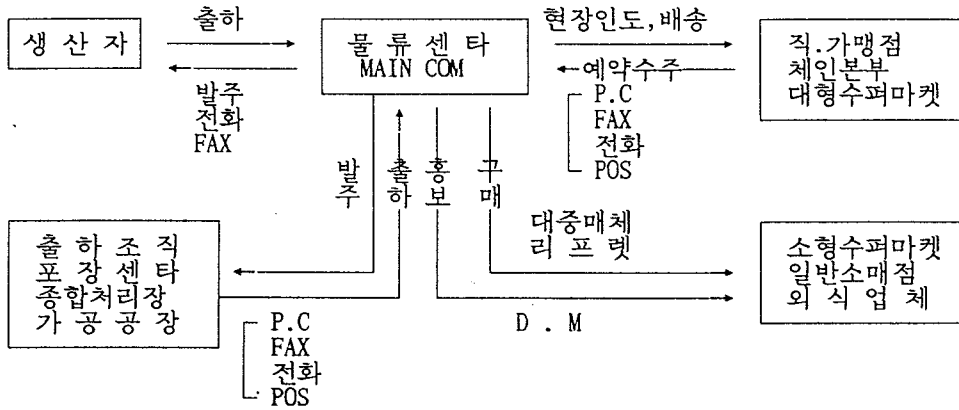
(단위 : 억원)

사업대상	규모(평)		총 사업비				'95 사업비			
	부지	건물	계	국고	용자	자담	계	국고	용자	자담
농협 창동	10,000	12,000	1,050	294	441	315	513	118	241	154
농협 양재동	27,796	27,000	996	637	60	299	490	283	60	147
농협 청주	20,000	8,000	260	112	70	78	114	10	70	34
수협 부산 감천항	5,000	8,000	227	159	-	68	60	42	-	18
계	-	-	2,533	1,202	571	760	1,177	453	371	353

사. 물류활동

- 수송
 - 물류센터까지의 수송은 출하자 책임
 - 출하단체의 보유차량은 점차적으로 탑차 (보냉, 냉장, 냉동)로 교체
 - 상.하차 편의를 위해 팔레트 (PALLET) 수송도입
- 하역
 - 물류센터의 집.배송장은 데크 (DECK) 설치
 - 물류센터내의 하차, 운반, 상차는 팔레트 (PALLET), 지게차 사용
 - 하차는 물류센터 책임, 상차는 구매자 책임
- 보관
 - 보관구역은 저온 컨트롤 시스템을 채용하되 품목별 구분 온도 조절
 - 보관효율을 높이기 위해 2-3단의 선반 (RACK) 설치
- 소포장. 유통가공
 - 소매단위 소포장, 또는 절단 등 유통가공은 옵션(OPTION)에 의해 실시하며 이에따른 추가비용은 구매자 부담
 - 소포장. 가공작업은 직영 또는 용역업체 (협력회사)에 의뢰하여 실시
- 배송
 - 체인본부 또는 소매점까지 배송은 옵션(OPTION)에 의해 실시하며 이에따른 추가비용은 구매자 부담
 - 배송작업은 직영 또는 운수업체 (협력회사)에 의뢰하여 실시
- 직판장 운영
 - 물류센터 부설 시범매장으로 직판장을 설치하여 직영
 - 물류센터의 잔품처리 및 판매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 도매구역 (물류센터)과 직판장 구역을 구분 센터내 교통 혼잡방지
 - 농.축.수산물.양곡.가공식품.생필품 등을 취급하는 원스톱 쇼핑센터로 운영
 - 소비자의 기호파악 및 소매점의 지도자료 발굴

아. 수발주 및 정보제공 네트워크 (NET - WORK)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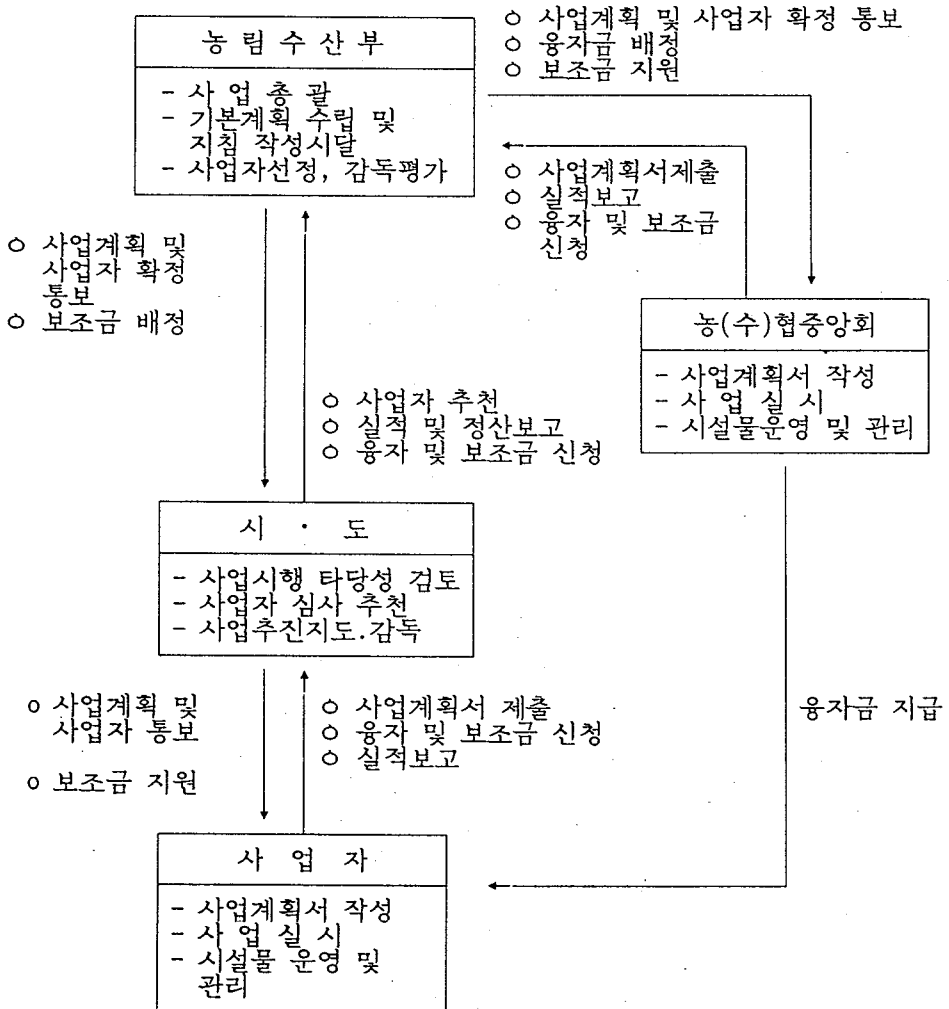
5. 사업효과

- 새로운 유통경로 구축으로 도매시장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상호견제 및 기능보완
 - 농수산물의 집.배송기능 확대로 원활한 물류공급선 확보 및 소비자의 구매편의 제공
 - 생산농어민의 출하선택의 폭을 넓혀 가격지지를 도모하고 물가안정 기여
- 농수산물의 수송, 보관, 하역, 집배송의 기계화 체제구축 및 전산정보망을 통한 외국의 유수업체와 경쟁력 확보
 - 우리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수입농수산물과의 경쟁력 제고
- 예약 및 상대거래로 가격결정 과정에서 생산자입장을 최대 반영하여 합리화 도모
 - 유통단계 축소 및 물류비용 절감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환원
 - 가격결정과정에 농어민이 직접 참여하게 되어 중간상인들의 불공정거래 방지
- 예약발주시스템을 채용함으로써 선별, 규격포장 촉진 및 소비자의 쓰레기 발생방지
 - 농산물포장센터등 산지유통시설의 운영 활성화 및 조기정착 유도
 - 소매단위의 소포장 공급으로 소매점의 경영합리화 도모

6. 기타사항

- 본 사업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다음기관으로 문의하도록 함.
 - 중 앙 : 농림수산부 농산물유통국 유통과
 - 지 방 : 각 시·도 농정국 유통과

7. 사업추진 체계도



※ 물류센터와 도매시장과의 차이점

구 분	도매시장	물류센터	비 고
1. 개설·관리·운영	개설 : 시 관리 : 관리공사 (관리사무소) 운영 : 지정도매인	사업자가 관리·운영	건설·관리·운영의 일원화
2. 도매유통단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개 설 자 (관리공사)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지정도매인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중 매 인 </div>	사업자가 지정도매인 및 중매인의 역할 수행	유통단계 축소
3. 출하규격	대포장 또는 산물	표준규격품 취급원칙	물류합리화기여 쓰레기공해방지
4. 출하물량	제한 없음	사전발주물량만 출하원칙	
5. 가격결정	경매원칙	예약 상대거래원칙	생산자, 소비자의 납득수준에서결정
6. 판매처	제한 없음	직영점, 가맹점 수퍼 등 등록회원으로 제한	교통혼잡문제해결
7. 취급품목	1차 농·축산물	가공식품, 양곡, 생필품 까지 확대	소매점의 원스톱 쇼핑가능
8. 상품화기능	없음	유통가공, 소포장실시	소비자요구에부응
9. 정보교환	전화 또는 대중매체	PC, FAX 또는 온라인 전산망 이용	
10. 공급방법	중매인 매참인 등이 가져감	직영점, 가맹점, 수퍼등에 배송원칙	교통체증 절감

(붙임1)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사업 계획서

1. 사업명
2. 사업목적
3. 사업대상자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입지

○ 위치 :	도	시	동	번지 [위치약도(1/5,000축적지형도)첨부]
○ 부지면적 :	(소유자명 :)			
○ 지목 및 지역(지구)명 :				

* 입지선정 사유 (주변현황 등)

* 토지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

나. 사업규모 및 투자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규모	사업비		조달방법			주요기능
		단가	금액	보조	융자	자담	
○ 부지 ○ 건물 ○ 집하장 ○ 배송장 ○ 소포장 ○ 가공시설 ○ 직판장 <small>시설 시설 시설 시설 시설 시설 시설</small>	㎡						

* 건물에 따라 구체적인 시설물과 규모를 별지로 상세하게 추가 작성첨부

다. 사업추진 일정 :

라. 사업운영 및 관리방안 : 수집방법, 판매상, 콘소시움의 경우 투자 및 운영방안 등 포함

5. 연차별 수지전망 : 별첨 편익비용 (B/C) 분석표에 의거 전망

- ※ 첨부서류 : 1. 물류센터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계획
2. 사업예정지의 토지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

팬익비용 (B/C) 분석

(단위 : 백만원)

		사업년도	1차년도	2차년도	-----	9차년도	합계
비용 (C)	고정비용	토지구입비 건물구입비 간혹기계항로 화재보험비 전선비 타계					
	가변비용	직전노무비 원료구입비 전수반관리 인건비 타계					
합계 (가)							
팬익 (B)	현재가치	가	$가 \times \left(\frac{1}{1+r}\right)^1$	$가 \times \left(\frac{1}{1+r}\right)^2$		$가 \times \left(\frac{1}{1+r}\right)^9$	TC(총비용)
	수익.배출.가공 등 각종수료 타계						
	판매사업 판매금액						
	합계 (나)	나	$나 \times \left(\frac{1}{1+r}\right)^1$	$나 \times \left(\frac{1}{1+r}\right)^2$		$나 \times \left(\frac{1}{1+r}\right)^9$	TB(총팬익)
B/C	나/가						TB/TC

< 작성시 유의사항 >

○ 고정비용

- 토지구입비는 전액을 사업년도에 일괄 계상하고 1차년부터 9차년도까지는 공란으로 하되 토지 임차시에는 임차료를 매년 기재
 - 건물구입비는 국고 및 지방비 보조를 제외한 자부담금 (융자포함) 금액을 사업년도에 일괄 기재하되 1차년도부터 9차년도까지는 공란
 - 각종 기계구입비는 건물구입비 기재요령과 같음
 - 전속 인건비는 가동율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불되는 직원 인건비를 매년 기재
 - 화재보험료와 기타는 매년 발생하는 금액을 매년 기재하되 지불이자(자기자본금 이자포함)와 감가상각비는 제외
- ※ 기존유통시설(토지, 건물, 각종기계 등)을 활용할 경우 구입당시가격을 사업년도에 기재

○ 가변비용

- 직접노무비, 원료구입비, 전기료, 수도료, 일반관리비, 각종세금 기타는 모두 매년 발생예정액을 매년 기재

○ 판매사업

- 직판사업으로 발생할 이익을 매년 기재

○ 현재가치

- 미래 비용과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임
- r 는 0.06으로 계산

○ 기 타

- TC : 비용의 현재가치의 합계
- TB : 편익의 " "
- B/C : $\frac{TB}{TC}$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합계만 기재

농산물포장센터 건설 (공공계획)

1. 목 적

- 과실, 채소 등 주요 품목별 특성에 따라 농산물 포장센터를 주산지에 건설하여 산지유통의 핵심체로 육성
- 포장 및 규격화된 상품을 소비지 물류센터, 대량소비처, 도매시장등에 직접 판매함으로써 출하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유통비용 절감
- 생산자조직에 집중지원하여 포장화, 규격화에 의한 공동출하로 생산자조직이 산지 유통기능을 주도하도록 유도

2. 추진방향

가.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 (1) 주산지 중심으로 2004년까지 160개소의 농산물포장센터를 설치하여 소비지의 물류센터 또는 도매시장 등과 연계
- (2) 대표장은 물론, 최종 소비자 구매단위로 소포장 출하가 가능하도록 적지에 적정규모 건설
- (3) 대상품목은 품목의 모양, 크기와 저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품목을 이용토록 하면서 포장화가 쉬운 품목부터 우선시행

나. 사업목표 및 장기계획

구분	'93까지	'94	'95	'96-'98	'99-2004	계
개소수 [대형 중형 소형]	개소	-	21	63	76	160
			1	3	6	10
			5	15	30	50
			15	45	40	100
투자액	억원	-	126	378	581	1,085

※ 투자액은 국고, 지방비 부담금액임. 개소수는 매년실적을 평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 (1) 사업규모 : 부지 500-4,000평, 건물 250-1,500평
- (2) 개소당 평균사업비 : 대형 30억원, 중형 15억원, 소형 5억원 (부지대 제외)
- (3) 대규모, 중규모는 광역조직(군단위이상)이, 소규모는 기초조직(읍.면단위이하)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사업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 단위.특수조합, 영농조합법인, 기타 법인화된 생산자조직 (작목반 등 비법인 생산자조직은 법인화 조건)

나. 우선 순위결정기준

○ 대규모, 중규모는 광역조직(군단위이상)이, 소규모는 기초조직 (읍면단위이하)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대상자는 조직의 규모, 경영과 생산 및 출하 실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

(1) 출하형태

- 공동계산비중
- 공동규격출하비중
- 공동출하비중
- 규격출하비중

(2) 편익비용 (B/C) 분석

(3) 기존 유통시설 이용실적

(4) 공동기금(출자금) 규모

(5) 생산·유통지원 사업추진여부 및 실적

(6) 이용품목수

다. 고려할 사항

(1) 관할구역내의 해당품목의 생산량 대비 이용계획량

(2) 부지확보여부 또는 확보가능성

(3) 총사업중 경제사업 비중 (협동조합)

(4) 주산단지 지정현황

(5) 타조직의 기존 유통시설과의 관계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 (시장·군수)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1) 대규모 시설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저온저장고 및 예냉시설	선별포장시설(기계설비제외)	기계. 설비		집하시설	관리사무실 및 자재창고	합계
			선별. 포장기등	기타자재			
규모	600평	400 평			200평	200평	
투자금액	1,200	400	700	300	200	200	3,000

- 상기 투자금액에는 부지대 제외
- 저온저장고 및 예냉시설 : 평당 2백만원, 기타 건축 : 평당 1백만원
- 지역실정에 따라 사업비 총액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판매시설 제외)

(2) 중규모 시설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저온저장고 및 예냉시설	선별포장시설(기계설비제외)	기계. 설비		집하시설 및 관리사무실등	합계
			선별. 포장기등	기타자재		
규모	300평	200 평			200평	
투자금액	600	200	400	100	200	1,500

- 상기 투자금액에는 부지대 제외
- 시설단가 : 대규모 시설과 동일
- 지역실정에 따라 사업비 총액범위내에서 조정가능 (판매시설 제외)

(3) 소규모 시설

- 실제로 작목반 및 단위. 특수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이 필요로 하는 시설 (부지대 제외)
 - 세척기, 선별기, 결속기, 포장기, 예냉. 저장시설 등으로서 저장시설의 경우 결속기, 선별기, 포장기 등과 연계하여 설치하여야 함 (판매시설 제외)
- 투자금액 : 5억원

(4) 품목별 지역특성상 불가피할 경우 사업내용에 예시되지 않은 시설도 가능

(5)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하되 건적가격 등을 조사하여 기재

(6) 기타자재는 PVC 상자, 파레트, 저온수송차량, 전동지게차 등임

다.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농특세교부금) 30%, 자부담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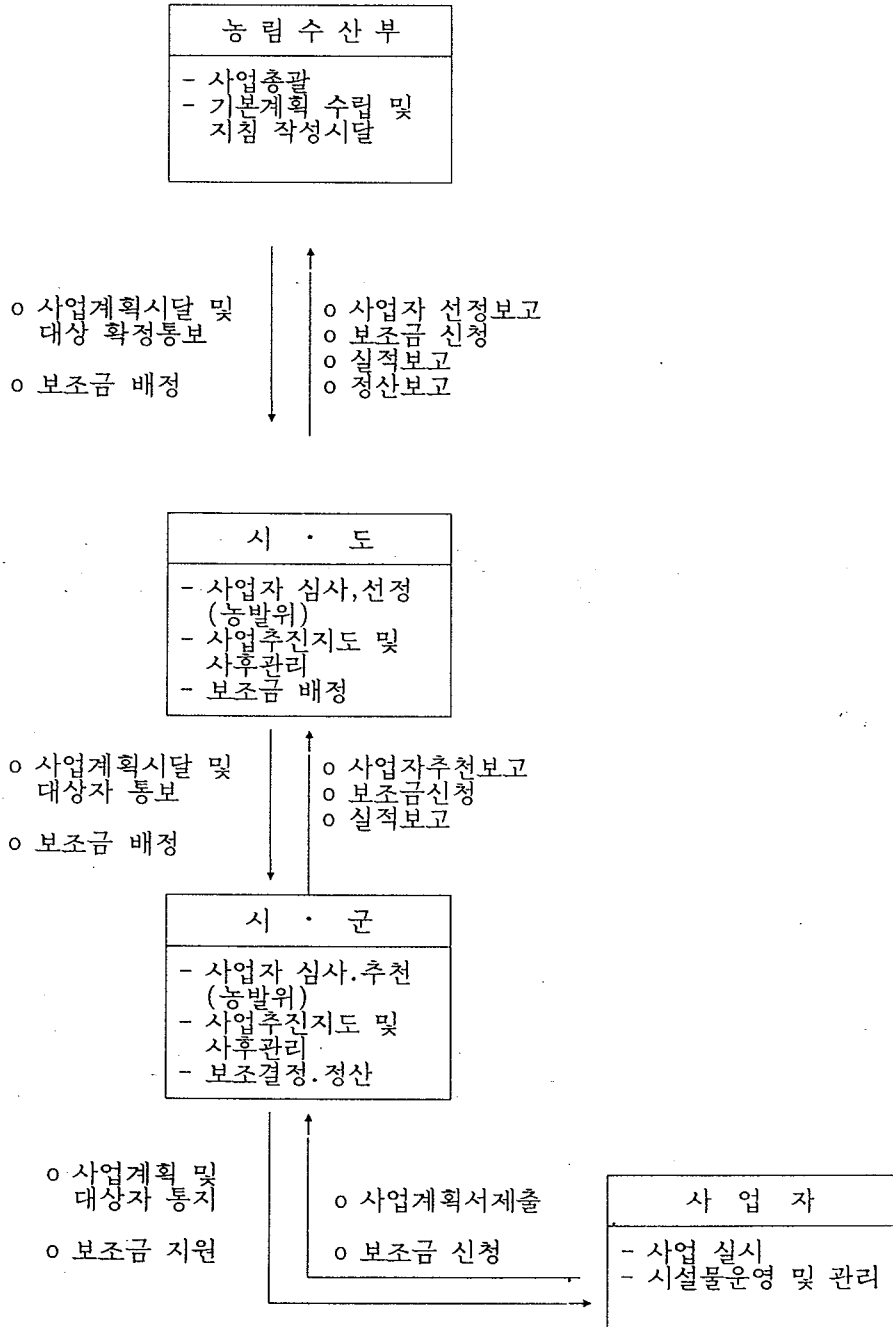
5. 행정사항

- 사업시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 또는 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기타사업계획의 변경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내용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자는 시설물의 소유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도감독
- 사업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 본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조직의 이용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본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본 시설물은 준공후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건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도 같음.
- 본 시설물의 이용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보고해야 함.
- 포장자재비(보조) 또는 공동규격출하촉진자금(농안기금)은 포장센타를 이용하는 농민에게 우선 지원하며, 포장센타의 가동율 제고를 위해 매취사업자금(농안기금)을 별도로 조직에 지원
-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포장센타 관리책임자에 대한 국내외 경영교육을 실시
 - 포장센타 이용농민에 대한 교육실시
- 분기별 자체평가와 반기별 농검에 의한 평가실시로 경영개선을 도모

6. 기 타

- 사업안내기관
 - 중 앙 : 농림수산부 유통과
 - 시·도 : 시·도 유통과
 - 시·군 : 시·군 산업과

< 사업추진 체계도 >



< '95 예산(안) >

	사업량	사업비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자부담
경 기	개소	백만원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붙임1)

농산물 포장센터사업 희망자 내역

규모별	순위	사업 대상자		사업대상품목	부지확보 여부
		조직명	주소		
대규모	1				
	2				
	3				
	·				
	·				
중규모	1				
	2				
	3				
	·				
	·				
소규모	1				
	2				
	3				
	·				
	·				

(붙임 2)

농산물 포장센터 세부사업 시행계획서

1. 사업대상자 (조직명) :

2. 입 지

위 치 : 도 시 동 번지
부지면적 :
지목 및 지역(지구)명 :

- 입지선정 사유 :
- 토지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

3. 시설 설치계획

구 분	단위 (규격)	면적 (수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고	지방비	자담	
부 지 (자담) 건 물 - 저온저장고 및 예냉시설 - 선별포장시설 - 집하시설 - 선별기 - 사무실 - 자재창고 - 기타자재 (구체적으로)	m'		백만원				○ 선별기의 경우 제작 회사 기재 (수입시 수입국 및 제작회사, 수입회사 기재) - 중량선별의 경우 몇조식(몇라인 기재) ○ 예냉시설의 경우 강제통풍식, 차압 통풍식 등을 표시

- 선과(별)기별 이용품목 및 선과종류 (중량, 색깔, 형상, 속도 등) :
- 능력 : 저장 톤, 선별시설 톤 (1일 8시간 기준)
- 연간 이용계획 : 저장 톤 (보관적수 누계기준), 선과 톤

4. 사업추진일정

5. 사업 운영방안 : 사업방식 (매취 또는 수탁구성비율), 수탁의 경우 수수료, 포장센터 운영 인력확보 및 자부담 조달방안, 소비지 판매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사업책임자 선정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 경영인이 필요, 실질적인 경영인의 확보방안 (내부 선발 또는 고용) 및 주요학력 및 경력 등을 상세히 기재

7. 주변현황 : 주산단지의 각종 유통시설 등 종합적인 여건

※ 첨부서류 : 사업예정 토지의 등기부 등본 및 지적도

사업 신청자 (인)

확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인)

< 붙임 3 >

사업계획서 첨부자료

1. 사업대상지역의 각종조직 현황 (사업대상지는 아래 가, 나 양식중 택일하여 1개 서식만 기재)

가. 기초조직 (단협, 법인 등 기초직 명칭을 기재)

(0 0 품목)

하부조직명 (기소)	조직결성 년월일	농가 수	세비 면적	생산량	현행 출하 형태					기금조성 실태(년월, 발수조합은 금용자산)	조직주소	
					포장센터 이용계획	공 동 개 산 제	공 동 규 격 화	공 동 출 하	규 격 화			기 타
작목반 (기소)		호	ha	톤							친원 (증빙서류 첨부)	

※ 하부조직은 작목반, 법인 등을 기재하고 하부조직이 없을경우 기초조직명을 기재 (작목반의 경우 신진, 일반, 기초등 조직단계 표시)
공통출하는 공동출하하되 개별 계산하는 경우임. 이용품목이 복수인 경우 품목별로 작성

나. 광역조직 (법인, 단협 등의 연합조직 명칭을 기재)

(0 0 품목)

하부조직명 (기소) 00 법인 00 단협	조직결성 년월일	농가수	재배면적	생산량	포장센터 이용계획	관할시·군 명칭	단위조직	기금조성금액 (단위, 발수조합 은용자산)	현행 출하형태
		호	ha	톤	톤		하부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 조직개수	친원 (증빙서류 첨부)	공 동 개 산 제 : : : 공 동 출 하 : : : 공 동 규 격 화 : : : 기 계

※ 포장센터이용계획 (가, 나 서식공통)은 하부조직 단위로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기재하고, 포장센터 연합조직 이외에서 물량을 확보할 경우 구체적인 확보물량 및 방법도 표시
※ 단위조직은 작목반의 경우 신진, 일반, 기초 등 조직단계별 기소수 기재하고, 작목회와 단협은 중복되지 않게 작성

2. 기존 유통시설 이용실태

(단위 : 톤, 일)

시설명	규모	설치연월일	1일능력	연간취급량 (보관착수누계)	연간가동일수 (보관착고제외)	소유자	구입방법
						단협 법인 개인 ...	국고, 지방비보조, 자담등

※ 선과시설 능력은 1일 8시간 기준

※ 시설 설치가 1년미만인 경우 그동안 취급실적 및 연간계획을 구분 기재하고 L/C 개설 등으로 설치중인 경우 계획을 기재 (본사업에 따른 제외)

※ 사업희망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유통시설을 대상으로 하되 일반 저장시설은 제외하고, 저온저장시설과 각종, 선별, 세척, 포장시설 등을 시설별로 기재하되 선별, 세척, 포장시설이 동일장소의 1개 라인에 설치된 경우에는 선별기로 일괄기재

3. 사업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기타 참고자료 (구체적으로 기재)

○ 생산, 유통지원사업 등 추진단지육성사업 지역일 경우 위치, 사업년도, 사업규모 및 세부사업계획별 추진실적

(시, 군에 확인하여 기재하되 1항의 기초조직원 경우 군단위, 광역조직일 경우는 군단위 또는 사업대상 수개군의 현황기재)

○ 사업대상 품목별 추진단지 현황

○ 협동조합의 경우 년간 총사업비 및 경제사업비 내역 등

(붙임4)

편익비용 (B/C) 분석

(단위 : 백만원)

		사업 년도	1 차 년도	2 차 년도	----- 9차년도	합 계
비용 (C)	고정비용 토지구입비 건물구입비 각종기공비 화체보인타 기 소					
	가변비용 직접노임비 원료기 수입반 관세 기 소					
합계 (가)						
편익 (B)	현재가치	(가)	$(가) \times \left\{ \frac{1}{(1+r)} \right\}$	$(가) \times \left\{ \frac{1}{(1+r)} \right\}$	$(가) \times \left\{ \frac{1}{(1+r)^9} \right\}$	TC
	선택장수 기 소					
	매출사업 매 출 액					
	합계 (나)	(나)	$(나) \times \left\{ \frac{1}{(1+r)} \right\}$	$(나) \times \left\{ \frac{1}{(1+r)} \right\}$	$(나) \times \left\{ \frac{1}{(1+r)^9} \right\}$	TB
B/C	(나)/(가)					TB/TC

< 작성시 유의사항 >

- 고정비용
 - 토지구입비는 전액을 사업년도에 일괄 계상하고 1차년부터 9차년도까지는 공란으로 하되 토지 입차시에는 임차료를 매년 기재
 - 건물구입비는 국고 및 지방비 보조를 제외한 자부담금 (용지포함) 금액을 사업년도에 일괄 기재하되 1차년도부터 9차년도까지는 공란
 - 각종 기계구입비는 건물구입비 기재요령과 같음
 - 전속 인건비는 가동율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직별되는 직원 인건비를 매년 기재
 - 화재보험료와 기타는 매년 발생하는 금액을 매년 기재하되 지불이자(자기자본금 이자포함)와 감가상각비는 제외
- ※ 기존유통시설(토지, 건물, 각종기계 등)을 활용할 경우 구입당시가격을 사업년도에 기재
- 가변비용
 - 직접노무비, 원료구입비, 전기료, 수도료, 일반관리비, 각종세금 기타는 모두 매년 발생예정액을 매년 기재
- 매취사업
 - 매취사업으로 판매한 금액을 매년 기재
- 현재가치
 - 미래 비용과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임
 - r 는 0.06으로 계산
- 기 타
 - TC : 비용의 현재가치의 합계
 - TB : 편익의 TB
 - B/C : TC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합계만 기재

※ 편익비용 계산시 매년 불가상승이 없는 것으로 계산하고 세부산출근거 (물량×단가) 첨부

19X X년도 X/4분기 농산물 포장센터 추진상황

사업자 명	지역 (시.군. 읍.면)	사업량				사업계획				사업추진내역					비고	
		매지	건물	시설및장비	사업비			매지 확보	진속 허가	착공일	공정 %	준공 예정일	사업비내역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m ²	m ²	증	계	친원	계	친원	원,인		%	원,인	계	친원		

* 매지, 건물면적은 명명 ()내서

* 사업지법 추진실적에 대한 부정 및 부정 사용률 문제점으로 적정하여 취부

<붙임 6 >

년도 농산물 포장센터 정신실적 보고

사업자	지역 (시.군.읍.면)	사업계획				사업실적				비율				사업비				착공일	준공일
		대지	건물 (A)	시설및장비 (B)	대지 면적	대지	건물 (C)	시설및장비 (D)	비율 C/A	D/B	계획		진행실적		비율 (F/E)				
											계	보존 (E)	계	보존 (F)		계	저당		
		대지	㎡	중				%		진척	계	진척	계	저당	%				

※ 대지, 건물면적은 평을 ()내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 (공공계획)

1. 근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4조 (기금의 설치)

2. 목적

-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 도모
-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근대화 촉진

3. 사업내용

사업별	사업 내용	사업(지원)품목	비 고
<p>< 정부가격 안정사업 ></p> <p>○ 비축사업</p> <p>○ 출하조정 사</p>	<p>정부가 저장성이 있는 농수 산물을 성출하기에 수매하여 비축하거나 수급안정을 위해 수입비축</p> <p>생산자보호를 위해 정부가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을 수매하여 판매·수출·기증 또는 폐기</p>	<p>콩, 팥, 고추, 마늘, 양파, 김, 오징어 등 22개 품목</p> <p>가을무·배추</p>	<p>세부지원 내용은별첨 사내참고</p>
<p>< 민간가격 안정사업 ></p> <p>○ 비축수매 지 원</p> <p>○ 수출수매 지 원</p> <p>○ 생산자(단 체)출하조절</p>	<p>농수산물 성출하기에 저장· 가공시설을 보유한 생산자단 체와 민간업체 등에게 농수 산물수매자금을 융자지원</p> <p>수출업체에게 수출용 농수산 물 수매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수출촉진</p> <p>성출하기에 생산자 또는 생 산자단체에게 출하조절자금 을 융자지원하여 출하시기조 절을 통해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p>	<p>마늘, 양파, 사과, 배 수 산물 등 32개 품목(분야)</p> <p>과실·채소류, 버섯류, 밤, 화훼, 백삼, 수산물 등 15개 품목(분야)</p> <p>밤, 수삼 등 5개 품목</p>	

사업별	사업 내용	사업(지원)품목	비 고
< 유통개선 사업 >			세부 지원 내용은 내사내참고
✓ ○ 농수산물 공영도매시 장건설 지원	공정하고 원활한 농수산물 유통을 위한 공영도매시장 건설 지원		
✓ ○ 과실수출업 체시설자 금 지원	과일수출업체에게 저온저장 시설과 선과시설 설치를 지 원하여 수출확대 도모		
✓ ○ 공동규격 출하 지원	공동규격출하능력의 제고를 위해 품질인증 및 표준규 격품을 출하하는 작목반등에 지원		
✓ ○ 산지가공 산업육성 지원	전통식품 및 산지 농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원료수매자 금 지원		
✓ ○ 매취사업 지원	가공·저장용 농산물을 농가 로부터 직접 수매하는 농협 회원조합 지원		
✓ ○ 품목별 생 산자조육 성 지원	우수 생산자조직의 규모화와 경쟁력을 제고시켜 산지유통 의 핵심조직체로 육성키 위 해 지원		
✓ ○ 출하촉진 자금 지원	농수산물 출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매시장, 공판장 및 위판장에 지원		
✓ ○ 농협 유통 사업 지원	농산물 유통개선에 필요한 시설 건설 등을 위해 농협 회원조합에 지원		

4. 지원절차

가. 담당기관

- 농안사업 지원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가격안정 및 유통 개선사업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및 사업부서의 사업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시기관(농.수.임협 및 유통공사 등)이 용자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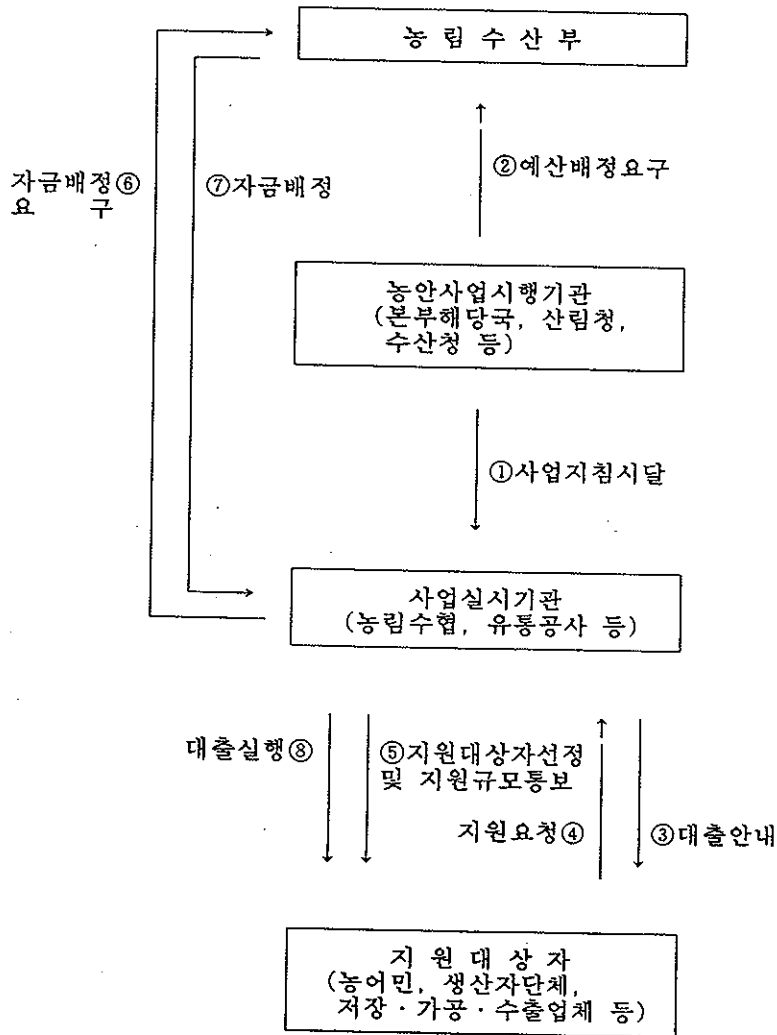
나. 농안기금 사업자 선정

- 농안기금 사업자(대출자)를 선정시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다수인이 참여하도록 하고 농어가의 경우에는 농수협회원조합 등이 영농회장, 작목반장, 어촌계와 홍보팸프렛 등을 통하여 전농어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다.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 사업실시기관이 기금을 대출할 때에는 사업별로 목적에 따라 약정을 하도록 하여 약정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징수하고 일정기간 대출을 정지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

라. 농안기금사업 체계도



공동규격출하촉진사업 (공공계획)

1. 목 적

- 공동규격출하능력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 및 조직 활성화 도모
-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을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간조직으로 육성

2. 추진방향

- 농민 자율의사에 의한 생산 출하조절 및 공동계산제 실천조직으로 육성
- 농산물 규격출하 지도로 상품성 제고 및 신용거래 촉진

3. 사업 신청자격

- 지원일 현재 조합에 등록된 대상품목의 선진작목반(전산입력 기준) 및 대상품목의 우수 영농조합법인
- 품질인증 및 표준규격품을 출하하는 조직에 우선지원
 - 단, 공동선별(과)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동 시설을 이용할 농가나 조직 (이용가능 품목에 한함)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농협중앙회(시군지부)

나. '95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대상품목별 지원

(단 위 : 백 만 원)

구분	대 상 품 목	지원규모	지원시기	용자기간
1 차	마늘, 양파, 고랭지무, 고랭지배추, 양배추, 당근, 오이, 토마토, 수박, 참외, 호박, 상추, 시금치, 양채류 버섯, 복숭아, 포도, 화훼, 고구마 (19품목)		2 월	용자기간은 정부 차입일로 부터 1년 - 농협은 용자 기간중 11개월 간 농민에게 대출
2 차	가을무, 가을배추, 딸기, 파, 단감, 양배추(제주), 당근(제주), 사과, 배, 감귤, 감자, 풋고추, 감 (13품목)		8 월	
계	30개 품목(2개품목 중복)	130,566		

※ 상기품목이외에도 지역실정에 따라 지원규모의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 대상조직별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규모	구성비	조직수	비 고
선진 작목반	117,509	90 %	5,466	'94.11.17현재 선진작목반수입
우수영농조합법인	13,057	10	579	'94.6월말현재 전국 영농조합 법인수입.
계	130,566	100	6,045	

다. 재원 및 지원조건

- 재원 : 농안기금, ○ 지원금리 : 연 5%

5.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가. 사업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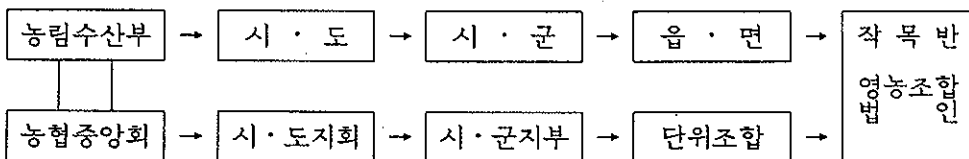
(1) 사업계획 수립 시달

- 농협중앙회장은 시도별.품목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부에 제출
- 농림수산부장관은 시도별.품목별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농협중앙회 및 시도에 통보
- 농협중앙회는 확정된 시도별.품목별 지원계획을 계통사무소에 시달
- 농협 각 계통사무소는 계통 시달된 지원계획을 기준으로 행정기관 및 농검과 협의
관내 지역별.품목별 지원계획 수립 통보
-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별 농검의 포장규격출하 이행실태 평가사항 반영
(평가하고 있는 항목은 '95년도부터 반영)

(2) 사업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농협 시.군지부는 관내 지역실정에 따라 효과적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기관 및 농검과 협의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품목간의 지원금액 조정 (지원대상품목 이외의 특정품목 지원포함)

(3) 사업추진체계도



※ 지원계획 통보시 해당 행정기관 및 농검과 협의 결정

나. 사업신청

- 신청기관 : 단위조합
- 신청방법 : 조합의 지원계획을 기준으로 작목반장 및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일괄 신청
 - 내용 : 생산·출하계획 및 소요자금 등(붙임1 양식 참조)
 - 농가별 신청금액은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 자체협약에 의함.
- 신청시기
 - 상반기 : '95. 2. 10
 - 하반기 : '95. 8. 10

6. 자금지원(출하약정)

가. 자금지원시 고려사항

- 단위조합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가 해당 작목반원 및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임을 반드시 확인
- 자금 지원액의 1.25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및 물량에 대한 공동규격출하 약정 체결
- 대농가 지원기간은 농협중앙회가 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
- 미대출액의 반납은 "7의 다"항(자금상환)에 의함.

나. 자금지원(출하약정)

- 자금지원(출하약정) : 지원 농가별로 실시
- 용자방법 : 회원조합 대출취급요령에 의함.
- 지원한도 : 공동규격출하 판매예상액의 80% 이내

다. 자금의 전·수배

- 농협은 지원기간내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자금은 즉시 타조합 또는 타지역에 전·수배가 될 수 있도록 조치

7. 사후관리

가. 농협의 지도·감독

- 단위농협은 자금운용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함.
- 농협중앙회(시군지부)는 자금운용상황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
- 약정 이행여부 확인
 - 약정물량과 금액중 한가지가 이행될 경우에는 약정이행으로 간주
 - 약정 불이행시 위약금(연리 10%) 징수
 - 공동규격출하실적의 확인은 조합의 판매대금정산서나 작목반장 및 영농조합법인 대표의 공동 규격출하 확인서에 의함
 - 재해발생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약정이행 불가능시에는 농협 시군지부장이 시·군과 협의하여 출하위약금 면제 가능

나. 농검의 지도감독

- 농검은 산지 및 소비지 도매시장등에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공동규격출하실태를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이의 점검결과를 행정기관 및 농협(시·군지부)에 통보
 - 농검은 공동출하와 함께 규격출하 이행실태를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당해조직 및 생산자별로 행정기관 및 농협(시·군지부)에 통보
 - 행정기관 및 농협은 농검의 점검결과를 당해조직에 통보하고 지도감독
 - 규격출하 이행 정도에 따라 다음년도 지원시 증액 또는 감액지원
- ※ 세부점검요령은 추후 농검과 농협이 협의 결정통보 예정

다. 자금상환

- 미대출잔액, 조기상환원금 및 위약금의 상환은 상환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매 10일 및 25일까지 농림수산부에 회수고지 의뢰.
 - 같은 월 1일부터 같은 월 15일까지 발생분 : 같은 월 25일까지
 - 같은 월 16일부터 같은 월 말일까지 발생분 : 다음 월 10일까지

8. 사업효과

- 공동출하능력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 및 조직의 활성화 도모
 - '95 공동출하 약정 예상금액 : 163,250백만원
- 계통출하 지도로 농협 공판장 및 법정도매시장에 공동 출하토록 지도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 확립
 - 산지 수집상 등에 의한 선대자금 살포 방지 효과
- 품목별 규격출하의 병행 지도로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신용거래 촉진
-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을 생산조직화 단계에서 유통조직화 단계로 발전도모

9. 기타 참고사항

가. 사업 안내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유통과, 농협중앙회 원예계획과
- 시.도 : 시.도 유통과, 농협도지회 유통가공과
- 시.군 : 시군산업과 농협군지부 지도경제과
- 읍.면 : 단위농협

나. 보 고

보 고 서 명	보고구분	보고 기한	보고건수	비고
○ 조직현황	분기보	분기익월 20일	취합분 1부	붙임 2
○ 공동규격출하촉진자금 지원 및 약정상황	2회	지원 종료일로 부터 20일이내	"	붙임 3
○ 공동규격출하촉진자금 운용 상황	분기보	분기익월 20일	"	붙임 4

[붙임 1]

공동규격출하 계획 및 소요자금 신청

[조직명: _____]

작목반 전산 코드 : _____
영농조합법인 등록번호 : _____

품 목	농 가	생 산 계 획		판매예상량 (M/T)	공동출하 예상량 (M/T)	자 금 소요액 (백만원)	사 정 요청액 (백만원)
		면적(ha)	물량(M/T)				

1995년 월 일

○ ○ 작목반장 _____ (인)

○ ○ 영농조합법인대표 _____ (인)

[붙임 2]

조 직 현 황

(1995. . . 현재)

품 목	작 목 반		영농조합법인		비 고
	반 수	반원수	조합수	조합원수	

[붙임 3]

공동규격출하 촉진자금 지원 및 약정상황

(1995. 현재)

(단위 : 톤, 천원)

품 목	배정액	지 원 상 황			대능가 지원액	출 하 약 정		생산계획 면적(HA)	생 산 계획량
		조합수	작목반 (영농 조합)	반원수 (농가 수)		물 량	금 액		

※ 영농조합법인은 () 외서 표시

[붙임 4]

공동규격출하 촉진자금 운용상황

(1995. . . 현재)

가. 자금운용상황

(단위 : 천원)

사무소별 (도·군·조합·영농 작목반, 영농 조합법인)	배정액	대 능 가 지원총액	대 능 가 지원잔액	지 원 상 황			
				군 수	조합수	반 수 (영농 조합)	반 원 수 (농가수)

※ 영농조합법인은 () 외서 표시

나. 공동주택축자금지원 품목별 출하계획 대실적

(단위 : 톤, 백만원)

품목	지원 상황			재면(HA)	생계희망(톤)	민원액(천원)	민원액(천원)	출하약정		출하 실적																			
	군수	조합수	반원수 (영농조합)					반원수 (농가수)	물량	금액 (천원)	계	총량	금액	물량	금액	도매시장	직거래	기타											

※ 영농조합법인은 () 외서 표시

매취사업지원 (공공계획)

1. 목 적

- 농산물 성출하기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유통구조개선
- 가공사업 활성화 도모

2.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시행

- 사업시행주체 : 농협중앙회
- 사업대상자 : 농협 회원조합, 영농조합법인

나. 자금지원 (용자)

- 재 원 : 농안기금
- 지원조건
 - 이 자 율 : 년 1%
 - 용자기간 : 11개월이내
- 지원액 : 200억원

다. 사업실시요령

(1) 사업계획 수립

- 농협중앙회장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시·도별, 품목별, 사업형태별,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95. 2. 28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2) 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품목 (곡물류제외)
 - 수급 및 가격안정과 유통구조개선이 필요한 농산물
 - 농협 회원조합 및 영농조합법인에서 직접 가공원료로 구매하는 농산물
- 지원대상조합
 - 대상품목(저장, 판매 또는 가공용)을 농가로부터 직접 구매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농협 회원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 지원액의 20% 이상을 등 사업 자금으로 자체부담이 가능한 조합 및 법인

(3) 자금배정

○ 자금배정 요청

- 농협중앙회장은 "(1)항의 "세부사업 시행계획" 보고와 동시에 소요자금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요청

○ 자금배정

- 농림수산부장관은 농협중앙회장이 보고한 세부사업시행계획서와 자금배정요청 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농협중앙회장에게 일괄 배정

(4) 자금상환

- 상환기일 : 정부가 농협중앙회에 융자한 날로부터 11개월이내

(5) 추진실적 보고

- 농협중앙회장은 시·도별, 품목별, 사업형태별 추진실적을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사업종료시는 최종실적 보고)

농협 유통사업지원 (공공계획)

1. 목 적

- 농산물 유통개선에 필요한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회원조합 유통·가공사업 손실보전자금 조성을 위함

2. 지원대상

- 유통시설 설치에 따른 자체자금 소요대상 농협 회원조합 및 중앙회
 - * 지원 우선순위는 회원조합, 중앙회 순으로 지원

3. 자금용도

- 농협 회원조합 및 중앙회 유통사업 시설자금

4. 지원내용

- 재 원 :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 '95 지원계획 : 5,000 백만원
- 용자조건

용자기간	금 리		비 고
	용 자	대 출	
용자한날로 부터 3년	연1%	연5%	○ 이차적립 : 대출금리와 용자금리차 4%를 손실보전자금으로 출연 ○ 대출기간 : 3년이내(단 회전운용 해당분은 본자금의 정부상환기간 이내)

- 지원대상자 선정
 - 중앙회장은 시도별 유통시설 소요액을 파악하여 시·도지회별로 일괄 배정하고 시·도지회장이 관내 투자우선 순위에 의거 대상자 선정
 - 정부로부터 동종사업에 기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자 우선 선정
 - 지원신청이 없거나 지원 신청대상이 부적격하여 손실보전 재원확보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중앙회장이 임의로 대상자를 선정함
- 다만, 이 경우 중앙회의 신규 및 기존 유통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요령

- 중앙회장은 정부로부터 일괄 차입하여 시도별로 배정하고 시도지회장은 용자 우선순위에 의거 해당부문에 지원
- 기간중 회수분에 대하여는 회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원대상자를 재선정하여 회전운용

5. 기 타

○ 회원조합 유통.가공사업 손실보전 재원적립 및 사용

- 중앙회는 차입일로부터 기산하여 매년 전기 " 4 항"의 운용이차액 (적립기준은 전년 12월 1일부터 해당 11월 30일까지 발생분)과 중앙회가 일정액을 별도부담 (지원농안기금 운용 이차액 이상)하여 손실보전자금으로 출연
- 출연시기는 보전시기와 일치
- 자금사용은 "농산물 유통.가공사업 손실보전 업무취급 요령"에 의함

○ 유통사업지원자금 운영상황 보고

- 중앙회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붙임 보고서식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보고양식 >

시.도별, 시설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시설별 시도별	계		시 설 명							
	지 원 대상수	지원액	지 원 대상수	지원액	지 원 대상수	지원액	지 원 대상수	지원액	지 원 대상수	지원액

○ 농산물 유통가공사업 손실보전자금조성 및 운용실적

구 분		'94 까지	'95	누 계
전 년 이 월 액 (A)				
조 성	유통사업지원자금 이차			
	농 협 출 연 보전자금예치이자			
	계 (B)			
운 용	매취사업손실보전 시설 이차보전			
	기타유통사업보전			
계 (C)				
차년이월액 (A+B-C)				

생산자(단체)출하조절지원 (공공계획)

1. 목 적

- 농수산물의 성출하기에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출하시기를 조절을 통해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도모

2. 지원대상

- 밤, 수삼, 화훼, 버섯류, 톳·천초의 생산농어민 및 생산자단체

3. 지원내용

- 재 원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금리 : 연 5%
- 용자기간 : 1년 이내
- 지원절차 : 사업실시기관에 신청 (연중)

4. 사업실시기관 및 지원계획

품 목	사업실시기관	'95 지원계획
		백만원
밤	임협중앙회	9,828
수삼	인삼협동조합중앙회	8,295
화훼	농수산물유통공사	15,000
버섯류	농협중앙회	4,200
톳·천초	수협중앙회	2,804
계		40,127

5.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부 농산물유통국 시장과
- 농협중앙회 원예특작부
- 수협중앙회 유통계획부
- 임협중앙회 금융부
- 인삼협동조합중앙회 업무부
- 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공판장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지원 (공공계획)

1. 목 적

우수 생산자조직의 규모화와 경쟁력을 제고시켜 지역특성에 알맞는 산지유통의 핵심 조직체로 육성

2.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 대상사업 : 농수산물 수매 및 출하조절, 포장재구입 등 상품성제고, 유통시설 등의 사업을 생산자 조직이 자율적으로 결정
- 지원대상 : 사과, 배, 참다래, 유자, 파, 생강, 화훼, 밤, 대추, 표고 등 10개 품목의 생산자조직중 체제나 시설 등의 기반이 확보되어 있는 생산자조직

3. 지원내용 및 절차

- 재 원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금리 : 연 5%
- 융자기간 : 1년 이내 (시설자금은 10년 이내)
- 지원기준 : 소요액의 80% 이내
- 지원절차 : 사업실시기관에 신청 (연중)

4. 사업실시기관 및 지원계획

품 목	사업실시기관	'95 지원계획
사 과	농협중앙회	백만원 4,284
배	농협중앙회	1,610
참 다 래	농수산물유통공사	1,300
유 자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1,352
과	농협중앙회	1,750
생 강	농협중앙회	1,932
화 궈	농수산물유통공사	13,000
밤	임협중앙회	1,092
대 추	임협중앙회	210
표고버섯	임협중앙회	1,470
계		28,000

5.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부 농산물유통국 시장과
- 농협중앙회 원예특작부
- 임협중앙회 금융부
-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금융부

출하촉진자금지원 (공공계획)

1. 목 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 및 위판장에의 농수산물 출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생산농어민과 소비자 보호

2. 지원대상

- 농수산물도매시장(축산물 제외)의 도매시장법인
- 농협중앙회 공판장 및 회원조합 공판장
- 수협공판장 및 위판장
- 화훼공판장

3. 자금용도

- 출하선도금 : 생산농어민 및 단체와의 출하약정을 위한 선도금
- 대금결제자금 :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 출하되어 상장된 농수산물의 대금결제자금

4. 지원내용

- 재 원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 용자조건

구 분	용자기간	지원금리	비 고
출하선도금	1년이내	연 5%	농어민에게 무이자 지원
대금결제자금	"	연 8%	

- 지원절차 : 사업실시기관에 신청 (연중)
 - 출하선도금 : 농어민이 지원대상기관인 출하처(도매시장법인, 공판장 등)에 신청 (년중)
 - 대금결제자금 : 지원대상자가 사업실시기관에 신청

5. 사업실시기관 및 지원계획

품 목	사업실시기관	'95 지원계획
		백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공사	43,200
농협중앙회 공판장	농협중앙회	13,475
농협회원조합 공판장	"	15,400
수협공판장	수협중앙회	4,769
수협위판장	"	60,515
화훼공판장	농수산물유통공사	1,509
계		138,868

6.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부 농산물유통국 시장과
- 농협중앙회 유통계획부
- 수협중앙회 유통계획부
- 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공판장

축산관측사업(공공계획)

1. 목 적

- 축산물 생산의 사전조절과 가격안정 유도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
- 양축농가에 대하여 장·단기 경영지표 제공

2. 사업내용 및 지원내역

가. 사업주체 : 축협중앙회

나. 관측대상 : 한육우, 젖소, 돼지, 닭(산란계, 육계)

다. 사업기간 : 계속사업

라. 사업비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 축산관측사업	1개소	393	○ 축산발전기금사업
계		393	

3. 세부실시요령

가. 관측방법

- 각종 통계자료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예측자료를 도출

- 개별모니터(5개축종, 양축농가 5,688명)에게 사육동향에 대한 우편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품목별 관측(안) 작성
 - 양축농가의 비계량적 요인 반영
- 축종별 관측협의회에서 심의·확정하여 홍보
 - 관측협의회 위원 5개분과 30명

나. 관측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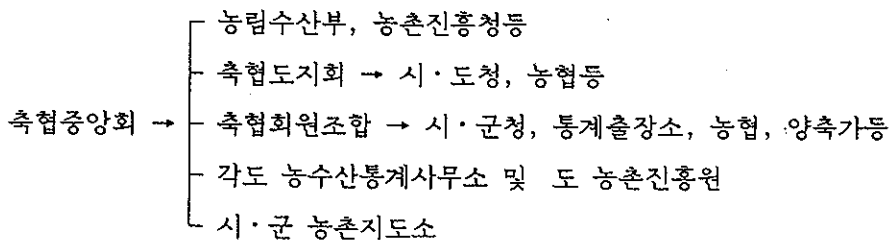
- 가격, 유통량 및 사육두수 전망 분석
- 단기관측(향후 9개월 전망) 및 장기관측(향후 1~2년 전망) 병행 실시

다. 축종별 관측 및 홍보계획

축종별	관측협의회개최	관측보 발간	1회 발행부수	비 고
한우	4 회	4 회	70 천부	
젖 소	4	4	25	
돼 지	4	4	30	
산란계	4	4	7	
육 계	4	4	7	

- 관측협의회 개최시기 : 1, 4, 7, 10월
- 관측보 발간시기 : 2, 5, 8, 11월

라. 축산관측보 배부체계



마. 축산관측사업 내실화를 위한 사업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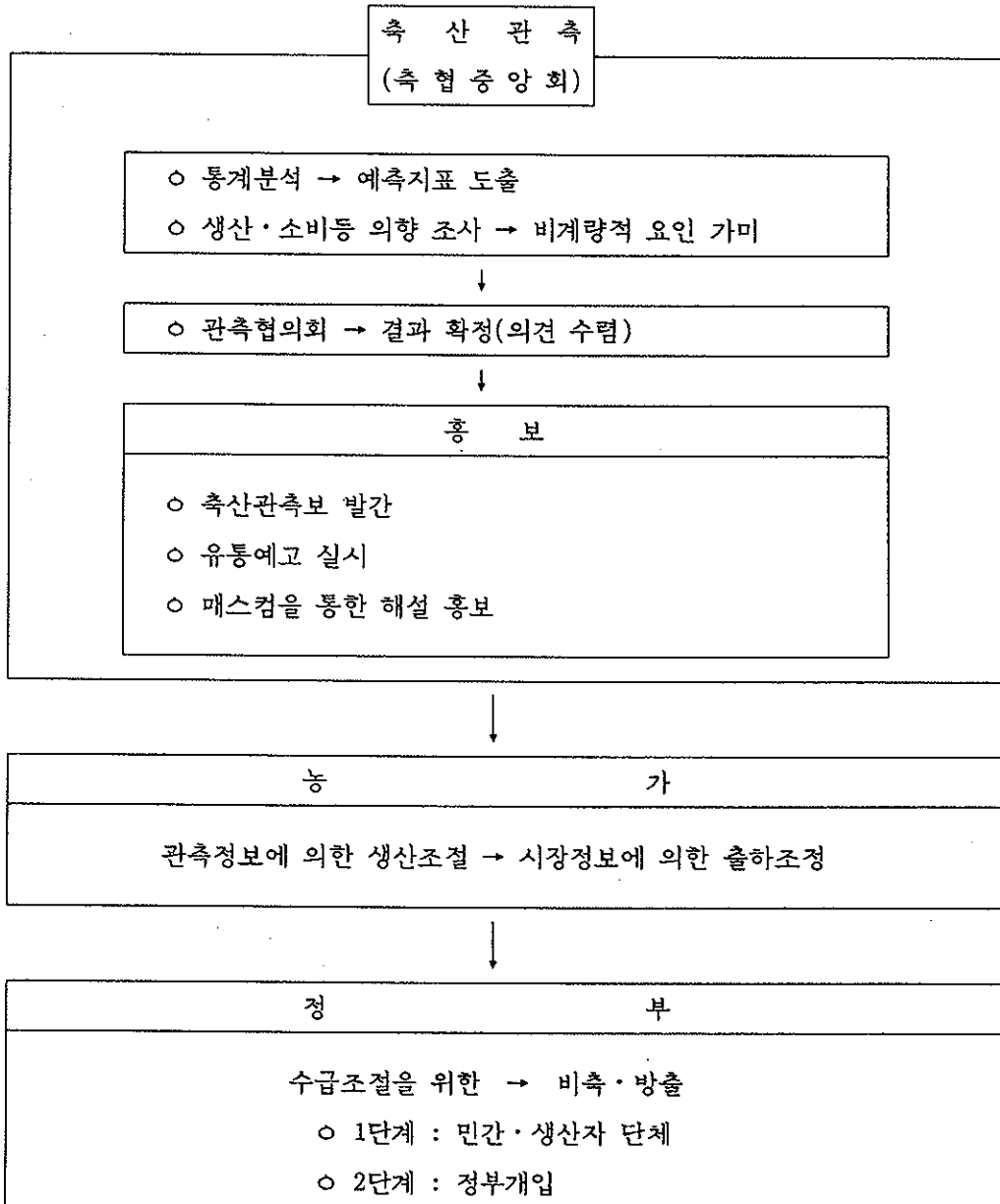
- 축종별 예측모델을 재점검하여 새로운 관측기법 모색
- 축산관측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추진
- 홍보강화
 - 개별농가 우편발송 확대
 - 공중 통신망(천리안, HITEL)을 이용한 홍보
- 축산관측 자료수집 강화

4. 기타참고사항

- 사업안내 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정과(전화 02-500-2672-3, 503-7281)
 - 도 : 농정국 축산과, 축협중앙회 도지회
 - 시·군 : 축산(산업)과, 농촌지도소 축산계, 축협조합

< 참 고 >

축산관측사업에 의한 축산물수급 및 가격안정의 기본구상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공공계획)

1. 목 적

-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가격을 유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
- 공영도매시장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유통개선을 추진하여 국민생활의 안정도모

2. 추진방향

- 전액 공공투자로 건설하여 운영의 공익성 제고
- 전국 주요 대도시 및 중요 중소도시에 '98년까지 34개소 건설
 - 12개 도시에 19개 거점도매시장 건설
 - 서울(3), 5개 직할시(각 2개소), 수원,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울산
 - 중소도시에 15개 보완도매시장 건설
 - 천안, 안산, 충주, 안양, 이리 등 수용태세를 갖춘 지역부터 우선 건설

< 연도별 추진계획 >

(단위 : 백만원)

	'93까지	'94	'95	'96	'97	'98	계
사업량(개소)	18	3	6	7	-	-	34
국고지원액	139,594	48,200	63,008	62,936	61,796	44,850	420,384

※ 사업량은 착수기준임

3.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가. 사업시행주체 : 시

나.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비		'95 예산	
	부지	건물	총사업비	국고보조	사업비	국고보조
구 리	천평 56.5	32.7	백만원 109,400	54,700	15,000	7,500
안 양	25.2	19.2	60,808	30,404	11,858	5,929
이 리	14.6	7.0	8,500	4,250	3,200	1,600
서울서남	57.0	20.0	150,000	45,000	59,870	17,961
부산 제2	40.0	21.7	86,092	25,827	24,500	7,350
광주 제2	30.0	10.0	30,000	9,000	8,643	2,593
인천 제2	25.0	10.0	52,600	15,780	15,000	4,500
포 향	20.0	8.0	20,000	10,000	1,400	700
진 주	20.0	8.0	28,000	14,000	9,600	4,800
원 주	16.0	6.0	24,000	12,000	9,600	4,800
강릉	16.0	4.0	18,400	9,200	7,400	3,700
정 주	10.0	4.0	11,150	5,575	3,150	1,575
계			598,950	235,736	169,221	63,008

- '95 건설지원지역 선정완료

다. 지원조건

- 특별시 및 직할시 : 국고 30%, 지방비 70%
- 일반시 : 국고 50%, 지방비 50%

4. 사후관리

- 공영도매시장 시설물은 도매시장이외의 목적에 사용금지
- 사업시행자(시)는 사업진행상황을 분기별로 보고

5. 사업효과

- 넓은 장소에서 신속한 거래방식으로 대량의 농수산물을 신선한 상태로 유통
- 공개경쟁적인 상장·경매제를 통하여 공정가격 형성
- 수급을 반영하는 대표가격의 형성으로 생산 및 소비조절에 기여
- 중산상인, 유사상인의 횡포 견제로 생산자보호

6. 시장건설 내실화방안

- 시장건설추진협의회 운영활성화
 - 상인이전, 시설배치 등 주요사항은 추진협의회에서 충분한 협의
 - 기본계획 확정 또는 기본설계 확정전에 상인, 학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수렴
- 합리적인 시설배치
 - 경매장, 주차장, 출하주 편의시설 등 필수시설 중심으로 건설
- 합리적인 상인 선정기준 결정
 - 시설규모에 맞는 적정수의 상인 입주
 - 기존 시장문제 해결차원보다 새 도매시장의 공정거래가 정착되도록 상인성정
 - 노점상, 소매상 등 도매기능과 직접 관련없는 상인은 이전을 억제
 - 경매참여 상인위주로 입주
 - 도매시장법인은 산지집하능력 유무를 사전에 정확히 조사 선정
 - 개인위탁 고수 상인은 중매인 입주대상에서 제외

- 신설시장의 상장.경매 추진
 - 개장시부터 전품목 상장.경매 추진
 - 상장.경매의 철저한 계획수립후 개장
 - 경매불응, 개인위탁중도매인은 즉시 허가취소
 - 물량확대보다 상장.경매중심으로 시장 운영
 - 신설시장의 공정거래 정착으로 타시장 불공정거래 방지

< 신설시장 개장 및 이전계획 수립 제출 >

- 사업시행자는 도매시장개장 6개월전까지 시장개장 및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부에 제출하고 사전협의

7. 기타 참고사항

가. 사업담당기관

- 중 양 : 농림수산부 농산물유통국 시장과
- 서울특별시 : 산업경제국 농수산유통과
- 직 할 시 : 지역경제국 농정과
- 도 :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 시 : 산업과

기타가축 생산물 구매사업(공공계획)

1. 목적

벌꿀, 토끼고기의 구매, 비축을 통한 가격안정과 생산농가 소득증대

2. 사업신청 자격

- 사업대상자 : 양봉조합 및 양토조합
- 구매대상 : 양봉농가 및 양토농가 생산한 벌꿀, 토끼고기

3.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주관 : 축협중앙회

- 실수요자 : 양봉조합(한국, 강원, 전북, 경남, 제주), 경북영양축협, 한국양토조합

나. 사업내용

- 사업시기(구매)
 - 벌꿀 : '95.5-10
 - 토끼고기 : '95.10-'96.2

다. 지원조건

- 재 원 : 축산발전기금(축산물수급조절자금)
- 지원조건 : 년리 3%, 용자일로부터 1년 이내

라. 지원계획

	사업량	단가	금액
벌꿀	400 톤	3,500 원/kg	1,400 백만원
토끼고기	20 톤	3,000 원/kg	60
계			1,460

4. 사업계획수립 및 신청절차

- 당해 축종의 업종조합장은 수매계획서를 작성하여 축협중앙회장에게 제출
- 축협중앙회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농림수산부에 신청
- 농림수산부는 수매조합별 사업비 확정

5. 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조합별 '95수매사업 계획서에 의한 수매사업 지도
- 보고
 - 수매사업조합은 수매완료후 정산결과를 시·도지사 경유 농림수산부에 보고
 - 벌꿀수매사업 : '95.12.20까지
 - 토끼고기수매 : '96.4.10까지

6. 기타 참고 사항

- 사업안내 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전화 02-500-2674, 503-7282)
 - : 축협중앙회 중소가축부(전화 02-485-3141)

축산업 자조금 지원 (공공계획)

1. 목 적

-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사육조절 및 소비촉진홍보, 조사연구, 소비자 및 생산자교육등을 통한 축산물 수급안정 도모

2. 추진방향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원

3.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농림수산부

나. 사업내용

- 사업대상자 : 축산업 생산자단체(전국 관할단체)로서 축산업자조금의 조성방법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생산자 단체
- 사업비 지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기금보조	지방비보조	용자	자담
○ 자조금 지원사업		백만원 600	200			400
- 돼지		300	100			200
- 닭		300	100			200

○ 지원조건 및 방법

- 농발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승인받은 자조금 사업규정에 의한 사업추진방법에 따라 '95자조금사업운영계획(안)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승인신청
- '95자조금사업운영계획을 승인받은 후 자조금사업추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성한 자조금조성액의 100분지 50범위내에서 보조금지급
- 축협중앙회는 생산자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조성액을 확인후 보조금교부 및 지급

4.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 기관 : 농림수산부 축산물유통과(503-7283)

식육처리 전문인력 양성(공공계획)

1. 목적

- 식육의 위생처리, 가공·유통에 관한 전문기능인력 양성으로 식육처리 기술의 표준화 및 규격화 선도
- 식육처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실습과 실기에 의한 기술교육실시로 핵심인력으로 활용

2.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 주체 : 축협중앙회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1) 사업내용

- 교육기간 : 1개월
- 교육장소 : 축협서울공판장(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 교육인원 : 연간 180명(기당 30명씩 6회 실시)

(2) 지원조건

- 교육비는 무료 : 강의료, 책자, 원료육대금 등
 - 코스카 회원사는 별도 집합 교육(교육비 : 1인당 125만원 부담)
- 실습도구 및 피복비는 자부담(1인당 12만원 정도)
- 숙식 : 교육기간중 개별 통학(숙식 자체 해결)

(3) '95 사업비 : 480백만원

3. 교육대상자 선정 절차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 접수처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1. 축협중앙회 유통부 식육기술교육팀

○ 대상자별 신청방법

- 추천업체(육가공협회, 백화점협회, 한국슈퍼체인협회 회원사) :
추천업체장이 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
- 개인신청자(농가, 식육판매업소, 유통업체, 도매시장, 도축장 및 기타식육관련업
종사자) : 개인이 축협중앙회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
- 축협직원 : 소관부서장, 지사무소장 및 조합장이 대상자 파악신청
- (사)한국슈퍼체인 회원사는 코스카상역을 통하여 일괄 신청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축협중앙회장이 추천의뢰자, 개인신청자, 축협대상자, 시·군·구청통보자를 교육일정
별로 선발하여 신청기관 및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함
- 선발 통보받은 교육대상자는 피복, 실습도구비 납부 및 교육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교육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상자 통보시 안내함
- 식품위생법에 의거 건강진단상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선정취소됨

5. 사후관리

- 식육처리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교육수료생은 자격시험에 참여토록 유도
(노동부와 협의하여 관계법령 개정 추진중)
- 교육수료생이 희망시에는 식육유통관련 사업분야에 우선 지원

6. 사업안내 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산국 축산물유통과(02-503-7283),
축협중앙회 유통부 식육기술교육팀☎(02)485-3141~2(교환 2851~2)
- 시·도 : 농정국(산업경제국) 축산과(서울특별시는 농수산유통과, 직할시는 농정과)
- 시·군 : 산업과(축산과)

축산물공판장 건설(공공계획)

1. 목적

- 축산물공판장 시설확충으로 소비자의 육류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편익 증대

2. 추진방향

- 축산물공판장 건설 목표 : 6개소(기존 : 4개소, 추진중 : 2개소)

3. 사업신청자격 : 축협중앙회, 부산·경남양돈조합, 제주축협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주관 : 축협중앙회

나. 자금수요자 : 축협중앙회, 부산·경남양돈조합, 제주축협

다. 사업내용

- 사업량 : 3개소
- 사업비 : 부산·경남양돈조합 '95 지원 : 5,745백만원(보조 : 4,200, 용자 : 1,545)
축협 부천공판장 '95 지원 : 7,000 " (보조 7,000)
제주축협공판장 '95 지원 : 700 " (용자 700)
- 사업규모 : 대지 8,000평, 건평 2000내외
- 단, 제주축협은 시설개선 사업임
- 사업시행기간 : 3개년(제주축협은 1년)

5. 사후관리 : 축협중앙회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농림수산부 축산국 축산물유통과(02-503-7283)
축협중앙회 유통부(02-485-3141)

위생도축시설 확충 (공공계획)

〈도축장시설근대화및식육유통센터〉

1. 목 적

- 도축장시설근대화 및 식육유통센터 설치로 육류유통구조 개선
- 위생적으로 처리된 육류를 공급하여 국민보건향상 기여
- 도축장에 부분육가공공장 설치로 육류를 가공 및 비축·판매할 수 있도록 경영합리화 도모

2. 추진방향

-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1~'93	'94	'95~'98			계
			'95	'96~'98	소 계	
○ 사 업 량	33개소	20	10	21	31	84
○ 사 업 비	33,000	20,000	13,973	21,000	34,973	87,973
- 융 자 (축발기금)	20,100	14,000	6,788	14,700	21,488	55,588
- 자 담	12,900	6,000	7,185	6,300	13,485	32,385

3.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 사업주체 : 시·도
- 대 상 : 기존도축장 운영자, 수출도축장
- 내 용 : 소 및 돼지 도축기계자동화 설비, 부분육 가공기계 시설설비

- 사업비 지원
- 기존 도축장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기금보조	지방보조	용자	자담
	개소	백만원				
도축장시설근대화	7	10,478	-	-	4,688	5,790
식육유통센터	3	3,495	-	-	2,100	1,395
계	10	13,973			6,788	7,185

- 용자조건 [금리 : 도축장 3%, 식육유통센터 8%
- [대출기간 :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4.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 기관
- 중 양 : 농림수산부 축산국 축산물유통과(02-503-7283),
- 시·도 : 농정국(산업경제국) 축산과(서울특별시는 농수산유통과, 직할시는 농정과)
- 시·군 : 산업과(축산과)

위생도축시설 확충 (공공계획)

<식육운반차량 지원>

1. 목 적

- 도축장 폐쇄지역을 중심으로 냉장차량을 지원하여 원거리 도축장으로 부터 위생적인 육류수송으로 식육의 신선도 유지

2. 추진방향

-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 개정('92.10)으로 도축장시설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94년말 폐쇄되는 간이도축장을 이용하던 지역기업조합을 중심으로 냉동탑차(2.5톤) 지원
- 지원목표
 - 총 80대 : ('95) → 40대, ('96) → 40대

3. 사업신청자격

- 신청자격 : 축산기업조합 시·군지부(도축업체 포함)
- 우선순위 : 도축장 폐쇄지역에 소재한 기업조합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자금 수요자 : 축산기업조합 시·군지부(도축업체 포함)
- 사업시행기간 : '95(1년)
- 사 업 비 : 25백만원
- 지원 조건 : 용자 70%, 자담 30%, 연 5%, 2년거치 3년상환
- 사업내용
 - 폐쇄도축장 소재 축산기업조합 및 이용하는 도축장에 냉동탑차 지원

○ 사업비 지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기금보조	지방보조	용자	자담
식육운반차량지원	대 40	백만원 1,000	-	-	700	300

5. 사업계획수립 및 신청

- 사업계획서에 냉동탑차 운영계획 수립
 - 이용도측장, 사업대상 정육점등에 따른 소요대수, 운영방법등
-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조합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시·군을 경유하여 시·도에 신청하고, 시·도는 농림수산부에 물량 배정요청
- 시·도별 지원계획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냉동탑차 (2.5톤) 대									40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 기관
 - 중 양 : 농림수산부 축산국 축산물유통과(02-503-7283),
 - 시·도 : 농정국(산업경제국) 축산과(서울특별시는 농수산유통과, 직할시는 농정과)
 - 시·군 : 산업과(축산과)

한우전문판매점 설치(공공계획)

1. 목 적

- 한우고기와 젓소고기등 기타쇠고기와 시장차별화로 한우의 경쟁력 제고
- 한우전문판매점에서 냉장육을 판매토록 하여 국내 육류유통을 냉장육으로 전환

2. 추진방향

- 대도시등 대량 소비지역에 한우전문판매점 지정운영
- '97까지 한우고기 소비량의 30-40% 수준을 동판매점을 통해서 유통되도록 유도
 - '97년까지 700여개소 지정 계획

3. 사업신청자격

- 사업신청자격 : 한우고기 시장차별화에 의지를 가지고 식육판매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을 원하는 개인·단체·법인등
 - 축협중앙회, 축협조합, 농협중앙회, 한우생산협업체 및 영농조합법인, 한국냉장(주), (주)축산유통, 축산관련협회, 백화점협회 및 (주)코스카상역회원사, 일반식육판매업소
-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1. 자기가 생산한 한우를 브랜드화(상표등록)하여 판매하는 축협, 농가협업체 및 영농조합법인
 2. 자기가 생산한 한우를 브랜드화(상표등록)한 개인 및 단체
 3. 축협조합, 한우농가 협업체 및 영농조합 법인
 4. 자기가 생산한 한우를 판매할 수 있는 자
 5. 한우고기 시장차별화에 공헌한 자 및 공헌할 수 있는 자
- ※ 동일한 순위일때는 판매장을 확보한 자를 우선선정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

나. 사업비지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보조	용 자	자 담
한우전문판매점 설치사업	78 개소	240억원	-	-	240	-

○ '95년 시도별 배정사업량 및 사업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사업비	30억원	19	11	12	8	8	36	13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사업비	10	11	13	15	26	22	6	240

다.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사업대상자별 지원한도 : 축협중앙회 600백만원, 한냉(주)·(주)축산유통 450,
(직할시급이상)
축협회원조합 300, 농협중앙회·축산관련협회, 한우농가
협업체 및 영농조합법인 250, 일반식육판매업소등 기타 200

※ 직할시급 미만지역은 직할시급이상의 사업비에서 50백만원 차감

- 시설기준(사업대상자는 다음 시설 및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함)

- 판매장면적 : 20평이상(판매장이 매장형태일 경우 15평이상) 단, 읍(면)지역 개설시
는 15평이상
- 쇼케이스 4m이상, 숙성실 3평이상, 냉동실 1.5평이상
- 육장육절기

※ 축산물(가공품 포함)판매면적이 총판매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함

- 소비자 휴식공간은 축산물판매 면적에 포함

※ 육류(제2차 축산물가공품제외)판매 및 관련시설의 면적이 최소한 15평이상 이어야
하고, 40평이상일 경우 축산물 판매면적 비율에 제한이 없음

- 취급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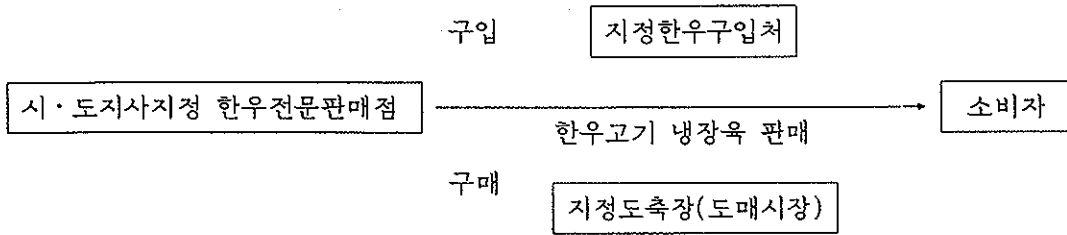
- 육류(쇠고기는 한우육만), 기타 축산물 및 가공품, 농수산물과 식료품(국내산에 한함)
·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등은 가급적 브랜드화 된 국내산을 판매

- 사업실시기간 : '95년 1년간

라. 지원조건

- 지원재원 : 축산발전기금
- 융자조건 : 3년거치 5년균분상환, 연리 8%

마. 사업추진 체계도



○ 설치대상지역

- 시이상지역<한우가 브랜드화된 지역, 시인근지역등 시·도지사의 판단에 의하여 사업량 3개소 범위내에서 한우농가협업체(영농조합법인 포함) 및 축협조합은 읍(면)지역에 설치가능>

○ 지정절차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완료후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한우전문판매점 지정신청서 제출(서식 : 따로붙임)
- 시·도지사는 사업완료자에 대하여 현지확인 점검후 시·도지사의 지정서 발급 (지정서발급요령 : 따로붙임)
- 한우전문판매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서를 소비자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

○ 한우전문판매점 내부 기본규격간판 부착

- 시·도지사는 한우전문판매점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간판부착지시
- 간판의 내용 및 규격
 - 내용 : 서울시 지정 한우전문판매점 (예 : 서울시)
 - 규격 : 30cm × 70cm(가로 또는 세로)

○ ○ ○ ○ 지 정
한 우 전 문 판 매 점

- ○○○○는 광역행정기관명 (예: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등)

※ 상단글씨는 하단글씨의 1/2크기로 하여 중앙에 위치토록 할 것

- 색상 : 흰색바탕에 녹색글씨(고딕체). 단, 한우는 적색

○ 시·도지사 지정 한우전문판매점 외부간판 모델

- 일반식육점의 유사전문판매점과 구별하고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외부간판 통일
- 외부간판 기본규격

상단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시(도) 지정 한우전문판매점</p> <p style="margin: 5px 0 0 0;">한우심벌마크</p>
하단	<p style="margin: 0;">(지정 제 호) (전화번호) (상호명 및 브랜드명)</p>

※ 간판을 세워서 설치할 경우도 마찬가지임

- 외부간판 크기
 - 간판크기는 판매점의 건물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홍보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정함
- 색 깔
 - 전체바탕색은 주위환경을 어울리는 색깔활용
 - 상단글씨는 청색(단, 한우는 적색)
 - 하단글씨 자율적으로 선택
- 상·하단 면적비율
 - 상단의 면적은 4/6이상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 한우심벌마크
 - 한우심벌마크는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고 브랜드화된 한우고기 판매시 브랜드 한우마크 사용

※ 기본규격 외부간판은 반드시 주간판으로 하고 판매점당 의무적으로 1개이상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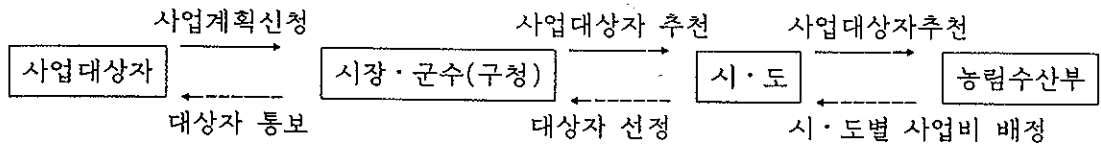
5. 사업계획수립 및 신청

- 사업계획서 수립 주체 : 사업대상자
- 사업계획서 수립시 고려사항
 - 지원기준
 - 시설자금 : 지원액 한도범위내에서 전액지원
 - ※ 시설자금 : 판매장의 신축·증설 및 개축비, 냉장육절기 및 유통정보기기등 기계장치 구입비, 숙성실등 설비비, 판매시설비, 인테이어비등
 - 임차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액지원
 - 임차보증금은 신규로 한우전문판매점을 개설할 경우에만 지원
 - 운전자금 : 쇠고기 구입자금, 노무비, 일반관리비, 판매비용
 - 운전자금은 지원한도액의 30%를 넘지 못함
 - ※ 사업계획서 작성시 용자금 투자계획은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운전자금순으로 투자
 - 한우고기 구입처 및 구입방법기재
 - 년차별 판매계획서와 수지예산서(용자금 상환시까지)
- 사업신청
 - 한우전문판매점 설치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추진 전년도 8월31일까지 시·군(구청)에 제출

6.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 시·도지사는 신청조합(업체)등의 사업성과 원료육 구입계획등을 면밀히 검토후 대상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한우고기시장차별화에 공헌할 수 있는 대상자부터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대상자 추천
- 농림수산부에서 예산확정후 행정기관수, 인구수, 한우지분포·한우전문판매점의 분포수를 고려하여 시·도별로 사업비 배정

○ 사업추진체계도



7. 사후관리

○ 사후관리책임자 : 제1차 → 시장·군수·구청장, 제2차 → 시·도지사

○ 한우고기 구입처 및 구입방법

<구입처>

- 한우전문판매점 경영자는 한우 원료육 구입방법과 구입처, 지정도축장등 구입계획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시·도지사는 승인후 승인사항을 농림수산부에 보고하고, 동판매점 관할구역 이외에서 한우를 구입 및 도축할 경우 판매장 관할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

- 동판매점 경영자는 도매시장, 임의로 정한 구매예정 지역축협(2개시·군이내), 지정된 한우고기 집배센터등 구입처를 정하여 구매해야 함(구입처는 2개소내에서 선정)

※ 동집배센터는 도매시장, 지역축협에서 한우를 구입하여 자기책임하에 부분육으로 가공하여 동판매점과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

※ 농가협업체 및 지역축협은 자기회원 및 조합원의 한우판매가능

※ 자기가 사육한 한우는 직접 판매가능(년간 자기가 사육한 한우만을 판매 할 사육 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함)

<구입방법>

- 도매시장에서 원료육을 구매할 경우 중매인 또는 매참인을 통하여 구매

→ 도매시장에서 발부한 축산물 공급명세서에는 중매인(매참인) 약호, 구입처의 상호, 소의 품종(한우)등이 명기되어야 하며 전문판매점은 동 명세서를 1년간 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이 제시를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해야 한다.

※ 도매시장은 지육출고전에 전문판매점이 한우를 구입하는지를 점검하는등 점포별 관리를 해야 함

- 신고한 시·군의 지역축협과의 계약에 의하여 구매하거나 당해 지역축협의 가축시장에서 구매하는 경우

→ 지역축협은 계약물량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회원농가와 계약등으로 한우전문 판매점에 한우육의 원활한 공급(한우유통활성화자금 활용)에 책임

→ 당해 지역축협 가축시장에서 한우를 구입할 경우 해당 축협조합장은 가축매매 수수료 영수증상의 축종(한우)과 매수인과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시·도지사가 도축장에서 도축후 지육으로 반입

※ 시·도지사는 도축장을 지정할 경우 가능한한 도축장 권역화 사업에 지정된 도축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도축장 검사원)는 도축검사 증명서의 [종류]란에 도축우의 품종(한우)를 명시하여야 함

○ 전문판매점은 가축매매수수료 영수증과 도축검사증명서를 1년간 보관하고 지도감독 공무원이 제출요구시는 언제든지 제시해야 한다.

- 판매장 관할 행정기관과 한우구입 및 도축장 관할 행정기관이 다른 경우 서로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 제 32조등 고려)

○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서약서대로(덧붙임) 판매이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축협중앙회장은 월별·업체별 자금지원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통보

- 한우전문판매점 경영자 판매시설을 완료하였을 경우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한우전문판매점의 시설 및 간판등이 규정대로 설치되었을 경우 축협중앙회장에게 동사업자금 지출토록 통보

- 시·도지사는 위반업체 적발시 위반조치기준(따로붙임)에 의거 조치하고, 축협중앙회장에게 통보하여 지원자금을 회수토록 함과 아울러 지정서 회수 및 지정간판 철거

· 미회수액에 대하여는 회수시까지 축협일반대출 연체금리 적용

○ 보고

- 시·도지사는 대상자 선정결과, 사업추진상황과 전문판매점 지도·점검실적, 판매점별 판매실적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판매실적보고 : 전문판매점 경영자 → 판매장 관할시장·군수 → 시·도지사 → 농림수산부장관

보 고 내 용	보 고 기 간	
사업대상자선정 결과보고	1월 31일까지	
사업추진실적		
월별 지도·점검실적		상·하반기 익월 10일까지
업소별·월별 육류 판매실적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완료후 20일 이내

<보고서식>

한우전문판매점 설치사업 추진 및 지도실적 보고

○ 한우전문판매점 설치사업 추진실적 보고

사업자	판매점주소	한우구입처	구입방법	지 정 도축장	자금집행액
					백만원

※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추진상황을 자금집행액란에 간략히 기재
(계약상황, 사업추진공정 비율등)

※ 한우구입처 : 도매시장명, 지정한우고기집배센터명, 지역축협명

※ 구입방법: 가축시장, 지역축협 및 한우고기집배센터와 구매계약, 도매시장

○ 판매실적 보고

사업자	품목	월		연간(누계)		비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한우고기(kg) ○ 돼지고기(kg) ○ 닭고기 ○ 기타축산물 ○ 농산물 ○ 식료품					
계	○ 한우고기(kg) ○ 돼지고기(kg) ○ 닭고기 ○ 기타축산물 ○ 농산물 ○ 식료품					

※ 월별 판매실적을 구분 상·하반기 보고

※ 비고란에는 원료육 구입처 기재

○ 한우전문판매점 지도·점검실적

업소명	점검내용	조치사항	비고

※ 비고란에는 점검 및 조치일자 기재

8.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명시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산국 축산물유통과(02-500-2675, 503-7283)
- 도 : 축산과(시는 농정과, 서울시 농수산유통과)
- 군 : 축산과, 산업과

한우전문판매점 지정서 발급 지침서

- ① 시·도지사는 대상자가 한우전문판매점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에 의하여 지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일자, 지정번호, 인적사항, 주소등을 기록한 관리대장에 간인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지정서 용지와 함께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한다.
- ③ '95년도 사업물량에 대하여 지정서를 발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지정번호는 공문서수신처기호표 상의 각 시·도의 고유번호를 먼저쓰고 발급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한다.
예) 서울시 : 지정번호 서울시 제 01 - 1호
- ⑤ 한우전문판매점이 영업을 포기하거나 기타 장기적으로 전문판매점을 영위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 또는 지정서가 훼손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정서를 회수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축산물유통과)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한 지정서는 보관하여야 한다.
- ⑥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한우단지 대상자중 한우전문판매장 개설비를 지원받은 사업 대상자가 설치한 판매점을 지정할 경우 판매장 관할 시·도지사는 사전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기관과 판매장 관할 기관이 다른 경우 대상자선정기관이 판매장 관할기관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서 약 서

본인은 금번 한우전문판매점을 지정받아 영위함에 있어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성실히 운영함으로써 소 및 쇠고기 가격안정과 축산물유통체계 확립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만일 아래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한우전문판매점 간판을 부착하겠습니다.
2. 지정된 판매점에서는 한우고기를 제외한 어떤 쇠고기도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3. 부위별 차등가격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부위별로 구분하여 항상 진열하겠습니다.
4. 한우고기는 지정된 구입처에서 성실히 구매하여 판매하겠습니다.
5. 양질의 한우고기를 취급하여 한우의 우수성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국내산 축산물 및 가공품, 식료품과 농산물만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7. 기타 행정기관의 요청사항을 적극 따르겠습니다.

19 . . .

상호명 :

주 소 :

성 명 :

○ ○ ○ ○ 장(사) 귀 하

한우전문판매점 지정 신청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상기 본인은 제반규정 및 서약서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만약 이행치 못하였을시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한우전문판매점을 운영코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서명)

○ ○ ○ ○ 장(사) 귀 하

<구비서류>

1. 식육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한우전문판매점 점검사항 및 조치기준

점 검 사 항	조 치 기 준		
	제 1 차	제 2 차	제 3 차
○ 판매점에서 젓소(교잡우포함), 수입쇠고기 판매행위	지정취소 (지정간판철거 및 지정서회수) 용자금 회수 세무조사 의뢰		
○ 판매점내에서 젓소(교잡우포함), 수입쇠고기 보관행위	경 고	지정취소 용자금 회수	
○ 승인된 공급처이외에서 한우육을 구 입할 경우	경 고	경 고	지정 취소 용자금 회수
○ 판매점 개설후 용자금 및 지정서 교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경 고	사업대상자 선정취소	
○ 판매실적 미보고	경 고	경 고	지정취소 용자금 회수
○ 육질등급판매 행위	"		"
○ 기타 행정기관의 요청사항은 이행하 지 않을 경우	"	"	"

※ 조치기준에서 위반횟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계횟수임

냉장육 판매업소 시설지원 (공공계획)

1. 목적

- 냉장육(등급별, 부위별차등가격 실시) 시범판매업소를 체계적으로 육성
- 영세난립된 식육판매업소의 위생시설을 개선하여 소매단계에서 냉장육 유통확대

2. 추진방향

- 기존 식육판매업소(전체의 98% 정도)의 냉장육 판매 적극 참여 유도
 - 추진방법 : '96년부터 500개소 계획으로 3년간 추진
- 등급별, 부위별, 용도별로 차등가격제를 실시하여 소비자에 대한 신뢰성 제고

3. 사업신청 자격

- 신청대상자 : 식품위생법에 의거 설치된 식육판매업소
- 신청자격 : 식육판매업소의 면적이 10평이상이고, 냉장육으로 등급별, 부위별로 판매할 수 있는 식육업소
- 식육처리 전문교육 수료자를 우선 선정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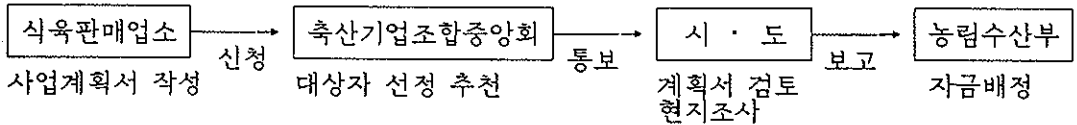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95 사업량 : 200개소
- '95 사업비 : 5,000백만원
- 개소당 사업비 : 25백만원
- 자금용도 : 냉장육진열장, 냉장육 육절기, 숙성실, 기계장치, 인테리어등
(업소별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비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나. 지원조건

- 조건 : 용자,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 금리 : 연리 8%

5.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 시·도별 물량 배정 : 농림수산부
- 시·도별 배정물량중 120%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에 추천 통보 : 축산기업조합중앙회
-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조사를 하여 대상자 최종 확정 : 시·도



6. 사후관리

- 운영형태 : 냉장육으로 등급별, 부위별로 진열판매
- 축협, 한냉의 냉장육 체인점 형태로 운영등
- 점검자 : 시·도, 시·군·구청, 축산기업조합중앙회
- 점검시기 : 월 1회이상
- 점검내용 : 사업계획서대로 시설개선 추진 여부 및 냉장육으로 등급별, 부위별 진열 및 가격표시등

7.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 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산국 축산물유통과(02-503-7283)
 - 시도 : 농정국(산업경제국) 축산과(서울특별시농수산업유통과, 직할시는 농정과)
 - 단체 : 축산기업조합중앙회(02-293-16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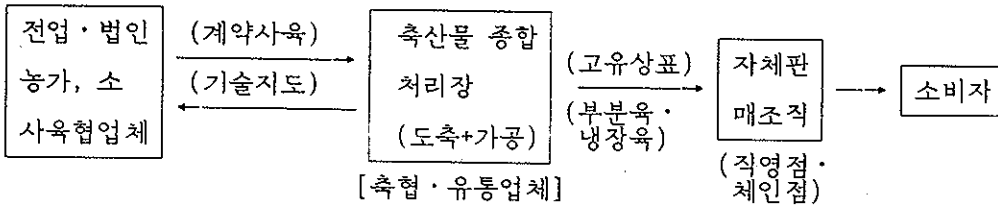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 (공공계획)

1. 목적

- 축산물종합처리장 중심으로 생산판매의 계열화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육류유통을 지육·냉동육 유통에서 부분육·냉장육 브랜드육 유통체계로 전환

2. 추진방향

가.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나. 기본계획

- 2000년까지 축산물종합처리장 10개소 설치하여 한우고기, 돼지고기 유통량의 30~40% 공급
 - '94~'96 : 3개소, '96~'98 : 3개소, '98~'00 : 4개소
- 축산물종합처리장 시설규모
 - 1일 소 100두, 돼지 1,500~2,000두

3. 사업신청자격

가. 참여대상

- 생산자단체(축협, 영농조합법인등), 농축산물유통업체, 돼지고기수출단지·수출업체 축산물판매점단체, 기존·신규 도축시설 경영자

나. 자격요건

- 도축시설운영주체 : 상기 참여대상업체

- 가공시설 운영주체 : 상기참여 대상업체중 다음의 자격이 있는 업체
 - 직영점, 체인정육점, 음식점등 자체판매조직을 5개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1일 소 5두이상, 돼지 30두이상 판매능력을 보유한 업체(돼지전문가공업체는 1일 100두이상 판매능력보유)
- ※ 가공시설 운영주체의 판매능력이 소규모일 경우 도축시설에서 처리하는 총도축 물량의 20%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여러개의 가공시설 운영주체가 확보되어야 함
- 소· 돼지사육농가와 계약생산체계를 확립하여 상기판매물량의 생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할 능력이 있는 업체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도축기계설비, 폐수 및 폐기물처리 시설비, 육가공시설설치비, 기타부대사업비등 종합처리장 설치자금지원
- 도축·가공시설 설치예산 지원기준(1일 소 100두, 돼지 1,500~2,000두 처리)
- 사업비 지원

사업량	사업비	용자	자담		
			'95년	'96년	
3개소	백만원 40,707	28,558	14,279	14,279	12,239

- 용자조건 : 3년거치 7년상환, 년 3~5%

5. 사업계획서 수립 및 신청

가.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사업개요

- 참여업체의 개괄적인 현황(1일 도축·가공·판매상황등)
- 업체별 구체적인 참여방법 및 유형

○ 도축·가공시설 설치 및 관리계획

- 사업예정부지의 위치·면적, 도축시설·가공시설 설치허가 가능여부(시·도작성)
- 건물 및 시설설치 세부계획(추진일정 포함), 총 자금투자 및 자부담 조달방법, 용자금 담보방법, 용자금 상환방법등
- 냉장육 유통 및 수출을 위한 위생관리 계획
 - 특히 지육 1 cm² 당 세균수 10³ 이내로 유지

※ 도축시설과 가공시설 운영주체가 다른경우에는 각각 별도 작성

- 가공시설 운영주체와 소·돼지 생산농가간의 계약생산체제 구축현황 및 향후 확대 계획 (계열농가에 대한 사육기술지도 체계확립 계획 포함)
- 가공시설 운영주체의 직영점, 체인점육점등 자체판매조직 현황 및 향후 확충계획

나.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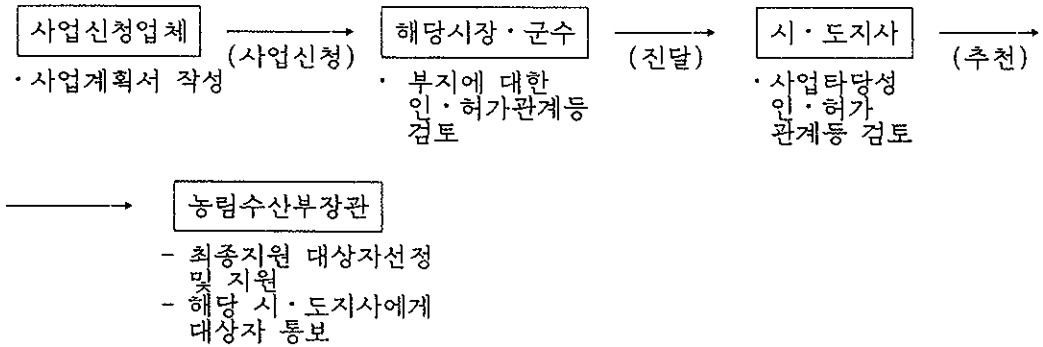
- 사업계획서는 냉장육유통을 위한 시설 및 위생관리 내용이 필히 반영되어야 함
- 도축시설 운영주체와 가공시설 운영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1개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 사업신청

- 축산물종합처리장 설치희망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군수를 통해 도지사에게 제출

6.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가.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흐름도



나.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가. 해당 도 및 시·군으로부터 94년 말까지 축산물 종합처리장설치 예정부지에 도축장과 육가공공장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체(시·도 의견서 첨부)
- 나. 도축장과 육가공공장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거나 '94말까지 확보 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시·도 의견서 첨부)
- 다. 가공시설 운영주체가 직영점, 체인정육점등 자체 판매조직을 많이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
- 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한 쇠고기, 돼지고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가공시설 운영체가 많이 참여하고 있는 업체
- 마. 가공시설 운영주체가 많은 수의 소·돼지 생산농가와 계약생산체제(기술지도포함)를 확립하고 있거나 확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업체(시·도 의견서 첨부)
- 바. 돼지고기 수출단지와 수출업체가 가공시설 운영주체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업체
- 사. 기존 도축장경영자 또는 축산물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이 기존 도축장을 폐쇄하고 도축시설 운영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
- 아. 총 사업비중 자부담비율이 많은 업체

7. 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년 4회이상 축산물종합처리자의 업무를 검사하고 중요한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축산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의무사항 불이행시 조치기준(별첨)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용자금 회수조치
- 시·도지사는 축산물종합처리장에 대한 업무검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농림수산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축산물종합처리장에 대하여 준공후 5년간 사후관리

8.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 기관
 - 중 양 : 농림수산부 축산국 축산물유통과(02-503-7283)
 - 시·도 : 농정국(산업경제국) 축산과(서울특별시는 농수산유통과, 직할시는 농정과)
 - 시·군 : 산업과(축산과)

<별첨>

축산물 종합처리장 주체의 의무사항 불이행시 조치기준

위 반 행 위	위반회수별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축산물위생처리법 위반행위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
2. 시설운영 및 위생관리기준(별첨1)불이행	주의통고	경고	보조금중 일정금액 교부결정 취소 및 용자금중 일정금액 회수	보조금 전액 교부결정취소 및 용자금 전액 회수
3. 지육외부반출금지 불이행	"	"	"	"
4. 부분육의 고유상표화 불이행	"	"	"	"
5. 총도축물량의 부분육 자체판매조직 2년내 미확보	"	"	"	"
6. 양축농가와 계약사육 및 사양기술지도체계 미확립	"	"	"	"
7. 행정지시 위반	"	"	"	"

※ 1. 본 기준은 축산물 종합처리장 준공일자를 기준으로하여 5년동안 적용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3. 보조금 및 용자금중 일정금액이라 함은 당초 지원한 보조금및 용자금의 1/6에해당하는 금액임

가축시장정비(공공계획)

1. 목적

- 가축시장을 산지 생산유통의 거점시장으로 정비 육성하여 농가의 이용도 증대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2. 추진방향

- 가축시장 재편정비 육성으로 산지 생축유통체계 및 거래질서 확립
 - 육성목표 : ('93) 219개소 → ('96) 128개소

3. 사업신청 자격

- 가축시장 인수당시 미인수된 공유, 국유, 환매조건부 대상시장 소유 조합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주관 : 도지사(충남, 전북, 전남, 경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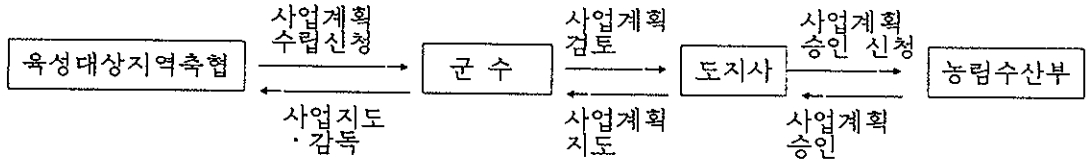
나. 자금수요자 : 지역축협

다. 사업내용

- 사업량 : 4개 조합
- '95 사업비 : 202백만원(충남 : 78, 전북 : 31, 전남 : 33, 경북 : 60)
- 지원한도 : 사업비의 50% 이내
- 사업시행기간 : 1년
- 자금용도 : 부지매입 및 시설설치비

라. 지원조건 : 용자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연 3%

마. 사업추진 체계도



5. 사후관리 : 시장, 군수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 기관

- 중 앙 : 농림수산부 축산국 축산물유통과(02-503-7283),
- 시·도 : 농정국(산업경제국) 축산과(서울특별시는 농수산유통과, 직할시는 농정과)
- 시·군 : 산업과(축산과)

축산물 등급판정사업 (공공계획)

< 등급판정소 운용 >

1. 목적

- 육류도체에 객관적인 등급부여로 공정거래 형성
- 양축농가의 고급육 생산 및 소매단계의 차등가격 형성 기반구축
- 수입개방에 대비한 육질향상으로 고품질 경쟁기반 마련

2. 추진방향

- 축산물등급제 정착으로 축산물유통구조개선 기여
 - 양축농가의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여 개방이후에도 양축 생산기반 구축
 - 유통종사자에게 구매지표 제공으로 차등가격 형성 유도
 - 소비자에게 육류를 구입시 등급별 품질에 따른 선택 기회 부여

3. 사업내용

가. 사업주체 : 축협중앙회(축산물등급판정소)

나. 대상품목 : 소, 돼지의 도체

다. 등급거래체계 : 출하 → 도축 → 등급표시 → 상장 → 경매 → 소매상

라. 축산물 등급기준 및 축산물 등급화 거래지역 고시

○ 축산물등급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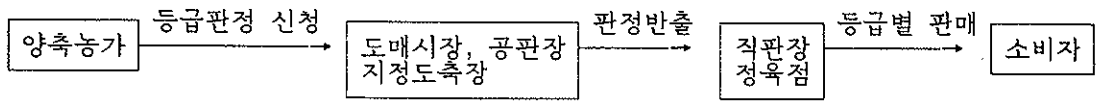
- 소 : 10개등급
- 돼지 : 10개등급

○ 축산물등급화 거래지역고시의 종류 및 시행시기

- 서울, 제주지역 : 소, 돼지의 도체('95.2.6부터)
- 부산지역 : 소의 도체('95.6.1), 돼지의 도체 ('95.2.6)
- 전국직할시 지역 : 소의 도체('95.10.1), 돼지의 도체('95.6.1)

마. '95 사업비 : 5,954백만원(인건비, 관리비 및 장비확보등)

바. 사업추진 체계도



사. 등급제 시행을 위한 준수사항(고시지역만)

- 시·도 : 도매시장, 공판장 및 지정반출도축장에서는 고시지역으로 반출시 의무적으로 등급판정을 받아 반입되도록 지도감독
- 도매시장, 공판장, 지정반출도축장 : 축산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위한 시설 및 협조 의무 사항을 이행
- 직판장 및 정육점 : 등급판정을 받은 소, 돼지고기만 거래

4. 등급판정 실시 작업장 선정 절차

- 대상기준 :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거 도축장의 시설을 갖춘 작업장
- 신청방법
 - 등급판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도축장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등급판정사 배치 요청
 - 시·도에서는 작업장의 시설상태를 확인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에 신청
 - 농림수산부에서는 축협중앙회 축산물등급판정소와 협의하여 등급판정사의 인력수급을 판단하여 등급판정사 배치여부를 결정 통보

5. 사후관리

- 책임자 : 농림수산부, 시·도
- 점검지시 : 월 1회 이상
- 점검내용 : 2분도체, 예냉후 검인 여부, 예냉실 확보, 배할대, 배할톱, 등급판정장소등
- 점검결과 : 지적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시정 지시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 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산국 축산물유통과(02-503-7283)
 - 시도 : 농정국(산업경제국) 축산과(서울특별시농수산업유통과, 직할시는 농정과)
 - 단체 : 축산기업조합중앙회(02-293-1671)

축산물 등급판정사업 (공공계획)

< 우수축 출하포상금 지급 >

1. 목적

- 축산물 등급제 조기정착 및 고급육 생산증대를 위하여 양축농가의 우수축 출하유도
- 외국의 고급냉장육 수입개방전에 국내에서 고급냉장육 생산으로 소비자 인식제고

2. 추진방향

- 육질개선 목표 : 소 (1등급 40%)

3. 사업신청자격 : 우수축 출하자 및 도축신청 의뢰자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주관 : 축협중앙회

나. 자금수요자 : 우수축 출하자 및 도축의뢰자

다. 사업내용

- '95 사업비 : 560백만원
- 가축출하 대상 : 등급판정시행지정 도매시장, 공판장 및 반출도축장
- 지급대상 : 등급판정결과 A-1, B-1등급을 받은수소(암소제외)의 등급판정 신청자
- 지급장소 : 지정 지역축협 및 계통출하 지역농협
- 두당지급액 : A-1 : 200천원. B-1 : 100천원
- 지급기간 : '95.1 - 12월(1년간)

5. 사후관리 : 축협중앙회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중 양 : 농림수농림수산부 축산국 축산물유통과(02-503-7283),
축협중앙회 유통부(02-485-3141)
 - 시·도 : 농정국(축산과)
 - 시·군 : 산업과(축산과)

축산물 공판장 출하활성화 자금(공공계획)

1. 목적

- 축산물공판장에 출하한 소·돼지의 출하대금을 신속히 정산하여 양축가 보호

2. 추진방향

- 생산자단체인 축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판장 활성화 추진 : 3개소

3. 사업신청자격 : 축협중앙회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주관 : 축협중앙회

나. 자금수요자 : 나주, 고령, 제주의 축산물공판장

다. 사업내용

- 사업량 : 3개소
- 사업비 : 2,045백만원(나주 600, 고령 1,050, 제주 : 825)
- 지원구분 : 융자 (연리 5%, 1년거치후 일시상환하되 3년까지 연장사용가능)
- 시행기간 : '95~'97년 (3년)

5. 사후관리 : 축협중앙회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중 양 : 농림수능림수산부 축산국 축산물유통과(02-503-7283),
축협중앙회 유통부(02-485-3141)

쇠고기 수입(공공계획)

1. 목적

- 쇠고기 수급조절과 산지소급 안정을 위한 쇠고기의 안정적인 구매 필요
- UR협상결과 연도별 킬터량 수입 : ('94) 84.8천톤 → ('95) 86.1 → (2000) 67.5

2.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 가. 사업주관 : 농림수산부
- 나. 자금사용자 : 축산물유통사업단
- 다. 지원구분 : 회전자금
- 라. 자금운용방법 : 연간 한도액을 정하여 쇠고기 수입자금으로 회전사용하고, 국내판매 가격과의 차액은 기금에 납입(다만, 필요시 연간한도액을 초과 운용할 수 있음)

3. 연차별 수입할당량

단위 : 백만원

	'94	'95	'96	'97	'98	'99	2000
사업량	천톤 84.8	86.1	88.2	83.5	74.8	61.8	67.5
금액	68,000	60,000					

4.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산국 축산물유통과(02-503-7283)
 - 축산물유통사업단(02-548-1767)

돼지고기 구매 (공공계획)

1. 목적

-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와 시책의 원활한 수행
- 적정가격 유지로 양돈농가 경영안정 및 소비자 보호
-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기능 기반구축

2. 추진방향

- 기본방향
 - 자율구매비축 :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구매비축에 의한 수급 및 가격안정
- 사업목표
 - 돼지가격이 가격안정대(상·하한가격) 범위내에서 안정유지 목표
 - 산지가격 : 상한가격 145천원/90kg(비축육방출), 하한가격 100천원/90kg(구매비축)

3.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농림수산부

나. 사업내용

-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축협, 조합), 정부지정계열화업체, 한국냉장, 육가공업체등
- 사업비 지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	자담
돼지고기 수급조절사업	7,800 톤	백만원 10,000			10,000	

- 지원조건 : 용자 (연리 5%, 1년거치후 일시상환)
- 자율구매비축 방법
 - 구매시기
 - 돼지고기 가격안정상 필요시 정부지시에 의거 자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생산자단체 중심의 자율구매비축을 실시
 - 돼지가격 안정대 하한가격 이하로 하락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구매비축 실시

- 구매기간 : 1년
- 구매품목 : 생돈 및 돈육(도체)
- 구매장소 : 산지 또는 도매시장 및 도축장
- 구매가격 : 산지가격 110천원/90kg수준에서 자율구매비율
 - 돼지구매에 따른 손익은 구매주체에서 책임처리

4.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 기관
 - 중 양 : 농림수산부 축산물유통과(503-7283)
 - 시·도 : 축산과 (서울특별시는 농수산유통과, 직할시는 농정과)
 - 시·군 : 축산과(산업과)

닭고기·계란 수매 (공공계획)

1. 목적

- 양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와 시책의 원활한 수행
- 적정가격 유지로 양계농가 경영안정 및 소비자 보호
-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기능 기반구축

2. 추진방향

- 기본방향
 - 자율수매비축 :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수매비축에 의한 수급 및 가격안정
- 사업목표
 - 육계, 계란가격이 생산비 수준에서 안정유지 목표
 - '93생산비 : 육계 945원/kg, 계란 523원/10개

3.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농림수산부

나. 사업내용

-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축협, 조합), 정부지정계열화업체, 한국냉장, 가공업체등
- 사업비 지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융자	자담
양계산물 수급조절사업		백만원 9,000			9,000	
- 닭고기	백만수 15 억개	5,600			5,600	
- 계란	3	3,400			3,400	

○ 지원조건 : 융자 (연리 5%, 1년거치후 일시상환)

○ 자율수매비축 방법

- 수매시기 : 양계산물이 생산비이하로 하락하여 경영비 이하로 하락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자율적으로 수매비축 실시

- 수매기간 : 1년간
- 수매품목 : 옥계, 계란
- 수매장소 : 산지농가 또는 계열농가, 도계장
- 수매가격 : 산지가격이 경영비 수준일때 자율수매비축
 - 닭고기·계란 수매에 따른 손익은 수매주체에서 책임처리

4. 기타 참고사항

- o 사업 안내기관
 - 중 양 : 농림수산부 축산국 축산물유통과(02-503-7283)
 - 시·도 : 축산과(서울특별시는 농수산유통과, 직할시는 농정과)
 - 시·군 : 축산과(산업과)

한우유통활성화 자금(공공계획)

1. 목 적

- 지역축협의 한우전문판매점에 한우공급능력 제고
- 도매시장 출하확대로 쇠고기 수급안정 및 도매시장 기준가격 공신력 제고

2. 추진방향

- 한우의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산지소값에 관계없이 출하체중을 500kg이상 유도
- 지역축협 조합에서 지정 한우전문판매점 고급한우고기의 원활한 공급 유도
- 한우전문판매점에 한우공급두수 50%수준 유도('97년까지 매년 50억원씩 증액)

3. 사업신청자격

- 조합원 또는 자가 생산한우를 한우전문판매점과 도매시장에 출하를 원하는 지역축협조합
- 대상조합 선정우선순위
 1. 한우전문판매점과 출하계약한 지역축협
 2. 한우개량단지 및 고급육 생산단지 보유조합
 3. 한우대량 사육조합
 4. 기타 희망조합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축협중앙회

나. 사업비지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보조	기금융차	자 담
한우유통활성화 자금지원사업	50 개소	100억원	-	-	100	-

다. 지원내용

- 한우 수컷 생체중량 500kg이상(지육 278gk이상), 한우암컷 생체중량 450kg이상
(지육 250kg이상)를 지정출하처에 출하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조합은 한우전문판매점, 지정된 한우고기 집배센터, 도매시장 등과 출하약정하고 그 결과를 축협중앙회에 보고하고 약정대로 의무적으로 지정 출하처에 출하

- 약정대로 의무출하를 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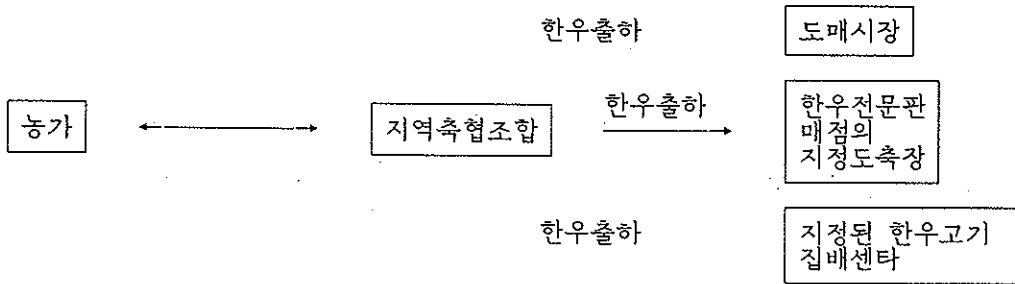
라. 지원조건

- 용자조건

- 금리 : 무이자, 용자기간 : 용자일로부터 1년

- 사업기간 : '95년

마. 사업추진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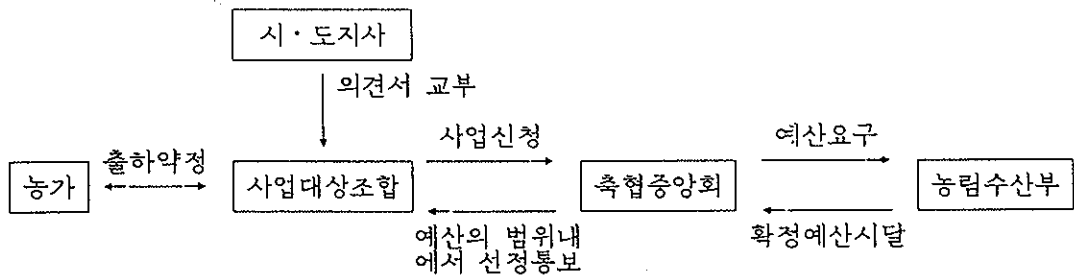
5. 사업계획수립 및 신청

- 사업계획서 수립주체 : 지역축협조합

- 사업계획수립시 고려할 주요사항

- 농가의 소사육 규모 및 출하시기별 출하가능물량을 조사하여 지정출하처와의 출하약정
- 지원자금두수의 연간 3배상당의 한우를 지정출하처에 의무출하
- 지원기준 : 자금지원 직전 3개월간의 의견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서 축협중앙회장에게 8월말까지 제출
- 사업희망조합은 관한 시·도지사의 전국평균가격 산출
- 축협중앙회장은 신청요구액을 취합하여 9월말까지 예산책정 요구

6.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 대상자 선정시 선정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7.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축협중앙회장

○ 사후관리절차

- 축협중앙회장은 사업조합의 지원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지원조건 미이행시 그 두수해당액에 대하여 축협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회수하고, 회수자금에 대하여는 타 희망조합에 전배지원

○ 보고

- 사업조합의 장은 출하계획량 및 출하처별(도축장명, 도매시장명, 집배센타명) 출하실적을 축협중앙회장에게 보고
- 축협중앙회장은 사업조합별 출하계획량, 출하처를 농림수산부장관 및 각시·도지사에게 보고(통보)

보 고 내 용	보 고 기 한
사업조합선정보고	'95. 1. 31일까지
조합별 출하실적(월별)	분기별 익월 15일까지

8.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 기관 : 농림수산부 축산물유통과(503-7283), 축협중앙회 유통부(485-3141)

- 보고서식

한우 유통활성화자금 지원대상조합 선정보고

조 합 명	연간사업량	자 금 지 원 액	출 하 처
	두	백만원	

※ 출하처는 도매시장·도축장·집배센터명 기재

사업추진 실적보고

조합명	연간계획		당 월 실 적			누 계			출하처	사 기 업 간
	사업량	금액	출하수	금액	분기진도	출하수	금액	연간진도		
	()	()								

※ 계획의 ()는 분기계획임.

조합별 출하실적 및 출하처

조 합 명	년 간 사업량	자 금 지원액	출하계획량		출하실적		출 하 처
			당월	년간	당월	년간	
	두	백만원	두				

군납출하 조절자금 (공공계획)

1. 목 적

- 군부식 축산물을 생산공급하여 군급양 향상에 기여
- 양축농가의 안정된 생산과 판로 확대

2. 추진방향

- 축산물을 군납하는 축협조합의 양축농가에게 군부식 축산물의 계획생산 및 책임출하 유도하고자함

3. 사업내용 및 용자조건

- 가. 사업주체 : 축협중앙회장
- 나. 대 상 : 군납지역축협농가(43개조합)
- 다. 사업기간 : '95
- 라. 사 업 비 : 4,000백만원
- 마. 지원내역

사 업 량	단 가	사 업 비	비 고
농가 1,250	천원/농가 3,200	백만원 4,000,000	1,250농가 × 3,200천원 = 4,000,000천원

바. 지원조건

- 용 자 : 연리 3%, 1년거치후 일시상환, 3년까지 연장사용가능
- 용자기간 : 용자일로부터 1년

4. 기타 참고사항

- 사업 안내기관
- 중 양 : 농림수산부 축산국 축산물유통과(02-503-7283)
축협중앙회(02-485-3141)

축산물 가격 및 유통량 조사(공공계획)

1. 목적

- 축산물가격정책의 기초자료조사로 축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도모

2. 추진방향

- 축협중앙회에서 기획하여 94개 지역조합의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기초자료 제공

3. 사업신청자격 : 축협중앙회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 가. 사업주관 : 농림수산부
- 나. 자금수요자 : 축협중앙회 조사부
- 다. 사업내용
 - '95 사업비 : 107백만원
 - 시행기간 : '95.1~12 (1년)
 - 지원구분 : 기금사업

5. 사후관리 : 축협중앙회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중 양 : 농림수농림수산부 축산국 축산물유통과(02-503-7283)

소·돼지 도체 및 부위별 수출조사(공공계획)

1. 목적

- 소·돼지의 체중 및 비육형태별 도체수출기준 설정으로 효율적인 육류 수급계획 수립 필요
- 유통과정별 수출 및 감량기준 설정으로 육류의 유통효율화 모색

2. 추진방향

- 주요 축산물(소, 돼지)의 도체 및 부위별 수출조사로 육류의 유통효율화 및 수급계획 수립함으로써 축산물가격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3.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 주체 : 농림수산부 축산물유통과

나. 사업자금 사용자 : 축산시험장

다. 사업시행기간 : '95 ~ '96

라.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사업내용 : 소·돼지의 도체수출 설정을 위한 소·돼지의 체중별, 비육형태별 암수별 수출과 운송, 도축, 판매과정별 감모율 설정을 위한 공시축 구입
- 한우 숫소 (160두), 한우 암소 (80두), 돼지 : 300두
- 지원규모 : 사업비('95 : 583백만원, '96 : 363)

4. 기타 참고사항

- 사업 안내기관
- 중 앙 : 농림수산부 축산국 축산물유통과(02-503-7283)

축산물 가격안정대 자금(공공계획)

1. 목적

- 주요 축산물(소, 돼지)가격의 일정범위내에서 안정 유지
- 가격안정을 통한 축산경영합리화로 양축농가의 소득 증대

2. 추진방향

- 주요 축산물(소, 돼지)의 안정 상·하한가격을 결정·고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자 함

3.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 주체 : 농림수산부 축산물유통과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사업내용

상한가격 : 소비자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비축육 방출확대
하한가격 : 사육농가 보호를 위한 수매비축 실시

- 지원규모 : 사업비 900억원

4. 기타 참고사항

- 사업 안내기관
- 중 양 : 농림수산부 축산국 축산물유통과(02-503-7283)

부정축산물 유통 지도 단속(공공계획)

1. 목 적

- 수축의 밀도살, 강제급수 및 부정육 취급행위 방지
- 위생적인 육류 유통질서 확립으로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2. 기본계획

- 부정육류 유통방지를 위한 지도단속 강화
- 밀도살 등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및 홍보강화로 부정육 유통근절

3. 지도단속 대상

- 밀도살
- 강제급수우 도축 및 도체주수행위
- 법정 금지축 도축(종축 및 후보종축, 임신우)
- 검사원 부재시 도축 및 신청서 미접수분 도축
- 지육 관외반출규정 위반

4. 단속실시 요령

가. 특별단속

- 합동단속반 편성
 - 중 양 : 농림수산부
 - 시·도 : 축산, 보건, 경찰합동으로 편성운용
- 합동단속기간
 - 생산가격 안정필요시와 육류성수기(신정, 설날, 추석등)에 우범 지역과 가축시장 및 업체 집중단속

나. 정기단속

- 단속반 편성
 - 중 양 : 농림수산부
 - 시·도 : 시·도 자체편성
- 단속기간
 - 년중 우범지역 불시 단속 (매월 1회 이상)

5. 밀도살 등 신고 포상금 지급

<국내산축산물>

가. 지급대상

- 대상축 : 소, 돼지, 양, 닭
- 지급대상자 : 축산물위생처리법 제3조 제1항, 제11조 및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고발 또는 신고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

나. '95 예산액 : 2,140천원

다. 지급기준

구 분	단위	지 급 기 준	지 급 배 분 액	
			신 고 자	검 거 자
밀도살	두수	당해 수축시가 표준액 전액	지급기준액의 1/2	지급기준액의 1/2
강제급수 (소에 한함)	두	당해 수축시가 표준액 1/2	"	"
미검사품	kg	당해 축산물 시가표준액 1/2	"	"

라. 지급절차

- 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범법사실이 기소된 후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경유 농림수산부장관에 지급 신청
 - 구비서류
 - 상금 지급신청서(법정서식)
 - 신고(고발) 및 검거확인서(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장 발행)
 - 사건의 공소제기, 기소유예 또는 기소중지를 증명하는 서류(공소장 사본 등)
- ※ 시·도지사의 파세 시가표준액(지방세법에 의거 결정한 금액)과 공소장 금액등에
의거 지급액 산출 단, 미검사품 등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통계청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는 순별 소비자 가격 또는 축협중앙회에서 매월 발간하는 "축산물가격 및
유통동향"의 가격을 적용하고 양고기는 당시 평균가격 적용

○ 지급

- 농림수산부장관은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시·도에 배정, 시·도지사가 지급

(유의사항)

- 신고(고발)자 또는 검거자가 2인 이상이거나 검거에 협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시·도지사가 그 공로를 참작하여 배분액 또는 배분 비율을 정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추천
단, 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 당시 시가표준액(범죄행위 시점기준)과 공소상 시가액이 다를 경우 낮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마. 지급기산일 및 한도액

○ 지급기산일

- '94.10.1부터 발생한 범죄행위

○ 지급한도액

-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며, 검거(신고) 당시 확인된 물량에 한함
- 1건(신고 및 검거)의 지급 총액은 200만원 이하로 함

<수입쇠고기>

가. 지급대상

- 대상축산물 : 수입쇠고기
- 지급대상자 : 수입쇠고기부정유통 신고(검거)포상금지급요령(농림수산부공고 제94-21호)에 의한 수입쇠고기 부정유통 신고 및 검거자

나. '95 예산액 : 50,000천원

다. 지급기준

부정유통물량(건당)	포상금 지급 기준 (건당)		
	신고(고발)자		검거자
	관련 공무원	민간인	
100Kg 미만	200 천원	300	300
100Kg ~ 300Kg 미만	200	400	400
300Kg ~ 500Kg 미만	300	400	400
500Kg 이상	300	500	500

라. 지급절차

- 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범법사실이 기소된 후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농축산물유통관리 전담기관의 장을 경유, 농림수산부장관에 지급 신청
- 구비서류
 - 상금 지급신청서(법정서식)
 - 신고(고발) 및 검거확인서(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장 발행)
 - 사건의 공소제기, 기소유예 또는 기소증지를 증명하는 서류(공소장 사본 등)
- 지급
 - 농림수산부장관은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시·도 또는 농축산물유통관리 전담기관에 배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농축산물유통관리 전담기관의 장이 지급

6. 부정축산물 신고센터 설치 운용

- 설치부서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산물유통과(전화 500-2675, 503-7283, 503-7236)
 - 시·도 : 산업(축산)과

- 운용
 - 신고 고발시 민원접수
 - 현지확인 단속
- 신고안내문 부착
 - 도축장 가축시장등에 밀도살, 강제급수 등 도축부조리 신고안내문 부착

7. 쇠고기 수분(수분단백비) 검사

가. 검사대상

- 도축장내의 강제급수가 의심되는 우육
- 시판우육 또는 운반차량에 적재한 우육중 강제급수가 의심되는 우육
- 소비자 단체 또는 민원인 등이 요구하는 지육판매업소의 판매우육

나. 검사기관

-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 보건환경연구원(축산물검사부, 가축위생연구부, 가축위생 시험소)
- 도 : 가축위생시험소

다. 검사방법 및 기준

	현 장 검 사	실 험 실 검 사
○ 검사방법	NIR system	상압건열법 + 켈달분해법
○ 적용부위	우지육의 목심 또는 우둔중 1개부위(냉동육제외)	검사가능 부위
○ 검사기준치	수분단백비가 4.2 이상일 경우 물먹인 쇠고기로 간주	

라. 수거방법

- 검사시료 : 현장 검사결과에 대하여 피검사인으로 부터 이의가 제기될 경우를 대비하여 검사한 지육에서 가시지방과 힘줄을 제거한 100g 정도의 지육을 채취보관
- 시료운반 : 채취한 시료는 광구병·샤레·스페시멘컵·비닐용기등에 넣어 밀폐한 후 피수거자와 수거자의 날인을 하고 아이스박스에 넣어 지체없이 검사기관에 송부, 검사실시

마. 검사결과와의 통보 및 처리

- 검사기관 : 월별검사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농림수산부 및 관할 시·도에 보고 및 통보
- 시·도 : 기준치 이상의 우육을 반출한 도축장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기준치 이상의 우육을 보관한 식육판매업소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해당 부서(보건위생과 등)에 통보하여 행정지도토록 협조조치를 하고 아울러 동 내용을 축산기업조합 시도지부(서울시는 축산기업중앙회 포함)및 소비자 단체에 통보
- 농림수산부 : 기준치 이상의 우육을 반출한 도축장에 대하여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

축산물작업장 지도 및 검사업무 감독 강화(공공계획)

1. 목 적

- 0 축산물의 위생처리 공급으로 국민보건 향상
- 0 검사업무의 효율성 제고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

2. 추진방향

- 0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시설 및 위생관리실태 정기점검 실시
- 0 위생도계육 유통지역 확대 지정
- 0 원유검사의 공정성 확보방안 강구

3. 추진내용

- 0 축산물작업장 시설 및 위생관리실태 점검
 - 대상업소 : 도축장·도계장·집유장(착유장 포함)
 - 점검시기 : 불량축산물 유통이 우려되는 하절기를 중점으로 년2회이상 실시(필요시 농림수산부와 합동점검)
 - 점검착안사항
 - < 작업장시설, 기구 및 작업환경 정비 >
 -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적합여부
 - 도축·도계작업 및 검사에 필요한 기구 확보여부 및 위생관리실태
 - 작업장 주변 및 작업전후 작업실등 청소실태
 - 작업실과 폐기물처리장과 원거리 위치(해충발생방지) 여부
 - 작업실내 외부인 출입제한 여부
 - 작업원 건강진단 및 위생관리교육 실태
 - 도축전 생체계류 및 세척여부
 - 수축의 도살·해체방법 준수 여부

< 검사원 근무실태 >

- 계류시설 및 냉장시설에 비례한 적정 도축여부
-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24조(별표4)의 규정에 의한 생체 및 해체 및 시설검사여부
- 불합격품의 폐기 적정여부
- 검사원의 위생복 착용여부

- 점검결과 조치 : 시·도지사는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시설점검결과 미비사항 적발시 즉각 시설보완등 행정조치

○ 축산물작업장 허가관리지침(위생51575-712호 : '93. 7. 14)에 의한 도축장 도계장·집유장의 허가관리 철저

- 영세·노후한 작업장의 통폐합 정비 유도
-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가공·유통 연계추진 유도
- 작업투수에 비례한 검사원 확보 및 배치 철저

○ 위생도계육 유통지역 확대 지정

- 닭·오리에 대한 축산물위생처리법 적용대상지역 확대 추진

- 〔 닭 : 전국 읍단위이상 지역을 유통지역으로 확대 추진
- 〔 오리 : 대량소비지역을 중심으로한 유통지역 확대 추진

- 도계육 반출 및 유통질서 확립

- 〔 축산물위생처리법 규정의 도계장에 한하여 타 시도 반출 허용
- 〔 식육운반차량으로 도계육 운송
- 〔 반출통보서 및 검사증명서 발급 철저

- 주간도계 및 자가도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계열화 유도

○ 도계·원유검사원 지도 감독 철저

- 도계 및 원유에 대한 자체검사실태 및 검사원 지도 감독 철저
- 검사수량에 비례한 자체검사원 확보

4.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 02-503-7285, 500-2677)
- 시·도 : 농림수산국 축산과

원유위생관리 강화(공공계획)

1. 목 적

- 위생적인 원유 생산·공급을 통한 국내산 유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
- 낙농산업 발전 및 국민보건 향상 도모
- 원유위생 향상 및 유질개선 도모로 낙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 원유검사의 공정성 확보로 원유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
- 낙농가 민원해소 및 유대 차등가격제의 원활한 시행여건 조성

2. 사업내용

가. 목장위생관리 강화

- 착유우 검사등 위생관리 철저
: 가축위생시험소와 집유장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착유우 검사 실시 철저
 - * 착유우 검사실시
 - 〔 가축위생시험소 : 년1회 이상
 - 집유장(자체검사원) : 년2회 이상

나. 집유위생

- 보냉탱크 집유차량을 이용한 정기적인 원유수집등 신속한 집유업무 수행 및 운송등으로 원유의 신선도 제고 철저

다. 원유검사

-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원유검사등 위생관리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것.
 - 원유검사 기준등에 따른 검사실시 및 결과조치 철저

* 세균수시험·체세포수시험은 월 2회이상, 세균발육억제물질검사는 주 2회이상 실시토록 할것.

※ 원유검사는 집유장의 자체검사원이 실시토록하고 가축위생시험소 관계공무원은 검사과정 및 결과를 감독하고 입회확인

라. 원유검사의 공정성 확보 철저

- 집유업체의 자체검사에 대한 감독 강화
 -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주 1회이상 원유검사 실시상황 확인·점검
 - 유지방을 검사 입회·확인으로 낙농가 민원해소
 - 원유검사(수유검사, 시험검사) 실시상황 및 검사결과 조치 시행여부 등 원유위생관리 실태 점검 철저
- 자체검사원 및 원유검사보조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원유검사 표준화 요령에 의한 시료채취 및 검사실시 여부등 확인 철저

마. 기 타

- 원유위생 실태조사 실시
 - 실시기관 :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서울시, 직할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제주도는 축산진흥원)
 - 사업량 : 전국의 목장 대상
 - 재료비 : 국비 4,800천원
 - ※ 종전의 원유위생 실태조사 실시요령에 의거 실시
- 원유위생 향상 및 유질개선 지도·홍보 강화
 - 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단체를 통한 지도·홍보사업 활성화
 - 실시방안 : 낙농가를 대상으로 순회교육등(교재 및 홍보자료 제작·배부)
 - 실시기간 : '95년 상반기

3.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 02-503-7285, 500-2677)
- 시·도 : 농림수산국 축산과

축산물위생용기 관리개선(공공계획)

1. 목 적

-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착유기, 도축검인가등을 사용함에 있어 불량위생용기의 제조 및 유통을 방지, 위생적인 축산물의 공급으로 국민보건 향상

2. 축산물위생용기등 제조허가관리

- "용기등의 제조업허가 업무처리지침(위생27464-957호, '92. 12. 8)"에 의거 허가관리 철저

3. 대상업소

- 위생용기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 집유장
- 무허가 제조업소

4. 관리대상품목

- 집유기, 냉각기, 집유탱크, 원유통, 도축검인기, 도축검인용 색소

5. 제조업소 시설점검

- 시 · 도 : 년 1회 이상
- 농림수산부: 필요시
- 점검결과 조치 : 시 · 도지사는 축산물위생용기 제조업소에 대한 점검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중 앙 :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 02-503-7285, 500-2677)
 - 시·도 : 농림수산국 축산과

도계장시설현대화 및 도축·도계부산물처리시설 지원(자율)

1. 목 적

-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 공급으로 국민보건 향상
- 작업장의 위생처리시설 확충으로 축산물 수급원활 및 환경위생에 기여

2. 추진방향

- 작업장 위생시설 설치 지원으로 축산물의 수급원활 및 육류유통 구조개선
- 도축·도계과정에서 발생하는 털, 지방, 내장등 부산물의 적정처리로 환경위생 기여 및 부산물의 자원화 활용
- 사업목표 및 장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0-'94	'95	'96	'97	계
○ 사업량	47개소	17	11	10	85
○ 사업비	47,901	15,687	4,730	4,300	72,618
- 촉발기금	27,650	8,650	3,300	3,000	42,600
- 자 담	20,251	7,037	1,430	1,300	30,018

* 자담비율 30%이상

3. 사업물량 및 대상자 선정 검토서류

- '95 시·도별 사업물량

(단위 : 개소)

사 업 명	계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도계장시설 현대화	7	1	2	-	-	1	-	-	2	1	-
도축·도계 부산물처리시설											
- 도축개별시설	6	-	1	1	-	1	-	2	-	1	-
- 도계개별시설	3	-	1	-	1	1	-	-	-	-	-
- 도계공동시설	1	-	-	-	1	-	-	-	-	-	-

- 대상자 선정 검토서류
 - 사업계획서(자체자금 투자내역 포함)
 - 작업장 대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 최근 2년간 월별 도축·도계실적
 - 도축·도계부산물 발생량 및 처리실태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대상자 : 도계시설(가공·비축시설 포함)개선 및 도축·도계부산물 처리설비를 하고자 하는 도축·도계장 경영자
- '95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물량	지원단가	사업비		
			계	축발기금	자담
도계장시설현대화	(개소) 7	700	9.712	4,550	5.162
도축·도계부산물 처리시설					
- 개별시설	9	300	3.875	2,700	1.175
- 공동시설	1	1,400	2.100	1,400	700
계	17		15.687	8,650	7,037

- 지원조건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8%

5. 기타 참고사항

- 사업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목적, 사업내용, 경제성분석, 소요예산, 사업효과등
- 사업신청 : 해당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
- 시·군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한 42조 투융자계획분 우선반영
- 사업 안내기관
 - 종양 :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 02-503-7285, 500-2677)
 - 시·도 : 농림수산국 축산과

임도정공장통폐합시설대체 (자율)

1. 목적

- 자율통폐합을 추진하는 임도정업체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으로 업체경쟁력 제고 및 양곡품위 향상을 통한 농가편익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임.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임도정업체가 경쟁력 있는 산업체로 성장하기 위한 업계 스스로의 자율통폐합 유도 원칙
- 임도정업은 생산농민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임을 감안
- 통폐합으로 인한 업체의 재정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 무리한 시설투자 방지 사전지도
-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도정공장의 시설현대화 및 생력화 촉진 유도

나. 연차별 투자계획

	'92~'94	'95	'96~2004	계
사 업 량 (개)	60	20	232	312
사 업 비 (백만원)	7,500	2,500	33,176	43,176

3. 지원대상자 선정

가. 선정절차 : 종합지침상의 제규정에 따른다

나. 선정기준

- 자율통폐합 임도정업체 지원
- 통폐합 촉진을 위해 다수의 공장이 통폐합하는 경우 우선 지원
- 통폐합 희망업체간의 이해관계 사전조정 및 부지확보등을 필하여 통폐합 추진에 지장이 없는 업체 우선 지원
- 지역내 도정시설 적정배치 및 다른 도정시설과의 경합이 예상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

4. 용자요령

가. 용자조건

사 업 자	금 리	용 자 조 건			용자한도	용자비율
		계	거	치 상 환		
임도정공장통폐합 시설대체	년 % 8	년 10	년 3	년 7	100백만원 이 내	소요자금의 70% 이내

나. 자금용도 : 도정기계등 시설자금(부지구입비, 건축비는 자담)

다. 용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또는 단위농협)

라. 용자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실적 확인서(또는 기성고 확인통지서), 시설구입계약서

마. 채권보전 :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취급규정, 용자취급기관의 여신관계
제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지원계획

가. 세부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소요자금			
		국고보조	국고용자	자담	총사업비
임도정공장 통폐합시설대체	개소 20	-	1,750 (70%)	750 (30%)	2,500 (100%)

나. 분기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분기별	주요사업 추진계획	자금지원계획		
		보조	용자	계
1/4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 규모 결정			
2/4	공사착공			
3/4	건축 및 시설설치공사추진	-	1,750	1,750
4/4	완공			
계			1,750	1,750

다. 시·도별 사업량 및 사업비 배정

구분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계
○ 사업량	2	2	5	7	2	2	20
○ 사업비	200	200	450	500	200	200	1,750

6.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 시장·군수가 사업대상업체 신청시에는 한국양곡가공협회와 협의 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공사추진상황을 확인한후 용자신청에 필요한 사업실적 확인서(또는 공사기성고 확인서)를 발급한다.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공공계획)

I.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지원

1. 목 지

- 가. 우리 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대외경쟁력 강화
- 나. 성출하기에 원료농수산물의 수매 및 가공처리로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기여
- 다. 전통식품의 산업화로 고유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 라. 농외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추진방향

< 기본방향 >	
○ 농어민과 생산자단체를 산지가공업의 주체로 육성	○ 농수산물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농어민에게 환원시키고 시장경쟁력 강화
○ 전통식생활문화를 정착시키고 전통가공식품을 수출산업으로 육성	

가. 사업목표 및 계획

- (1)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업을 하고자하는 농어민, 생산자단체와 산지일반 업체에 시설비, 포장개선비 및 원료구입자금 지원
- (2) 전국 시, 군, 읍면별, 주산지별로 지역특산물 및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을 우선으로 2004년까지 2,000개소의 가공공장 설치

나. '94실적 및 '95계획

(단위:개소, 억원)

구 분	'94					'95계획 (예산)				
	사업량	계	국고보조	용자	자담	사업량	계	국고보조	용자	자담
○ 전통식품개발사업	82	112	56	34	22	120	144	72	43	29
○ 산지일반가공산업	35	320	130	120	70	71	770	225	331	214
- 생산자 단체	21	260	130	78	52	45	450	225	135	90
- 일반 업체	14	60	-	42	18	26	320	-	196	124
계	117	432	186	154	92	191	914	297	374	243

다.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개소, 억원)

구 분	'93까지	'94	'95	'96-'98	'99-2004	계
사업량	789	117	160	575	359	2,000
사업비	계	1,390	432	914	4,110	24,400
	국고보조	231	186	297	1,205	6,500
	용자	799	154	374	1,913	11,880
	자담	360	92	243	992	6,020

3. 지원대상

가. 지원구분 : 전통식품개발사업과 산지일반가공사업으로 구분지원

(1) 대 상

○ 전통식품개발사업

-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농어촌지역에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 품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식품의 가공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마을공동(농어가 5호이상) 및 생산자단체
- 마을공동이란 출자, 취업, 자가생산, 임가공 원료제공형태로 참여하고 운영은 공동운영 또는 단독운영 가능
- 기 지정된 특산단지 지정업체(식료품)는 전통식품업체에 포함지원
- ※ "전통식품명인"에 대한 지원
 - 공동사업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을공동"에 준하여 지원
 - 개인사업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지일반가공사업"에 준하여 지원

○ 산지일반가공사업

-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농어촌지역에서 농수산물가공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조합원 100명 이상의 영농조합법인 포함) 및 재촌 비농가 또는 일반업체
 - '94년도까지 농산과에서 추진하던 우리밀가공, 감자가공, 풋옥수수가공 사업과, 양곡조사과에서 추진하던 쌀가공식품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일반업체
- 단, 쌀가공식품 시설현대화사업은 쌀가공식품생산량이 70%이상이고 시설부지(단일품목 : 2,000㎡ 이상, 복수품목 : 3,300㎡ 이상)를 확보한 업체

(2) 지 역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규정한 농어촌지역중(전국의 군지역과 시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도시계획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각종 법규의 제한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지역.

(3) 품 목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이 전통식품으로 지정한 품목(전통식품개발사업에 한함)
- 국내산 농수산물로써 원료확보가 용이한 품목
-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확보가 가능하며 유희노동력을 활용하여 가공할 수 있는 품목
- 대규모 판매처, 지역단체, 기관등에 판로확보가 용이한 품목
- 원료 또는 제품의 보관, 수송이 용이한 품목
- 식품위생법등 각종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용이한 품목
-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가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 주류는 주세법에 의거 제조면허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대상품목에 포함

(4) 기 타

- '95년말까지 완료가능사업
- 생산자단체는 군지부 및 도지회와 사전협의하여 반드시 조합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시장, 군수는 조합이사회의 의결내용이 수록된 의사록을 확인한후 도지사에 진달)
- 영농조합법인은 사업계획에 대한 총회의결을 거쳐 의사록 첨부하여 신청
- 동일지역내, 동일품목 또는 유사품목(동일원료)으로 판단되는 품목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한 대상에서 제외
- 전통식품개발사업은 공동출자, 공동생산, 임가공, 취업형태로 참여하고 공동운영 또는 단독경영도 가능

4. 참여 형태별 지원규모 및 기준

가. 지원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지 원 기준액	지 원기 준			비 고
			보 조	용 자	자 담	
전 통	마 을 공 동	180	50%	30%	20%	
	생 산자 단 체 (영농조합법인)	200	"	"	"	(조합원 50인 미만, 출자금 5천만원 이상)
산	영농조합법인	500	"	"	"	조합원 50인이상100인미만 출자금 2억원 이상
		1,000	"	"	"	조합원 100인이상, 출자금 3억원 이상
지	단 위 조 합	1,000	50	30	20	특수조합 포함
	군단위 연합	3,000	40	40	20	특수조합 포함
	도단위 연합	5,000	30	40	30	"
	일·반·업·체	1,000	-	70	30	재춘비능가 포함

나. 지원부문

- (1) 건물 및 시설 : 공장, 창고, 저온저장고, 기타부속건물 및 전기시설, 오폐수처리시설등
- (2) 가공기계류
※ 대지, 차량제외

다. 용자조건

- (1) 농어민, 생산자단체 : 연리 5%, 3년거치 7년상환
 - (2) 일반업체(재춘비능가) : 연리 8%, 3년거치 7년상환
- ※ 광역특수조합 또는 단위조합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 시설비 30억원이상 규모의 가공사업에 대하여는 전문연구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한식연등)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규모를 적용

라. 추가지원

- (1) 분 야 : 공장증설, 시설현대화, 원료 및 제품보관창고, 저온저장고, 오폐수 처리시설등
- (2) 지원회수 : 1차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출선이 확보되어 활발히 수출되거나 내수분야가 유망한 업체는 2차까지 추가지원하되 2차는 용자 지원만 가능

※ 추가지원은 시행에 앞서 반드시 실적확인여 선형되어야 하고, 특히 시설비 30억원이상 추가소요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한식연등 관계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필요

5. 참여자격요건

가. 시설부지 확보

- (1)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사용권(지상권) 확보
- (2) 공장설립에 따른 각종 법규에 저촉되지 않거나 사업착수전까지 저촉사항이 해제될 수 있는 부지(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첨부)

나. 자부담능력

- (1) 마을공동
 - 총사업비에 대한 자부담능력 20%이상
 - 사업신청시 자부담금 50%이상 금융기관 예치(예금잔액증명서)
- (2) 일반업체 및 재촌비능가
 - 총사업비에 대한 자부담능력 30%이상
 - 사업신청시 자부담액의 30%이상을 금융기관예치(예금잔액증명서)

다. 담보물

- (1) 본인소유 : 본인소유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2) 타인소유 : 소유자의 인감증명 및 사용승락서

라. 영농조합법인은 '94. 10. 30이전에 등록된 법인으로 다음서류 첨부

- (1) 정 관
- (2) 사업계획에 대한 총회 의사록(참석자명단포함)
- (3) 조합원명부(유자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첨부)
- (4) 출자금 증빙서류(예금잔액증명서)

6. 지원대상 예비후보자지정

- (1)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업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포기할 경우에 대비,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지원대상자 정수의 10%범위내에서 예비후보 지정
→ 유고시 순차적으로 승계
- (2) 전농식품 : 도별로 관리
중도포기자 발생시 자도내에서 예비후보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체
→ 중앙에 결과보고
- (3) 산지일반업체 : 중앙에서 관리

7. 도별 추천한도

구 분	추 천		계
	경기 - 경남	제 주	
○ 전 통 식 품	12 개소	3 개소	22 개소
○ 산 지 가 공	10	4	84
- 생산자 단체	6	2	50
- 일반 업체	4	2	34
- 쌀가공식품시설 현대화	2	-	16

8. 지원대상업체 추천 및 선정

가. 지원대상자 지정신청 → 관할 시,군(시행규칙 제5조)

(1) 구비서류 □ 전통식품 : 별지 1호, 별지 4호(3부)
 □ 산지가공 : 별지 1호, 별지 5호(3부)

(2) 제출기한 : '94. 10. 31

나. 지원지정후보자 선정진달 : 시장,군수 → 도지사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1) 사업계획서를 종합검토한 후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조서(별지 2호) 및 시장,군수 의견서 첨부 지원대상자 추천

(2) 제출시한 : '94. 11. 30

다. 지원대상자 추천 : 도지사 → 농림수산부장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1)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추천조서(별지 3호) 및 도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지원대상자 지정추천

(2) 제출기한 : '94. 12. 31

라. 농,수,축협중앙회장 : 회원조합의 사업계획서 검토 및 조정

(1) 부지확보등 사업착수 가능여부 검토

(2) 자체자금 조달능력 여부

(3) 제품개발내역 검토

(4) 사업 타당성검토

※ 사업성이 낮고 사업계획이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신청 포기토록 유도

마. 사업성검토(쌀가공식품시설현대화사업)

농림수산부장관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장

바. 지원대상자 지정 및 통보 : 농림수산부장관 → 도지사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 (1) 각도별 추천업체를 대상으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다음 '95예산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자 지정
- (2) 지원대상자 지정결과를 각도지사에게 시달(도, 시·군에서는 대상사업자에 지체없이 통지)
- (3) 쌀가공식품시설현대화사업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장의 사업성 검토결과에 의거 '95예산 범위내에서 선정

9. 사업실시요령

가. 사업시행

- (1)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시장, 군수)
- (2) 사업기간 : '95. 1. 1 - 12. 31
- (3)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
 - 사업계획서 제출시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사업신청시 제출서류)
 - 위치도
 - 공장예정지 지적도
 - 부지소유권자 또는 권리자의 사용동의서
 - 공사개요서
 - 개략설계도서
 - 개략공사비조서
- (4) 시장, 군수는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신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사업계획을 승인(제출일로 부터 45일이내)
- (5) 시장, 군수는 사업기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 실시
- (6) 전농식품(농어가공등)의 경우 사업대표자는 자체정관작성 및 공동출자자 회의소집, 사업결의 실시

10. 자금지원

가. 자금지원계획

- (1) 지원부문 : 시설자금(건축 및 기계설비)
- (2) 재원(보조 및 용자) : 농특회계
- (3) 용자취급기관 : 농.수.축협중앙회(계통조합)

나. 보조금지급

- (1) 보조금배정 : 농림수산부장관 → 도지사(시장, 군수)
- (2)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신청 : 사업자 → 시장, 군수 → 도지사
 결정 : 도지사(시장, 군수) → 사업자
- (3) 보조금확정(정산) : 도지사가 정산을 실시한후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11.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요령

- (1) 사업계획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다만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의거 처리하고 보고
 - 지원금액에 변동을 요하는 계획변경 : 장관 승인
 -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계획변경 : 도지사 승인
 - 품목변경 : 도지사 승인
 - 품목추가 또는 일부변경 : 신고(시장, 군수)
 - 사업장변경 시, 군관내 : 시장, 군수 승인
 시, 군관외 : 도지사 승인
 - 대표자변경 농어민, 생산자단체 : 신고(시장, 군수)
 일반업체 : 시장, 군수 승인
 -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 군수 승인

- (2) 도지사(시장, 군수)는 사업계획에 의거 연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3) 정부지원사업자는 년도별 수입 및 지출상황(보조금은 별도 계리), 결산상황(자산, 자본, 부채, 손익상황등), 제조원가, 매출현황, 참여가구현황, 임금지급상황등에 관한 장부를 사업장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통일된 서식을 정하여 비치토록 할 수 있음
- (4) 시장, 군수는 보조금과 용자금(원리금 상환기간 만료이전)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당초 사업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토록 조치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과를 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5) 시장, 군수는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비 조달계획, 원료조달계획, 생산 및 판매계획, 소득효과등을 제출받아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함
- (6)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교부조건, 용자취급기관의 여신관계규정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함

나. 행정사항

(1) 사업추진관련 보고사항

보고명	보고기한	최초작성자	최종수보자	서식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실적	매월 익월 5일	시장·군수	농림수산부장관	붙임
생산 및 판매실적	매반기 익월10일	"	"	"
보조금 정산실적	'96. 1. 30	도지사(시장, 군수)	"	"
자금집행실적(최종)	'96. 4. 30	시장·군수	"	"

- (2) 사업별로 사업현황 및 관리카드와 사업의 추진 및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사업추진 상황일지를 작성 비치
- (3) 도지사는 정부지원사업 홍보를 위하여 준공전 안내판 및 준공후 부착물을 설치 하여야 함
- (4) 수시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을 도모

12. 지원대상자 지정신청서 제출서류

가. 산지가공지원대상자 지정신청서(별지 1호 서식)

나. 산지가공지원후보자 선정조서(별지 2호 서식)

다. 산지가공 지원대상자 추천조서(별지 3호 서식)

라. 사업계획서

(1) 전릉식품(별지 4호서식)

(2) 산지가공(별지 5호서식)

(3) 쌀가공식품 시설현대화(별지7호 서식)

마. 의견서(도지사, 군수, 농협장, 농어촌지도소장, 식품관계전문가)

바. 공장예정지 관계서류

(1) 토지대상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지적도(위치표시)

(4) 기타 토지사용권 관계서류

사. 담보물 현황

(1)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등(자. 타소유 포함)

(2) 사용승락서(타인소유)

아. 예치금 확인서(잔액증명서등)

자. 영농조합법인

(1) 정 관

(2) 총회 의사록(참석자명부 포함)

(3) 조합원 명부(유자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차. 기타 참고자료

※ 위 순서에 의해 편철

II. 포장개선사업지원

1. 지원방향

- 가. 전통식품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낙후된 포장디자인과 용기구입에 필요한 자금지원
- 나. 수출용 포장디자인개발에 우선 지원

2. 지원대상 및 기준

가. 지원대상

- (1) '89년 이후 정부지원 전통식품개발사업체(수출중인 업체 우선지원)
- (2) 산지일반가공사업 지원업체중 생산자단체
- (3) 특산단지 지정업체(식료품)중 사업성이 높은 단지
- ※ 사업비의 50%이상 포장재(용기)구입만을 필요로 하는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지원기준

- (1) 포장디자인개발 : 업체당 2회까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새로운 제품개발에 따라 디자인개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할 수 있으며, 수출을 위하여 새로운 디자인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지원
※ 수출목적으로 추가지원시 수출계약 체결내용 확인후 지원
- (2) 포장재(용기) 지원 : 업체당 1회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새로운 제품 개발에 따른 디자인개발로 인하여 포장재구입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수출용 포장용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지원
※ 수출목적으로 추가지원시 수출계약 체결내용 확인후 지원

다. 지원규모

포장디자인개발 및 용기구입자금으로 업체당 최고 30백만원을 기준 50%보조, 30%용자, 20%자담

라. '94실적 및 '95계획

(단위:개소, 백만원)

구 분	'94					'95계획 (예산)				
	사업량	계	국고보조	용자	자담	사업량	계	국고보조	용자	자담
포장개선비	60	1800	900	540	360	80	2400	1200	720	480

마.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개소, 억원)

구분	'93까지	'94	'95	'96-'98	'99-2004	계	
사업량	172	60	80	450	1,800	2,562	
사업비	계	30	18	24	135	1,800	2,007
	국고보조	15	9	12	68	900	1,004
	용자	7	5	7	41	540	600
	자담	8	4	5	26	360	403

3. 사업자 선정

가. 자금수요파악

- (1) 도지사는 업체별, 용도별로 자금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
- (2) 농림수산부장관은 '95예산 범위내에서 각 도별로 조정한 후 지원계획을 확정. 시달

나. 사업자 선정

- 도지사는 자금지원계획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자로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시행

4. 사업실시요령

가. 사업시행

- (1)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시장, 군수)
- (2) 사업기간 : '95. 1. 1 - 12. 31

나. 포장디자인개발의뢰기관

- (1)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 (2)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전문회사 신고를 필한 업체
- (3)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장으로 부터 각대학 산업디자인과 지도위원으로 위촉된 교수
- (4) 단, 수출을 위하여 현지에서 포장디자인을 개발하는 경우는 지원가능

다. 세부실시요령

- (1) 사업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포장디자인개발의뢰기관과 협의하여 디자인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등 즉시사업을 실시
- (2) 각 도지사는 사업계획대로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특히 디자인개발 계약체결 및 용기구입사항을 철저히 확인

라. 자금지원

- (1) 보조금지급
 - 보조금배정 : 농림수산부장관 → 도지사
 - 보조금 신청 및 결정

□	신 청 : 사업자 → 도지사(시장, 군수)
	결 정 : 도지사 → 사업자
 - 보조금확정(정산) : 도지사가 보조금을 정산한후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
- (2) 융자금지급
 - 제 원 : 농특회계
 - 지원 조건 : 년리 5%, 1년거치 4년상환
 - 융자금 배정 : 농림수산부장관 → 농협중앙회장
 - 용 자 요 령 : 전통 및 산지일반가공사업 지원내용 참조

Ⅲ. 가공원료자금지원

가. 사업목적

- (1) 농수산물 특성상 원료수매자금이 일시 집중됨으로써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정부지원 산지가공업체의 효율적인 육성과 성출하기 원료농수산물의 가격안정에 기여
- (2) 시설자금과 함께 원료자금 지원으로 농어민 및 생산자단체등의 가공산업 경영개선

나. 지원대상 및 부문

- (1) 정부지원 전농식품 및 산지일반 가공업체외 국내산 가공원료구입자금

다. 지원기준 및 조건

구 분	지원조건	용자한도	용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식품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 - 생산자단체 	연리 5%, 2년 이내 "	1억원 이내 2억원 이내	원료구입 소요자금의 70%이내 "
○ 특산단지(식품업체)	"	1억원 이내	"
○ 산지일반 가공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단체 - 일반가공업체 	연리 5%, 2년 이내 연리 8%, 2년 이내	3억원 이내 "	" "

○ 지원자금 : 농안기금

※ 수출 및 내수기반이 확고한 업체와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상 가공의 확대가 필요한 품목을 가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용자한도 초과지원

※ 김치산업육성지원차원에서 김치가공업체에 대하여 용자한도를 5억원이내에서 지원

라. '94실적 및 '95계획

(단위:개소, 억원)

구 분	'94					'95 계획				
	사업량	계	국고보조	용자	자담	사업량	계	국고보조	용자	자담
원료구입자금	250	430	-	300	130	300	543	-	380	163

마.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개소, 억원)

구 분	'93까지	'94	'95	'96-'98	'99-2004	계	
사업량	309	200	300	1,150	2,000	3,959	
사업비	계	520	429	543	3,286	5,714	10,492
	국고보조	-	-	-	-	-	-
	용자	364	300	380	2,300	4,000	7,344
	자담	156	129	163	986	1,714	3,148

바. 사업자 선정 및 관리요령

(1) 도지사(시장, 군수)는 분기별, 업체별 자금신청시 다음 사항을 고려, 적격업체를 선정 후 매분기초 15일 이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별지 6호)

(2) 자금신청시 고려할 사항

- 구입원료 : 원료의 생산시기가 자금신청시기와 일치여부 확인
(단, 연중생산이외거나 쌀등과 같이 저장성이 있어 연중구입이 가능한 품목은 제외)
- 담보능력 : 담보능력을 고려하여 신청하되 이미 대출받은 실적이 많아 추가대출이 곤란한 경우 제외(대출기관으로 부터 확인)
- 운영실태 : 생산 및 판매실적이 우수한 업체를 우선선정(수출포함)
- 기 타 : 과거 담보부족으로 미대출된 업체, 수입농산물 사용 또는 우려가 있는 업체등은 제외

(3) 도지사(시장, 군수)는 업체별로 배정된 자기에 대한 용자 실행상황을 수시 파악하여 용자포기(전액 또는 일부) 업체가 있을 경우 즉시 반납 또는 대상자 변경신청

(4) 도지사(시장, 군수)는 업체별 배정된 자금을 지원목적외에 사용치 못하도록 지도강화(지원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 즉시 자금회수 조치)

< 준공전 안내문 >

1. 2m

0. 8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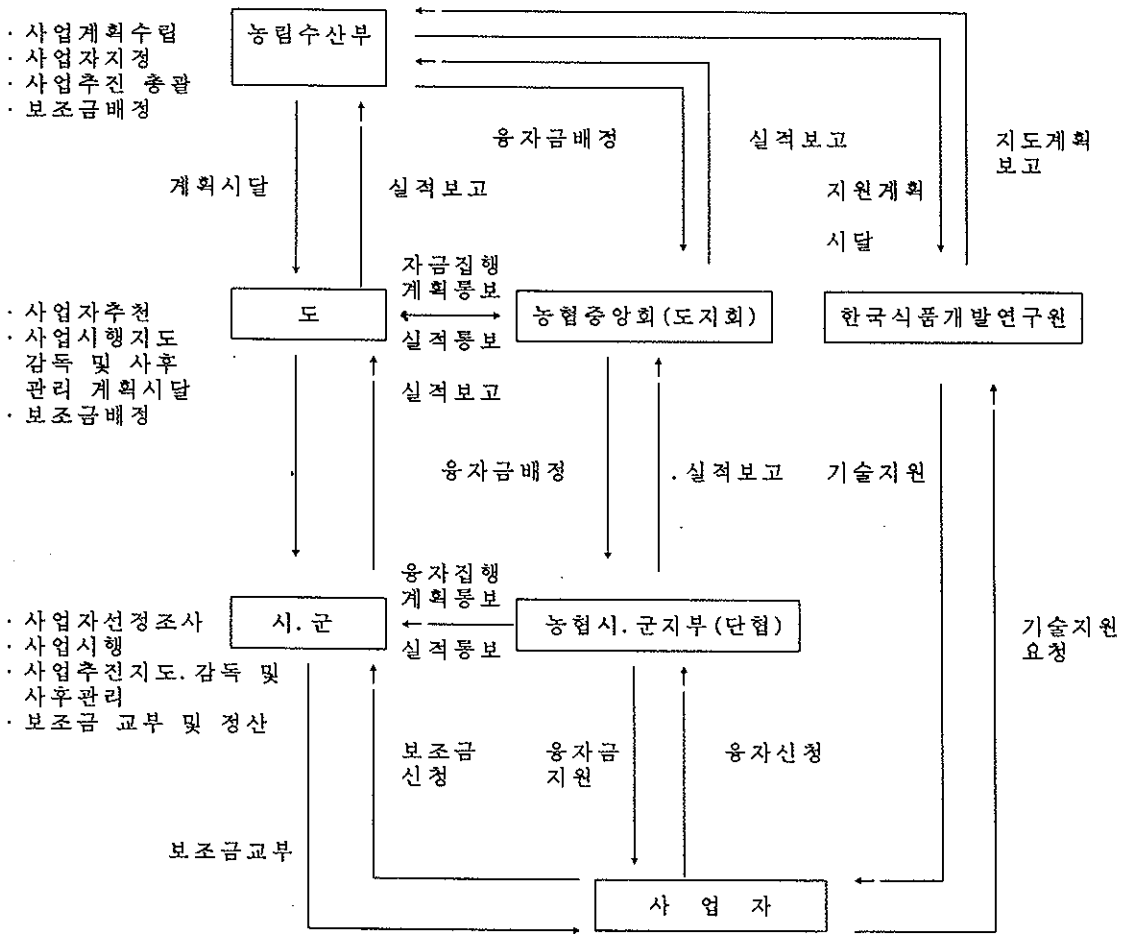
본 가공공장은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해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하는 것임.

- 사업명 :
- 위 치 :
- 사업비 :
- 사업기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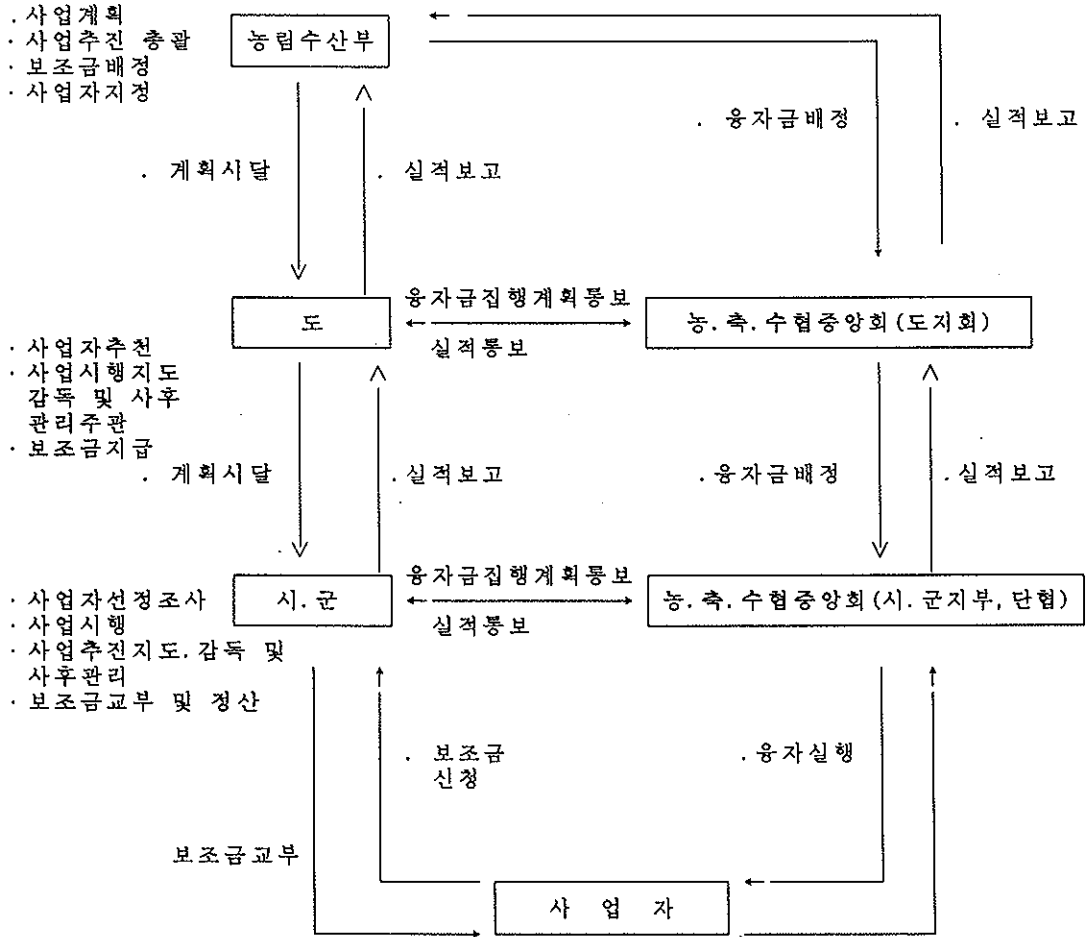
사업시행자 ○ ○ ○

※ 사업장에 입간판 형태로 설치하되 크기는 상황에 따라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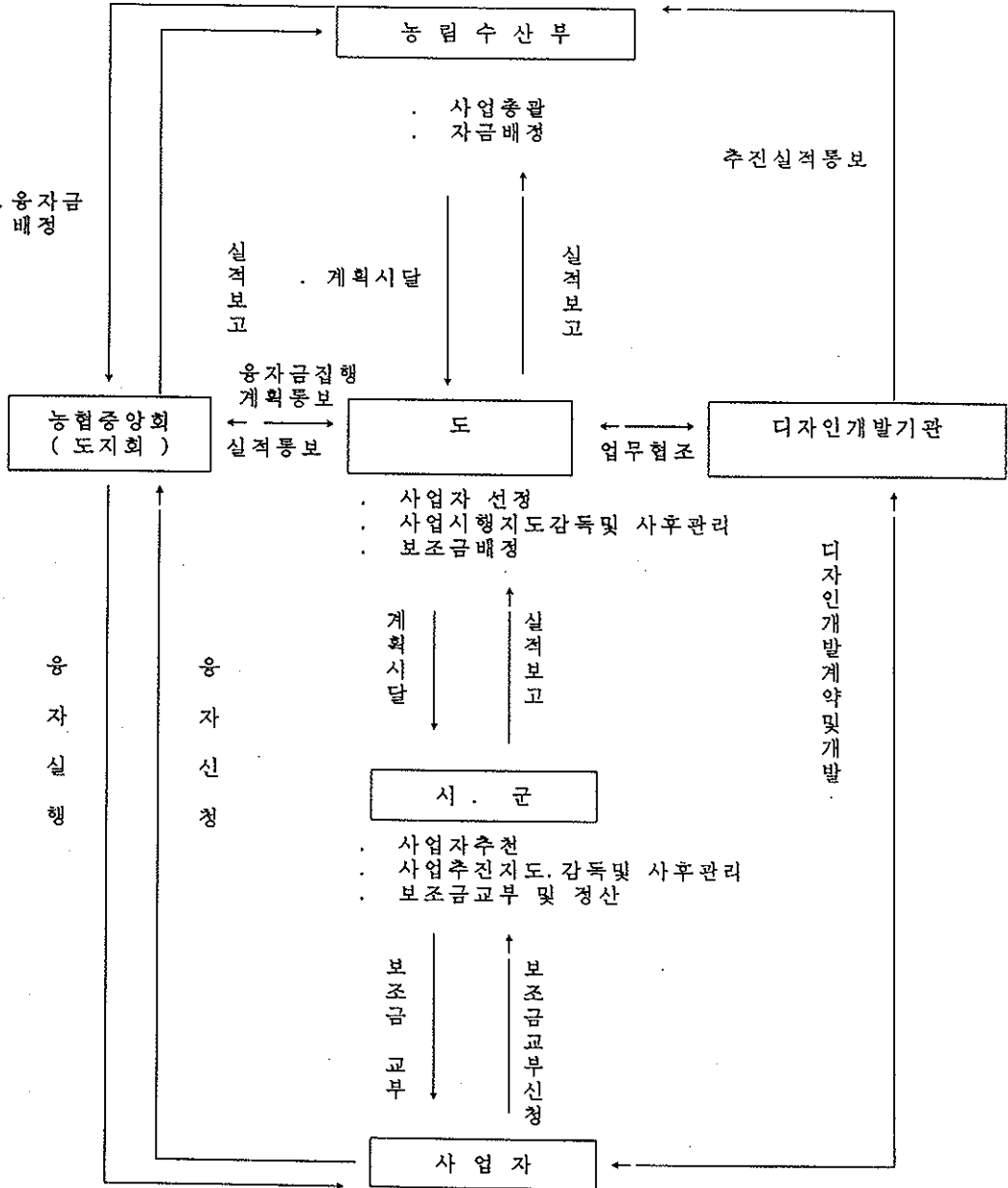
전통식품개발사업추진체계도



산지일반가공사업 추진체계도



포장개선사업 추진체계도



IV. 신 청 서 식

- 산지가공지원대상자 지정신청서 (별지1호)
 - 산지가공지원후보자 선정조서 (별지2호)
 - 산지가공지원대상자 추천조서 (별지3호)
 - 전통식품개발 사업계획서 (별지4호)
 - 의견서 (도지사, 시장, 군수) (별지4-1)
 - 의견서 (농촌지도소장) (별지4-2)
 - 의견서 (농협군지부장) (별지4-3)
 - 산지일반가공 사업계획서 (별지5호)
 - 의견서 (연구기관 또는 식품가공학전공교수) (별지5-1)
- ※ 도지사 및 농협군지부장의견서는 별지4-1 및 별지4-3서식 활용
- 가공원료자금 신청서 (별지6호)
 - 쌀가공식품시설현대화사업계획서 (별지7호)

(앞면)

산지가공지원대상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6 월
신청자	사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전화		
	사업명		가공품목		주원료		
	공장예정지						
	시설규모	부지	㎡	건물	㎡	설비	
	재원조달 (백만원)	계	정부보조	정부용자	금융기관차입	자부담	
	사업형태			구성원내용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부장관 도지사 귀하 시장·군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3부.						수수료	
						없음	

27273-04411 민
'93. 8. 31. 승인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l)

산지가공지원후보자 선정조서					
사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명	가공품목		주원료		
공장 예정지					
구 분	항 목	양 호	보 통	미 흡	부적합
자 격 요 건	1 대표자의 지도력				
	2 구 성 원				
공 장 입 지	3 인·허가요건				
	4 기존사업자와의 경합성				
	5 원료권 형성				
	6 주변환경				
사 업 계 획	7 시설계획				
	8 생산계획				
	9 원료조달계획				
	10 자금조달계획				
	11 판매계획				
신 용 상 태	12 부 채				
	13 자기자본 확보				
	14 담보물 보유				
사 업 전 망	15 국내시장 경쟁력				
	16 해외시장 경쟁력				
종 합 평 가				우선순위	
구비서류 : 1. 시장·군수 의견서 1부. 2. 전문가 의견서 1부.					

27273-03511 민
'93. 8. 31. 승인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l)

[별지 제3호 서식]

산지가공지원대상자 추천조서

순위	사업제명	공장 소재지	대표자	사업명	가공 품목	추원료	사입 형태	구성원	시설규모			자금조달단계회						
									부지 (㎡)	건물 (㎡)	설비 (㎡)	계	정부 보조	정부 융자	금융 기관 차입	자 부 담		

전통식품개발 사업계획서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

품 목 :

전화번호 :

1.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사업의 필요성

○ 기대효과

2. 사업주체

가. 개요

사업명 (품목)			
소재지			
사업규모	부지 : 평, 건물 : 평	시설자금소요액	백만원
공동참여농어가수	명	출자총액	백만원, 1인당 평균 만원

※ 공동참여자 연명날인 증빙서 첨부

나. 대표자 현황

성명		년령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민등록상의 주소 기재			전화번호	디디디 번호도 포함
주요경력	기간	내용		재산현황(백만원)	
				계	
지역내 현직책				동산	
				부동산	
				기타	

3. 세부사업 계획

가. 재원조달 계획

항 목	규모(평)	단가(천원)	재원조달 (백만원)				비 고
			계	국고	용자	자담	
부 지 (자담)							
시 설 자 금	건 물						
	기 계 및 설 비	소계					
	계						

나. 원료조달 계획

년도별	원료명	조달처	조달방법	조달시기	소요물량(톤)	자금 소요액 백만원	비 고

다.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

제품명	규 격 (Kg)	단 가 (천원)	생산 및 판매물량(톤, 백만원)				판매방법 및 판매처	비 고
			'95		'96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 과거 생산판매 실적이 있을시 비교에 기재하고 증빙서류 첨부

라. 공동참여 농가현황

성명	주소	참여형태	소유경지 면적(평)	제품원료 생산량		비고
		출자액 (만원)		물량 (톤)	금액(만원)	
계						

마. 수출, 판매실적 (추가지원 요구업체인 경우에만 해당)

구분 년도	품목	물량	금액	주수출국	비고
수출			千\$		
판매			백만원		

※ 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 첨부

바. 금융기관 차입내역(사업계획 신청일 이전)

거래은행	차입 금액 (백만원)	차입일	상환기간	상환일	상환잔액 (백만원)	비 고
계						

사. 사업부지현황

지번	지목	면적 (평)	소유주	소재지	전용가능여부	비 고
계						

아. 담보물 현황(미담보 상태인 담보물만 기재)

소유자	종 류	추정가격(백만원)	위 치	비 고
계				

(별지4-1)

의견서

사업명 :

대표자 :

소재지 :

(의견)

- 부지확보여부, 확보된 부지의 지목, 전용가능여부등
-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전망, 기대효과 등을 상세히 개진
- 시장, 군수와 도지사 의견서 업체별로 각각 별도작성

1994. . . .

지사(시장, 군수)

인

(별지4-2)

의견서

사업명 :

대표자 :

소재지 :

(의견)

- 해당품목 원료의 생산, 동향, 품질 및 농어가 소득기여도 등

1994.

군농(어)촌지도소장 인

(별지4-3)

의견서

사업명 :

대표자 :

소재지 :

(의견)

- 자기자본 조달능력 및 구성원의 신용상태 조사
- 투자의 효율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1994.

농협

군 지부장

인

산지일반가공사업계획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품 목 :

전 화 번 호 :

1.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가. 사업의 필요성

1) 입지조건

2) 타당성

3) 기타

나. 기대효과

1) 농가소득증대 측면

2) 지방부존자원 활용측면

3) 고용효과

4) 향후전망

5) 기타

2. 사업주체

가. 사업개요

사업명		주요품목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규모	부지 건물	평평	기계류 점(건)
시설자금 총소요액	백만원	시설자금 지원요청액	백만원 (보조 , 융자)

※ 창업, 증설구분

※ 보조는 생산자단체에 한함.

나. 대표자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
주소				
주요경력	기간	내용		
지역내 현직책				
재산현황 (백만원)	동산	부동산	기타	계

※ 주민등록등본, 관용이력서 별첨.

3. 제품개발 내역(계획)

품 목		원 료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개발내역(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조달 : - 제조가공방법 : - 제품특징 및 내용 : ○ 연구용역상황(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 약 일 : - 계약완료일 : - 계약 기관 : - 계약 내용 : - 비 용 : 			

4. 건설계획.

가. 입지계획

소재지				
규모	대지	평	기계류 : 종, 점	
	건물			
입지조건	원료구입, 판로, 고용조건 등을 기재			
용수	사용량 기재 (월)			
전력	사용량 기재 (월)			
도로				
통신				
기타				
공사	착공예정일		준 예 정 일	

나. 주요투자시설 명세

(단위 : 천원)

항 목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대 지 (자부담)					
2. 건 물					
가.					
나.					
다.					
라.					
마.					
바.					
사.					
3. 구축물					
가.					
나.					
다.					
4. 가동기계					
5. 공기구비품					
6. 차량운반구(자부담)					
7. 전기공사					
8. 설계비					
계					

다. 주요가공기계 명세

(단위 : 천원)

기 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구 입 처

라. 사업부지 현황

지번	지목	면적 (평)	소유주	소재지	전용가능여부	비고
계						

5.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가. 세부투자계획

항 목	규모 (평)	단가 (천원)	소요 자금 (백만원)						
			계	업 체 부 담			정부지원 요청		
				계	자기 부담	외부 차입	계	보조	융자
부지매입 (자담)									
시 설 자 금	건 물 - 작업장 - 일반창고 - 저온창고 - 사무실 등 부대건물 - 기 타								
	구축물 - 용수시설 - 수배전 시설 - 오.폐수 시설 - 기 타								
	가공기계								
시설자금 계									
총 계									

- 저온창고는 100평 기준으로 평당 250만원기준

나. 업체부담금 조달방법

(단위 : 백만원)

재 원	금 액	조달시기	조달방법	비 고
자기자금 외부차입				
계				

※ 외부차입 : 정부지원 요청액은 제외

다. 금융기관 차입내역

(단위 : 백만원)

거래은행	금 액	차입일	상환기간	차입조건	상환일	상환잔액
계						

※ 차입조건 : 년리 % 기재

라. 담보물 현황

(단위 : 백만원)

소 유 자	종 류	추정가액	소 재 지	비 고
계				

6. 원료조달 계획

년 도 별	원료명	조달처	조달방법	조달시기	소요물량 (톤)	자금소요액 (백만원)	비 고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7. 생산 및 판매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품명	단 가 (천원)	생산 능력		생산 계획		판매 계획			비고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계	내수	수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8. 판매방법 및 판매처

판매계획 :				
제품명	수량	금액	판매처	판매실적

※ 판매계획은 구체적으로 작성

※ 판매처가 확보된 경우 세부내역 첨부

9. 수출·판매실적(추가지원업체인 경우에 해당)

구분 년도	품목	물량	금액	주수출국	비고
수출			千\$		
판매			백만원		

※ 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 첨부

(별지5-1)

의 건 서

회 사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의견)

사업전망 지역특성상 적합여부등 검토

년 월 일

대학교 학과 교수 인

(연구기관일 경우 기관명 직위 성명 기록)

[별지 제6호 서식]

가공원료자금 신청서

(단위 : 천원)

입체명, 대표 (지원년도, 진품식품 투명도, 산지가장부후)	소재지	주요생산품목	원료자금소요내역				응자요청액	
			원료명	단가 (천원/kg)	수량(톤)	소요액		
						계		자기조달
총						계		

[별지 제7호 서식]

쌀 가공식품 시설현대화 사업계획서

업 체 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1.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가. 사업의 필요성

- 1) 입지조건
- 2) 타 탕 성
- 3) 기 타

나. 기대효과

- 1) 농가소득증대방안
- 2) 쌀 소비확대 효과
- 3) 지방 부존자원 활용방안
- 4) 고 용 효 과
- 5) 향 후 전 망
- 6) 기 타(전통식품 개발보급, 국민식생활개선 등)

2. 사업주체

가. 사업개요

사 업 명		주요품목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규모	부지 건물	평 평	기 계 류 집(건)
총소요액	백만원	지원요청액	백만원

나. 대표자 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주 소					
주요경력	기 간	내 용			
지 역 내 현 직 책					
재산현황 (백만원)	등 산	부 등 산	기 타	계	

다. 쌀제품 생산실적(최근 3개년)

(단위 : M/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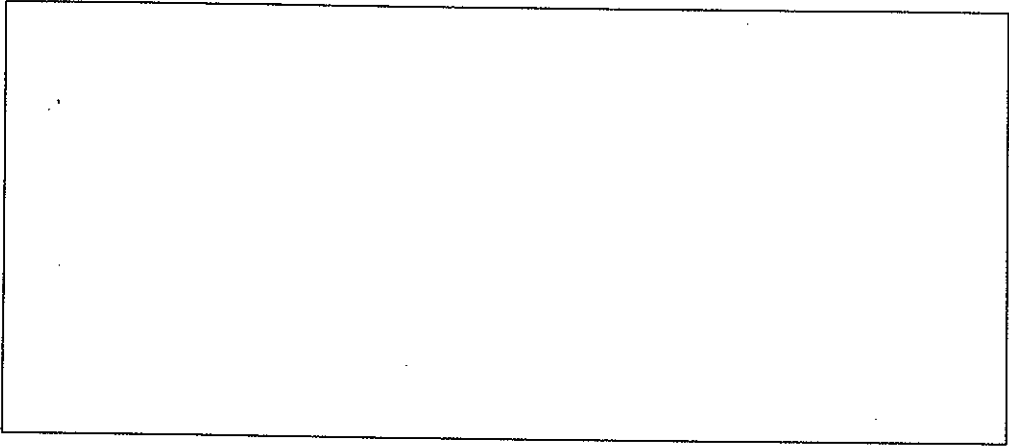
구분 년도	제 품 명	제품구성비(%)		월간능력		년 간 실 적		
		쌀	기타	쌀 소요량	제 품 생산량	정부미 구입량	년 간 사용량	제 품 판매량

3. 건설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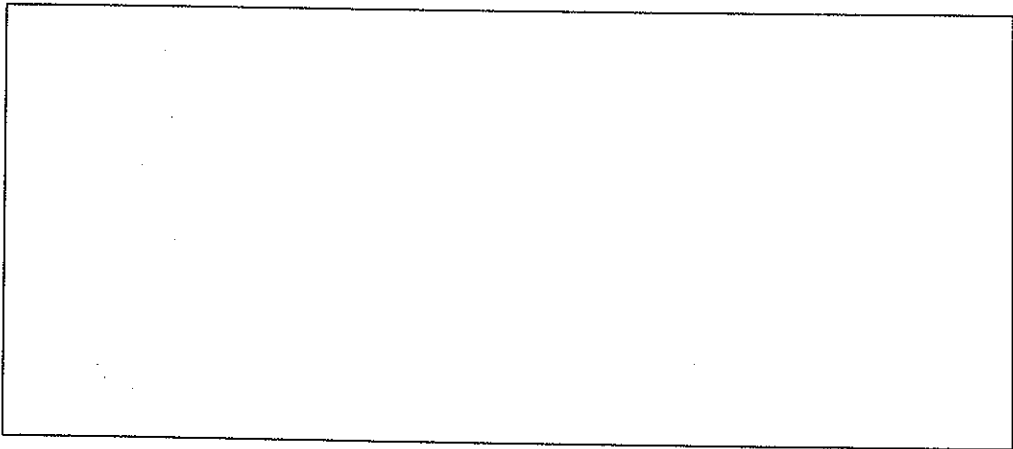
가. 입지계획

소재지				
규모	대지	평	기계류 :	
	건물	평		
입지조건	원료구입, 판로, 고용조건 등 기재			
용수	사용량 기재(월)			
전력	사용량 기재(월)			
도로				
기타				
공사	착공		준공	
	예정일		예정일	

나. 공장 및 시설배치계획



다. 제품별 생산공정도(자동화비율 %)



라. 주요 투자시설 명세

(단위 : 천원)

항 목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대 지					
2. 건 물					
가. 사 무 실					
나. 수 위 실					
다. 작 업 장					
라. 저 장 고					
마. 숙 직 실					
바. 일 반 창 고					
사. 기 타					
3. 구 축 물					
가. 용 수 시 설					
나. 수 배 전 시 설					
다. 기 타					
4. 가 공 기 계					
5. 공 기 구 비 품					
6. 차 량 운 반 구					
7. 전 기 공 사					
8. 설 계 비					
계					

마. 주요 가공기계 명세

(단위 : 천원)

기 계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구 입 비
합 계					

4.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가. 세부투자계획

항 목	규모 (명)	단가 (천원)	소요자금 (백만원)					비고
			합 계 (1)+(2)	업체부담			정지자 (2)	
				소계 (1)	자기 자금	외부 차입		
부지매입자금 (자담)								
시설 자금	건물 - 작업장 - 창고 - 구축물 -							
	소계							
	기계및설비 - -							
	소계							
운전자금 자담	원재료비 인건비 제경비							
	소계							
총 계								

※ 정부지원자금은 총 소요자금의 70%이내 이어야 하며, 부지매입 및 운전자금은 자담으로 충당

나. 업체부담금 조달방법

(단위 : 백만원)

재 원	금 액	조달시기	조달방법	비 고
자기자금 외부차입				

※ 외부차입 : 정부지원자금은 제외

다. 외부차입 세부내역

차입기관	금 액	차입일	상환기간	차입조건	상환일	상환잔액
계						

※ 차입조건 : 년리 %기재

라. 담보물현황

소유자	종 류	추정가액	소 재 지	비 고
		백만원		
계				

5. 원료조달계획

년도별	원료명	조달처	조달 방법	조달 시기	소요물량 (톤)	자금소요액 (백만원)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6. 생산 및 판매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품명	단 가 (천원)	생산능력		생산계획		판매계획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내수	수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7. 판매방법 및 판매처

(단위 : 백만원)

판매경로				
제품명	수 량	금 액	판매처	판매실적

※ 과거 판매실적이 있을시 관련자료 별첨

8. 고용계획

구 분	계	사무직	생 산 직			비고
			기술자	기능공	단순노동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기술자는 기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공계 졸업자 이상
 기능공은 기능사보이상 자격취득자 또는 공고졸업자 이상

9. 제품별 쌀 소요량(추정)

(단위 : M/T)

생산제품명	제품구성비(%)		월간능력		연도별 쌀소요량(1)				
	쌀	기타	쌀 소요량	제 품 생 산 량	계				

※ 주 : 1) 공사준공후 3개년간 쌀소요량 기재

10. 사업추진 일정계획

구 분	년 분기 월	년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립 ○ 사업승인 ○ 실시설계 ○ 공장신축 ○ 부대공사 ○ 부대건물 - 기 속 사 - 사 무 실 - 창 고 - 전 시 장 - 수 위 실 - 식 당 - 기 타 ○ 기계시설치 ○ 공해방지설 ○ 수 배 전 설 ○ 용수시설 ○ 공사완료 ○ 입 주 ○ 가 등 													

※ 추진기간을 (↔)으로 표시

11. 각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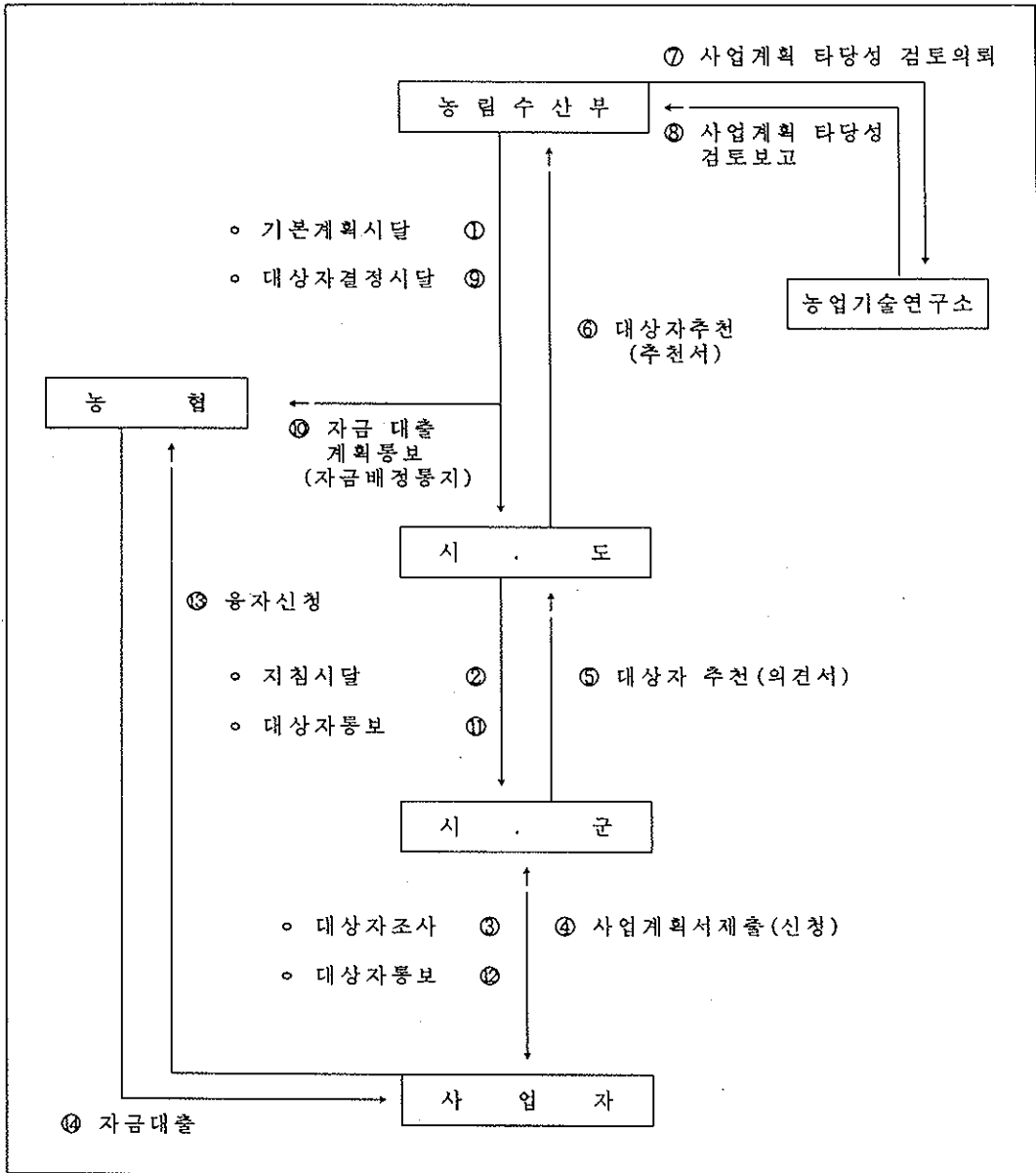
본 사업계획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틀림 없으며,
차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제시된 사업목표를
소정기간('94. . . . ~)내에
수행하지 못할때는 당국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 하겠음을
서약함.

1994.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12. 사업체계도



유가공시설지원사업(공공계획)

1. 목 적

- 생산자조합의 원유처리능력을 확충하여 우유수급안정에 기여
- 개방화 추세에 대응한 유가공시설 보완으로 생산성향상 유도

2. 추진방향

- 우유 유통개선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낙농조합의 유가공장지원 육성
 - 시유의 광역유통체계를 점차 지역유통체계로 전환하여 유통비용 절감
- 생산자조합 중심으로 유가공처리시설의 신증설·이전 및 보완 추진
- 음용유(시유·발효유등) 위주의 가공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자금지원

3. 사업신청자격 및 우선순위

가. 사업대상자 : 지역축협 및 낙농(우유)협동조합

나. 대상조합 자격요건 및 우선순위

《 대상조합 자격요건 》

- 유가공업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조합으로서 재무구조가 건실한 조합
- 유가공장 신설조합은 집유선 분쟁이 없고, 자체 원유확보가 가능한 조합
- 집유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집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합

《 대상조합 우선순위 》

- 시설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신청을 한 조합
- 사업신청 규모가 용자한도액(기지원분을 포함하여 자기자본의 400%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조합
- 유가공시설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합
- 시·도지사가 우유수급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주체 : 시·도지사

나. 사업기간 : 매년 1-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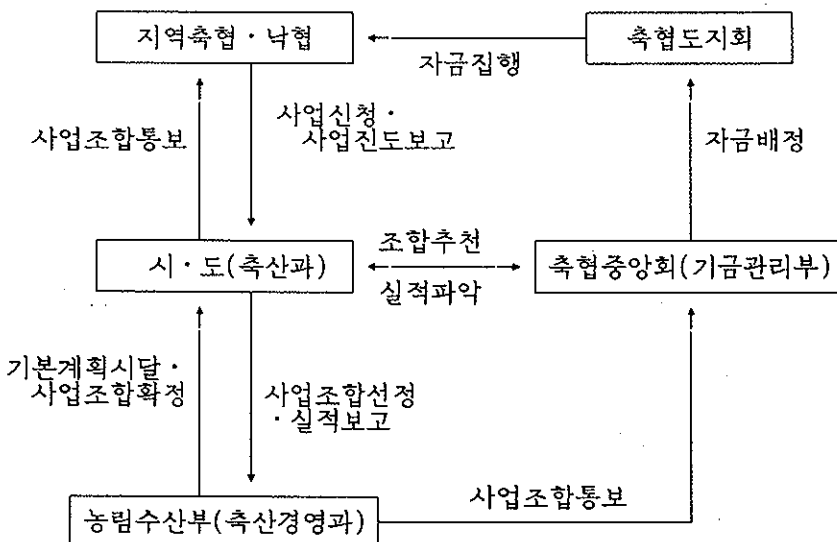
다. 사업내용

- 지원대상사업 : 유가공시설 신증설·이전 및 보완사업
- 지원한도 : 전년도 회원조합결산자료(축협중앙회)에 의거 자기자본의 40% (기지원분 포함)이내에서 용자 지원
- 자금용도 : 사업대상조합의 유가공시설 신증설·이전 및 보완에 필요한 시설 자금(시설현대화·자동화·전산화 설비시설등에 우선 투자하되, 부지구입비 및 운영자금은 지원대상에 제외)

라. 지원조건

- 용자기간 : 8년(3년거치 5년균분 상환)
- 금 리 : 연리 5%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마. 사업추진체계도



5.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사업희망조합은 조합현황 및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 사업 신청
- 시·도지사는 축협중앙회장의 추천서를 받아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신청조합에 대하여 사업조합으로 선정해 줄것을 농림수산부에 요청('95사업은 '95.2말까지)
 - 시·도지사는 신청조합의 집유선 조정(분쟁)여부 및 원유확보 상황등을 종합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요청
- 축협중앙회장은 신청조합의 자기자본 규모·재무구조 및 사업비 조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추천(조건부 추천 불가)
- 농림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한 신청조합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조합으로 최종 확정하여 해당시·도와 축협중앙회에 통보하여 사업 추진
- 사업조합이 세부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

6. 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본 사업의 사후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사업대상조합에 통보
- 시·도지사 및 축협중앙회장은 세부사업이 중복 지원되거나 용자금의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축협여신규정등에 의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
- 시·도지사는 다음사항을 농림수산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 고 일	서 식	비 고
유가공시설지원사업 중간실적보고	매년 6.31한	중전과 같음	서식은 사 업조합에 직접통보
유가공시설지원사업 완료실적보고	매년 12.10한		

7. 사업안내기관

- 중 앙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전화 02-500-2674)
- 시·도 : 농정국 축산과(시는 농정과), 축협중앙회 시·도지회

부분육 가공공장 건설(공공계획)

1. 목적

- 냉장육 유통을 위한 공급기지 지원
- 생축유통에서 부분육 유통체계로 점차 전환

2. 추진방향

- 건설목표 : 2개소(1개소는 (주)롯데햄으로 '94년도에 완료)

3. 사업신청자격 : 전북(주) 부천산업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 가. 사업주관 : 전라북도지사
- 나. 자금수요자 : 전북 이리 소재(주)부천산업
- 다. 사업내용 : 1개소('92년부터 계속 사업)
 - '95 사업비 : 1,200백만원(용자)
 - 사업기간 : '92-'95
 - 지원구분 : 용자 70% (연리 8%, 3년거치 7년균분상환) 자담 30%

5. 사후관리 : 전라북도지사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중 양 : 농림수산부 축산국 축산물유통과(02-503-7283)
 - 시·도 : 농정국(축산과)
 - 시·군 : 산업과(축산과)

육가공시설 지원(공공계획)

< 한냉 종합육가공공장 건설 >

1. 목적

- 축산물의 종합처리 기능수행으로 축산물 유통개선에 선도적 역할 수행
- 도축·부분육·비축 및 육가공등 연관시설 설치로 일관 작업에 의한 원가 절감

2. 추진방향

- 건설목표 : 1개소

3. 사업신청자격 : (주)한냉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주관 : 충청북도지사

나. 자금수요자 : (주)한냉

다. 사업내용 : 1개소('91년부터 계속 사업)

- '95 사업비 : 2,549백만원(용자)
- 사업기간 : '91-'95
- 지원구분 : 용자 70% (연리 5%, 3년거치 7년균분상환) 자담 30%

5. 사후관리 : 충청북도지사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중 양 : 농림수산부 축산국 축산물유통과(02-503-7283)
 - 시·도 : 농정국(축산과)
 - 시·군 : 산업과(축산과)

육가공시설 지원 (공공계획)

< 가공·직판장시설 지원 >

1. 목 적

- 돼지고기 수출촉진을 통해 양돈산업의 경쟁력 제고
- 수출과 연계된 육가공산업의 발전 도모
- 생산자단체의 돼지고기 부분육·브랜드육 유통 참여 확대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육가공시설 개선을 통한 냉장육 수출체계 확립 및 돼지고기 수출확대
- 부분육·브랜드육 유통촉진을 위한 생산자단체의 직판장 설치 지원

나. 수출목표 : '97년 3만톤(1.6억\$), 2004년에 10만톤(5.5억\$)

3. 사업신청자격

- 가공장시설 : 돼지고기 수출업체
- 직판장설치 : 생산자단체(돼지고기 수출단지, 축협)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시·도

나. 사업내용

- 냉장육 수출확대를 위해 기존 수출업체 육가공시설 개선 및 생산자단체(돼지고기 수출단지, 축협)의 유통참여 확대를 위해 직판장 설치 지원
- 사업기간 : '95.1~12
- 사업비 지원

세 부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 가공장시설 개선	5 개소	백만원 5,000	-	-	3,500	1,500
○ 직판장설치 지원	5	2,520	-	-	1,760	760
계	10	7,520	-	-	5,260	2,260

- 지원조건 : 용자 (연리 5%,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계란가공·유통시설지원(공공계획)

1. 목적

- 생산농가의 가공유통분야 참여확대로 소비형태를 다양화하고 농가수익 제고
- 계란 가공제품의 다양화로 계란 소비확대 및 수급안정 도모
- 상인중심의 계란 유통체계를 생산농가의 유통체계로 전환

2.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

나. 사업내용

- 사업대상자 : 계란가공장시설(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계란유통개선을 시설을 지원받고자 생산자단체, 생산 농가 및 계란가공업체등
- 사업비 지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	자담
계란가공 유통시설지원	개소 3	백만원 3,000			2,100	900

- 지원조건 : 용자 (연리 8%, 3년거치 7년균분상환)
- 사업계획서 수립 및 신청
 - 사업목적, 부지선정에 따른 법적제한사항 해결여부, 경제성 및 손익분석등을 고려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

3. 기타 참고사항

- 사업 안내기관
 - 중 양 : 농림수산부 축산국 축산물유통과(02-503-7283)
 - 시·도 : 축산과(서울특별시농수산업유통과, 직할시는 농정과)
 - 시·군 : 축산과(산업과)

해외(싱가폴) 농수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중앙)

1. 목 적

- 동남아권역 농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전진기지 확보
- 동남아지역내 현지 유통업계와 연계해 현지 시장개척의 거점역할 수행
- 농수산물 수출업계의 동남아 진출을 지원하도록 현지 시장개척 종합지원

2. 추진방향

< 기본방향 >

- 동남아 KTDC 분배사업은 현지마켓 개척에 목표를 두고 추진
 - 교포업계는 한국마켓담당, KTDC는 현지인 및 중국계 마켓담당
- 한국산 농수산물 및 농수산식품의 수출증대를 위한 수출지원사업 주력
 - 박람회 참가, 한국식품설명회 개최, 현지홍보, 정보수집등

< 주요지역 해외조직망 확대 추진 >

1991~1994			1995	1996년 이후
일본권 (오사카)	EU권 (로테르담)	미주권 (뉴욕)	동남아권 (싱가폴)	대양주, 중동권등

3. 사업신청지역

- 정부투자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사업내용 >

- 동남아에 해외 농수산물 전시판매장을 설치 운영
 - 설치지역 : 싱가포르 중심상권 지역
 - 설치방법 : 현지법인
 - 설치규모 : 350평(전시장 및 상담실 100, 사무실 50, 창고 200)

< 지원규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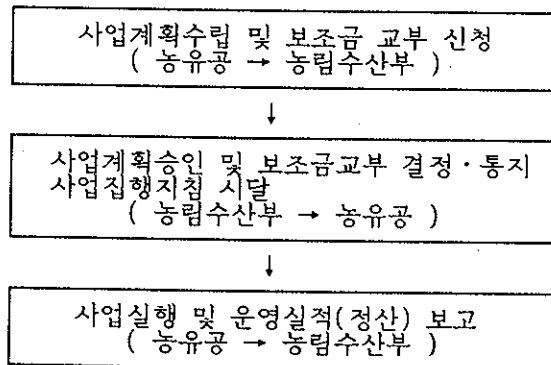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국고보조	자 부 담	비 고
4,000	2,800	1,200	보조율 : 70%

다. 지원조건

- 재 원 : 농어촌발전 특별회계
- 지원비율 : 국고보조 70%, 자담 30%

라. 사업추진체계



5. 사업계획수립 및 신청

- 농수산물유통공사

6. 사업효과

- 그동안 민간의 수출이 부진했던 동남아 현지시장 개척으로 정부차원의 수출기반 조성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민간수출촉진에 기여
- 동남아는 그동안 농수산물 수출이 미약했던 지역으로 KTDC의 진출에 따라 실질적인 수출증대효과 거양
- 농수산물 수출업계의 동남아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산 농수산물 및 농수산식품의 수출증대여건 조성 및 의욕고취

7. 기타 참고사항

- 사업추진 주관부서
 - 중 앙 : 농림수산부 농업협력통상관실 통상협력2담당관실
 - 사업주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사업본부 수출진흥부

국제농산물박람회 참가지원(공공계획)

1. 목 적

- 국제 주요박람회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농수산물을 전시, 수출상담을 통해 UR타결에 능동적으로 대처
- 박람회 참가를 통한 농수산제품의 수출가능성 조사와 유망수출선 확보로 신규수출 시장 개척
- 영세수출업체의 참가지원을 통한 수출의욕 고취

2. 추진방향

< 기본방향 >

- 현재 참가하고 있는 국제박람회 참가규모를 확대 지속 참가
- 주요국가에서 개최하는 국제유명박람회 참가횟수 확대
- 민간업체의 해외시장진출 적극지원으로 수출의욕 고취
- 박람회 전시상품의 포장, 디자인, 품질개선 및 자체홍보물 제작등 사전준비 철저로 박람회성과 거양 및 지속적인 수출증대에 기여
- 박람회참가 성과거양을 통한 참가업체의 참가비 부담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 사업목표 및 장기계획 >

- 1단계('95까지) : 연간 15회 (해외 13, 국내 2)
- 2단계('97까지) : 연간 20회 (해외 17, 국내 3)
- 3단계(2002) : 연간 25회 (해외 21, 국내 4)

3. 사업신청자격

- 정부투자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사업내용 >

- 세계 주요유명박람회에 공사주관 "한국관"을 설치하여 참가
- 공사 지원사항
 - 박람회참가에 대한 국내·외홍보 및 바이어 유치
 - 박람회참가 및 전시관 종합운영관리를 위한 제반업무 관리
 - 전시장 기본부스 임차료, 시설설치비, 홍보비지원
 - 참가업체에 대한 전시 및 상담지원
 - 종합안내관(한국관본부)을 설치하여 종합홍보 및 참가업체 안내
 - 참가업체에 종합카다로그 제작·배포
 - 전시물품을 취합, 전시장까지 일괄운송·통관 및 박람회 종료시 전시장철거
 - 박람회 참가업체 여행, 숙식예약등 편의지원
- 참가업체지원 및 수행사항
 - 전시물품조달(공사 지정장소 송부)
 - 박람회 지원비용 이외의 참가부대경비 부담(국내외 전시품 운송료, 통관 및 부대비, 전시대, 상담응접셋트, 인포메이션데스크, 수도, 전기, 쇼케이스, 냉동고, 전화기, 팩스임대 및 요청 추가시설, 전화료등)
 - 참가업체별 전시시음, 시식준비
 - 전시물품 진열 및 상담안내를 위한 전문요원 파견
 - 전시상담 및 계약을 위한 수출요파, 계약서등 준비
 - 참가업체별 제품설명서등 홍보리후렛, 화보제작 및 홍보용 샘플준비

< 지원규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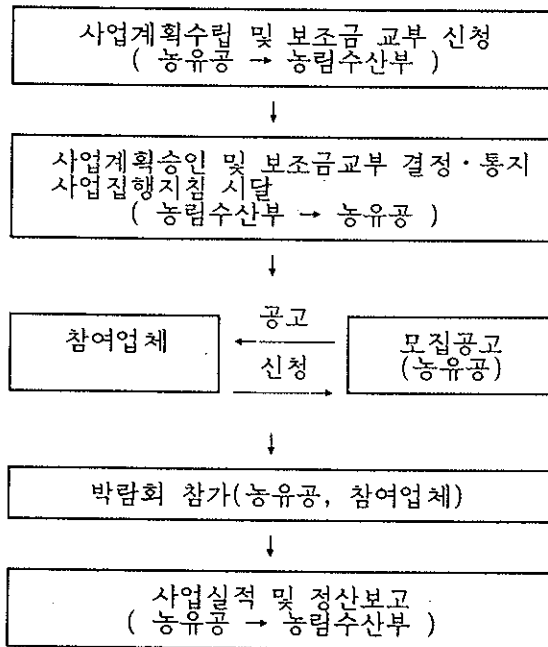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국고보조	자 부 담	비 고
1,098	766	255	보조율 : 70%

다. 지원조건

- 재 원 : 농어촌발전 특별회계
- 지원비율 : 국고보조 70%, 자담 30%

라. 사업추진체계



5. 사업계획수립 및 신청

- 농수산물유통공사

6.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 모집대상

- 가공식품·음료·주료·인삼등 건강보조식품, 김치등 절임류, 버섯등 수출업체 또는 수출희망업체

○ 모집방법

- 농수산물가공식품수출협회(KAPEM), 시·도, 공사지사 추천업체, 공사박람회 참가실적 업체
- "농수산물무역정보지"(공사) 및 "일간무역"(무역협회)의 참가 모집공고를 통한 신청업체

○ 업체 및 품목선정

- 참가업체가 과다할 경우 박람회개최 지역별, 수출가능품목 중심으로 참가업체 선정
- 가능한한 동일품목 취급업체 중복 배제
- 국제경쟁력없다고 판단되는 상품 및 포장제품은 전시대상에서 제외

7. 사업효과

- 수출유망품목의 품질우수성 홍보로 수출시장확대 및 다변화
- 현지 전시판매, 수출상담 및 소비자기호 조사분석으로 수출기반 조성
- 영세수출업체에 대한 현지수출시장 여건파악 및 수출가능성 타진 기회 부여로 자신감 고취

8. 기타 참고사항

○ 사업추진 주관부서

- 중 앙 : 농림수산부 농업협력통상관실 통상협력2담당관실
- 사업주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사업본부 수출진흥부

해외시장 정보사업(공공계획)

1. 목 적

- 우리 농림수산제품의 수출가능성 진단과 시장진출을 모색하기 위한 권역별·국가별 필수기본정보의 수집을 위한 일제 심층조사 실시
- 수출진흥정책수립 및 수출현장에서 필요한 산 정보의 상시 수집·전파 및 관리 시스템의 구축

2. 추진방향

< 기본방향 >

- 권역별 주요국 필수기본정보 일제 심층조사 실시
- 해외정보 가공 생산기능 강화

< 사업계획 >

- 권역별 주요국 필수기본정보 일제 심층조사 실시
 - 전문조사팀 구성, 사전 문헌조사 실시 및 세부조사계획 수립
 - 권역별·국가별 조사단파견 및 심층조사 실시(3개권역 8개팀 / 3인 1팀 구성)
- 해외정보 가공 생산기능 강화
 - 해외정보의 전산화 추진
 - 전산화 시스템 확충(S/W 개발 및 H/W 확충)
 - 『농림수산정보센터』등과 연계, 정보분산 협력체제 구축

3. 사업신청자격

- 정부투자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사업내용 >

(1) 권역별 주요국 필수기본정보 일제 심층조사 실시

○ '95 조사반 편성

- 조사반 편성 : 통상 수출관련 전문가로 편성
- 조사지역 및 인원구성 : 3개 권역 18개국, 8개반 편성(3인 1팀으로 구성)
- 조사방법
 - 국내기초조사 : 해외전문조사조직을 활용 대상국 교역관련자료 및 실태, 문헌등 조사
 - 현지출장조사 : 현지수입상, 도소매상, 생산조직, 수출업체, 수입통관기관 방문조사
- ※ KOTRA 무역관, 재외공관, 현지진출업체와 협조
- 조사내용
 - 국내수출품 공급여건
 - 대상국 품목별 수출 일반여건
 - 경쟁국별 시장진출상황 및 품종·품질·가격 조사
 - 품목별 현지유통경로 및 소비성향조사
 - 품종개량, 제품화 및 상품화등 개선방향 조사
 - 수출상대국의 통관, 검역, 기타 규제사항
 - 품목별 바이어리스트 조사

- 조사결과 활용
 - 종합보고서 발간으로 유관기관 및 업체자료제공
 - 조사자료의 전산처리로 활용도 제고

(2) 해외정보 가공생산 관리기능 강화

- 정보관리체계 구축
 - 해외정보의 전산화 추진
 - 전산화시스템 확충(H/W 확충 및 S/W 개발)
 - 『농림수산물정보센터』 등과 연계 정보분산협력체제 구축
- DB 구축대상('95)
 - 무역통계
 - 생산, 수급통계
 - HS/관세율 정보
 - 국가정보
 - 박람회/전시회 정보
 - 수출입제도, 정책
 - 해외시장가격
 - 바이어 및 수출입업체 리스트
 - 수출유망품목 심층조사자료등
- 추진계획
 - 실무반 구성운영 : 농수산물유통공사 직원
 - 작업기간 및 일정

업 무 명	일 정
○ 업무분석 및 시스템 설계, 장비도입 추진, S/W 용역 검토	'94.12
○ S/W 개발	'95.2~6
○ 서비스 개시	'95.7 이후

○ 장기발전계획

- 1단계('94~'96) : DB구축 및 전파체계 확립
- 2단계('97~'98) : 정보의 질적향상과 전파체계 확충
- 3단계('99~2001) : 농수산물 수출정보의 전문성 확보

< 지원규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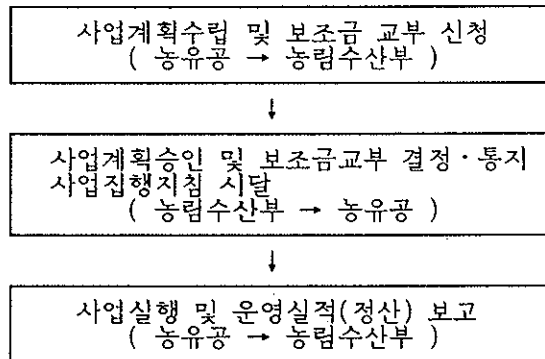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고보조(70%)	자부담(30%)
권역별 일제조사	286	200	86
해외정보가공생산	429	300	129
계	715	500	215

다. 지원조건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비율 : 국고보조 70%, 자담 30%

라. 사업추진체계



5. 사업계획수립 및 신청

- 농수산물유통공사

6. 사업효과

- WTO체제 출범에 따른 각국의 시장개방확대 및 농수산물 수출여건개선을 계기로 우리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전기 마련
- 수출진흥을 위해 필수적인 기초정보의 확보 및 해외 상시정보 수집체계확립을 통한 우리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출증대여건 조성 및 업계의 수출의욕고취

7. 기타 참고사항

- 사업추진 주관부서
 - 중 앙 : 농림수산부 농업협력통상관실 통상협력2담당관실
 - 사업주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사업본부 수출정보실

해외시장개척사업(공공계획)

1. 목 적

-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UR타결 이후의 우리 농림수산제품 수출시장개척 및 수출시장 다변화
- 디자인개발을 통한 수출상품의 상품성제고
- 해외홍보를 통해 해외전문수입상 및 소비자에 대한 우리제품 인식제고 유도

2. 추진방향

< 기본방향 >

- 농수산물 수출유망상품 포장개발지원, 농수산물 수출홍보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외시장개척사업 추진

< '95 사업목표 >

- 수출상품 포장개발
 - 1업체당 3백만원×50회
 - 포장개발사례집 발간 8백만원
- 농수산물 수출홍보
 - 해외유명전문지 광고 : 3회
 - 한국 수출농산물 특별기획전시회 : 2개국
 - 종합홍보책자 제작배포 : 6,000부

3. 사업신청자격

- 정부투자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사업내용 >

수출업체 : 포장재개선 및 디자인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 대상품목 : 현재 수출되고 있는 상품 또는 수출가능성있는 유망상품
- 면류, 스프, 쌀과자, 스낵류, 장류, 불고기소스등
- 지원방법 : 수출포장개발을 희망하는 업체가 신청시 포장개선지원자금 지원
(신청업체가 많을시는 별도기준에 의해 선정)
- 활 용 : 유관기관, 업체등에 포장개발사례집 배포·전파
- 개발목표 : 50회

농 유 공 : 해외유명전문지 광고, 한국 수출농산물 특별기획전시회, 종합홍보책자 제작 배포등 농수산물 수출홍보

- 해외전문지 광고(3회)
 - 광고매체 : 전세계적으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농수산제품 전문지에 광고
 - 광고내용 : 김치등 수출경쟁 가능품목에 대한 이미지 홍보
- 한국 수출농산물 특별기획전시회(2회 : 일본, 미국)
 - 대상품목 : 수출유망 농수산물 중심으로 하고 기타지역별 수출가능품목 추가
 - 행사내용 : 전시, 홍보, 시음, 시식, 판매와 병행하여 다양한 부대행사추진
- 종합홍보책자 제작 배포(6,000부)
 - 게재내용 : 수출유망 상품관련 사진, 특징, 주요성분, 생산수출업체 주소, 전화번호등

< 지원규모 >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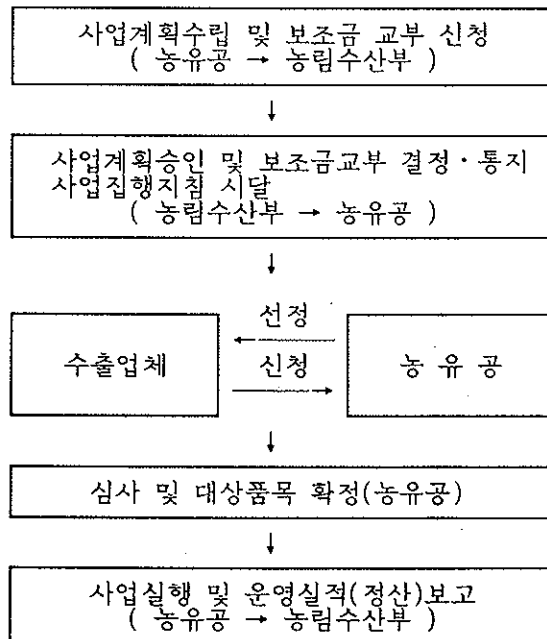
구 분	총사업비	국고보조	자 부 담
계	533	373	160
상품포장개발	158	110	48
해외전문지광고	21	15	6
특별기획전	300	210	90
종합홍보책자	54	38	16

다.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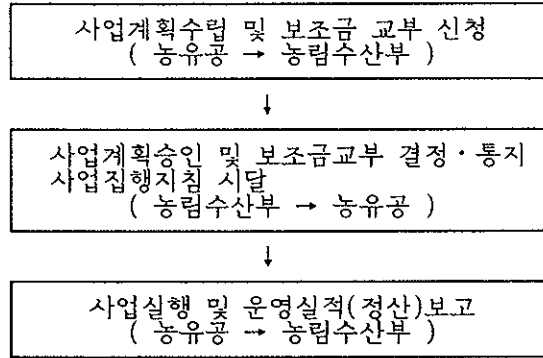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비율 : 국고보조 70%, 자담 30%

라. 사업추진체계

< 포장디자인개발 자금지원 >



< 농수산물 수출홍보 >



5.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 농수산물유통공사

6.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 포장디자인개발사업
 - 『농수산물가공식품수출협회(KAPEM)』 공사해외조직망(KTDC)을 통하여 수출유망 품목 발굴 및 대상업체 추천

7. 사업효과

- 우리나라 농림수산물 및 가공제품의 포장디자인 수준 향상
- 우리농수산물 인식제고로 수출기반 구축
- 수출잠재시장에 대한 이미지 부각으로 신수요창출

8. 기타 참고사항

- 사업추진 주관부서
 - 중 앙 : 농림수산부 농업협력통상관실 통상협력2담당관실
 - 사업주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사업본부 수출정보실

농수산물 비축 및 수출 구매지원 (공공계획)

1. 목 적

- 농수산물 저장·가공·수출용에 원료구매자금을 생산자단체 및 업체에 지원하여 수출하기의 생산자 가격지지와 단경기의 가격안정을 통해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
- 농수산물 저장·가공 및 수출산업의 육성

2. 지원대상

가. 비축구매지원

- 생산자단체 : 저장 또는 가공시설을 보유한 농·수협 회원조합으로서 농수산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조합
- 저장업체 : 저장시설을 소유하여 운영하는 자로서 농수산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
- 가공(제조)업체 : 가공시설을 소유하여 운영하는 자로서 농수산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

나. 수출구매지원

- 대외무역법에 의거 수출입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수출을 위하여 농수산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

3. 지원내용

- 지원시기 : 품목별 성출하기
- 재 원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금리
 - 비축수매지원자금 : 농·수협 회원조합 연 5%, 일반업체 연 8%
 - 수출수매지원자금 : 연 5%
- 용자기간 : 1년 이내
- 지원한도 : 소요자금의 80% 이내 (20억원 한도)
- 용 도 : 지원대상 품목의 저장·가공 및 수출용 원료수매

4. 지원대상업체 선정

가. 선정원칙

- 지원대상자는 당해년도 3월말까지 각 품목별 지원대상자를 선정
- 사업준비중인 자는 용자시기전에 사업준비가 완료되면 지원하도록 조건부로 선정하며,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고발된 자는 선정제외

나. 선정절차

- 안내공고 : 매년 1월중 일간신문에 당해년도 지원계획 공고
- 지원신청 : 당해년도 2월말까지 사업실시기관에 신청
- 지원대상자 선정 : 당해년도 3월말

다. 선정방법

- 선정요건을 갖춘 단체 및 업체에 대해 서류심사 및 시설물 확인에 의해 선정

5. 수매 및 수출실적 확인

가. 수매대상 및 수매기간

- 생산자, 생산자단체, 생산농가대표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으로 부터 국내산 농수산물
을 품목별로 정해진 수매기간중에 수매한 물량 및 금액만 인정

나. 실적확인

- 수매실적확인 방법
 - 수매장부에 의한 수매물량 및 수매금액 확인
 - 대금영수증에 의한 수매사실 확인
 -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판매사실 확인
 - 실측 또는 목측에 의한 재고량, 저장물량 확인
- 수출실적 확인방법
 - 외국환 은행장 확인 수출실적증명서
 - 수출면장상의 수출물량

6. 자금의 목적외 사용시 제재조치

가. 제재대상

- 수매 또는 수출의무액의 일부 또는 전부 불이행
- 지정용도 이외의 목적외 사용
-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및 수출입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혐의사실이
확정된 경우
- 요구자료 미제출 및 허위서류 제출
- 시중가격상승에 대응한 출하의무량 부여에 관한 사항의 불이행
- 기타 용자약정사항 미이행 등

나. 제재내용

- 위약금 징구, 용자금 회수, 2년 이내 기간동안 자금지원중단

7. 품목별 사업실시기관 및 지원계획

가. 비축수매지원

(1) 생산자단체

품 목	지원대상자	사업실시기관	'95 지원계획
마 늘	농협 회원조합	농협중앙회	백만원 6,370
양 파	"	"	1,008
사 파	"	"	14,868
배	"	"	2,415
단 감	"	"	701
감 자	"	"	3,045
생 약	"	"	1,526
꽃옥수수	"	"	445
감 굴	농협중앙회	"	4,650
고 구 마	"	"	1,890
맥주보리	"	"	19,080
유 채	"	"	293
잠 건	"	"	8,424
수산물수매보관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수협중앙회	25,020
계			87,735

(2) 일반 저장.가공업체

품 목	지 원 대 상	사업실시기관	'95 지원계획
마 늘	저장, 가공업체	농수산물유통공사	11,830 ^{백만원}
양 파	"	"	4,480
사 파	"	"	5,250
배	저장업체	"	1,208
단 감	"	"	468
감 자	저장, 가공업체	"	3,973
생 약	조제 및 건조장 보유업체	"	4,273
당 근	저장, 가공업체	"	420
포 도	가공, 주조업체	"	2,436
복 송 아	가공업체	"	1,596
참 다 래	저장, 가공업체	"	273
인 초	인초돛자리제조업체	"	72
완 초	완초제품제조업체	"	191
호 프	맥주제조업체	"	174
다 업	가공업체	"	123
김치원료	김치제조업체	"	7,000
채소종자	종묘업체	"	1,575
수산물냉동보관	수산물 냉동.냉장업체 및 한국냉장(주)	수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45,927
연제품가공	어육연제품제조업체	수협중앙회	7,700
통조림가공	수산통조림제조업체	"	13,440
김 가 공	김가공업체	"	3,062
간미역가공	간미역가공업체	"	1,232
조미품가공	건포류제조업체	"	4,165
염장품가공	절임식품류제조업체	"	292
사료용어류	어분, 사료가공업체	농수산물유통공사	838
계			121,998

나. 수출수매지원

품 목	지원대상자	사업실시기관	'95 지원계획
			백만원
과 일 류	사과.배 수출업체	농수산물유통공사	15,308
채 소 류	수출업체	"	6,080
버 섯 류	"	"	660
밤	"	"	19,344
포고버섯	"	"	4,540
송이버섯	"	"	4,816
백 삼	"	"	9,526
생 약	"	"	1,744
화 췌	"	"	1,896
김치원료	"	"	2,912
냉동수산물	"	수협중앙회	5,760
활어·패류	"	"	4,258
봉 조 립	"	"	7,280
해 조 류	"	"	4,640
유망품목수출개발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12,500
계			101,264

벌 꿀 수입(공공계획)

1. 목적

UR협상결과에 따라 최소시장접근(MMA)물량에 대한 국영무역으로 천연꿀을 수입하여 천연꿀의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2. 사업내용

가. 시행주체 : 축협중앙회

나. 시행기간 : '95.1-12

다. 사업내용

- 천연꿀 250톤 수입판매
- 지원내용 : 천연꿀 수입에 필요한 최전자금 지원
- 지원금액 : 340백만원(축산발전기금)

라. 사업추진요령

- 한국양봉협회는 가공용(식품, 음료회사, 제약회사) 벌꿀, 수요량을 조사하여 (시기별, 증별, 소요량등) 축협중앙회장에게 통보
- 축협중앙회장은 국제경쟁 입찰 방법에 의거 천연꿀 수입
- 수입된 천연꿀을 가공용에 한하여 실수요자에게 공매처분하고 수익금은 축산발전 기금에 납입

3. 기타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 (02-500-2674, 503-7282)

과실.화훼 판매촉진 사업(공공계획)

1. 목 적

- 경쟁력 있는 과실,화훼에 대해 WTO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운송비, 포장선별비등의 비용을 지원하므로서 해외 판매촉진을 통한 수출확대 도모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과실.화훼 품목중 경쟁력은 있으나, 수출시장이 특정한 몇개국에 한정되어 있고 해외 시장개척이 되지못한 품목을 선정하고,
- 이들 품목에 대해 수출 가능성이 큰국가를 대상으로 운송비,포장선별비등을 지원

[장기계획]

		'93까지	'94	'95	'96-'98	'99-2004	계
과 실	사업량	2,893 톤	1,770	4,200	30,000	11,137	50,000
	사업비	2,430백만원	892	1,408	10,023	3,721	18,474
화 훼	사업량	-	38	130	1,490	4,342	6,000
	사업비	-	65	221	2,533	7,466	10,285
계	사업량	2,893 톤	-	-	-	-	-
	사업비	2,430백만원	957	1,629	12,556	11,187	28,759

나. '95 예산내역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응 자	자 담
계	-	백만원 1,629	1,629	-	-	-
과 수	4,200 톤	1,408	1,408	-	-	-
-사과	3,000	969	969	-	-	-
- 배	600	237	237	-	-	-
-감귤	600	202	202	-	-	-
화 혜	천상자 130	221	221	-	-	-

3.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지원대상자 및 사업시행주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나. 사업내용

○ 과실 : 신규수출 대상국별 수출원가와 수출가능가격을 감안, 포장상자비와 운송비를 국별로 차등 지원

- 신규수출 대상국 선정기준

- ┌ 국산과실 수요는 있지만 국산과실판매가 극히 부진한 국가 : 수출실적 50톤 미만
- └ 수출가격이 수출원가 대비 50%이상 받을수 있는 국가

- 신규수출 대상국
 - 아시아 -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 등
 - 유럽 - 스웨덴, 독일, 영국, 화란, 벨기에 등
 - 중 동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등
 - 미 주 - 캐나다, 미국 등
 - 오세아니아주 - 호주, 뉴질랜드 등

- 지원액 산출방법

- 수출원가 : 농가판매가격(산지가격) + 수출부대비용(포장, 선과등)
- 수출가격 : KOTRA 해외지사, 국산과실 수출업체, 유통공사등이 수출상대국별 오판가격을 기초로 산출

※ 지원액 = 수출가격 - 수출원가

- 지원방법 : 각국별 수출가능가격을 감안 각국별로 [선과포장비], [선과포장비+ 내륙운송비], [선과포장비+ 내륙운송비+ 해외운송비]를 차등지원

○ 화훼 : 수출기반이 정착될때까지 유통비용중 선별포장비 지원

다. 지원조건 : 국고 100%

라. 대상품목

- 과실 : 사과, 배, 감귤등
- 화훼 : 백합, 장미등

마. 사업추진 체계

-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시행 주체인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농림수산부는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후 기본계획 확정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시달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사업완료후 사업비 정산, 결과보고

4. 사업효과

- 국산과실의 새로운 수출시장개척을 통한 수출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및 수출농업 육성
- 낙후된 화훼 포장개선을 통한 수출품의 품위제고

5. 사업 추진일정

< 과수 >

- 사업기본계획 수립(유통공사) : '95.10 -11월
- 수출추진 : '95.11 - '96.3
- 보조금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 익년 1.20일 까지
- 사업평가 보고 : 익년 3월말까지

< 화훼 >

- 사업기본계획 수립(유통공사) : '94.12 -'95.1월
- 수출추진 : '95.1.1 - '95.12.31
- 보조금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 익년 1.20일 까지
- 사업평가 보고 : 익년 2월말까지

과수화훼판매촉진사업과 관련한 의문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수산부 과수화훼과 ☎ (02) 503-7274
-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부 ☎ (02) 797-4022

과실수출업체 시설자금 지원사업(공공계획)

1. 목 적

- 과실수출 업체에 저온저장 시설과 선과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 품질 향상 및 인력 절감을 통해 국산과실의 경쟁력 제고로 수출확대 도모

2. 연도별 지원계획

가. 총소요시설 및 금액

	사업량	단 가	총사업비	재 원 별			
				농안기금	농수협	자 담	계
계	-	-	백만원 18,000	12,600	-	5,400	18,000
저장고	7,700 평	백만원/평 2	15,400	10,780	-	4,620	15,400
선과장	개동 13	백만원/동 200	2,600	1,820	-	780	2,600

나. 연차별 추진계획 : ('95,'96) 2년간 완료

다. '95 지원계획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저온저장고	3,400평	백만원 6,800	-	-	4,760	2,040
선과 시설	3 동	600	-	-	420	180
계	-	7,400	-	-	5,180	2,220

※ 용자금 자원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3.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지원내용 및 조건

- 저장·선과시설 자금의 70% 용자지원
- 연리 : 년 8%
- 상환 :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나. 추진방식

- 파실수출업체 : 사업계획 수립,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사업신청
- 농수산물유통공사(자금대출기관) : 전체 사업계획수립, 업체별 자금배정 및 회수
정산보고
- 농림수산부 : 사업계획 확정 및 자금배정

4. 사업담당 부서

- 농림수산부 농산물유통국 파수화취과
-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부

돼지고기 고급육 생산지원(공공계획)

1. 목적

- 돼지고기 수출촉진을 통해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
- 수출잔여육 유통개선을 통한 돼지고기 수출업체 육성 및 부분육·브랜드육 유통촉진
- 국내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품질이 균일한 규격돈 생산공급체계를 확립하여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기반 조성 및 수출 확대
- 돼지고기 수출육가공업체 육성을 통한 육가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부분육·브랜드육 유통촉진

나. 수출목표 : '97년 3만톤(1.6억\$), 2004년에 10만톤(5.5억\$)

3. 사업대상

- 규격돈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돼지고기 수출단지 주체 또는 축협조합과 수출원료돈(이하 "규격돈"이라 한다) 생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출하한 농가
- 수출잔여육 유통개선 지원 : 돼지고기 수출업체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시·도

나. 사업내용

(1) 규격돈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 돼지고기 고급육 생산체계 확립을 위해 수출단지 및 축협과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체에 규격돈을 생산·출하한 농가에게 장려금 지원
- 지원체계 : 시·도지사 → 축협중앙회 → 수출단지 주체·조합 → 생산농가

- 사업기간 : '95.1~12
- 사업비 : 9,250백만원(축발기금 보조)
- 지원단가
 - 수출단지에 참여하는 생산농가 : 규격돈 두당 7천원
 - 수출단지에 미참여 농가(조합 계약) : 규격돈 두당 5천원
- 세부사업실시 요령 : 별첨

(2) 수출잔여육 유통개선 지원

- 돼지고기 수출시 발생하는 잔여육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유통개선자금을 지원하여 수출업체 육성 및 부분육·브랜드육 유통촉진
- 지원단가
 - 냉장육 : 수출 1톤당 1,000천원
 - 냉동육 : 수출 1톤당 700천원
- 사업기간 : '95.1~12

다. 사업비 지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계	보조(축발기금)	용자	자담
○ 규격돈 생산장려금	1,541천두	백만원 9,250	9,250	-	-
○ 수출잔여육 유통개선	14,400톤	11,160	-	11,160	-
- 냉동육	10,800	7,560	-	7,560	-
- 냉장육	3,600	3,600	-	3,600	-
계		20,410	9,250	11,160	-

라. 지원조건

- 규격돈 생산장려금 : 보조 (축발기금)
- 수출잔여육 유통개선 : 용자 (연리 5%, 1년거치후 일시상환)

규격돈 생산장려금 지급요령

가. 사업계획

- 사업주체 : 시·도지사
- 지원체계 : 농림수산부 → 시·도지사 → 축협중앙회 → 수출원료돈 생산농가
- 지원대상 : 수출단지주체 또는 조합과 돼지고기 수출원료돈(이하 "국제규격돈"이라 한다) 생산공급계약을 체결한 생산농가
- 사업기간 : '95.1 ~ 12
- 사업비 : 촉발기금 9,250백만원(기금사업비 보조)

나. 세부추진요령

1. 사업추진방향

- 시·도 및 축협
 - 양돈농가, 영농조합법인, 계열화업체 및 수출업체(도축·가공업체)등에 대하여 사업추진 방향 홍보
 - '95. 1~2월(2개월간) : 2회이상 실시

2. 국제규격돈 생산공급계약체결

① 생산농가와 수출단지주체·조합간의 계약체결

- 수출단지에 참여한 생산농가는 수출단지주체와 월별 생산공급계약체결
- 수출단지에 참여하지 않은 생산농가는 관할 조합과 월별 생산공급계약체결
- ※ 조합이 수출단지주체인 경우에는 수출단지에 참여한 생산농가와 참여치 않은 생산농가를 구분하여 월별 생산공급계약체결

② 수출단지주체·조합과 돼지고기수출업체(이하 "수출업체"라 한다)간에 계약체결

- 수출단지주체·조합은 수출업체와 월별 공급계약체결
- 수출단지주체·조합이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직접·대행(계약가공)수출을 구분하여 월별 공급계약체결

- ※ 수출업체란 자체(1차 또는 2차가공시설)가공시설을 보유하고 자기책임으로 도축·가공하여 직접 또는 대행(계약가공)수출하는 업체
- ※ 생산농가(수출단지의 구성농가, 수출단지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가 개별적으로 수출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③ 계약체결 기간

- 수출단지주체·조합과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간에 계약체결은 '95. 1.1~2.20일까지로 함

④ 계약체결 결과 및 확정

○ 계약체결 결과보고

- 수출단지주체·조합은 '95.2월말까지 동 계약내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서식1)
- 계약체결한 수출업체별 국제규격돈생산공급계약서와 생산농가별 월별계약두수 및 거래구좌를 보고
- 단, 수출단지주체가 조합인 경우에는 수출단지에 참여한 생산농가와 참여하지 않은 생산농가를 구분하여 보고
- 수출업체는 '95.2월말까지 계약체결한 수출단지주체·조합의 소재지관할 시·도지사에게 동 계약내용을 보고(서식1)
- 수출단지주체·조합별로 국제규격돈생산공급계약서와 생산농가별 월별계약두수를 보고
- 동 계약내용 보고시 수출업체의 소재지, 대표자, 연간 월별수출계획서와 자체·계약가공업체의 연간 월별가공계획서 및 수출업체가 이용하는 도축장·가공장 현황을 반드시 첨부하여 보고

○ 계약체결 실사 및 확정보고

- 시·도지사는 수출단지주체·조합 및 수출업체에서 보고한 계약 내용을 비교·검토하고 현지실사를 하여 부당한 계약체결 내용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95.3.15일까지 계약체결 대상자를 확정하여 '95.3.31일까지 수출단지주체·조합 및 수출업체, 축협도지회, 축협중앙회에 통보하고 동시에 농림수산부에 보고

⑤ 계약체결내용 변경 및 승인

- 계약체결 대상자가 확정된 후 기 계약생산농가의 탈락, 추가계약대상자 발생등으로 기존 계약체결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⑥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명시해야할 사항

- 수출단지주체·조합과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간에 계약 체결시에는 동 요령 제9항의 의무

및 권장사항을 반드시 명시

- 수출단지주체·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장려금은 TLC예비검사결과 및 실제 수출이 완료된 수출해당두수를 기준으로 하고 수출업체에서 수출이 완료된 후 지급됨을 명시
- 장려금지급절차는 수출단지주체·조합에서 공동출하한 국제규격돈 두수와 TLC예비검사결과 합격두수 및 수출업체에서 수출이 완료된 수출해당두수를 기준으로 수출단지주체·조합을 통해 생산농가의 거래구좌에 입금됨을 명시
- 생산농가가 계열화업체인 경우에는 계열주체와 수탁사육농가간에 상호협의를 하여 장려금의 배분기준을 명시

3. 국제규격돈 출하·도축·가공·수출 및 수출증명서

① 수출업체 및 수출단지주체·조합

- 수출업체는 계약을 체결한 수출단지주체·조합에 출하일자·장소·물량을 지정하여 국제규격돈의 공동출하를 요청
- 수출단지주체·조합은 계약을 체결한 수출업체의 지정 요청에 따라 생산농가별로 구분하여 국제규격돈을 공동출하
- 수출업체는 동 출하물량의 수출이 완료된 경우에는 수출완료증명관련서류(별첨1)를 매월 5일 이내에 수출단지주체·조합에 통보하고 동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서식2)

② 국립동물검역소 검역관

- 국립동물검역소 검역관은 수출단지주체·조합별 생산농가별로 검사시마다 확인하는 수출돈육잔류물질(TLC)예비검사 결과서(서식3)를 수출단지·조합 및 수출업체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동 결과서를 교부하여 주고 수출업체에서 검역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동 증명서를 발급

4. 장려금 지급기준 및 배정

① 장려금 지급기준

- 생산농가에서 국제규격돈을 공동출하하여 TLC예비검사에 합격한 후 수출업체에서 수출이 완료된 수출해당두수를 기준으로 수출단지 참여여부에 따라 차등지급
 - 수출단지에 참여하는 생산농가 : 규격돈 두당 7천원
 - 수출단지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조합과 계약) : 규격돈 두당 5천원

② 장려금의 재원 및 배정

- 농림수산부는 '95축발기금예산에 계상된 장려금을 4.30일까지 축협중앙회에 일괄 배정
- '95축발기금예산에 계상된 장려금이 부족할 경우 시·도지사는 지방비 예산에서 부족자금을 확보하여 관내 국제규격돈생산농가에 지원

5. 장려금 지급절차

① 장려금 지급신청

- 수출단지주체·조합은 수출업체로부터 통보 받은 수출원료증명관련서류(별첨1)를 첨부하여 생산농가별로 수출이 완료된 수출해당두수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매월 10일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서식4)
- 시·도지사는 관할 수출단지주체·조합이 장려금지급을 신청한 내용과 수출단지주체·조합이 계약체결한 수출업체로부터 보고 받은 수출해당두수에 대한 내용을 비교·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매월 20일이내에 축협중앙회에 수출단지주체·조합별 생산농가별 장려금(보조금) 교부결정내용(서식7)을 통보하고 수출단지주체·조합에 생산농가별 장려금 교부결정내역(서식7)을 통보

② 장려금 지급

- 축협중앙회(기금관리부)는 시·도지사의 장려금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장려금을 매월 30일이내에 수출단지 주체·조합의 생산농가별 거래구좌에 입금하고 동 내역을 시·도에 보고
- 수출단지주체·조합은 매월 30일이내에 시·도에서 통보받은 농가별 장려금 교부결정내역을 생산농가에 통보

6. 장려금 지급결과 정산보고

- 시·도지사는 축협중앙회에서 보고한 장려금 지급내역을 검토하여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부에 정산보고

7. 장려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94년도 장려금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 '94.12.31일까지 국제규격돈을 수출업체에 출하하고 TLC예비검사에 합격한 후 '95.3.20일이전에 수출업체에서 수출이 완료된 수출해당두수에 한하여 '94년도 장려금(이월예산)으로 '94년도의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

② '95년도 장려금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 '95.1.1일부터 12.31일까지 국제규격돈을 수출업체에 출하하고 TLC예비검사에 합격한 후 '96.3.20일이전에 수출업체에서 수출이 완료된 수출해당두수에 한하여 '95년도 장려금으로 '95년도의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
- '95.1.1일부터 동 지침에 따른 계약체결일(계약완료일 '95.2.20일)이전에 생산능가가 개별적으로 수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제규격돈을 생산공급한 경우
 - 수출단지에 참여한 생산능가는 수출단지주체에 신고, 수출단지에 참여하지 않은 생산능가는 국제규격돈생산공급계약을 체결한 조합에 신고하고 수출단지주체·조합은 동 지침에 따른 계약체결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시 동 내용을 구분하여 보고(서식1)
 - 생산능가로부터 신고를 받은 수출단지주체·조합은 동 기간내에 생산능가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수출업체에 국제규격돈을 공급하고 TLC예비검사에 합격한 후 수출업체에서 수출이 완료된 수출해당두수에 대한 수출완료증명관련서류(별첨1)를 필히 제출 받아 동 지침에 따라 '95년도의 장려금을 처음 신청할 때 장려금 지급내용을 구분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서식2)
 - 수출업체에서는 동 기간동안의 생산능가별 계약체결내용(서식1)과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별첨1)를 수출단지주체·조합에 반드시 통보하여 주고 수출단지주체·조합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서식2)

8. 부당지급된 장려금에 대한 조치

- 시·도지사는 수출단지주체·조합 및 수출업체에 상시비치된 수출을 증명할수 있는 관련 서류(별첨2)를 수시로 확인하여 부당하게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제9항의 의무 및 권장사항을 이행하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
- 수출단지주체·조합은 부당하게 장려금지급을 신청 또는 지급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견시까지 기 지원된 각종 정책자금을 즉시 회수하고 수출단지지정을 취소

- 수출업체는 국제규격돈생산농가에 장려금이 부당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서류(별첨1)를 허위로 작성하여 수출단지주체·조합에 통보하였을 경우에는
 - 수출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수출단지주체·조합으로부터 국제규격돈생산공급을 중단하는 동시에, 차년도 계약대상업체에서 제외
 - 수출업체에 대한 각종 정책자금지원을 중단함과 동시에 기 지원된 자금을 즉시 회수
- 시·도지사는 수출단지 및 조합별 생산농가별 장려금지급내역과 수출완료증명내역(별첨1)을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축협중앙회(유통부)에 통보
 - 축협중앙회는 수출업체에서 수출단지주체·조합별로 수출물량을 초과하여 수출완료증명서류를 발부하는 경우가 없도록 시·도로부터 통보 받은 내역을 수출업체별로 종합점검·검토한후 그 결과를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농림수산부에 보고

9. 우수한 국제규격돈생산을 위한 의무 및 권장사항

① 생산농가

○ 의무사항

- 국제규격돈생산공급계약 체결사항을 반드시 이행
- 거세실시, 유해잔류물질함유 방지를 위한 비육돈후기사료급여 및 출하전 휴약기간 준수

○ 권장사항

- 종돈과 사료를 통일하여 균일한 규격돈을 생산
- 매년 체계적인 사양관리로 생산비절감 및 도체등급 향상
- 출하체중 105 ~ 120kg 및 암수분리사육

※ 국제규격돈생산공급계약체결 및 의무사항을 불이행시는 장려금지급을 중단하는 동시에 차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수출단지주체·조합

○ 의무사항

- 국제규격돈생산공급계약 체결사항을 반드시 이행
- 생산농가에 지급되는 장려금은 반드시 정하여진 요령기준에 의하여 지급
- 장려금이 생산농가에 지급되기 이전에 타용도로 전용금지

○ 권장사항

- ①의 국제규격돈생산능가의 의무 및 권장사항을 철저히 관리지도

※ 국제규격돈생산공급계약체결 및 의무사항을 불이행시는 장려금지급을 중단하는 동시에 지급된 총장려금에 대해서 축협 일반대출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즉시 회수

③ 수출업체

○ 의무사항

- 국제규격돈생산공급계약 체결사항을 반드시 이행

- 생산능가에 장려금이 정당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장려금지급에 관련된 일체의 증빙서류를(별첨1)를 반드시 정확히 수출단지주체·조합에 통보하고 시·도지사에 보고

○ 권장사항

- TLC예비검사결과와 수출이 완료된 수출해당두수가 가능한 일치되도록 하고 PSE육발생이 되지 않도록 가공기술 및 ①의 생산능가 의무·권장사항에 대한 사양관리기술 지도

※ 국제규격돈생산공급계약체결 및 의무사항을 불이행시는 동 요령의 제8항을 적용

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련한 수출완료증명서류(별첨1)

1. 수출업체

- 수출단지주체·조합으로부터 국제규격돈을 공급받아 TLC예비검사에 합격한후 수출이 완료된 수출해당두수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수출단지주체·조합별 생산능가별로 구분하여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완료증명서류를 통보하고 동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
(제3항, 제7항, 제8항 및 제9항 관련)

- 통보 및 보고할 증빙서류

- ① 국립동물검역소 검역관이 수출단지·조합별 생산능가별로 검사시 마다 확인하는 수출등록 잔류물질(TLC)예비검사결과서(서식4)
- ② 수출단지주체·조합에서 생산능가별로 공동출하한 국제규격돈의 구매실적 및 가공실적
(자체가공·계약가공 구분)
- ③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
- ④ 수출물품 내역서인 PACKING LIST(물량, 두수)
- ⑤ PSE육발생 내역(서식5)

2. 수출단지주체·조합

- 수출업체의 출하 지정요청에 따라 생산능가별로 구분하여 국제규격돈을 공동출하하여 TLC예비검사에 합격한후 수출이 완료된 수출해당두수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수출업체로부터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완료증명서류를 통보 받아 관할 시·도지사에게 장려금 지급 신청시 첨부(동 요령 제5항 및 제7항 관련)

- 장려금지급 신청시 첨부할 증빙서류

- ① 수출업체에서 통보받은 일체의 서류

상시 비치(3년보존)할 증명서류(별첨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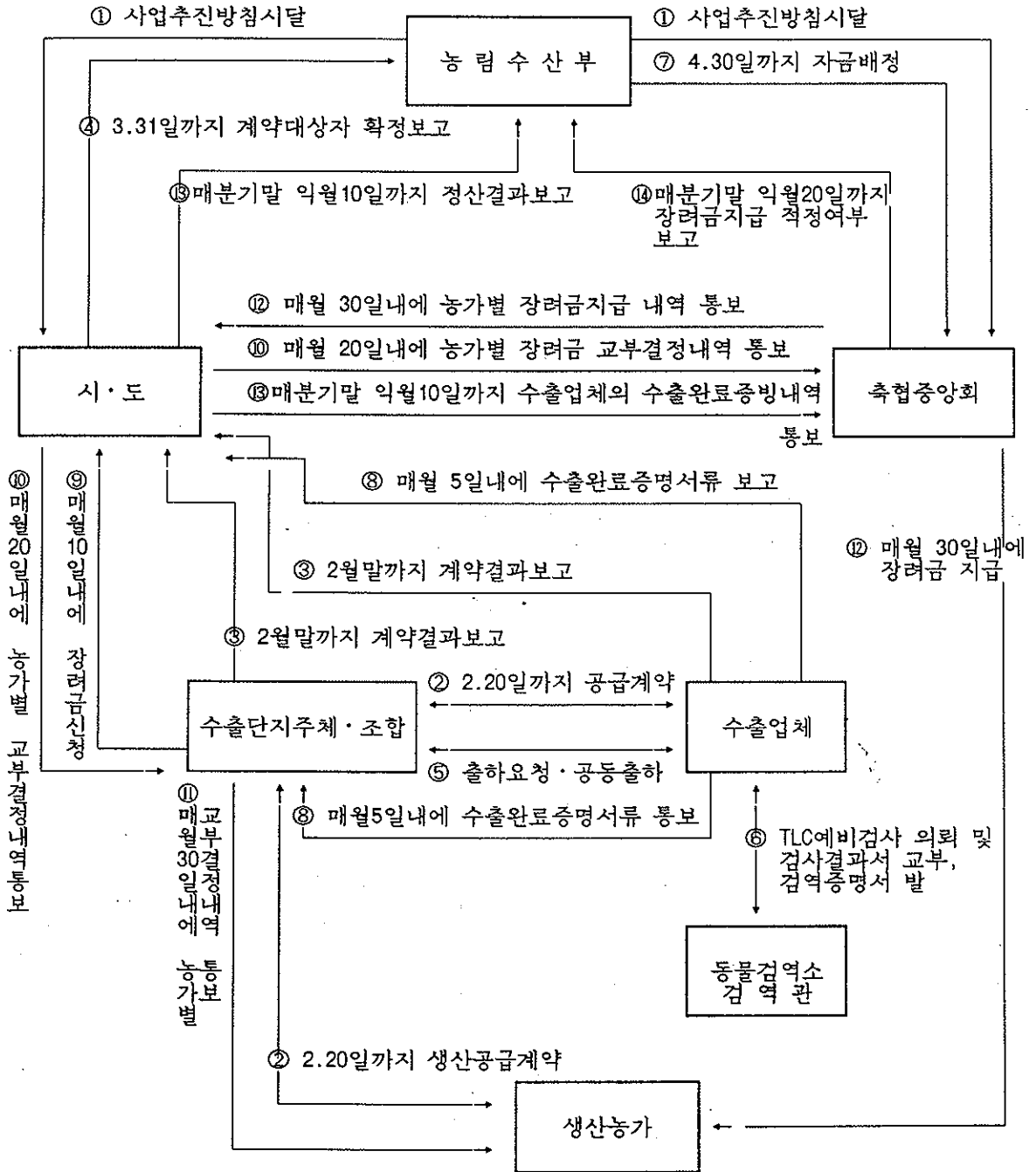
1. 수출단지주체·조합

- 동 요령 제2항의 생산농가와 수출단지주체·조합간의 계약체결 및 수출단지주체·조합과 수출업체간의 월별 국제규격돈생산공급계약을 계약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상시 비치
- 관할 축협도지회로부터 지급 받은 장려금의 생산농가별 지급대장 및 영수증
- 장려금 지급신청에 관련하여 수출업체로부터 통보받은 수출완료증명서류(별첨1) 일체

2. 수출업체

- 동 요령 제2항의 수출단지주체·조합과 수출업체간에 월별국제규격돈생산공급계약을 계약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상시 비치
- 장려금 지급신청에 관련하여 수출단지주체·조합에 통보한 수출완료증명서류(별첨1) 일체

국제규격돈 생산장려금 지급체계도



국제규격돈생산공급계약체결 결과보고(서식1)

< 수출단지주체·조합의 보고서식 >

- 수출단지주체·조합명 : (전화)
- 소재지 : 대표자 :
- 생산능가 및 수출업체와 계약체결 보고내용

수출업체명	생 산 능 가 별 현 황							수출단지 참여여부
	대표자	주민등록 번호	소재지	전화 번호	계약두수		거래구좌	
					월간	년간		
계								

- (주) 1. 국제규격돈생산공급계약서 첨부
- 2. '95.1.1~2.20일까지 수출업체와 생산능가가 개별적으로 계약체결한후 수출단지주체·조합에 신고한 내용을 구분하여 보고

< 수출업체의 보고서식 >

- 수출업체명 : (전화)
- 소재지 : 대표자 :
- 수출단지주체·조합과 계약체결 보고내용

수출단지 및 조합명	생 산 능 가 별 현 황						수출계획량		가공계획량	
	대표자	주민등록 번호	소재지	전화 번호	계약두수		월간	년간	월간	년간
					월간	년간				
								kg		
계										

- (주) 1. 국제규격돈생산공급계약서 첨부
- 2. '95.1.1~2.20일까지 수출업체와 생산능가가 개별적으로 계약체결한후 수출단지주체·조합에 신고한 내용을 구분하여 보고
- 3. 수출업체에서 이용하는 도축장·가공장의 소재지, 대표자, 처리능력등 현황을 첨부

공동출하두수의 수출완료두수내역(서식2)

- 수출업체명 : (전화)
 - 소재지 : 대표자 :
 ○ 수출단지주체·조합에 통보 및 동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내용

수출단지 및 조합명	생산농가별			가공내역		수출완료내역		
	농장명	구매두수	TLC 검사 합격두수	자체가공	계약가공	수출물량	잔여육	수출해당 두수
				kg		kg ()		
						()		

- (주) 1. <별첨1.의 관련서류 첨부
 2. 수출단지주체·조합에서 구매두수와 수출업체에서 자체구매두수를 구분 별도작성
 3. 수출물량의 ()내에는 C/T(박스)량 기재
 4. '95.1.1~2.20일까지 수출업체와 생산농가가 개별적으로 계약체결한후 수출단지주체·조합에 신고한 내용을 구분하여 보고

수출돈육잔류물질(TLC)예비검사결과서(서식3)

검사번호 : 제 호

검사일자 : 19 . . .

수출단지주체 · 조합명	출하농장명	도축두수	(TLC) 검사두수	검사결과		비 고
				부적합	적 합	
계						

상기와 같이 수출돈육 잔류물질 예비검사(TLC)를 실시하였음

19 . . .

검사자 : ○ ○ ○ (인)

확인자 : 국립동물검역소 ○ ○ 지소 검역관 ○ ○ ○ (인)

장려금지급 신청내역(서식4)

- 수출단지주체·조합명 : (전화)
 - 소재지 : 대표자 :
 ○ 관할 시·도지사에게 장려금 신청내용

수출업체	생 산 능 가 별 현 황							
	능 가 명	출하두수	TLC예비검사결과		수출물량	수출해당 두 수	신 청 금 액	거래구좌
			합 격	불합격				
			두		kg		원	
계								

- (주) 1. 수출업체로부터 통보받은 <별첨1>의 관련서류 첨부
 2. '95.1.1~2.20일까지 수출업체와 생산농가가 개별적으로 계약체결한후 수출단지주체·조합에 신고한 내용을 구분하여 신청

PSE육발생 내역서(서식5)

- 수출업체명 : (전화)
 - 소재지 : 대표자 :
 ○ 수출단지주체·조합별 생산농가별 PSE육발생내용

발생일자	수출단지주체·조합명	출하농가명	출하두수	발생두수	발생내역
계					

수출업체별 돼지고기수출현황(서식6)

○ 수출업체명 : (전화)
 - 소재지 : 대표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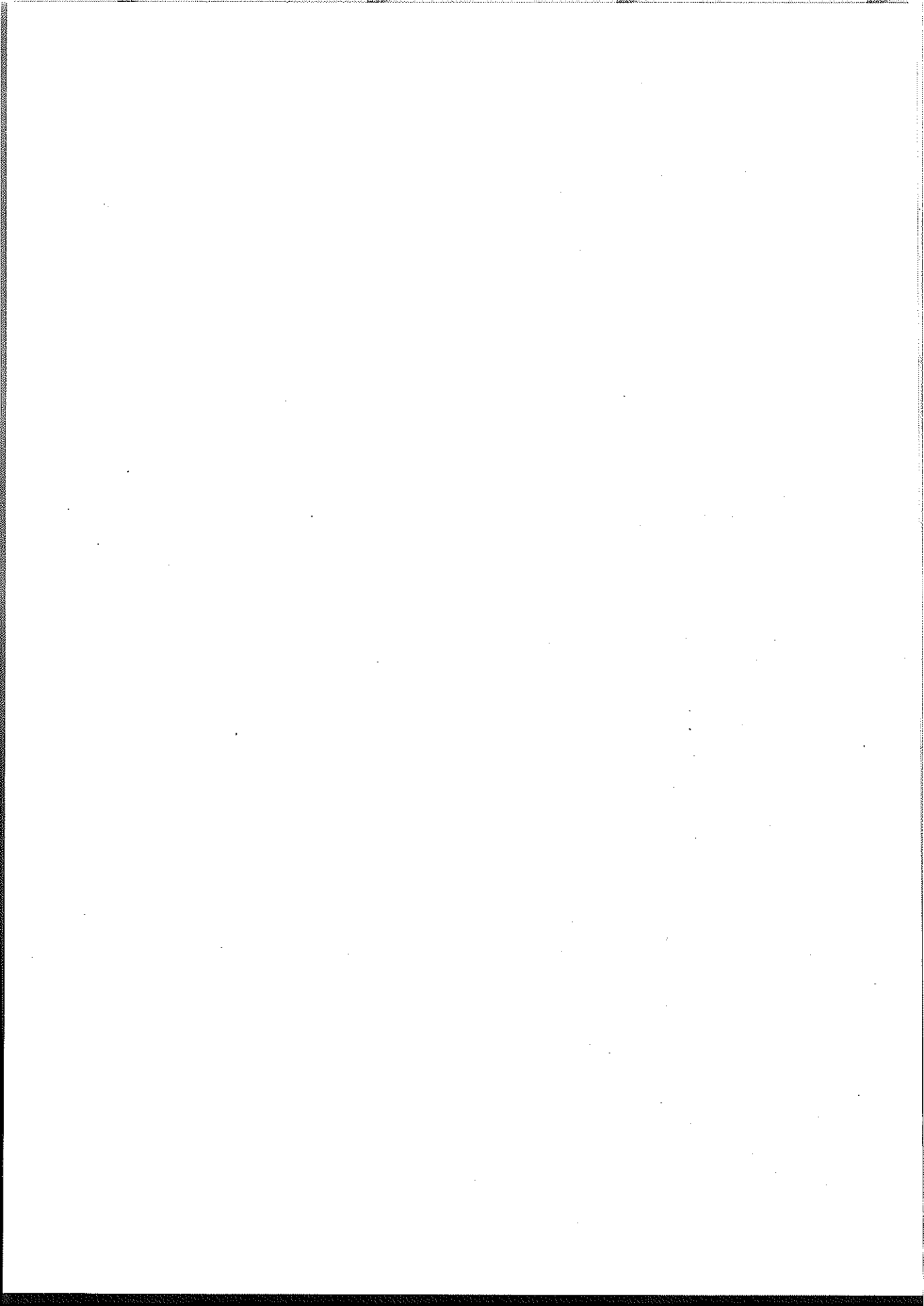
수출선적 년월일	검역기준				통관기준				계약가공수출 대행업체명
	직접수출		계약가공수출		직접수출		계약가공수출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kg	\$							
계									

부위별 수출현황(서식6)

○ 수출업체명 : (전화)
 - 소재지 : 대표자 :

수출 선적 년월일	단지주체 · 조합명	농가명	부위별 수출물량					두당 부위별 수출물량						
			안심	등심	목심	기타	계	안심	등심	목심	기타	계		
			kg											

8. 소득원다양화 및 농촌생활환경개선



농어촌특산단지육성 (자 율)

1. 목 적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어촌의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이하 "특산단지"라 한다)를 조성·운영함으로써 농어민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정부가 지원하고 있음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지역부존자원을 이용한 품목으로 향토성과 지명도가 있고 지역의 열이 담긴 지역특산품을 지정하여 육성
- 다수농어가의 농외고용과 소득증대 효과가 높은 지구를 지정하여 육성
- 기존단지의 내실화를 위한 판로 및 경영기술 지도강화
- 고부가가치제품 및 농어촌부존자원활용 제품생산단지 우선지원

(1) 신규지정 지원대상자 선정

- 신규단지 지정시에는 사업성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정하되, 생산제품의 지역대표성과 지명도가 높고, 상품화가치가 있는 향토색 짙은 지역특산품 생산지구를 중점적으로 지정
 - 조성실적(수) 위주의 무분별한 단지 지정지양으로 사업부실화 방지
- 전통민속공예품, 고부가가치제품, 농어촌부존자원을 활용한 제품생산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정

(2) 기성단지 지원대상자 선정

- 농의소득증대 효과가 큰 제품을 생산하는 단지의 시설현대화, 내실화에 집중지원
- 전통민속공예품,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농어촌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제품등에 우선지원하되 단순부업제품, 식료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성단지중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중 회생가능업체는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나. 사업목표 및 장기계획

- 2004년까지 읍·면당 1개소이상 단지조성

년도	94까지	'95	'96	'97	'98	'99~2004	계
단지수	689	80	90	100	100	541	1,600

3. 사업신청자격

가. 대상지역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

나. 대표자 자격

- 사업지역(읍·면·동) 거주자로서 당해 사업분야에 대한 경험과 기술이 있고, 경영능력이 있는 자

다. 농어민참여

- 농어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출자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여호수 제한없이 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나 비농어민만의 출자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3호이상의 농어가 임가공, 공동생산등의 형태로 참여하여야 단지 지정
 - 농어민 사업장 : 농어민 1호이상 참여
 - 비농어민 사업장 : 농어민 3호이상 참여

라. 사업형태

- 공동출자, 공동생산(이상 협업형), 임가공, 취업형태로 운영

마. 대상품목

업종별	품목
민속공예품	죽제품, 목공예, 석공예, 도자기공예, 한지, 패각가공, 갈포가공, 완초가공등
농수산자재	싸리제품, 비닐제품, 지물제품, 어망, 인삼발등
일반공산품	콜크제품, 소독저, 옷걸이, 목제가공제품 등
섬유 직물	모시, 마포, 자수 등
석재 분야	조경석, 슷돌, 돌가공제품등
기 타	지역특산품으로 판단되는 품목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농어민, 비농어민
(단, 비농어민만의 출자일 경우는 3호이상의 농어민 참여)

나. 지원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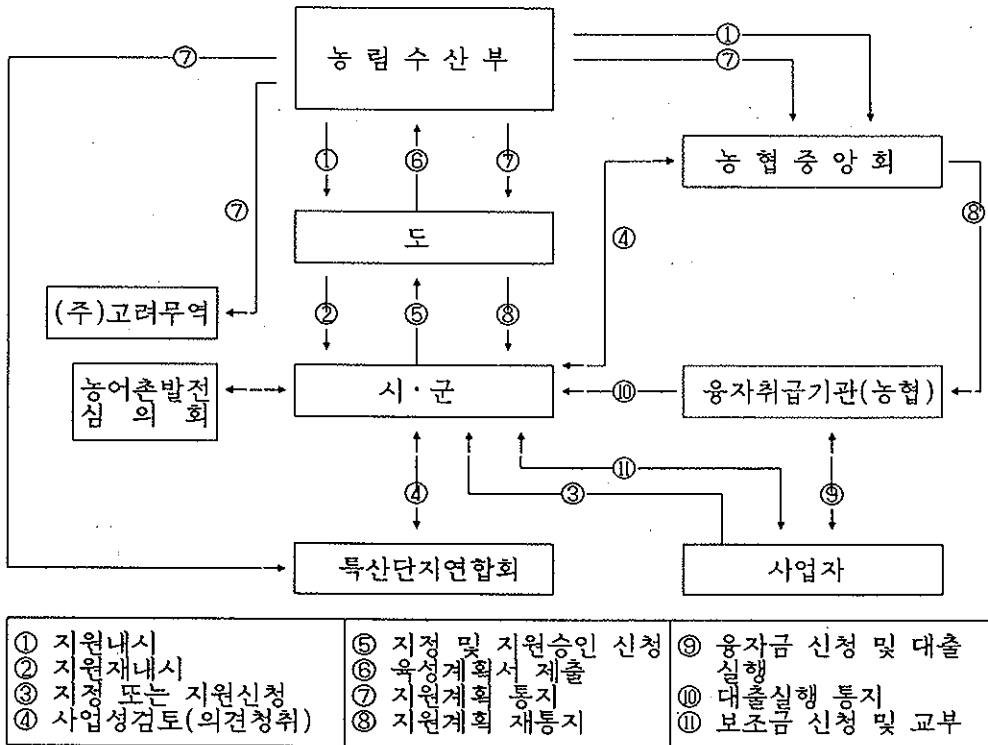
- 단지당 지원규모

출자인원 또는 출자금액	자금지원한도
농어민 5호미만이 출자하거나 농어민 출자금의 합이 2억원 미만일 경우와 비농어민 사업장의 경우	2억원
농어민 5호이상 출자하고, 농어민 출자금의 합이 2억원 이상일 경우	2.5억원
농어민 10호이상 출자하고, 농어민 출자금의 합이 3억원 이상일 경우	3억원
집단화를 위해 개별사업체 3개 이상이 1개단지로 지정경우	5억원

○ 단지방 지원내역

	구 분	재원별내역	용 자 조 건	비 고
시설자금 (70%)	시설비 (85%)	국 고 25% 지방비 25% 용 자 30% 자부담 20%	3년거치 7년균분상환 연리 5%	시설자동화 및 사 업장 신축비등
	개발비 (15%)	국 고 25% 지방비 25% 용 자 30% 자부담 20%	"	신상품개발을 위한 포장 금형, 제품 및 디자인 개발비등
운영자금 (30%)	운영비 (100%)	용 자 70% 자부담 30%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연리 8%	원료구입비등

다.사업추진 체계도



5. 사업계획수립 및 신청

- 신규지정 및 기성단지 지원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사업시행 전년도 12월말까지)
(신규 : 별지 제1.2.3호 서식, 기성 : 별지 제2.3호 서식)

6. 사업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시.군단위 농어촌발전 장기계획 사업량 및 예산범위내에서 농협 시.군 지부의 사업성검토 및 농발위 심의후 지원계획확정(별지 제4.5.6호 서식)
단, 시장.군수는 대상자 선정시 당해 시.군의 특산단지연합회 의견을 청취하여 참고할 수 있다

7. 담보문제

- 농협중앙회 또는 단위농협의 여신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가급적 신용 대출 또는 신용보증부 대출을 원칙으로 하며, 특산단지의 담보능력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은 대출시 담보물의 시가기준을 현실화 하고 시설자금 용자시 최대한 후취담보실시

8.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보조사업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지원받은 시설물을 처분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자금을 대출받은 사업자도 대출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함.
- 사업계획변경
사업계획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사업계획수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당초 지원액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변경승인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 경유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하고 용자취급기관에도 통보
다만, 시.군간 예산증감이 발생시는 시.도지원액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변경승인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특산단지사업자는 년도별 수입 및 지출상황(보조금은 별도 계리), 결산상황(자산, 자본, 부채, 손익상황등), 제조원가, 매출현황, 참가구현황, 임금지급상황등에 관한 농어촌특산단지 관리대장을 사업장에 상시 비치(별지 제10호 서식)
- 시장.군수는 보조금과 융자금(원리금 상환기간 만료이전)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당초 사업목적에 크게 위배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토록 조치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및 보조금반환, 지원자금(융자)회수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후 그 결과를 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특산단지로 지정받은 사업장 입구의 적당한 위치에 특산단지의 명칭 지정년도, 지정번호, 지정권자등을 표기한 표찰을 부착토록 하여야 하며, 사무실에는 지정서를 부착토록 하여야 함(별지 제7호 서식)
-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 교부조건 융자취급기관의 여신관계규정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함(별지 제8호 서식)

9. 행정사항

- 농어촌특산단지 사업비 정산보고(별지 제9호 서식)
- 시장.군수는 관내 특산단지에 대한 반기말 사업추진실적, 운영단지현황, 지정취소현황을 현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집계)를 경유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1.12.13호 서식)
- 신규 및 기성단지 지원계획보고 : 각 시.도지사는 신규 및 기성단지 지원계획(사업량, 재원별 지원액등)을 매년 1월말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도지사는 "특산단지 제품의 판매확대방안"(각종문화행사, 서울지역 특별판매행사(주)고려무역판매행사 참여)을 수립하여 매년 1.20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분기별 추진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10. 사업효과

- 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역특산품개발과 농어촌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외소득증대에 기여

11. '95.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전국계	230(80)	23,863	3,975	3,975	8,970	6,943
광 주	2(-)	196	35	35	83	43
경 기	9(3)	951	162	162	344	283
강 원	13(5)	1,370	241	241	457	431
충 북	8(3)	883	140	140	357	246
충 남	44(17)	4,111	970	970	1,355	816
전 북	38(14)	4,083	691	691	1,469	1,232
전 남	42(15)	4,565	783	783	1,613	1,386
경 북	27(10)	3,008	467	467	1,099	975
경 남	37(13)	4,111	466	466	1,821	1,358
제 주	10(-)	585	20	20	372	173

※ ()는 '95.신규지정 단지수로 내서임

12.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중 앙 :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촌소득과
- 도 : 농정국 농업정책(경영)과
- 시.군 : 산업과

처 리 기 간

시, 군(접수검토, 승인신청)	20일
도(검토, 승인)	7일
시, 군(지정통보)	3일

특산단지 지정 신청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 사업계획서와 같이 특산단지를 조성하고자 지정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9 . . .

○○ 특산단지 대표 인

시장·군수 귀하

수 수 료

없 음

사 업 계 획 서

1. 개황

- 명 칭 : ○ 사업장 구분 : (특산품 또는 부업)
- 사업장 소재지 : 도 시·군 동·읍·면 리 번지
- 업종 및 생산제품 : (업종) (생산제품)
 ※업종은 민속공예품, 석재, 농수산자재, 직물, 기타 중 하나를 기재
- 사업자(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인)	연령	만	세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학 력 및 경 력	기 간			학교 및 전공, 근무처 및 활동사항			

- 관리직원 수 : (직책별 인원수를 적음)
- 참여형태 :
 ※ 공동출자, 공동생산, 취업, 임가공, 혼합 중 하나를 기재함. 다만 혼합의 경우 혼합된 형태를 ()안에 "/"으로 구분하여 함께 적되, 사업자 1가구 단독출자의 경우는 참여형태를 구분함에 있어 사업자를 제외한 다른 참여가구의 참여형태만으로 구분함.
 (예) 1) 사업자 1가구가 단독출자하고 3가구가 취업한 경우의 참여형태는 "취업"임.
 2) 사업자 1가구가 단독출자하고 1가구는 공동생산, 1가구는 임가공일 경우의 참여형태는 "혼합(공동생산/임가공)"임

○ 참여가구 현황

(단위 : 가구)

합 계			공 동 출 자			공 동 생 산			취 업			임 가 공		
계	농어 가	기타	계	농어 가	기타	계	농어 가	기타	계	농어 가	기타	계	농어 가	기타

- (주) 1) 공동생산이라 함은 참여가구가 원료를 스스로 생산 또는 조달하여 특산단지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후 그 이익금을 공동분배하는 것을 말함.
 2) 1가구 단독출자한 사업자는 공동출자란에 적음.
 3) 2인 이상 참여가구의 경우 가구원 중 특산단지에서의 소득이 가장 많은 가구원의 참여형태를 적음.

○ 참여가구 및 참여자 명단

(단위 : 가구)

가구 번호	가구주 성명	주 소	경 작 면 적 (m ²)			참 여 자				
			계	자경	임차	성명	생년월일	가구주와 의관계	참여 형태	

- (주) 1) 사업자의 가구번호는 1번을 부여함.
 2) 1가구 단독출자한 사업자의 경우 그의 참여형태란에는 "출자"라 적음.

2. 사업비 조달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비					시기별소요금액				
	합계	국비조	지방비 보조	농특자 응용	자부담	계	1/4	2/4	3/4	4/4
합계										
시설자금	소계									
	건물 기계.기구 생산부대시설									
개발자금	소계									
운영자금	소계									
	원료구입비 기타									

- 주) 1) 건물은 공장, 공동작업장, 창고, 사무실등의 사용목적에 따라 동별로 세분
 하고 ()안에 신축, 증축, 개축, 매입 중 하나를 적음.
 2) 건물은 토지와 일괄 매입하는 경우의 건물매입비는 당해건물의 재산세 과세표
 준액을 적음.

3. 제조공정

(주) 단위공정별로 상세하게 기재(필요할 경우 도면 첨부)

4. 원료조달계획

년도별	원료명	조달처	조달방법	조달시기	소요량	소요자금 (천원)			
						계	정부지원	자체차입	자기자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주) 1) 조달처는 농촌, 도시, 수입등으로 구분
 2) 조달방법은 자체생산, 구입, 원도급자 제공 등으로 구분(자체생산은 참여형태가 "공동생산"으로써 참여가구가 경작 등의 방법으로 직접생산한 경우에 한함)
 3) 조달시기는 연중 또는 일시(예:3월-6월)로 구분
 4) 소요량에는 물량과 함께 반드시 단위를 적음.

5. 생산 및 판매계획

(금액단위 : 천원)

품목별	구분	전년(19)			당년(19)			2년차(19)			3년차(19)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전년말고												
	생산계획												
	판매계획 - 내수 - 수출												
	다음해로월												
	전년말고												
	생산계획												
	판매계획 - 내수 - 수출												
	다음해로월												
	전년말고												
	생산계획												
	판매계획 - 내수 - 수출												
	다음해로월												
	전년말고												
	생산계획												
	판매계획 - 내수 - 수출												
	다음해로월												

- (주) 1) 생산 및 판매단가는 사실대로 기입하여야 함.
 2) 수량에는 수량과 함께 반드시 단위를 적음.

6. 판매방법 및 판매처

판매경로 :				
제품명	수량	금액(천원)	판매처	판매실적
				○ 판매기간 : 년도~ 년도(년간) ○ 제품명 : ○ 총판매금액 ○ 판매처
향후판매전망 :				

- 주) 1. 현재 판매(거래)하고 있거나 앞으로 판매계획을 작성함
 2. 판매경로는 생산에서 판매처까지의 경로를 도표로 작성
 3. 향후 판매전망은 어떠한 사유로 전망이 있다, 또는 없음을 명기
 4. 판매실적은 과거 판매실적이 있을 때 제품별로 간략히 기재

예) 판매기간 : '92~'94(최소한 3년간 이상)

제품명 : 도자기

판매처(상세히) : 서울 미도파백화점, 서울공예품판매점등

7. 소득효과

(단위 : 가구, 천원)

		전 년 (19)	당 년 (19)	2년 차 (19)	3년 차 (19)
매출액 (7)					
제조원가 및 비용 계	원료구입비				
	노무비(취업)				
	노무비(임가공)				
	경비				
	(제조원가 계)	()	()	()	()
	판매비				
	일반관리비				
	지급이자(원금제외)				
	제세공과금				
기타비용					
원가및비용 계(L)					
손익 (7-L)					
소득 분석	참여형태별 가구수	공동출자 공동생 산업 취입 가계			
	가구당 소득액	공동출자 공동생 산업 취입 가계			

- (주) 1) 원료구입비는 공동생산 형태의 참여가구 이외(외부)의 자에게 지급한 비용만 적음.
 2) 노무비는 취업 또는 임가공 형태의 참여가구에 지급한 금액만 적음.
 3) 참여형태별 가구수는 "1.개황"의 "참여가구 현황" 기재요령 참조.
 4) 가구당 소득액은 다음과 같이 적음.
 - 참여형태가 공동출자 또는 공동생산이거나 2가지 혼합인 경우는 손익을 당해 가구수로 나눈 금액
 - 참여형태가 취업 또는 임가공이거나 2가지 혼합인 경우는 당해 노무비를 당해 가구수로 나눈 금액
 - 참여형태가 공동출자(또는 공동생산)와 취업(또는 임가공) 혼합인 경우는, 공동출자(또는 공동생산)는 손익을 당해 가구수로, 취업(또는 임가공)은 당해 노무비를 당해 가구수로 각각 나눈 금액
 - 1가구 단독출자한 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참여가구의 소득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공동출자란에 적음.
 - 1가구 단독출자한 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참여가구의 소득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공동출자란에 적음.

[별지 제3호 서식]

종합심사서

1. 명칭 및 사업장 구분 : (명칭) (사업장 구분)
2. 사업장 소재지 :
3. 업종 및 생산제품 : (업종) (생산제품)
4. 사업자 : (성명) (생년월일) 19 . . .
5. 참여형태 :
6. 심사내용 : (붙임참조)

19 . . .

○ ○ 시 장 (직인)
군 수

(1) 사업성검토서에 대한 심사의견

항 목	심 사 의 견

(주) 제시된 항목별로 구분하여 논리적.구체적으로 적음

(2) 연합회 의견서에 대한 심사의견

항 목	심 사 의 견

(주) 제시된 항목별로 구분하여 논리적.구체적으로 적음

(3) 종합의견

※ 전체사항을 포괄적으로 적되 객관성이 있어야 하며 요건 및 법령 적합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을 반드시 적음

○○년도 농어촌특산단지별 지정계획보고(총괄, 신규, 기성)

(단위 : 천원, 천원, 분, 백만원)

입 종 별	우 선 순 위 번호	종 업 명 목	사 업 성 태	소 수 제 지	대 표 자 성 명 회	참여가구		제·종·생·산·및·판·매·계·획		추정생산비		추정소득			사업비 조달계획				
						가 가 가	가 가 가	생 산 기 회	수 량	생 산 액	내 수 (금액)	수 출 (금액)	개	원 료 비 용	기 타 비 용	종 소 득	기 구 보 조 금	국 비	지 방 비
합 계																			

- ※ 작성요령 1. 업종명 : 직성순위(①민속공예품, ② 농수산자재 ③ 일반공산품 ④ 섬유직물 ⑤ 식재 ⑥ 기타)대로 작성기재
 2. 품 목 : 목공예, 석공예등 주된 생산품목을 기재
 3. 우선순위번호 : 업종명 구분없이 지원대상지 순위번호기재
 4. 사업명 : 세부적인 사업명(시설비 : ○○공장, ○○기계, ○○개민비(김형,디지인상), ○○포장비상, 원료비 : ○○원료구입비상)으로 기재
 5. 사업형태 : 공동출자, 공동생산 취업, 입가출자 하나를 기입하되 혼합형 형태는 추가되는 것을 기입하고 만미에 (혼)을 기입함.
 6. 소재지 : 사업장소의 주소
 7. 참여가구 : 농어가수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의한 농어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어가
 8.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 : 연간 총 생산계획과 판매계획을 기입하되 판매계획은 내수, 수출 구분 작성
 9. 추정생산비중 기타비용 : 제작비용, 세공비용 포함하되, 참여농이기의 임금분 제외
 10. 추정소득(정수로신출) : 제품판매계획 - 추정생산비(가구당소득 = 종소득 + 참여가구)
 11. 추정소득중소득 : 제품판매계획 - 추정생산비(소수집이하 생략)

가구당소득 : 종소득 + 참여농어가 보수

[별지 제5호 서식]

년도 특산단지 사업비 조달계획 세부명세표 (총괄, 신규, 기성)

(단위: 백만원)

내 표 지	시 인 내 인 (요약하여요권만기인) 시 집행계획필요시 작성												
	총 계					분기별 지급소요액							
	시 인 내 인					운 영 자 금		분 기 별 지 급 소 요 액					
	합	보조	국비	지방비	합	총계	농목용자	자치부담	합	1/4	2/4	3/4	4/4
합													
계													

* 분기별 지급소요액 요구하는 시·군·읍, 단지별로 일괄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요구할 것.

[별지 제6호 서식]

년도 특산단지 사업비 조달계획 세부명세표 (총괄, 신규, 기성)
(오오도, 오오시.군)

(단위 : 백만원)

업종 분류	대 표 자	업 소 계 지	사 업 비 지 원 계 회												분 기 지 원 계 회					
			계				사 선 지 금				개 발 자 금				운 영 자 금			개 계	3/4	4/4
			계	국 비 보 조	지 방 보 조	민 간 보 조	자 부 담	계	국 비 보 조	지 방 보 조	민 간 보 조	자 부 담	개	농 업 용 자	기 타 부 담					
합 계																				

* 1) 각선요법은 지정계획보고서 작성방법에 준할 것.
2) 분기별 지원계획요구는 분기별로 입력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도록 요구할 것.

특 산 단 지 지 정 서

지 정 번 호 : 제 호

명 칭 :

사업장 구분 :

사업장 소재지 :

업종 및 생산품목 : (업종)

(생산품목)

사업자(대표자) : (성명)

(생년월일) 19

참 여 형 태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같이 특산단지를 지정합니다.

19

○

○

시
군

장
수

(직인)

[별지 제8호 서식]

보 조 조 건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때와 보조사업을 다른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때에는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 또는 검정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발하는 명령에 따라야 한다.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끝난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한 계산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였거나, 시장·군수가 특산단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반환하게 한다.
6.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 또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증감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교환 또는 대여할 수 없다.
8. 보조사업자는 관계공무원이 사업장의 장부·서류·기타의 재산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질문을 할때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9.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중요재산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와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 시식]

년도 특산단지 사업비 정산보고서

(오오도, 오오시.군)

(단위 : 백만원)

업종 중 분 류	대표 자 성 명	단 지 소 재 지	사 업 비 지 원 계 획												비 고 (운공임차,김정인지,수랑농 요건설기입)									
			사 계				시 진 자 금				개 법 지 원					운 영 자 금								
			국 비 보 조	지 방 비 보 조	농 촌 용 자	자 부 담	국 비 보 조	지 방 비 보 조	농 촌 용 자	자 부 담	국 비 보 조	지 방 비 보 조	농 촌 용 자	자 부 담		국 비 보 조	지 방 비 보 조	농 촌 용 자	자 부 담					
합 계																								

특산단지 관리 대장

1. 개 황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 칭 : ○ 사업장 소재지 : ○ 업종 및 생산제품 : (업종) ○ 사 업 자 : (성명) ○ 참여형태 : ○ 관리직원수 : (직책별 인원수를 적음) ○ 참여제한 읍·면의 명칭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번호 : ○ 지정연월일 : 19 (생산제품) (생년월일) ○ 사업장 구분 : |
|---|--|

2. 참여가구수 변동상황

(단위 : 가구)

점검 기준일	참 여 가 구 수					점검 년월일	점검 성명.날인
	합 계	공동출자	공동생산	취 업	임 가 공		

3. 참여가구 및 참여자 변동상황

점검 기준일	가구 번호	가구 주명 성명	주 소	경 작 면 적(m ²)			참 여 자				점검 년월일	점검 성명.날인	
				계	自 耕	임 차	성명	생 년 월 일	가구 주와 관계	참여 형태			

4. 사업비 조달상황

(단위 : 천원)

점검 기준일	재원별	용도	조달 년월일	조달금액	사 용 명 세	점검 년월일	점검 적.성명.날인	자 인

- (주) 1) 재원은 국비보조, 지방비보조, 농특용자, 자부담 중 하나를 적음
 2) 용도는 시설자금, 개발비, 운영자금 중 하나를 적음
 3) 사용명세는 상세하게 적음

5. 생산 및 판매상황

(금액단위 : 천원)

점검 기준일	전기말재고		생산실적		판매실적		당기말재고		점검 년월일	점검 적.성명.날인	자 인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6. 소득효과

점검 기준일	매출 액	조가 및 비용	손 △ 익	소 득										점검 년월일	점검 적.성명.날인	자 인
				총 소득 액	가 구 별 소 득								계			
					공동출자		공동생산		취업		임가공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년도 (상·하)반기 특산단지 사업추진실적

(○○○○,○○○○시·군)

(단위 : 백만원)

업종	품목	단지소재지	대표자	창업형태	창업기		생산	판매실적		소류표과		기용인원	지 금 조 달 실 적																								
					개	계		내수	수출	총소류	가당소류		국비보조		지방비보조		농특용자		자부담																		
													계획	실적	비율 (%)	실적	비율 (%)	계획	실적	비율 (%)	계획	실적	비율 (%)	계획	실적	비율 (%)											
합계																																					

주) 1. 직성요명은 지정계획보고서 작성방법에 준영할 것
 2. 업종법, 단지번호 작성하되 업종이 변경되는 소계 작성기입.

[별지 제12호 서식]

〇〇년도(상·하)반기 운영단지현황

〇 〇 도

(단위 : 백만원)

업 종 별	품 목	단지소재지	단지당	대표자	참여형태	참여농인가수	지정 년도	년도별 지원자금										
								90까지 응잔	'91	'92	'93	'94			합 계			
												계	보 조	용 자	계	보 조	용 자	

〇〇년도(상·하)반기 단지별 지정취소현황

〇 〇 도

(단위 : 백만원)

업 종 별	품 목	단지소재지	대표자	지정 년도	취소년월일	용자금 상환여부			취 소 사 유 (구체적으로 기입)
						용자액	상환액	미상환액	

[별지 제13호 서식]

각시·도별 농어촌특산단지 지정 및 취소현황

(단위 : 개소)

	조 성 단 지		지 정 취 소		운 영 단 지
	신규조성	누 계	당년취소	누 계	누 계
'86					
'87					
'88					
'89					
'90					
'91					
'92					
'93					
'94					

휴양단지개발사업(자율)

1. 목 적

농어촌휴양자원을 농어촌 주민의 소득과 연계하여 개발·육성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도·농간의 교류를 촉진하고자 정부가 지원하고 있음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본사업은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 제1호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농·수·축·임협)로 하여금 개발하도록 함.
- 휴양단지를 도시민에게 휴식장소로 제공하고 농어촌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특색있게 개발
- 입지결정 및 사업계획수립시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사업계획수립시 공청회를 거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여 개발이익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농어민 및 농어민단체등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등 농어촌의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사업목표 및 장기계획

○ 연차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계	'93까지	'94	'95	'96~'98	99~2004
사업량	68	8	2	5	21	32
지원액	98,100	7,000	4,100	7,500	31,500	48,000

※ 추진목표('89~2004) : 군당 1개소씩 136개소 조성(지원 68).

3. 사업내용

가.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생산자단체(농·수·축·임협)
 - 해당 지역농어민의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을 개발하여 부지 또는 시설물을 현지 농어민에게 우선 분양(임대포함)하는 조건으로 개발에 참여
- 자기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현지거주 농어민

나. 세부사업내용

1) 휴양단지사업의 정의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지역특산물판매·체육·휴양시설등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음식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2) 개발내용

- 기반조성시설설치
 - 단지조성을 위한 부지정지
 - 내방객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진입로 확·포장, 주차장, 용수개발,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공중화장실 등
- 농림어업생산 및 부대시설
 - 지역특산품 생산시설과 생산물 수집·저장을 위한 집하장·저장고 등
- 편의시설
 - 지역농특산물판매를 위한 농특산물판매장등 판매시설
 - 여관, 호텔등 숙박시설, 휴게소, 식당, 예식장등 편익시설
 - 놀이시설, 낚시터, 수영장, 눈썰매장, 미니골프장, 야영장, 자동차캠핑장 등 운동·휴양시설
 - 농업전시관, 농기구전시관, 농업과학관, 영농체험학습관, 교양시설등

3) 개발유형

- 농어촌 지역의 자연경관을 충분히 활용하여 농어촌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시설물을 설치하여 내방객의 건강증진, 휴양, 자연학습등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도록 다양하게 개발
(자연학습형, 청소년심신수련형, 주말휴양형 등)
- 농어촌의 쾌적한 농원공간을 활용한 도시와 농촌의 상호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일정한 농업관련 시설이 포함되도록 특색있게 설치하여 일반관광지와 구분될 수 있도록 개발

4. 사업계획수립 및 신청

가. 사업계획수립주체 :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생산자단체, 농어민(자부담개발시)

나. 사업계획수립시 고려사항

1) 지정대상지역

- 농어촌지역의 준농림지역으로서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주변에 역사적 유물, 유적, 문화재 등이 있는 지역
- 지역특산품(희귀작물, 토산품, 민예품 등) 생산과 판매가 용이한 지역
- 휴양부존자원이 있는 지구로 시장·군수가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기타 타법령(국토이용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도시계획법등)에 제한을 받지 않거나 인·허가등 문제가 없는 지역 등

2) 단지당 지정규모

- 단지당 지정규모는 30,000㎡이상 100,000㎡미만을 원칙으로 하되, 공영개발 하는 경우에는 100,000㎡이상 규모와 30,000㎡미만의 소규모 단지도 개발가능
- 휴양단지 규모에는 기반시설 및 부대·편의시설 면적을 모두 포함

다.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

1) 지원기준

- 재 원 : 농특회계
- 용자대상 : 시장·군수등 공공단체가 공영 개발하는 휴양단지

2) 지원대상사업 : 휴양단지내의 기반조성시설, 편의시설, 농업생산과 부대시설 설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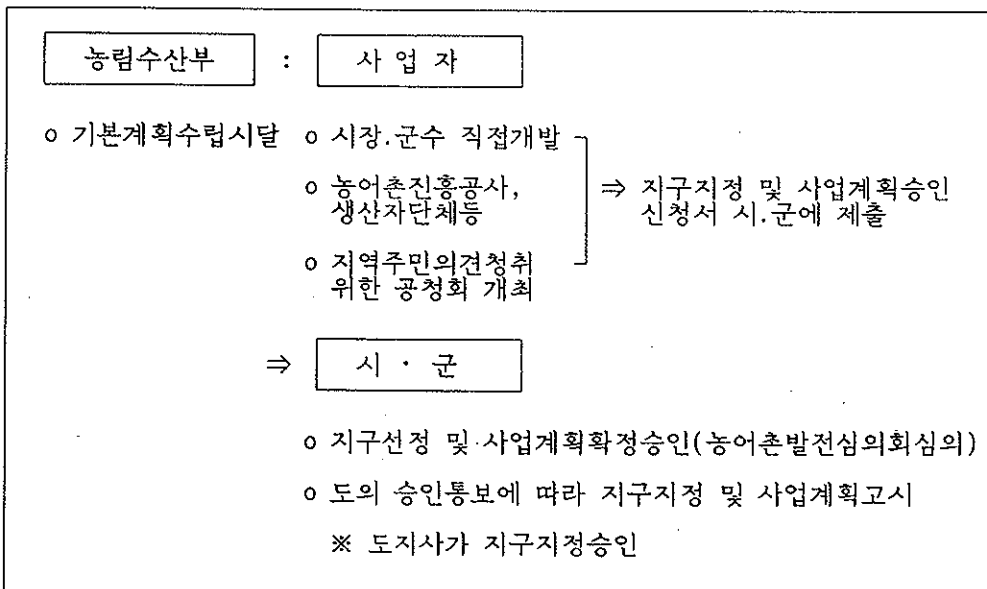
3) 용자지원한도액 : 단지당 20억원이내

4) 용자조건 : 년 3%,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용자비율 : 총 사업비 100%까지

5) 대출방법 : 신용대출

라. 사업추진체계도



5.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

가.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

1)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제출

- 휴양단지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년도의 농림수산부 지원계획범위내에서 휴양단지개발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

2)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

- 시장.군수는 휴양단지개발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등의 내용이 농어촌 소득증대, 자연경관의 보전등 농어촌휴양지 지정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구선정 및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지구지정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지구지정 승인을 요청하고 도지사는 내용검토후 지구지정승인
- 시장.군수는 국토이용계획변경과 함께 사업계획을 승인통보
- 시장.군수는 지구를 지정하거나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그 주요내용을 고시

6. 사업시행

가. 용지매수 및 보상

- 1)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는 자가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되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함.
- 2) 용지매수 보상비는 공사비를 우선하여 가능한한 전액보상하고 동일인 토지에 관한 보상은 일괄 보상을 원칙으로 함

나. 조사설계 및 공사감독

- 1) 사업시행자는 조사설계 및 용지매수가 완료된후 시행하되 조사설계 및 공사 감독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3조에 의거 농어촌진흥공사에 가급적 위탁 시행
- 2) 조사설계 감독비는 실비정산으로 함

7. 준공검사 및 지적 공부정리

- 가.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 측량을 필한 후 지적 공부를 정리
- 나. 공사완료후 시장.군수는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
- 다.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준공보고를 받은 즉시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8. 분양 및 사후관리

가. 분양방법

- 휴양단지내의 부지 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지 농어민등 실수요자에게 우선분양(임대포함)

나. 분양가격

-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분양은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 시장.군수가 적정 수준에서 결정
- 지방비등 보조금이 투입된 경우에는 분양가 산정기준에서 보조금은 공제함

다. 사후관리

- 기반조성 시설은 시장.군수가 책임관리
- 실수요자에게 분양된 편의시설은 실수요자 명의로 등기 이전
- 분양된 각종 시설물은 분양일로 부터 5년간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계약서에 명기 (단, 분양받은 실수요자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양도등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9. 사업효과

-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촉진으로 농어민들이 생산한 지역농산물과 특산물판매 용이
- 휴양단지내 현지 농어민들의 취업으로 농외소득증대 기여등
- 영농조건이 불리한 유희농지의 효율적인 활용

10. '95.지원계획 : 7,500백만원

- '95년도 지원사업은 기지정단지의 완공위주로 지원하고 신규단지 지정은 가급적 지양(지원사업비는 별도로 시달)

11. 행정사항

- 도지사는 '95휴양단지개발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시장·군수로 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휴양단지개발사업 지원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신규 휴양단지의 경우 기본계획서 포함보고)
 - 휴양단지 자부담개발지정 및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에 준하여 보고
- 도지사는 12월말 현재 휴양단지개발사업 추진실적을 별지 제3-1호 서식으로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휴양단지의 지정 및 지구지정취소등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관련 조항을 참고

12. 기타 참고사항

가. 사업안내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촌소득과
- 도 : 농정국 농업정책(경영)과
- 군 : 산업과, 농협(군지부 또 단위농협)

나. 기타사항

- 휴양단지 자부담개발사업
 - 참여자격 : 현지 거주 농어민중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희망하는 자
 - 지구지정 및 추진절차 : 지원사업의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절차등을 그대로 적용

[별지 제1호 서식]

<u>휴양단지개발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신청서</u>			
사업시행자	성명 (명칭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휴 양 단 지 명		규 모	(m' ha)
위 치			
<p>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휴양단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 9 9 5</p> <p style="text-align: right;">사업시행자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시장·군수 귀하</p>			
<p>첨부서류 : 1.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명세서 1부.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제34조에 의한 공청회 개최결과 1부. 3. 휴양단지개발계획서(기본계획 및 년차별 투자계획등 포함) 1부. 4. 휴양단지 분양 및 관리·운영계획서 1부. 5. 농수산물, 민예품, 전통음식, 토산품등 지역특산물 판매계획 1부.</p>			

[별지 제2호시적]

'95. 농어촌휴양단지개발사업 지원계획서

[신규지구]

(단위 : 배만원)

단지명	위치	지정년도	개발규모	사업시행처	사업내용				'95. 계획					비고	
					분야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량	사업비			민자			
									개	용자	지방비		정부담		민자
○ ○ ○	○○도 ○○군 ○○면		m' (ha)		도 포	m' 0									
	○○리				도 회수정회시설 전기·통신시설 · · ·	0 1척									
					농수산업 부대시설	m' m'									
					편의시설 숙박시설(동) 공중변소 · · ·	m' m'									

[별지 제2-1호서식]

[보완사업지구]

(단위 : 백만원)

단지명	위치	지정 년도	개발 규모	사업 시행지	사업내용			'94까지 집행				'95 계획				비고			
					분야	세부사업명	사업량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용자 비	지방 비		지부 담	민자	계		용자 비	지방 비	지부 담
○○○	○○도 ○○군 ○○면 ○○리		m ² (ha)		한계														
				기반사업	주최장 상수도	m ² 0 0													
				홍수산업 부대사업	농업친서관	m ²													
				편의사업	속박사업 식당	m ² m ²													

[별지 제3호 서식]

2. 휴양단지개발사업 추진현황

작성자 :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

지구(농원)명		지구 지정 일 개발사업기간		지구지정 면		
소재지	사업시행자					
총사업비 (백만원)	계	지방비보조	국고용자	자부담	민자 기타	
사업추진현황	개발·분양방법		추진현황			
	기반조성후 부지분양, 부지와 시설물분양, 시설물분양		준공, 일부준공, 사업추진중, 사업중단			
사업내용				운영현황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계획			실적
기반시설	· ·					
농업부대시설	· ·					
편의시설	· ·					
보상비 및 용역비	· ·					
자금지원현황(백만원)						
지방비보조		용자		상환		용자금 상환잔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운영관리상의 문제점						

- 주: 1.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을 경우 변경사업계획기준.
 2. 작성자는 시·군, 확인자는 도에서 서명 또는 날인.
 3. 민자유치 사업의 추진일정 및 계획 분양현황을 첨부할 것.
 4.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세부내역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관광농원개발사업(자율)

1. 목 적

관광농원사업은 농어촌지역의 풍부한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개발하여 증가하는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어촌공간으로 수용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정부가 지원하고 있음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지역별 자연환경 및 농업여건을 고려하여 지구마다 특색있는 관광농원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개발 촉진 도모
- 관광농원은 농어촌지역(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중 적지를 선정 개발
- 농원운영의 주체는 현지 농어민으로 하며, 농어민과 지역주민의 실질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
- 농원으로서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반드시 일정규모이상의 작목입식이 되도록하며, 모든 시설물은 자연지형 및 경제적여건을 고려하여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건전하게 개발
- 농원은 도시민에게 건전하고 생산적인 휴식장소로 제공하고 농촌사회와 농업생산의 산교육장으로 활용
- 다수농어민 참여와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5인 이상 농어민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등이 공동출자하여 관광농원을 개발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나. 사업목표 및 장기계획

○ 연차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계	'93까지	'94	'95	'96~'98	99~2004
사업량	700	182	64	60	195	199
지원액	178,608	30,719	15,389	14,000	58,500	60,000

주 : '93까지의 관광농원 개소수는 '93년말 현재 정부지원으로 조성중이거나 운영중인 지구수 기준임

※ 추진목표('84~2004) : 읍.면당 1개소씩 1,435개소 조성(지원700개소)

3. 사업참여자격 및 방법

○ 참여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현지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으로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광농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자
- 5인이상 농어민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등도 참여할 수 있으며, 생산자단체(농·수·축·임협)도 농어민과 공동참여가능

○ 참여방법

-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농원조성, 운영 및 작목입식, 부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지역특산품등의 판매, 현물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음.

4. 사업내용

가. 사업시행주체 : 농어민, 생산자단체(농·수·축·임협)

나. 관광농원의 유형

1) 기능에 의한 유형

유형	조성예시
자연학습형	기본시설 + 동·식물원, 민속자료관, 식당, 캠프장, 운동장 자연학습관찰장, 놀이터 등
주말농원형	기본시설 + 주말농장, 농기구창고, 숙박시설, 식당, 특산물 판매장, 낚시터, 놀이터, 야영장 등
심신수련형	기본시설 + 야영장, 민속자료관, 운동장, 수영장, 기타
농어촌휴양형	기본시설 + 숙박시설, 식당, 야영장, 휴게소, 특산물판매장, 기타

※ 기본시설 : 일정규모이상의 특색있는 농장(과수원, 목장, 특수작물 재배지등)
농수산물 판매시설(판매장 또는 직판장)

2) 운영형태에 의한 유형

- 농산물 채취형 : 농가가 재배한 농작물을 내방객이 직접 채취토록함
(과일따기, 감자캐기, 밤줍기 등)
- 생산수단 대여형 : 포장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그 토지와 작물, 농기구등의
생산수단을 제공하여 농산물 생산의 보람을 느끼게 함
(임대농원, 임대과수원 등)
- 장소 제공형 : 농장, 과수원, 화원등을 개방하여 감상, 견학 토록하고
레크레이션 시설등을 설치 휴양을 위한 장소로 제공함

다. 세부사업내용

1) 개발내용

- 사업지구내에서는 농원으로써 특성이 구비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일정규모 이상의 농림어업 작목입식을 위한 농장을 조성
- 부대·편의시설은 농원규모, 예상내방객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설치하되 농업용 부대시설을 우선설치 한 후 농원운영 및 내방객들의 편의를 위한 적정규모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

2) 관광농원지구내 설치하는 시설기준(예)

구 분		시 설 명 (작 목 명)
농 장 (작목입식)	작 물	식량작물, 채소, 특용작물, 약용작물, 과수, 수원지, 기타작물
	임 산 물	유실수(밤나무 등), 버섯(단, 자연림은 제외)
	축 산 물	초지, 조류, 가축(축사, 조류, 가축사육장에서 사육의 경우)
	수 산 물	어류(양어장등 생산시설에서 양식의 경우)
	농 수 산 생산시설	축사, 양어장, 하우스시설, 분재원, 조류, 가축사육장 등
시 설 면 적	농 업 시 설	저장고, 농업창고, 집하장 등
	농특산물판매시설	농특산물판매장 등
	기 반 시 설	관리사무소, 상·하수도, 전기통신, 관·배수시설, 오물처리장 등
	숙 박 시 설	여관, 여인숙, 민박, 야영장
	편 의 시 설	식당, 휴게소, 매점, 휴식시설, 예식장, 목욕탕(일반목욕탕에 한함), 건전오락시설, 공중화장실 등
	운동·휴양시설	운동장, 수영장(수영장내 미끄럼틀 포함), 롤러보드, 어린이놀이터, 눈썰매장, 미니골프장, 잔디광장, 낚시터등
	교 양 시 설	영농체험학습관, 농업전시관 등
	기타시설및녹지	자연조경지, 조경시설지 등

- 주) 1) 숙박시설중 민박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0조 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의한 민박개념임.
- 2) 편의시설중 예식장, 건전오락시설 및 목욕탕시설은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편의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용

3) 사업추진기간

- 사업기간은 원칙적으로 지구지정년도 부터 익년도 말까지 완료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1차에 한하여 1년간 연장 가능하며 부득이한 구체적인 사유는 시장.군수에게 서면보고
- 사업추진이 완료되면 사업완료 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라.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

1) 지원기준

- 신규지구 : 농림수산부의 '95.자금지원계획 범위내에서 지구지정을 승인한 신규 관광농원
- 기지정지구 : 기지정된 관광농원중 각도별 관광농원사업 자금지원액 범위 내에서 농림어업을 위한 농장이 규정된 면적이상 조성되어 있는 지구에 한하여 지원.
단, 관광농원 개발계획기간(2.3차년도)에 해당되는 관광농원에 우선지원

2) 재 원 : 농특회계

3) 용자지원한도액 : 농원당 450백만원 이내

- 신 규 지 구 : 농원당 200백만원이내(1차년도)
- 기지정지구 : 농원당 250백만원이내(1차년도 이후)

4) 지원대상사업 : 지정된 관광농원내에의 과수, 가축등 다년생 작목입식,부대. 편의시설의 설치 및 기반조성 사업

5) 용자대상 : 관광농원사업자(대표자), 공동참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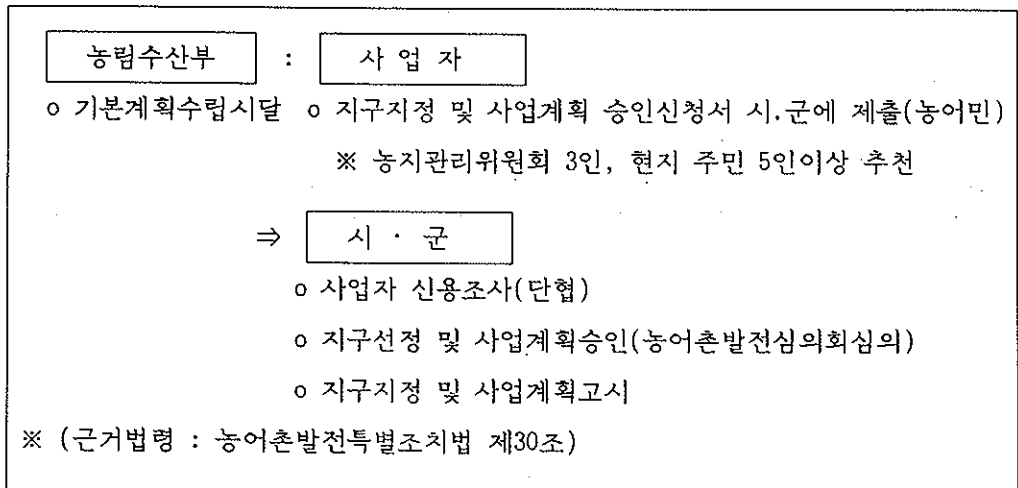
6) 용자조건 : 년 5%,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용자비율 : 총사업비 70%이내

7) 용자요령

- 용자금대출은 신용대출, 농신보대출, 신용보증부대출 또는 담보대출(후취 담보포함)중 사업참여자와 용자취급기관이 협의하여 실시하되, 사업참여자의 편의에 따라 대출(시설물이 수반되는 경우 후취담보 적극 활용)
- 용자취급기관의 장은 사업자로 부터 용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통보한 사업진도(기성고)에 따라 진도확인후 자금을 지원
- 용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제 불허함.
- 기타 용자에 관한사항은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을 준용

마. 사업추진체계도



5. 사업계획수립 및 신청

가. 사업계획수립주체 : 농어민, 생산자단체

나. 사업계획수립시 고려사항(신규지구)

1) 지구지정 대상지역

- 관광농원은 반드시 지구지정예정지에 지구지정예정면적의 40%이상이 농림어업 작목입식을 위한 농장(과수원, 목장, 특수작목재배지등)이 기초성되어 있는 지역
- 지역특산품(특산농축산물, 토산품, 민속품등) 생산과 판매가 용이한 지역
- 휴양부존자원이 있는 지역으로 시장·군수가 지역종합개발계획등을 고려하여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산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거나 인·허가등에 문제가 없는 지역
- 대표자 또는 참여농가의 소유토지에 한하여 지구를 지정

2) 농원규모

- 농원당 30,000㎡미만 규모로 조성
 - 지구내 농장(농림축수산업 생산시설중 생산재배시설 및 양육시설포함)은 지구지정면적의 40%이상을 조성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면적(농장을 제외한 도로·시설, 조경면적등을 포함)은 지구지정면적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 관광농원 지구조성규모에는 농장과 기반시설 및 부대·편의시설 면적등을 모두 포함

다. 사업신청절차

- 관광농원개발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농어민은 관광농원개발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시·군농어촌발전협의회)에게 제출

6.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

가.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시 검토사항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상의 관련 규정과 사업계획내용 입지여건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 농림수산물 생산을 위한 농장구비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용자취급기관 (단위농협 또는 농협군지부)에 송부, 신용조사를 실시
 - 용자취급기관은 신용조사결과(별지 제4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7조 3항에 의거 반드시 인·허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후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선정 및 사업계획을 시장·군수가 확정
 - 인·허가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승인을 받고자 할때는 개별 인·허가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신청서류를 사업대표자로 하여금 제출받아 관련기관(부서)에 검토를 요청함.
- 시장·군수는 지구지정을 승인한 때에는 지구지정서(별지 제5호 서식)를 관광농원사업자(대표자)에 교부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고시(사업계획승인시도 고시)

나. 사업계획변경 승인시 검토사항(지구지정면적변경 포함)

1) 기지정지구의 지정면적변경승인

- 지구지정변경면적이 30,000㎡미만인 경우(시장·군수 승인조치)
 - 30,000㎡내에서는 작목입식을 위한 농장면적이 40%이상 조성시 타당성 검토후 지구지정면적변경 가능
- 지구지정변경면적이 30,000㎡이상인 경우(도지사 승인후 시장·군수가 조치)
 - 기지정면적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타당성 검토후 100%까지 변경가능 하나 반드시 작목입식을 위한 농장면적이 40%이상되어야 함.
 - 단, 이 경우의 시설확대등 개발은 국토이용계획의 변경후 가능함.

2) 사업계획승인시 유의사항

- '91년까지 지정된 농원은 농장(농림축수산업생산시설중 생산재배시설 및 양육시설 포함)이 6,611㎡이상 조성여부를 확인후 사업계획변경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단, 지구지정면적을 확대하여 변경한 지구는 지구지정면적의 40%이상 농장조성여부를 확인
- '92년이후 지정된 농원은 농장면적이 지구지정면적의 40%이상 조성여부를 확인후 사업계획변경 타당성을 검토
- 기지정지구의 지정면적변경시 30,000㎡이내에서 지구지정면적을 변경한 농원이 다시 30,000㎡이상으로 면적을 확대할 경우에는 지구지정변경면적 30,000㎡이상인 경우에 준하되, 최고 변경면적은 30,000㎡이내임.
- 관광농원사업자는 반드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한후 개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 시설물등을 설치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변경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 단, 도지사는 사업계획 변경내용중 지구지정면적변경 및 사업자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변경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지정면적변경등 중요변경사항을 고시

7. 사후관리

가. 관리주체 : 시장·군수

나. 점검자 점검내용

- 점검자 : 도지사, 시장·군수
- 점검시기 : 도는 년 1회이상, 시·군은 반기 1회이상
- 점검내용 : 관광농원내 작목입식, 부대편의시설등 사업계획에 의한 관리여부확인

다. 점검결과 반영

- 지구지정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1년 이내 미착수지구 : 지구지정취소, 인·허가 취소
- 운영부실지구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취소등 조치
 - 운영부실지구 정리기준
 - 관계법령 및 상위계획에 저촉되어 개발이 불가능한 지구
 - 참여농가의 적극적인 개발의욕 및 운영의사가 희박한 지구로서 관광농원 지구로서의 정착전망이 불투명한 지구
 - 지구지정후 1년이 지나도록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개발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영업을 중지한때
 - 자금의 목적외 사용, 설치 시설물의 타용도사용, 사업계획의 임의변경등 사업목적에 위배될 때등
- 시장·군수는 지구지정취소시 기지원된 용자금은 농협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용자금 전액을 회수 조치하고 관광농원사업을 목적으로 득한 공중위생법 규정에 의한 숙박업등 관련 사업의 인·허가에 대한 취소여부 등을 검토하여 행정 조치를 하여야 함.

라. 기타

○ 관광농원사업의 양도·양수등

- 관광농원을 경영하는 자가 노령화, 질병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양도하거나 관광농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할 수 있음. 다만, 관광농원을 양수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는자는 양수일 현재 현지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농어민에 한함.
- 관광농원을 양수한 자는 관광농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

- 단협장 및 시장·군수는 관광농원 지도관리카드를 정확히 작성하여 시·군에 비치. 활용토록하고 정기적으로 지도

8. 사업효과

○ 직접효과

- 관광농원사업 참여농어가의 농외소득증대

○ 간접효과

- 도시와 농촌의 교류촉진으로 농어민등이 생산한 지역농산물과 특산물판매용이
- 관광농원에 현지 농어민들의 취업으로 농외소득증대 기여등
- 영농조건이 불리한 유희농지의 효율적인 활용

9. 평가 및 보고

가. 평가

1) 평가방법

- 도지사는 년1회 전지구에 대해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연말 추진실적보고시 함께 보고
- 농협중앙회장은 관광농원지구에 대한 자체평가기준을 정하여 '95.12월말기준 '84-'94지구에 대한 경영실태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96.3.30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2) 평가결과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군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도지사에게 건의
- 도지사는 도단위 평가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된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도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해결방안을 건의

나. 추진실적보고

- 1) 시장.군수는 '95.12월말 현재 관광농원사업추진실적보고서(별지 제10, 10-1호 서식)를 '96.1.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
- 2) 도지사는 '95.12월말 현재 관광농원사업추진실적보고서(별지 제10, 10-1호 서식)를 취합하여 '96.1.25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부진지구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고

다. 기관별 보고일정

구 분	기 관 별	기 한	양 식
1. '94.농어촌휴양자원개발사업 추진요령 및 사업계획시달	농림수산부 → 도	'94.12.	
2. '94.농어촌휴양자원개발사업 지원계획신청(신규지구)	사업자 → 시.군	'95.1. 1 ~2.21	별지 1호서식
	시.군 → 도	'95.3.10	
	도 → 농림수산부	'95.3.20	별지 6호서식
3. '94.농어촌휴양자원개발사업 지원계획(기 지정지구)	도 → 농림수산부	'95.3.20	별지 6-1호서식
4. 자부담개발 지구지정 및 사업 계획보고	도 → 농림수산부	'95.6.30	별지 6호서식 준용
5. 농어촌휴양자원개발사업 추진 실적보고	시.군 → 도	'96.1.15	
	도 → 농림수산부	'96.1.25	별지 10, 10-1호 서식
6. 관광농원지정취소 결과보고	도 → 농림수산부	지정취소 즉시	
7. 평가결과보고	농협중앙회 → 농림수산부	'96.3.30	

라. 사업자, 시·군 및 농협에서 참고할 서식

구 분	참 고 자 (작 성 자)	제 출 처 (교 부 처)	양 식
1. 관광농원개발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사 업 자	시·군	별지 제1호서식
2. 추천서 (신청서와 같이 첨부)	사 업 자	시·군	별지 제2호서식
3. 지구지정의견서	시·군	시·군농발심의회 및 도	별지 제3호서식
4. 농어촌휴양자원개발사업자 신용검토의견서	단위농협 (농협군지부)	시·군	별지 제4호서식
5. 관광농원개발지구지정서	시·군	사업자	별지 제5호서식
6. 관광농원관리운영계획서	사 업 자	시·군	별지 제7호서식
7. 각 서	사 업 자	시·군	별지 제8호서식
8. 관광농원조성완료신고서	사 업 자	시·군	별지 제9호서식
9. 사업별추진실적	사 업 자	시·군	별지 제9-1호서식

10. '95지원계획 : 14,000백만원

(단위 : 개소,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소 계	신규지구	기 지정지구	
계	60	14,000	8,400	5,600	
경 기	6	1,103	840	263	※ '95시.군 농어촌발전 계획요구 물량 50%중 70%기준임.
강 원	7	1,680	980	700	
충 북	5	1,137	700	437	
충 남	7	1,767	980	787	
전 북	6	1,365	840	525	
전 남	9	2,135	1,260	875	
경 북	9	2,135	1,260	875	
경 남	9	2,135	1,260	875	
제 주	2	543	280	263	

주 : 사업량은 신규지구기준임.

11. 기타 참고사항

가. 사업안내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촌소득과
- 도 : 농정국 농업정책(경영)과
- 군 : 산업과, 농협(군지부 또는 단위농협)

나. 기타사항

- 관광농원자부담개발사업
 - 참여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현지 거주 농어민중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소유농지등을 활용 자체적으로 사업을 희망하는 자
 - 지구지정 및 추진절차 : 지원사업의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승인절차 등을 그대로 적용
 - '95년의 경우 사업추진지구수는 군별 1개소 범위내에서 승인

관광농원개발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사업자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구 (농 원) 명			
소 재 지			
조 성 면 적		㎡ (작목입식. 농업부대시설. 편의시설. 기반시설. 기타)	
사 업 비		백만원(용자. 지방비. 자부담. 기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관광농원개발지구지정 및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199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 1. 지구지정예정지의 지번, 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소유명세서 1부
2. 농지관리위원 3인(위원장 포함) 및 현지주민 5인이상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관광농원주변의 관광자원현황과 도로, 교통여건 현황 1부.
4. 관광농원 시설물등의 조성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1부.
5. 관광농원의 지번별 지적도상에 시설물 배치 상황등이 포함된 조감도 1부.
6. 관광농원 관리운영계획서(별지 제7호서식) 1부.
7. 각서(별지 제8호서식) 1부.

[별지 제 2호서식]

추 천 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0조 및 '94.농어촌휴양자원개발사업 추진요령에 의거
'95.관광농원개발사업 참여자로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가. 관광농원개발 조성예정지 :

나. 규 모 : m² (ha)

- ※ 농업여건 조성여부 : 1) 지구지정예정지 ○○ 작목 ○○ 평 기조성,
 ○○ 가축 ○○ 두 사육중
 2) 지구지정예정지의 연결지역 ○○ 작목 ○○ 평 기조성,
 ○○ 두 ○○ 두 사육 등

다. 주요 사업내용

라. 사업참여자(대표자)

- 성 명 : (남 . 여)
- 주민등록번호 :
- 소유경지면적 :
- 주 소 (현지거주기간) : (년 개월)
- 참여농가 : 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대표자 와 관 계	참여 형태	참여 내용	소유경지면적				계	
							전	답	과원	기타		
							평					

※ 소유경지면적란중 지구내 경지면적이 있을시는 ()안에 별도면적을 표시.

○ 첨부 : 대표자 및 참여농가 주민등록 등본

추 천 인 (농지관리위원장) (인)

 (농지관리위원) (인)

 " (인)

 (현지주민5인이상) 주소.성명 (인)

 " (인)

 " (인)

 " (인)

 " (인)

[별지 제3호서식]

지구지정의견서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입지여건(도로, 교통, 환경등) 및 지역개발계획과의 관계
3. 농업여건 구비실태(지구내 및 연접지역)
4. 참여농가의 실질소득 연계 및 소득효과 여부
5. 지역특산품(희귀작물, 토산물, 민예품 등) 생산판매 연계여부
6.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산림법 등 타법령에 제한여부
7. 기타의견

1995 . . .

○○ 시장·군수

인

[별지 제4호 서식]

농어촌휴양자원개발사업자 신용검토 의견서

관광농원 대출현황 (19 년 월 일 현재)

(단위 : 천원)

대출누계액	
기 상환액	
대출잔액(A)	
금차대출 신청액(B)	
A + B	

대출제도 초과여부	

기 대 출 금 등 연 체 여 부	

차 주 별	차 주	성 명			
		주 소			
		주민등록 번호			
		대출신청금액			
		신용조사일자			
신 용 조 사 결 과		자기자금 조달능력	(충분.적정.부족)	(충분.적정.부족)	(충분.적정.부족)
		담보제공능력	(충분.적정.부족) ○ 담보부족금액: * 담보부족시 신용보증부 대출가능 부여	(충분.적정.부족) ○ 담보부족금액: * 담보부족시 신용보증부 대출가능 부여	(충분.적정.부족) ○ 담보부족금액: * 담보부족시 신용보증부 대출가능 부여
		신용상태	(충분.적정.부족)	(충분.적정.부족)	(충분.적정.부족)
		* 종합의견	○ 대출가능() ○ 대출불가능() * 대출불가능사유	○ 대출가능() ○ 대출불가능() * 대출불가능사유	○ 대출가능() ○ 대출불가능() * 대출불가능사유

○ 종합의견

확 인 자 ○ ○ 단위농업협동조합장 인

지정번호 제 호

관광농원개발지구 지정서

- 위 치
- 지구(농원)명
- 규 모 m² (ha)
- 사업자(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조건을 부하여
관광농원개발지구로 지정합니다.

- 다 음 -

- 지구지정후 용자금의 목적외사용, 설치시설물의 타용도로의 사용, 사업계획의
입의변경, 기타 관광농원개발사업 본래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에는 지구지정취소는 물론 관광농원을 목적으로 득한 관련 인·허가의 취소와
동시 원상복구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1995

시장·군수

인

[별지 제5호서식]

'95.관광농원 개발사업 계획서

농림수산부령 제121호(1995.12.29)에 의거하여 관광농원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지구]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소재지	지구지정	농원규모	사업자(대표자) 수	임대농가 수	사업내용		사업비조달계획				'95.계획				주변관광지	개발유형	비고		
						분야	세부사업명	총합	합계	용자	지상비	지부담	합계	용자	지상비				지부담	계
						합계														
	○○도		m ² ha			작목 입식	학 습 포 교 소	평 0 0 0												
	○○군					농업 부 시설	축 사 (1동) 적 판 장(1동)	0 0												
	○○면					편의 시설	식 당 (1동) 숙 박 시설(1동) 테 니 스 장 (1개소) 휴 게 소 (1동) 주 사 장 (1개소)	0 0 0 0 0												
	○○리					기 반 시 설	상 수 도	식												

[기지정지구]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소재지	지구지정	지구규모	사업지(대표소명)	사업자(참여) 증가 수	사업내용		'04까지 실적				'05반기별 예산요약				주변관망지	개발유형	비고	
						분야	세부사업명	물량	합계	용자	지방비	지부담	출량	계	용자				지방비
○ ○ 광 동	○ 도 ○ 관 ○ 민 ○ 리		m ² ha			합계													
				작목 입식			평	0	0	0									
				장 고 부담 비닐하우스			0	0											
				편의 시설			0	0	0										

관광농원 관리운영 계획서

1. 농원관리 운영계획 요약
2. 구체적 운영계획

시 기 별	운영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및 운영내용	비 고

3. 참여농가가 있는 경우 참여농가 참여계획서
4. 농수산물, 민예품, 전통음식, 토산품등 지역특산물 연계 판매계획

※ 운영프로그램은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구분, 대표적인 프로그램기준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도록 한다.

예시) 2/4분기 : 피서지 개장 - 농원내 설치된 원두막 등을 내방객에게 제공, 과일 등 농원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직판

낚시대회 개최 - 농원내 양어장에서 낚시대회를 유치, 내방객유치 확대

어린이 자연학습행사개최 - 유치원생 등을 유치, 농원내의 농장을 활용한 농사체험행사 개최

3/4분기 : 과수따기행사 - 과수원을 개방, 과실을 직접 수확할 수 있도록 함.

자매결연단체 유치 - 농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유치, 농원특산품 등 판매행사 개최

버섯큰잔치 -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농원내 또는 인근 마을에서 생산되는 버섯판매 또는 버섯요리를 판매

4/4분기 : 김장독 유치행사 - 도시민들이 농원에서 김장을 하여 보관해 주는 행사

각 서

- 지구명
- 소재지
- 규 모 m' (헥타)
- 사업참여대표자 의 명
- 주요시설 설치계획

농어촌후양자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관광농원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사업계획대로 성실하게 추진하여 농어가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개발추진과 도시민들의 산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원받은 융자금의 목적외 사용, 설치시설물의 타용도로의 사용, 사업계획의 임의변경, 입식작목의 미경작 등으로 인한 부실지구로 판명되어 지구지정이 취소될 때에는 융자금 전액 일시상환은 물론 관광농원과 관련된 인·허가의 취소, 전용농지 원상복구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995년 월 일

사 업 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서명또는날인)
사 업 참 여 자	주소	성명	인 "
"	"	"	" "
"	"	"	" "
"	"	"	" "
"	"	"	" "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관광농원조성 완료신고서

지구명 (지정번호)		위 치		TEL	
대표자	한글		규 모	평 (m)	
	한문				
사업기간	부터 까지		완료일자		
신고인	주 소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p>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농업개발 지구내에 작목 입식등 관련시설물을 별첨과 같이 설치완료하였기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군수 귀하</p>					

첨부 : 사업별 추진실적

사업별추진실적

○ 지구소재지 :

○ 대 표 자 :

구 분	계획물량	추진실적	증 감	비고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 예 시 "				
○ 작목입식				
- 과 수	1,000평	1,100평	100평	- 사과 300평, 배 100평, 감나무 100평, 밥 500평 - 자두 100평
- 축 산	500평	500평	-	- 사슴 10두, 토종닭 50수 흑염소 10두
○ 농업부대시설				
- 축 사	100평/1동	100평/1동	-	
- 비닐하우스	200평/2동	200평/2동		- 고정식(철재) 100평/1동, 일반(죽제) 100평/1동
○ 편의시설				
- 식당 및 휴게소	50평/1동	40평/1동	△ 10평	- 주방 5평, 식당 25평, 휴게소 10평

관광농원개발사업 추진실적

1. 관광농원사업소득효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소재지	지정 년도	지구명 (농원)	사업자 (대표자)	참여 농가수	년간내방 객	수 입 (농업소득 + 농업외소득)				지 급 부 자 내 역								
							농산물 판매액	부산물 판매액	음식물 판매액	숙박 기타	계 (A)	비용 (B)	순소득 (A-B)	계	용자	자부담	기타		
○○도																			
계																			

- 주) 1. 수입, 비용은 1년간('95.1~12)의 농원운영과 관련된 시행만큼 기재
 2. 지급부자내역은 제목인식, 판매인식, 판매인식, 판매인식의 무차별 누계분 기재
 3. 개원(인부 준공농원포함)된 농원과 미개원(사업추진중인 농원포함) 농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별지 제10-1호서식]

2. 관광농원개발사업 추진현황

작성자 : 소속 직 성명 (인)

지구(농원)명		지구 지정 일 개발사업기간		지구지정 면적	ha
소재지		사업자(대표자)			
참여농가수		사업추진현황	준공, 일부준공, 사업추진중, 사업중단		
총사업비 (백만원)	계	지방비보조	국고용자	자부담	기타
사 업 내 용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운영현황
			계획	실적	
농장 조성 (작목입식)	과수 특용작물				
농업부대시설	양어장 축사 하장 하장판 저지				
편의시설	민식휴 남동 운화	박당 소터 시설			
용 자 금 현 황 (백 만 원)					
용 자		상 환		용 자 금 상 환 잔 액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운영관리상의 문제점					

※ 주 : 1.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을 경우 변경사업계획기준이며, 총사업비는 관광농원개발계획상 총사업비임(관광농원 관리카드 : 5주요사업내용대체 사용 가능)

2) 작성자는 시.군에서 서명 또는 날인.

농어촌민박마을 조성사업(자 율)

1. 목 적

농어촌지역에 관광자원이 있는 등 민박수요가 있는 지역에 민박마을을 조성하여 농어가의 농외소득증대 및 도·농교류 촉진에 기여코자 정부가 지원하고 있음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숙박위주의 민박마을 조성보다 지역명소 중심과 자연환경을 이용한 전원적 휴양마을을 조성
- 지역농산물판매등과 연계한 민박마을 조성

나. 사업목표 및 장기계획

- 연차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계	'93까지	'94	'95	'96~'98	99~2004
사업량	408	43	42	30	120	173
지원액	28,765	1,719	2,821	2,100	9,000	13,125

※ 추진목표('91~2004) : 군당 3개마을 기준하여 408개마을 조성지원

3. 사업신청자격

- 사업신청일 현재 민박마을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농어가중 마을당 5호이상 농어가 민박을 목적으로 농어가주택시설의 개보수 또는 증·개축을 위하여 시설이나 자재구입이 필요한 농어가

4. 사업내용

가. 사업시행주체 : 농어민

나. 지원내용 : 민박용 농어가주택의 시설 개보수 또는 증·개축에 필요한 시설이나
자재구입비

다. 사업기간 : 당해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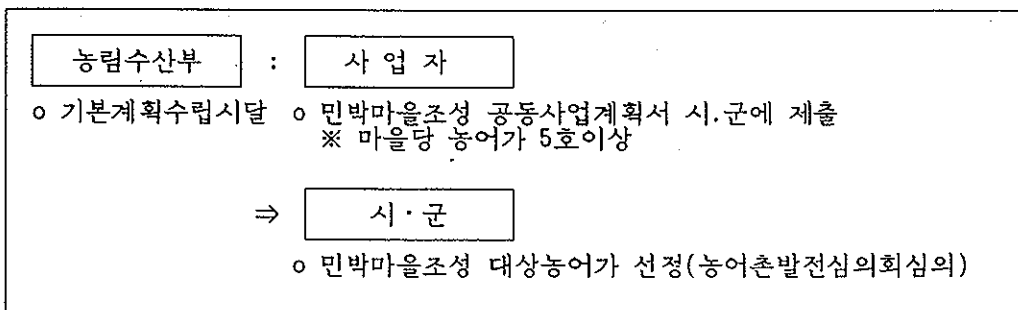
라.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

1) 지원기준

- 재원 : 농특회계
- 용자지원한도액 : 마을당 2억원이내
 - 농가당 용자한도 : 10백만원이내
- 용자조건 : 년 5%, 2년거치 3년균분상환
 - 용자비율 : 총사업비의 70%이내

2) 대출방법 : 용자금대출은 신용대출, 농신보대출, 담보대출(후취담보포함)중
사업참여자와 용자취급기관이 협의하여 실시하되 사업참여자의
편의에 따라 대출

마. 사업추진체계도



5.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가. 대상농어가 선정시 고려사항

- 전문적인 숙박업자, 상인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주택신축자금은 제외
- 영농규모가 적고 영세한 농어가를, 우선선정

나. 추진절차

- 읍.면장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마을을 선정하여 농어가로 부터 민박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아 민박마을조성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다만, 단위농협에서 농협중앙회의 민박마을 육성계획에 따라 민박마을을 선정.육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위조합장이 농어가로 부터 민박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아 민박마을조성 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 읍.면장을 경유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마을 선정 및 사업계획을 확정
- 도지사는 '95민박마을조성사업 지원계획범위내에서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금지원을 신청

6. 사후관리

가. 관리주체 : 시장.군수

나. 점검 및 방법

- 점검자 : 도지사, 시장.군수
- 점검시기 : 도는 년1회이상, 시.군은 반기 1회이상
- 점검내용 : 민박마을 조성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여부 확인

7. 사업효과

- 민박농어가의 농외소득증대
- 도시와 농촌의 교류촉진으로 지역농어민이 생산한 농림수산물의 판매용이

8. '95.지원계획 : 2,100백만원

(단위 : 개소, 백만원)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30	2,100	
경 기	4	280	○ '95시.군농어촌발전 계획을 고려하여 배정
강 원	6	420	
충 북	3	210	
충 남	2	140	
전 북	3	210	
전 남	-	-	
경 북	5	350	
경 남	6	420	
제 주	1	70	

9. 행정사항

- 도지사는 민박마을조성사업추진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10. 기타 참고사항

가. 사업안내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촌소득과
- 도 : 농정국 농업정책(경영)과
- 군 : 산업과, 농협(군지부 또 단위조합)

[별지 제1호서식]

농어가 민박사업신청서

- 가. 신청인 주소
- 나. 성 명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가옥소재지
- 마. 사업내용 및 자금소요

민박가능 방 수	사업내용	소요자금			산 출 근 거
		계	용자	자부담	
○실	화장실보수				
	주방개량				
	방 보 수				
	계				

마. 경지면적 및 소득효과

경 지 면 적 (㎡)					소득효과추정(년간)		
계	전	답	과수원	기 타	농업소득	농외소득	계
					천원	(천원)	

※ 농외소득란의 ()는 민박으로 인한 소득액을 표시

위와 같이 '95.농어촌 민박마을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1995. . .

신청인 _____ (인)

[별지 제2호서식]

민박마을 조성사업 계획서

민박마을 소재지								참여농가수	호
참 여 농 가 주소·성명 (전화번호)		()						()	
		()						()	
		()						()	
		()						()	
		()						()	
사업 규모	민박 방수	실	수용 인원	명	사업 금액	천원	용자 신청	천원	

위와같이 '95 농어촌휴양민박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신청합니다.

1995. . . .

○ ○ 읍·면장 (인)

- 붙임 : 1. '95민박마을 조성사업계획서 1부.
2. 농어가 민박사업신청서 1부.

시장(군수)

귀 하

’ 9 5. 농어촌 민박마을 조성사업계획서

지구명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참여 농가명	민박규모		수용 가능인원 명	년 수 이용객수 명	세부시합내용	자금조달계획			인근관광 자원	
			실	평				합 계	용자 계	분기별 용자급 소요 2/4		3/4
								전원				
계		호										

(의정요령)

1. 민박규모는 농가별로 민박 제공가능한 방수와 총 평수, 수용가능 인원은 1회, 수용 가능인원 기재
2. 세부시합내용은 개보수(방수리, 화장실, 취침실, 샤워실등) 중 : 계속으로 구분기재
3. 용자 선정액은 소요자금의 70%이내로 한다.

민박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

도 번	소 재 지	마을명	신청년도	참 이 공 기 수	방 수	인 간 이 용 수	수 입		비 용	준 소 탁	자 금 부 지 내 역				
							민 박 수 입	· · · · ·			계	용 지	지 부 담	기 타	

관광목장조성(자율)

1. 목적

초지를 이용한 관광목장조성으로 축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축산농가 또는 생산자단체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임.

2.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92~'93	'94	'95	'96	'97	'98	계	99~2004
사업량	개소 4	5	4	4	3	3	23	52
사업비	백만원 4,000	7,500	6,000	6,000	4,500	4,500	32,500	80,250
- 촉발기금	3,000	5,250	4,200	4,200	3,150	3,150	22,950	56,175
- 자부담	1,000	2,250	1,800	1,800	1,350	1,350	9,550	24,075

3. 사업신청자격

가. 사업대상지역 선정여건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예산을 확보하여 관광목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관광목장 조성실적이 없는 지역을 우선 선정
- 1개지구당 20ha내외의 초지확보가 가능(신규초지조성 또는 기성초지 활용)한 지역
- 주변지역의 경관이 수려하거나 인근에 관광휴양지 또는 문화유적지등이 있어 관광휴양객의 왕래가 많이 예상되는 지역
- 축산과 관광을 겸한 소득증대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지역
-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환경보전법, 산림법, 숙박 및 요식업법 등 타법에 의하여 관광시설 사업추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나. 신청자격

사업대상지역 선정여건에 합당한 생산자단체(조합, 영농법인, 협업체) 및 농가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도지사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1) 사업내용

○ 목장개발유형

지역여건, 주변관광지 내방객의 취향을 고려하여 적합한 유형(복합형도 가능)으로 선택

- 가족단위 주말목장형, 산간지역 휴양형, 청소년 심신수련형, 아동학습목장형, 스포츠레저형 등(사치성 투자는 억제함)

○ 조성시설물의 규모(예시)

- 초지 : 20ha내외(민박시설, 회의장, 휴양 및 운동시설등은 초지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 가축사육규모 : 젖소 또는 한우 40두이상(자우포함)

단, 축종을 복합적으로 사육코자 할 때에는 소를 위주로 하여 타축종도 사육가능

- 기본시설

- 축사 : 100평이상(젖소 성우 30두, 육성우 10두기준)

단, 사육코자 하는 축종에 따라 축사면적이 증감될 수 있음.

- 가축배설물처리시설 : 100평내외 - 성우 40두분처리 가능시설(슬러리형의 "예"임)

- 민박시설 : 80~100평내외(1동당 15~20평, 4~5기 시설)

- 단체 숙박시설형 또는 단독주택형으로 입지조건에 따라 선택시설

- 회의실 : 50평내외 - 총 100명 수용가능 면적으로 하되 회의실, 식당등

다용도로 활용토록 시설

- 관리사무실 : 20평내외 - 목장운영 및 고객서비스센터 겸용

- 부대시설

- . 주차장 : 300~400평내외 - 관광버스 10대 수용가능
- . 야외화장실 : 1동
- . 기계시설창고 : 50평 내외 1동(조사료생산용 기계 10~15종 및 기타 기계류 보관용)

- 휴양 및 운영시설

개발유형 및 지형을 고려하여 다음중 선택시설

- . 벤취, 원두막형 휴식소, 야영장, 운동장(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배구장), 수영장, 낚시터, 아동놀이시설, 산림욕장, 산책로, 승마장, 약수터, 실외공연장, 기타지역에 적합한 휴양 및 운동시설

※ 제반시설은 상기 시설물 예시를 참고하여 조성하되 지역조건, 관광목적의 입지조건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시설물에 과잉투자하거나 사치성 투자는 할 수 없음.

- o 사업실시기간 : 조성하고자 하는 유형 및 여건에 따라 2개년 사업으로 추진
 - 1차년도 : 사업계획작성, 기본설계, 사업인·허가 및 부지조성
 - 2차년도 : 시설물설치 및 가축입식 등

(2) 개소당 지원규모

사업단가	축발기금융자	자부담
1,500 백만원 (100)	1,050 (70)	450 (30)

- o 사업단가이상의 소요액은 자부담
- o 지원자금은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2개년 분산지원

(3) '95 시·도별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도별	사업량 (개소)	사업비			
		계	축발기금융자	자부담	
합계	4(5)	8,250	5,775	2,475	
충전경경제	북남북남주	(1)	1,050	735	315
		(1)	1,050	735	315
		1(1)	1,800	1,260	540
		1(1)	1,800	1,260	540
		2(1)	2,550	1,785	765

- ※ 1. ()내는 계속사업 : 사업단가(1,500백만원)×70%(2차년도)
- 2. 신규사업(4개소) : 사업단가(1,500백만원)×50%(1차년도)

다. 지원조건

- 융자조건 : 연리 8%, 3년거치 7년균분상환
- 촉발기금 용자액은 축산관련시설에만 사용할 수 있음.
 - 기반조성(초지조성 및 보완, 진입로, 목장도로, 축사시설, 분뇨처리시설, 용수개발, 전기인입등), 가축입식, 회의실, 특산물판매장등
 - 민박시설, 휴양 및 운영시설등에는 촉발기금을 사용할 수 없음.

5.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 농림수산부 사업공통지침안 참고

가. 사업계획수립시 고려사항

- 관광목장 주변의 관광자원 및 도로교통여건 현황
- 재원별 사업비 투자계획
- 조성후 5개년간 연차별 운영계획(수지분석 포함)
- 토지확보 및 시설계획
- 시기별 사업추진계획

나. 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 사업타당성 여부, 관광목장조성 및 운영능력, 자부담능력, 사업기대효과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6. 기타 참고사항

가. 사업안내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산국 초지사료과(Tel 02-503-7284, 500-2676)
- 도 : 농정국 축산과
- 군 : 산업과(축산과)

<별첨 서식>

관광목장 조성사업 신청서

대상자								
주소								
성명					사업기간			
	초지 :	ha	개발유형	사업비 조달 계획				
	축사 :	m'		축발기금	지방비	기타	자담	계
	휴양시설 :	m'						
기타 :								
계								
<p>위와 같이 관광목장을 조성코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년 월 일</p> <p>* 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광목장 주변의 관광자원 및 도로 교통여건 현황 1부. 2. 사업계획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별 사업비 투자계획 ○ 5개년간 연차별 운영계획 (수지분석 포함) ○ 토지확보 및 시설계획 ○ 시기별 사업추진계획 ○ 후보지 사진 ○ 기타사항 3. 지역의 지번별 지적도상의 시설별 배치도등이 표기된 계획 평가도 1부. 4. 관광목장의 개발 및 운영계획서 1부. 5.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 의견서 1부. 								

농가 주거환경개선 사업 (자율)

1. 목 적

- 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농가주부의 가사노동 절감
-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조성으로 농가생활에 활력을 줌
- 도시와의 생활격차 해소로 농민의 상대적 소외감 해소

2. 추진방향

- 생활개선 시범마을 집중지원 → 시범마을 조성
- 농가별 주거환경개선과 마을 환경개선의 연계 추진
- 연차별 지원계획

구 분	'95	'96	'97	'98	계
사업량 (호)	20,000	20,000	20,000	20,000	80,000
사업비 (억원)	600	600	600	600	2,400
단 가 (만원)	300	300	300	300	-
- 용자 (만원)	210	210	210	210	-
- 자담 (만원)	90	90	90	90	-

3.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 주체 : 시군 농촌지도소장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사업내용 : 입식부엌개량 + 목욕실 설치
- 지원규모 : 농가당 210만원 (용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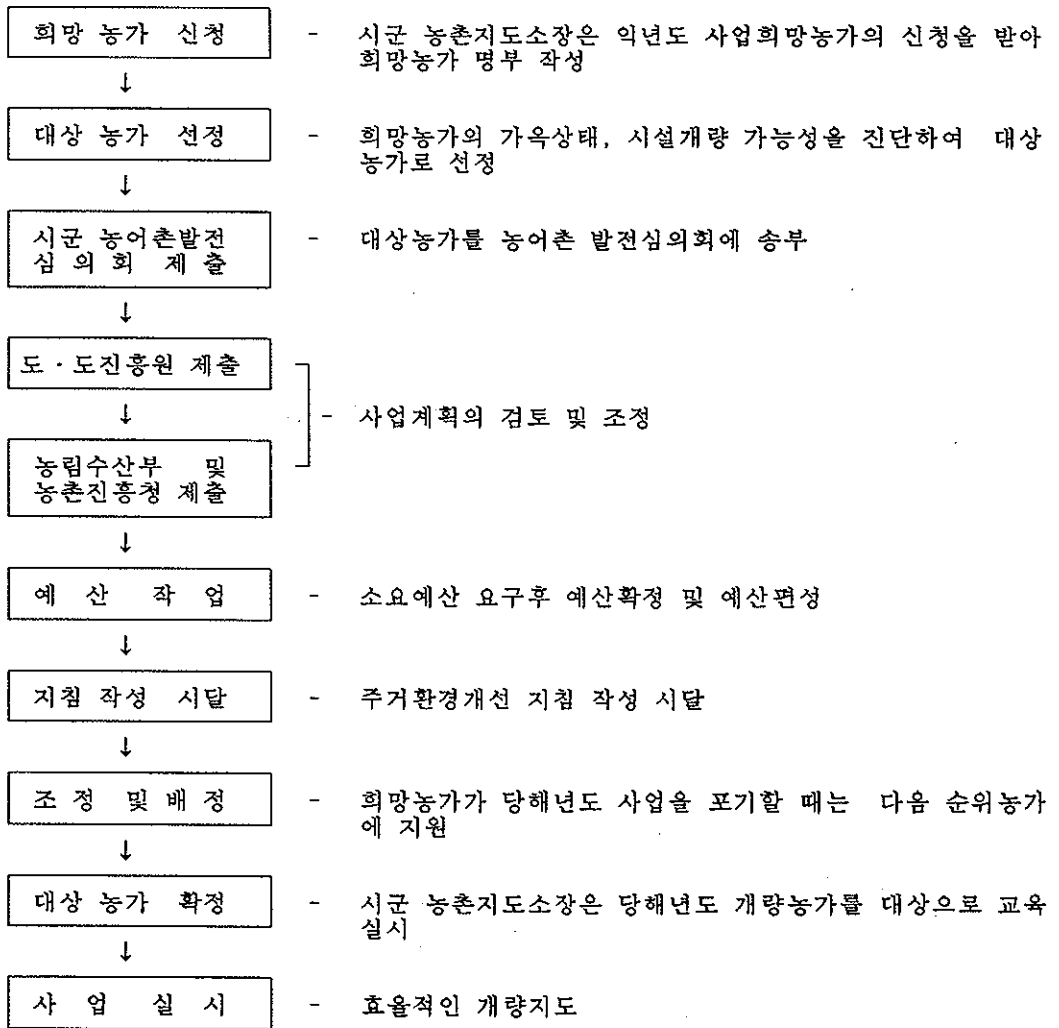
다. 용자조건

- 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라. 용자요령

- 시·군 농촌지도소장은 선정된 농가명단을 용자취급기관에 통보.
- * 용자취급기관 : 농협 (단위농협)

4.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5.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가. 대상지역 선정

- 생활개선시범마을 : 읍면당 1개소씩 선정, 3개년간 계속 지원하여 시범효과 거양
- 일반마을 : 시범마을 희망의사를 농촌지도소에 표명한 후 선정절차를 거침.

나. 대상농가 선정

- 제 1 순위 : 생활개선 시범마을 내 농가
- 제 2 순위 :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내 농가
 - *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 군당 1~2개씩 주재지도사가 파견, 근무하는 마을
- 제 3 순위 : 농어민 후계자, 농촌총각, 독농가 중 희망농가.
생활개선에 의욕있는 생활개선 회원

다. 선정절차

- 선정권자 : 시·군 농촌지도소장
- 선정절차
 - 마을대표는 읍·면 상담소장을 통하여 대상농가를 선정·추천
 - 농촌지도소장은 추천농가를 대상으로 가옥의 상태, 시설개량 가능성, 자부담 능력 용자금 상환능력 등을 검토, 시군 농어촌 발전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선정

6.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 책임자 : 시군 농촌지도소장

나. 점검·평가

- 시군 농촌지도소장은 사업추진 내용을 파악, 농가별 시행여부 확인
- 농가별 개량전·후 사진 촬영 → 사업전·후 비교 평가
- 군단위 사업평가회 실시
 -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시 사업평가 및 우수농가 사례발표 실시

7. 사업효과

- 가사노동력 절감 → 농업노동력 확대
 - 1일 취사시간 20 ~ 40 % 절약
 - U·R 대응한 농업경영과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시간의 확보
-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조성
 - 젊고 유능한 여성의 농촌정착의 계기마련
 - 위생적인 생활영위 및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 충족

8.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중앙 : 농촌진흥청 지도국 생활개선과
 - 시도 : 도 농촌진흥원 지도국 생활지도과
 - 시군 : 시군 농촌지도소 생활개선계

9. 사업효과

- 가사노동력 절감 → 농업노동력 확대
 - 1일 취사시간 20~40% 절약
 - UR대응 농업경영과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시간 확보
-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조성
 - 젊고 유능한 여성의 농촌정착의 계기마련
 - 위생적인 생활영위 및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 충족

10. '95 시·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도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계	호 20,000	60,000	-	-	42,000	18,000
경 기	700	2,100	-	-	1,470	630
강 원	1,200	3,600	-	-	2,520	1,080
충 북	1,600	4,800	-	-	3,360	1,440
충 남	4,600	13,800	-	-	9,660	4,140
전 북	3,600	10,800	-	-	7,560	3,240
전 남	4,200	12,600	-	-	8,820	3,780
경 북	1,600	4,800	-	-	3,360	1,440
경 남	2,000	6,000	-	-	4,200	1,800
부 산	100	300	-	-	210	90
광 주	200	600	-	-	420	180
대 전	200	600	-	-	420	180

11. 기타 참고사항

○ 사업 안내기관

- 중앙 : 농촌진흥청 지도국 생활개선과
- 도 : 도농촌진흥원 지도국 생활지도과
- 시군 : 시군농촌지도소 생활개선계

농공단지 조성 (공공계획)

1. 목 적

농어촌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공장유치를 촉진하여 농외취업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와 농어촌경제의 활성화 도모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2004년까지 400개소 조성
-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각종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을 개정고시 시행: '94.9.9)

나. 년도별 사업계획

(단위 : 억원)

	93까지	'94~2004 계획							합계
		'94	'95	'96	'97	'98	99~ 2004	소계	
○ 농공단지(개소)	263	7	7	12	12	12	85	137	400
○ 사업비(억원)	8,997	404	393	888	912	912	6,507	10,016	19,013
- 국비	4,562	126	172	373	377	377	2,579	4,004	8,566
보조	2,332	58	99	205	204	204	1,394	2,164	4,496
용자	2,230	68	73	168	173	173	1,185	1,840	4,070
- 지방비	4,435	278	221	515	535	535	3,928	6,012	10,447
보조	557	22	21	37	51	51	351	533	1,090
용자	3,878	256	200	478	484	484	3,577	5,479	9,357

3.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농공단지의 지정

(1) 지정대상지역

○ 농공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아래의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어촌" 지역의 시.읍지역과 시.읍과 연결된 면지역으로 함

(다만, 그외의 면지역도 도지사가 인력수급 및 기반시설등이 양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지정가능)

< 제외지역 >

- 경기도, 직할시와 인접된 읍.면
- 동광양시.장승포시등 이미 공업화 되어 있는 시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어촌

	일반농어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강원	원주군, 춘천군, 횡성군 홍천군 (4)	속초시, 삼척시, 영월군 철원군, 명주군 (5)	태백시,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삼척군 (9)
충북	진천군, 청원군, 음성군 괴산군, 영동군, 증평군 (6)	옥천군, 제천군 (2)	보은군, 단양군 (2)
충남	온양시, 공주시, 연기군 공주군, 금산군, 천안군 아산군, 논산군 (8)	대천시,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서산군 당진군, 태안군 (8)	부여군, 보령군, 청양군 (3)
전북	-	정주시, 남원시, 김제시 원주군, 김제군, 익산군 옥구군, 임실군 (8)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남원군, 순창군, 청음군 고창군, 부안군 (8)
전남	광양군, 여천군 (2)	나주시, 승주군, 장흥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완도군, 화순군, 나주군 담양군 (10)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강진군, 강진도 해남군, 영광군, 진도군 신안군 (10)

(4) 농공단지의 입지선정기준

(가) 입지선정 제외기준

-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 및 수산자원보전지구(수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과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및 완충지역, 산림법상 입업진흥촉진지역. 채종림, 보안림, 천연보호림. 요존국유림과 산림훼손제한 지역
- 직할시와 인접한 읍·면
- 농업진흥지역(농지·초지·임야의 편입비율은 100%까지 허용)
- 조류 및 희귀동식물의 서식처
- 관계 학술기관의 지표조사결과 매장문화재 분포가 확인된 지역
-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부터 상류측 20km이내 지역
- 일반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부터 상류측 10km이내 지역(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은 취수장으로 부터 상류측 15km이내와 하류측 1km이내 지역)
- 저수지등 농업용수원으로 부터 수계상 상류측 5km이내 지역(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2km이내)
- 하류측으로부터 조수의 영향등이 우려되는 지역

(나) 입지선정 대상지역

- 단지내의 고저차가 20m이하이고 평균 2m이하의 성토로서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경사도가 10%이하이고 경암반이 많은 지역이 아닌 지역
- 진입도로의 연장이 단지면적 33천제곱미터당 100m이내인 지역
- 100m이상 교량건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지역
- 동력고압선으로 부터 200m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
- 단지의 오폐수관로 연장이 1km이내인 지역
- 동력중심 2km이내에서 취토장 및 사토장 확보가 가능한 지역
- 단지의 지정면적 대비 분양기능면적이 80%이상 확보 가능한 지역

- 농공단지 배수도가 농업용 관개·배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또는 농업용수사용에 지장이 없는 지역일 것
- 지상보상물 및 시설이전등을 포함하여 평당 보상액이 도지사가 지역별, 시·군별로 정하는 적정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일 것
- 지하에 광역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거나 지상에 농업용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전보상이 필요없는 지역일 것
- 동일 생활권안에 농공단지외의 다른 공업단지(30만제곱미터이상의 공업지역 또는 공업단지 지정계획이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가 없는 지역일 것이 경우 동일생활권은 다른 공업단지와 거리(도로기준 10km이내), 관할 행정구역,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국토건설종합계획, 도·군농어촌발전계획,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계획등 증장기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일 것

(5) 개발사업시행자

- 공영개발 : 시장·군수 또는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자
- 민간개발 : 산업입지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자

나. 농공단지개발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1) 부지조성사업비의 지원

- 농림수산부장관(광공단지의 경우에는 상공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의 조성비 일부를 아래와 같이 지원

- 일반농공단지

(단위 : 천원/평)

구 분	일 반 농 어 촌 (3시, 28군)	추가지원농어촌 (15시, 42군)	우선지원농어촌 (1시, 49군)
국 비 보 조	10	20(10)	30(10)
국 비 용 자	10	20(10)	20(10)
지방비 보 조	5	5(5)	5(5)

- ※ 1) 잔여사업비는 지방비용자(기채)로 충당
- 2) 대기업은 ()와 같이 지원
- 3) 국비용자금 상환조건 : 년리 7%, 5년거치 5년균등상환

- 광산촌농공단지 및 농어촌부존자원 활용 농공단지

(단위 : 천원/평)

합 계	국 비 보 조	국 비 용 자	지방비보조
85	50	30	5

- ※ 1) 광산촌농공단지 국비보조는 상공자원부에서 지원
- 2) 농어촌 부존자원 활용 농공단지는 부존자원을 사용하는 업체가 2/3이상 입주하는 농공단지
- 3) 잔사업비 및 국비용자금 상환조건은 일반농공단지와 같음

- 대체농지조성비 및 대체조립비 면제

- 논 : 평당 11,900원
- 밭 : 평당 7,140원
- 산림 : 평당 1,920원

※ 전용부담금도 면제

(2)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o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및 운전자금 용자지원(상공자원부)

구 분	금 용 한 도	대출금리	상 환 조 건
시설자금	7억원이내 (소요자금의 70%까지)	년 7%	10년이내 (거치기간 5년포함)
운전자금	2억원이내 (소요자금의 70%까지)	년 7%	3년이내 (거치기간 1년포함)
계	9억원이내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환경처)

(단위 : %)

일반농어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합계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100	30	70	50	50	70	30

- ※ 1)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에 한하여 지원
 2) 기금용자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채등으로 충당
 3) 기금용자조건은 연 7.0%로써 3년거치 10년균분상환임.

4. 농공단지 업무관장 및 개발절차

가. 농공단지업무 관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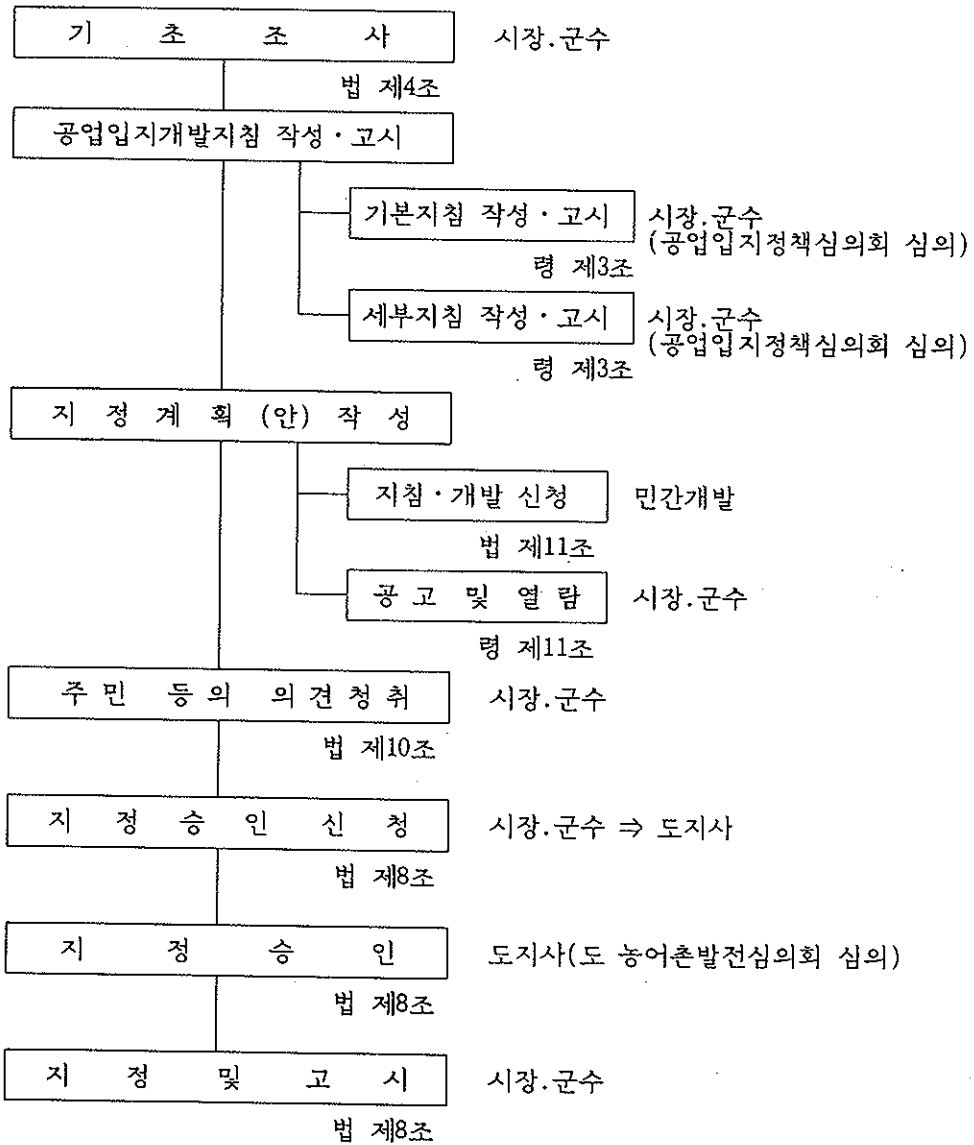
업무구분	주체	법적근거	주관부처
지정	시장·군수 (도지사승인)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	건설부
실시계획	시장·군수 (도지사승인)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 제19조	건설부
부지조성	시장·군수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1조 내지 제27조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	농림수산부
공장용지양분	시장·군수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전반	상공자원부
공단 및 업체관리	시장·군수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전반	상공자원부
환경관리	시장·군수	○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처

※ 농공단지 지원단체

- 농어촌진흥공사 : 농공단지 조사설계·시공감리
- 중소기업진흥공단 : 공산품 제조업체에 대한 사업성 검토, 경영지도 및 자금지원
- 농수산물유통공사 : 음·식료품제조업체에 대한 사업성검토, 경영지도 및 자금지원
- 환경관리공단 : 공동폐수종말처리시설 설계, 시공감리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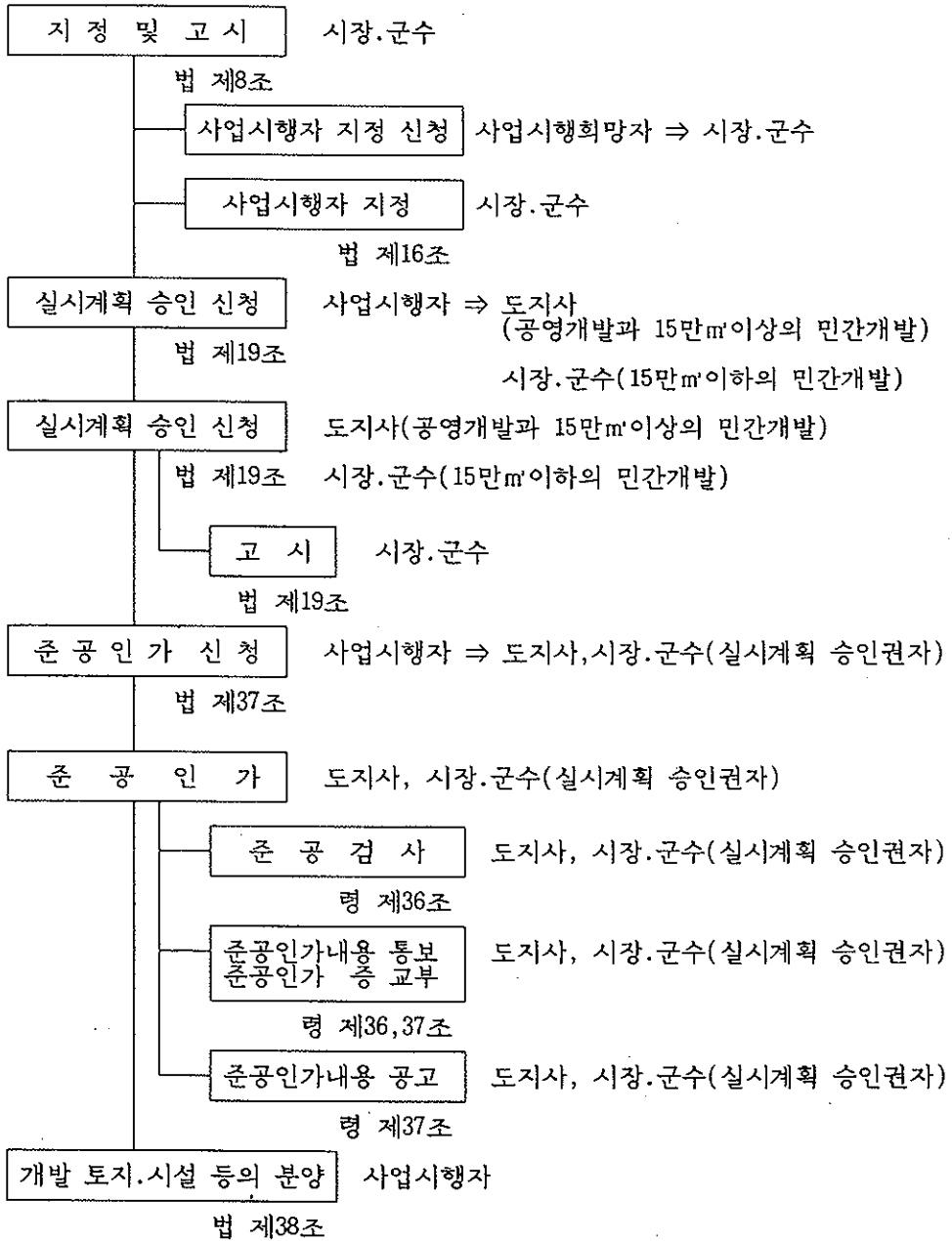
나. 농공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

(1) 지정절차



※ 법 또는 령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령

(2) 개발절차



5. '95.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용 자	지방비	자 담
합계	14(7)	39,287	9,894	7,377	2,056	20,000
충북	2(1)	5,915	584	1,186	266	3,879
충남	3(1)	5,773	2,275	888	224	2,386
전북	2	6,469	872	464	170	4,963
전남	2(1)	6,805	2,342	1,489	441	2,533
경북	2(2)	5,539	1,336	1,601	605	1,997
경남	3(2)	8,786	2,485	1,709	350	4,242

※ ()는 '95.신규지구로 내서임.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관련부처 >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촌소득과
 상공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배치과
 건 설 부 국토계획국 입지계획과
 환 경 처 자연보전국 평가제도과
 도 지역경제국 공업(상공)과
 시.군 지역경제(산업)과

< 유관기관 >

농어촌진흥공사 : 단지조성부
 중소기업진흥공단 : 농공지원실
 농수산물유통공사 : 심사지도과
 환경관리공단 : 기술지원과

농어촌특산물전시판매장설치 <공공계획>

1. 목 적

농어촌특산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전시 및 판촉활동을 통한 판매확대와 기술경영 지도를 통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

2. 추진방향

가. 규모

- 전시장규모 : 250평내외

나. 운영방식

- 시·도지사 또는 도 특산단지연합회에서 운영
 - 관내 특산단지 생산업체가 입주 판매 또는 직영판매도 가능
(국내 또는 해외전시판매지역 창구의 역할수행)

다. 장기계획

- 1997년까지 15개, 시·도의 주요도시에 1개소씩 설치
 - '94까지 7개소 설치(서울,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 '95계획(대구, 강원, 제주)

3. 사업신청

- 시·도지사 요구에 따라 지원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

나. 사업내용

- 총사업비 10억원내외중 국고보조 지원액은 50%, 지방비부담 50%
< 사업비가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비에서 추가소요액 부담 >

5.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수립
- 사업신청 : 사업시행 전년 12월말까지 농림수산부 신청

6.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보조사업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지원받은 시설물을 처분 또는 다른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 규정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함.
- 사후관리 책임자 : 시.도지사
 - 판매실적보고 : 매분기별 보고(다음달 10일까지 보고)

7. 사업효과

- 특산단지 생산제품의 전시 및 판매확대로 특산단지 활성화에 기여
- 기술 및 경영지도와 정보교환등을 통한 품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향상등에 기여

8. '95. 지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전국계	3	2,900,000	1,450,000	1,450,000		
대 구	1	1,000,000	500,000	500,000		
강 원	1	900,000	450,000	450,000		
제 주	1	1,000,000	500,000	500,000		

※ 사업비 지원대상지역은 변동될 수 있음.

9.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중 앙 :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촌소득과
- 시.도 : 농정국 농업정책(경영)과

농업경영자금 지원 (공공계획)

1. 목 적

정부가 영농준비기에 농민에게 농사자금을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농업 경영을 원활하게 하여 적기영농추진으로 농가소득증대 도모

2. 지원 방향

자금의 생산성화 및 농업경쟁력 강화

- ◆ 미곡위주 지원 → 과수·채소·원예등 특수작목 지원 강화
- ◆ 생산중심 지원 → 농산물의 가공·유통분야까지 지원 확대
- ◆ 소액분산 지원 → 농업경영체 등에 지원 확대 (운전자금등)

3. 신청 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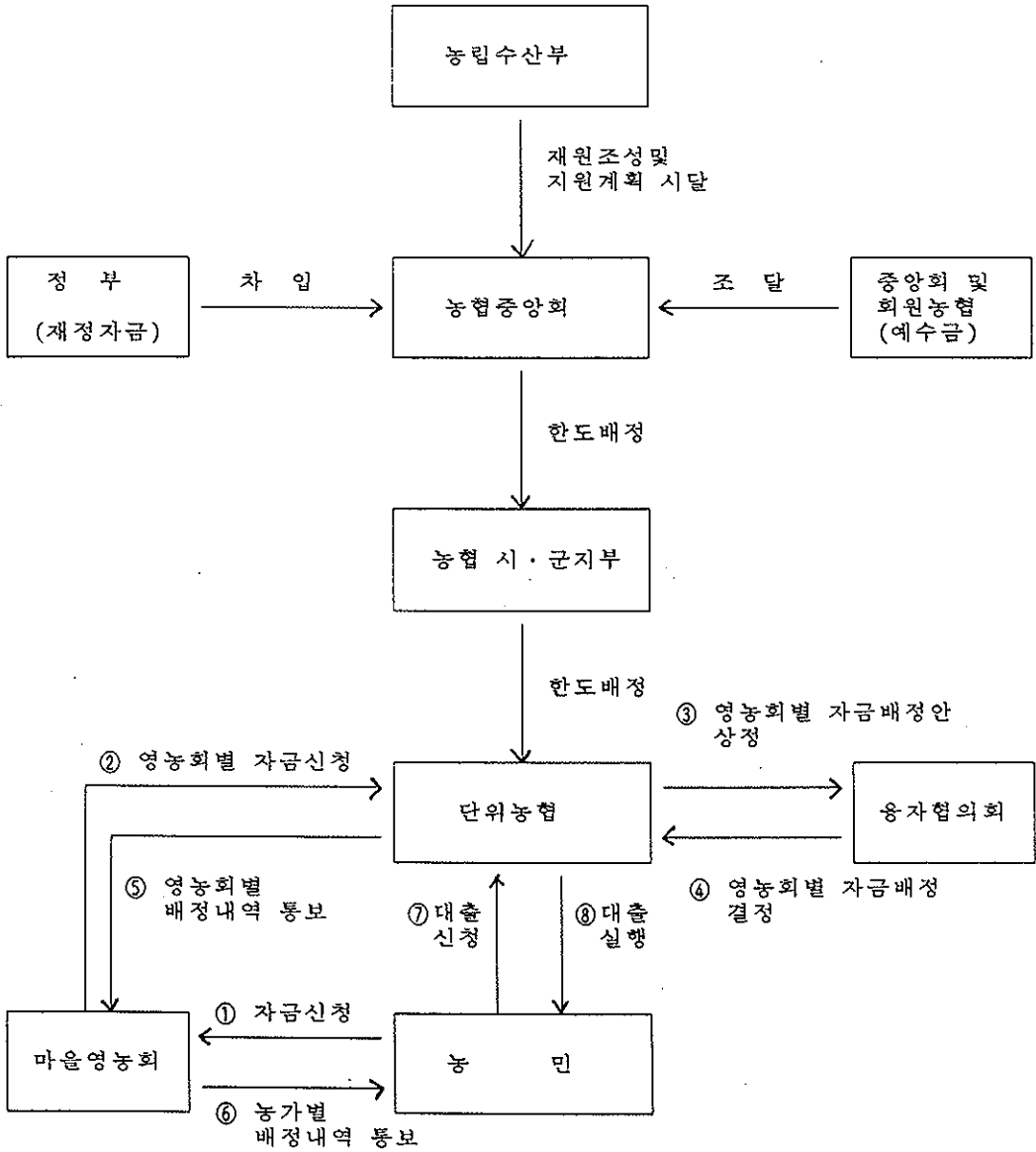
- 농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농업경영체

4. 지원내용 및 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농림수산부

나. 지원조건 : 년리 5.0%, 1년 이내 상환

다. 사업추진체계도



5. 사업계획 수립

가. 사업계획 수립

- 기본계획 : 농림수산부
- 세부계획 : 농협중앙회

나. 사업계획수립시 고려할 주요사항

- 지역별 경지면적, 농가호수 및 각종 영농여건

6. 농업경영자금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가. 신청

- 신청절차 : 농민들이 마을영농회를 통하여 단위농협에 신청
- 신청시기 : 사업종류별 자금 필요시기에 년중 신청
- 신청기관 : 단위농협, 특수농협

나. 지원대상자 선정

- 농협 융자협의회에서 농가별 경작면적, 기타 영농여건등을 감안 선정하며, 재해농가는 우선지원

7. 담보문제

- 개별농가 : 신용대출
- 농업경영체 : 농협 여신규정에 의함

8. 사후관리

- 농업경영자금 운용요령
 - 정책자금이 정책사업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 감독
 - 정책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는 회수

9. 사업효과

- 농업경영비가 부족한 영농준비기에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금융 부담 완화
- 적기영농추진으로 농업생산력 향상과 이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 도모

10.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전국 모든 단위농협 및 시,군지부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공공계획)

1. 사업목적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부담이 큰 농어가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어가 부담 경감 도모

2. 방 침

- 지원대상학생은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규모 1.0ha미만 농어가의 실업계고등학교 학생과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學曆認定)학교 학생으로 함. 단, 국가등에서 학자금을 수혜(惠澤)받는 자는 제외함.
- 통합시의 면지역도 포함 지원함.
- 읍지역중 도서벽지(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학군인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자녀는 지원함.
- 농어민자녀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학생의 거주지가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하여 제외(除外)지역으로 편입될 시는 당해 학교를 졸업할때 까지 지원함.
- 학자금지원은 학교 급지별(級地別) 구분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함.

3.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자

부모(부모사망등 사유로 인한 보호자 및 세대주 본인포함)가 면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경지소유 규모 1.0ha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양축가, 임가, 어가의 자녀로써 실업계고등학교(학력인정학교 포함)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 단, 종합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실업계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에 한함.

1) 실업계고등학교의 종류와 범위

실업계고등학교라 함은 농림업·공업·상업·수산·해양·실업·종합의 고등학교를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함.

- 농업고등학교 : 농업계의 학과만 설치된 학교
- 공업고등학교 : 공업계의 학과만 설치된 학교
- 상업고등학교 : 상업계의 학과만 설치된 학교
- 수산고등학교 : 수산계의 학과만 설치된 학교
- 해양고등학교 : 해양계의 학과만 설치된 학교
- 실업계고등학교 : 농림계, 공업, 상업, 수산, 해양, 가정계중 2개이상 학과가 혼합 설치된 학과와 가정계 학과만 설치된 학교
- 종합고등학교 : 실업계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실업계 학과와 보통과(인문과정)가 혼합(混舍)된 학교(이중 실업계만 해당)

2) 지원대상 농어가 기준

농 가	어 가	양 축 가	임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지소유규모 1.0ha미만 ○ 임차(賃借)농가 ○ 기타 위에 준하는 농업에 연간 120일 이상 종사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이 없는 어가 ○ 무동력선 사용어가 ○ 15M/T이하 동력선 어가 ○ 소규모 양식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하(垂下), 연승(延繩) 4.0ha미만 - 산포(散布), 투석(投石) 14.0ha미만 ○ 기타 위에 준하는 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말: 18두 미만 ○ 젖소, 사슴: 12두 미만 ○ 돼지, 산양, 면양, 개: 130두 미만 ○ 토끼, 친칠라, 밍크: 3,000마리미만 ○ 가금: 7,500수 미만 ○ 양봉: 90군미만 ○ 기타 위에 준하는 양축가 및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야 26ha 미만

※ 양축가의 경우는 성축(成畜)기준임. 새끼, 육성우는 2두를 1두로 봄.

< 제외대상 >

- 보건사회부의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등과 같은 국고학자금(입학금과 수업료)을 지원 및 면제받고 있는 경우
- 교육부(학교)에서 입학금·수업료를 면제받고 있는 경우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 부터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나. 지원내용 : 수업료·입학금 전액지원

4. 학자금지원 신청 및 업무처리 요령

가. 농어가

농어가는 이장이 비치하고 있는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면장에 '94년 1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나. 이 장

이장은 농어민으로부터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서의 참고사항에 기재된 "지원대상농어가 기준표" 및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연대(連帶)서명 하여야 함.

다. 면 장

1) 지원신청서 교부 및 홍보

면장은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신청서"를 이장이 비치하도록 하고, 동사업 내용을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대상자가 누락(漏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지원대상 여부 및 학적확인

면장은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거주확인, "지원대상농어가 기준표" 및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학부모에 봉지함과 동시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급학생재학조회(별지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신입생은 1월 10일까지, 재학생은 1월 15일까지 해당 학교장에게 재학 여부를 조회하여야 하여야 함.

3) 지원대상자 확정 및 학자금지급

○ 면장은 학교장으로부터 분기별로 통보된 "농어민자녀학자금 지급학생재학조회"에 의거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분기별 국고보조신청서(별지제3호서식)를 1/4·2/4분기는 1월25일 까지, 3/4분기는 6.10일 까지, 4/4분기는 9.10일 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면장은 지원대상자의 학적확인 내용에 따라 학기 개시전에 학교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함.

- 학자금지원신청을 실기하여 누락된 추가신청자는 재학사실을 확인한 후 소급 지원하여야 함.

라.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업무를 반상회 회보 및 시·군지등에 게재 하여 홍보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매 분기별로 학자금 소요액을 1/4·2/4분기는 1.27까지, 3/4분기는 6.15까지, 4/4분기는 9.15까지 도에 보고하여야 함.

마. 도지사

- 도지사는 농어민자녀학자금 집행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도지사는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사업을 반상회보 및 각종 화보·홍보물에 게재하여 홍보하여야 함.
- 도지사는 농어민자녀학자금 국비보조신청(별지제3호서식)을 1/4·2/4분기는 1.30까지, 3/4분기는 6.20까지, 4/4분기는 9.20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도지사는 학자금지원자금을 학기개시 30일 전까지 지원하여야 함.

바. 학교장

- 학교장은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는 납입받은 것으로 하여야 함. (대상학생은 납입고지하지 말 것)
- 학교장은 면장으로부터 의뢰받은 "농어민자녀학자금지급대상학생 재학조회" 서식(별지제2호 서식)에 재학여부를 확인하여 연초에는 1월 20일 까지, 1/4분기 부터는 분기 종료후 5일까지 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 면장으로부터 의뢰받은 원안(별지제2호서식)에 확인하여 통보 】
- 학교장은 학자금 지원대상 학생에게 본 사업의 취지(趣旨)를 설명하여 누락(漏落)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여야 함. (입학 안내서, 학년말 방학생황 지도등)
- 학교장은 시장·군수의 학자금 정산결과에 따라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사. 도 교육감

도 교육감은 각 학교의 학자금 지원업무를 지도·감독하고 도지사에게 관내 학력인정 학교 현황, 급지별 학자금기준등 학자금 지원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통지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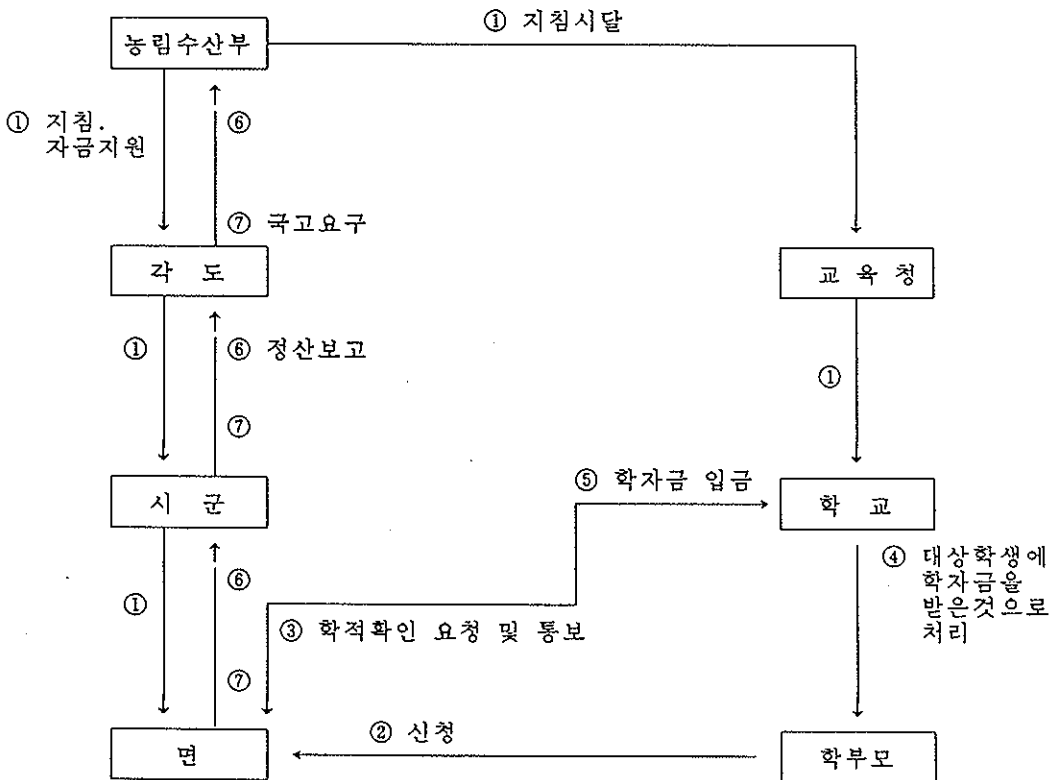
5. 학자금 지원중지 등

- 학교장은 학자금 지원대상자 중 휴학, 자퇴, 퇴학등으로 학적변동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 입금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은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 " (교육부령 제 624호 '94. 8. 30)등에 의거 처리하고 잔액은 정산하여야 함.
- 학교장은 학자금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원대상 학교로 전학한 경우 전학자의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한 학교간 정산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에 의함.
- 면장은 학자금 지원대상자가 년도중 신규 발생한 경우 학자금 지원자격이 발생한 월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하여야 함.

6. 학자금 정산

- 시장·군수는 학자금 지원사업 정산결과를 '96. 3. 10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이를 확정·정산하여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정산결과 보고서(별지제4호 서식)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도지사는 정산잔액중 국고금은 농림수산부소관세입금【일반회계 농림수산부 각도별 세입 징수관 구좌 : 경상이전수입(관12) - 기타경상이전수입(항59) - 기타경상이전수입(목591) (00년도농어민자녀학자금 정산반납금)】으로 반납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7. 업무처리절차도



8. 보고 기일

(월 일)

보 고 명	최 초 작성기관	학 교 장	면 장	시 군 장 수	도지사	농림수산부
○ 학자금지원신청서	학부모		12.30			
○ 학자금지원대상 통지	면장 → 학부모					
○ 년초 학적확인 완료	면장 → 입학생 1.10 재학생 1.15					
○ 년초 학적확인 회신	학교장		1.20			
- 1/4, 2/4분기 보조금 신청	면장	1/4학적확인 근거작성		1.25	1.27	1.30
○ 1/4 재학 확인결과 회신	학교장		6.5			
- 3/4분기 국고 보조금 신청	면장	1/4재학확인 근거작성		6.10	6.15	6.20
○ 2/4 재학 확인 결과 회신	학교장		9.5			
- 4/4분기 국고 보조금 신청	면장	2/4재학확인 근거작성		9.10	9.15	9.20
○ 3/4 재학 확인결과 회신	학교장		12.5			
○ 4/4 재학 확인결과 회신	학교장		2월말			
- 집행실적 보고	면장	재학확인 집계결과		3.2		
○ 학자금 정산보고	군 수				3.10	
○ 확정 정산	도지사					3.31
보조금 확정	장 관					

※ 정부분기 : 1/4(1-3월), 2/4(4-6), 3/4(7-9), 4/4(10-12)
 학교분기 : 1/4(3-5월), 2/4(6-8), 3/4(9-11), 4/4(12-2)
 학자금 납입고지일 : 1/4(2월), 2/4(5월), 3/4(8월), 4/4(11월)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부모)주소

전화:

학 부 모	부모(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생과 관 계		면 사 무 소 확 인 내 용 (확인자)	주민등록 확 인	담당확인	
	영 농 규 모 (소 유)					면 공부상 소유 확인 내용	경지 임야 가축	㎡ ㎡ 두
신 장	학 생 성 명		학 생 년 월 일		인		어선	M/T
	학 교 명		학 과 명			재학조화 발송일		
내 용	학 교 주 소				내 용			
	학 년		학 교 우편번호			학부모 동보일자		

1994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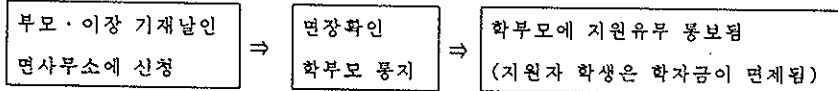
신청인 : 학부모(보호자) 성명 (인)

확 인 : 리 이 장 성명 (인)

면 장 귀하

※ 참고사항

< 처리절차 >



< 지원대상 농어가 기준표 >

농 가	어 가	양 축 가	임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지소유규모 1.0ha 미만 ○ 임차(賃借)농가 ○ 기타 위에 준하는 농업에 연간 120일 이상 종사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이 없는 어가 ○ 무동력선 사용어가 ○ 15M/T이하 동력선 어가 ○ 소규모 양식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하(垂下), 연승(延繩) 4.0ha미만 - 산포(散布), 투석(投石) 14.0ha미만 ○ 기타 위에 준하는 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말: 18두 미만 ○ 쫓소, 사금: 12두 미만 ○ 돼지, 산양, 편양, 개: 130두 미만 ○ 토기, 친칠라, 밍크: 3,000마리 미만 ○ 가금: 7,500수 미만 ○ 양봉: 90군미만 ○ 기타 위에 준하는 양축가 및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야 26ha 미만

※ 양축가의 경우는 성축(成畜)기준임. 새끼, 육성우는 2두를 1두로 봄.

< 제외대상 >

- 보건사회부의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등과 같은 국고학자금(입학금과 수업료)을 지원 및 면제받고 있는 경우
- 교육부(학교)에서 입학금·수업료를 면제받고 있는 경우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별지 제 2호 서식)

농어민자녀학자금 지급 대상학생 재학조회

학교명

학 생 성 명	(관계) 학부모 성명	학과	학년반	학교재학 확인(학적변동 및 학과를 기재)				
				학년초	1/4	2/4	3/4	4/4
면사무소 주소		우편번호		(전화)		면장 (인)		
담당자		직		성명				
학교 기재사항		급지: 입학금: 수업료(분기분):		납입구좌은행(농협중앙회)				
		학교주소:		성명:				
		담당자		직		성명 (인)		전화:
						구좌번호:		우편번호:

A4용지 세워 작성)

- ※ 학교 재학확인란 기재요령
 - 작성일 기준 : 매 분기말
 - 변동자 : 사유 및 발생일자(예: 자퇴 3.10)
 - 전학시 : 전학할 학교명 학과날짜 기재
 - 전입시 : 전학교명 수학할 학과날짜 기재
 - 재학자 : 수학중인 학과를 기재

분기 농어민자녀학자금 국비보조 신청

(단위: 명, 천원)

구	분	진			당			분기 실적			분기 소요추정			계		
		학생수	사업비	국비	학생수	사업비	국비	학생수	사업비	국비	학생수	사업비	국비	학생수	사업비	국비
실업고	입학금															
	수업료															
실업고	입학금															
	수업료															
계	입학금															
	수업료															
계																

※ 참고사항 : 전분기분을 소급지원한 인원 및 금액은 지류분기 상단에 () 내·외서로 표시 할 것

년도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정산결과 보고서

(단위: 명, 천원)

구	분	예산 배정액 (A)		시도 집행액 (B)		집행잔액 (C) (A-B)		정산액 (D)		정산잔액 (E) (B-D)		총 잔액 (C+E)	
		학생수	금액	학생수	금액	학생수	금액	학생수	금액	학생수	금액	학생수	금액
실업고생	비												
	지												
	소												
학력인정	비												
	지												
	소												
합	비												
	지												
	소												
계													

(B4행으로 확장)

- 주) 1. 학생수는 계란에만 표시할 것 (경산시 학생수임)
 2. 입학금 및 입학금 지급학생수는 정산액은 "계" 상단에 () 내시한 것
 3. 집행잔액은 예산잔액(국고의 경우 지출한도 재배정액중 잔액)을 말함
 4. 정산잔액중 국비는 도에서 우리부에 반납할 금액임
 5. 정산잔액 및 총잔액 발생사유를 각각 분석하여 별지로 붙일 것

일반정주권개발사업(면단위개발)(공공계획)

I. 정주생활권개발계획 수립

1. 목적 : 농어촌정주권개발대상면의 특성에 따라 장기발전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생활환경산업기반, 편익복지시설등을 정비 확충하기 위한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2. 면 개발계획의 내용

- 가. 정주생활권개발의 목표와 개발방향
- 나. 지역현황
- 다. 농어촌정주체계 정비계획
- 라. 각 부문별 개발계획 : 생활환경개발, 산업기반정비, 편익복지시설, 환경보전등
- 마. 투융자 계획

3. 개발계획수립의 주체 : 시장.군수

-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이하 "면 개발계획"이라 한다)수립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함을 원칙으로 함
- 계획수립비는 별도 시달하는 기준에 의하며, 시.군의 보조사업비에 계상하여 집행

4. 면 개발계획의 수립

- 가. '95년도 면개발계획수립: 시.군의 면수가 2,4-7개인 시.군등에 대하여 1개면 <별첨1>
- 나. 면 개발계획수립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지역별 개발방향과 개발목표를 설정하여 관련기관, 지역주민등의 개발수요를 조사하여 시장.군수와 검토 협의한 후 지역실정에 맞는 면 개발계획서를 작성
- 다. 시장.군수는 작성된 개발계획서의 내용을 기초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수렴
- 라. 면 개발계획은 아래의 상위계획과 조화되도록 수립하며,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당해 도시계획 반영
 - 경제사회발전계획
 -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계획
 - 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
 - 군 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 및 발전계획 등

- 마. 시장.군수는 면 개발계획서를 군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승인요청
- 바. 시장.군수는 도지사로부터 면 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지역주민에게 열람
- 사. 도지사는 '95년도 면개발계획수립방침 <별첨1>에 의거 대상면 추천을 '96.1.31까지 당부에 제출(별지 제1-1호 서식)

5. 면 개발계획의 변경

- 가. 면 개발계획 변경은 계획수립절차와 동일
- 나. 다만, 다음 각호의 경미한 사항변경과 인접지역과 연계된 사업계획은 군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조정
 - 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변경,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
 - 사업시행기간의 변경과 지형사정으로 인한 시설의 근소한 위치 변경

6. 면 개발계획수립시 유의사항

- 가. 면 개발계획의 사업비 투융자 계획은 사업내용, 성격, 규모등을 감안, 단계별로 작성
 - 정주권개발사업대상 : 지원가능한 사업비 투융자 규모를 기준으로 1,2단계로 구분
 - 단위대형사업은 별도 계획 수립
- 나. 수익사업(예: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유통가공시설등)지원 사업비는 농림수산부 또는 각 부처의 단위사업과 동일 지원 기준 적용
- 다. 주민의 개발수요에 대하여는 사전에 대화, 협의조정
- 라.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하여 면에서 읍승격이 되거나 직할시 편입등 행정구역 조정이 예상되는 지역은 계획수립대상 후순위로 조정
- 마. 면 개발계획서에는 반드시 계획수립 참여자는 명기

7. 면 개발계획수립의 효과

- 가. 농어촌지역의 장기발전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생활환경, 산업기반,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는 지역개발의 지침서로서의 역할
- 나.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지침서가 되며, 대상사업선정 및 사업 계획수립의 기준
- 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면 개발계획서는 농발법 제67조에 의거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

II.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시행

1. 목적 :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함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면단위 농어촌 중심생활권 지역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고 주택정비지원
및 편익시설, 도로, 상.하수도, 환경시설등 배치

나. 장기사업목표 : 2001년까지 전국 1,257개 면중 오지.도서면등을 제외한 790개
정주권개발면 1차 지원 완료

3.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가.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나.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 도로의 정비 : 마을내 도로, 마을간 도로, 연결도로, 교량등
-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 다목적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
- 주택정비 : 신축, 개량등
- 농어촌산업개발 : 공동영농어시설(농산물집하장, 가공.저장시설등)
- 환경보전시설 : 쓰레기처리장, 오폐수처리시설등
- 재해방지시설 : 마을안전시설 등

○ 사업비 지원 : 면당 39억원 수준(보조 30억원, 융자 9억원)

- 지원규모 초과사업은 별도 재원으로 자체 추진

○ 지원방법 : 면단위별로 지원완료 위주로 지원

- 보조사업 : 지방양여금을 시.군의 면수 비율에 의해 배분
- 융자사업 : 면당 9억원 범위내에서 2-3년간 지원

다. 용자사업추진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및 주민(사업자)
- 사업비 지원방향
 - 농촌주택정비, 상.하수도, 주민편익시설등 지원
 - 발전가능성이 있는 마을 중심으로 지원(보조사업면과 연계 지원)
 - 시장.군수는 용자 희망자를 해당 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 농발심의회의 심의등 공정한 방법으로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시에는 기수혜여부, 타부문 용자 중복지급 여부등을 검토
 - 사업대상자 선정권자(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용자취급기관에 통보
- 사업비 배정요구 : 매분기말 20일전까지 배정 요구
- 농특회계 용자금 운용지침, 사업별 대상자 선정기준,용자조건,자금용도 <별첨2>
- 도지사는 '95 농어촌정주권개발 용자사업 추진계획을 '95. 1. 31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별지 제1-2호 서식), 용자사업 추진실적(별지 제1-3호 서식)은 매반기별 익월 10일까지 보고

4.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 대상지역 선정

- 면 개발계획서에 의거 면당 1-3개의 중심마을을 선정 개발
- 면지역 내의 중심마을은 농업진흥지역, 교통, 산업, 교육, 문화의 중심이 되고, 지역주민의 참여도, 발전잠재력이 큰 마을 선정

나. 사업시행계획수립

- 시장.군수는 확정된 대상사업을 기초 대상사업의 내용, 위치, 공종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를 하고, 당해년도 투자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
- 농림수산 관련단체등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당해년도 완공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년도에 완공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설계, 용지매수, 공사준비등을 실시하고 2차년도에 완공

다. 대상사업의 선정

- 생활기반조성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농어촌 도로등 타부문에서 재원조달이 가능한 사업은 정주권사업 대상에서 제외
-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에 의거 기선정한 중심마을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당해년도에 착수할 대상사업과 전년도부터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정, 군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
- 도지사는 개발계획과의 관계, 집중 시행여부등 타당성을 검토조정하여 확정, 시달하고 그 결과를 도면(1:25,000)첨부,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별지 1-4호서식)

라. 사업시행

-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사업시행계획수립시 당부에 보고하고, 변경보고시에는 변경사유 및 도지사의 의견을 첨부 함
- 도지사는 사업시행개시후 진척상황을 매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당부에 보고((별첨 제1-3호 서식)

마. 공사시행

- 공사시행은 설계도서예 맞게 실시하며, 현지 여건상 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변경 시공
- 시장.군수는 공사시행과정중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전후의 현장사진등을 보관하여야 함

바. 사업의 위탁

- 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 관련단체등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별첨 3>

사.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는 시장.군수(또는 수탁시행자)가 담당
- 각종 시설용지의 확보는 매수, 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농촌근대화촉진법"또는 "농어촌정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환지.교환.분합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음.
-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지확보 및 보상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름

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민간전문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음
- 공사감리를 위탁시행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공사관리의 책임자를 지정하여 공사시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

5. 사업관리

- 가. 대상사업중 공동이용시설 및 수익시설은 사업비를 단위사업별로 동일지원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용자 또는 자부담 시킬 수 있으며, 완공후 수익자에게 관리토록 할 수 있음
- 나. 시장·군수(또는 수탁시행자)는 용지매수보상, 공사발주 및 재산관리(등기수수 등)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물의 관리자를 지정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시설물 관리요령 작성등)를 하여야 함
- 다.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정주권개발사업 추진과 직접 관련된 최소한의 일반 관리비를 계상, 집행할 수 있음

6. 설계감리등 사업비 요율

- 별도 시달하는 요율에 의함

7. '95 일반정주권개발 사업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시행 면수		사 업 비			
	보조사업	융자사업	계	국고보조 (지방양여금)	지방비보조	국고융자 (농특회계)
	개면	개면				
경기		31	29,734	13,723	5,881	10,130
강원		3	8,564	5,197	2,227	1,140
충북		12	12,426	6,051	2,593	3,782
충남		21	21,863	10,913	4,677	6,273
전북		26	22,560	10,136	4,344	8,080
전남		12	17,770	9,779	4,191	3,800
경북		28	30,811	15,117	6,479	9,215
경남		35	33,317	15,776	6,761	10,780
제주		1	1,041	519	222	300
계		169	178,086	87,211	37,375	53,500

※ 보조사업(양여금·지방비) 시행 면수는 도의 계획에 의거 추후 확정

< 별첨 1 >

'95조사사업(면개발계획수립) 추진계획

(단위: 개면)

	대상면	'94까지 수립완료	'95계획	잔여면	비 고	
						%
경기	127	63	7	57	44.9	○ '95추진계획 - 시.군의면수가 2, 4 - 7개면: 1개면 * 제외: 3개면(경북 경산, 전북 장수, 제주 남제주) -경기여주, 강원횡성, 전북부안, 전남장흥, 경북안동, 경남창원 ; 1개면 ('90시범지구중 일부와 복합시 분할지역)
강원	40	22	11	7	17.5	
충북	56	28	7	21	37.5	
충남	101	50	10	41	40.6	
전북	92	51	3	38	41.3	
전남	86	44	14	28	32.6	
경북	139	67	14	58	41.7	
경남	146	71	10	65	44.5	
제주	3	3	-	-	-	
합계	790	399	76	315	39.8	

< 별첨 2 >

I.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운용지침(발췌)(금융 51174-330, '94.8.5)

1. 농특회계 융자금 운용체계

가. 융자금 운용절차

- 예산배정요구 : 도지사 → 농림수산부장관 → 농림수산부장관
(정주권개발과) (기획예산담당관)
- 자금 " : " → 농림수산부장관 → 농림수산부장관
(정주권개발과) (농업금융과)
- 자금배정 및 대출 : 농림수산부장관 → 융자위탁관리기관
(농업금융과) (농협중앙회)
→ 융자취급기관 → 사업자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나. 위탁관리기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2. 농특회계 융자계정 운용·관리지침

가. 이자징수

년1회 후취를 원칙으로 하되, 농어가의 소득발생시기등을 감안하여 융자취급 기관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이자징수시기를 별도로 결정할 수 있음

나. 채권보전방법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취급규정』 및 융자취급기관의 여신관계 제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라 융자하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신용대출을 최대한 활용도록 함

다. 용자금 용자방법

- 사업시행자가 농어민 또는 민간업체인 경우 용자취급기관은 용자금을 사업시행자의 여신관리자금 계좌에 입금후 사업실적 확인(행정기관 또는 사업선정권자) 결과에 따라 용자금 지급
-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농.수.축협, 임협중앙회(회원조합포함)등인 경우 사업주관부서에서 특별히 지정한 경우에는 여신관리자금 계좌에 입금없이 용자금 일시 지급 가능

라. 용자대상자 선정

- 용자 대상자 선정기관(시장,군수등)은 대상자 선정시 용자 신청자의 신용상태 담보제공능력등 용자가능성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마. 용자금 사후관리

-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점검 및 지도.감독을 실시
- 용자취급기관에서는 여신관리 제규정에 의하여 용자금을 사후 관리하여야 함

바. '95농특회계 용자 사업비의 용자 종결기한 : '95. 12. 31

- 다만, 농림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II. 용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용자지원조건

1. 용자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사업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선정권자
○ 집단마을 조성사업	○ 정주생활권개발 대상지역에 집단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시장·군수, 농진공)	도지사
○ 임대주택	○ 집단마을조성사업을 실시하는 지구에 한함	"
○ 주택신축	○ 집단마을조성사업지구내에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군수, 농진공)	"
○ 주택개량	○ 정주생활권개발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사업을 추진 및 입주하고자 하는 자(주민)	시장·군수
○ 농어촌 용수시설 (상·하수도 포함)	○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군수)	"
	"	도지사

2. 용자지원조건

사업명	금리	용자기간			용자한도	용자비율
		계	거치	상환		
○ 집단마을 조성사업	3%	4	2	2	.사업지구당80억원 이내	.소요사업비의 100%이내
○ 임대주택	5%	20	5	15	.지구당5억원이내	.전체사업비의 50%이내
○ 주택신축 (집단마을지구내 주택신축)	5-6.5% (5)	20	5	15	.호당2천만원이내	.소요자금의 70%이내
○ 주택개량	3%	10	3	7	.호당5백만원이내	.소요자금의 100%이내
○ 주민편익시설	5%	5	2	3	.사업비자당3천만원 이내	.소요자금의 50%이내
○ 농어촌용수시설 (상·하수도포함)	3%	20	5	15	.지구당 3억원이내	.소요자금의 50%이내

3. 자금의 용도 및 용자대상자

사 업 명	자금의 용도	용자대상자
○ 집단마을조성사업	○ 집단마을조성사업지구의 용지매입등	시장.군수 (농진공)
○ 임대주택	○ 집단마을조성사업지구에 건립되는 임대주택 의 건축비	시장.군수 (농진공)
○ 주택신축	○ 주택신축(단독 또는 공공주택)에 소요되는 자금	주 민
○ 주택개량	○ 부엌, 목욕탕, 화장실, 담장등 기존주택 일부를 개량하는데 부족한 자금	"
○ 주민편익시설	○ 영농어지원시설, 시장정비 및 조성등 주민 편익시설사업을 추진	사업자
○ 농어촌용수 (상.하수도포함)	○ 농어촌지역의 용수(생활용수, 상.하수도등) 사업을 시행하는데 부족한 지방비에 지원	시장.군수

< 별첨 3 >

사업의 위탁

- 목적 :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농진공, 농협 등 농림수산 관련단체를 참여토록 함
- 대상사업 예시
 - 도로, 용수 등 사회기간시설 : 농진공, 농조 등
 - 유통·가공시설, 곡물건조보관시설, 농기계수리보관시설, 농산물집하장 등 공동영농어 시설 : 농협, 수협, 축협 등
 - 다목적복지회관(도서실, 경로당, 체육시설, 탁아소, 목욕탕등) : 농협, 수협등
- 사업추진방법

구 분	군수의 위탁사업	농림수산 관련단체의 자체사업
사업방법	시장·군수로부터 위탁받아 시행	정주권개발계획에 따라 농림수산 관련 단체가 자체적으로 연관 시행
자금지원	전액보조	정주권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군수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설비중 50%보조(시설부지는 자체확보)
관리운영	시장·군수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관리운영 위탁가능)	관련단체가 시설물을 소유·관리운영

<별지 제1-1호 서식>

'95 면 개발계획수립 대상면 추천

(도)

시군별	대상면	사업시행			개발계획수립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면수	'95대상면추천	
							면수	면면

< 별지 제1-2호 서식 >

'95 농어촌정주권개발 보조 및 용자사업 추진계획

(도)

시·군·민	대상 면수	시행면	합 계		진 단 마 을			일 반 정 주 권				비고	
			보조	용자	보조사업	용 자 사 업		용 자 사 업					
						계	용지매입	주택신축	계	주택신축	주택개발		주민편의
							()			()	()	()	

(단위: 백만원)

※ 1. ()는 주택호수 등 물량.
2. 보조사업비는 지방일여금 및 지방비(7:3)

< 별지 제1-3호 서식 >

'95 농어촌정주권개발 보조 및 용자사업 추진실적

(도)

시·군·민	대상면 시행면	합 계		진 단 마 을			일 반 정 주 권				비고		
		보조	용자	보조사업	용 자 사 업		보조사업	용 자 사 업					
					계	용지매입		주택신축	계	주택신축		주택개발	주민편의
							()			()	()	()	

(단위: 백만원)

※ 1. ()는 주택호수 등 물량.
2. 보조사업비는 지방일여금 및 지방비(7:3)

<별지 제1-4호 서식>

'95 정주생활권개발 대상사업 선정결과

시.군-----면

(금액단위 : 백만원)

중심마을명 (부기위치)	부문명	사업명	단위	총 계획		'94까지		'95 계획				'96 이후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개소 /km					개	양여금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별지 제1-5호 서식>

'95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추진현황

(도)

(단위:백만원)

위	면	총 계획	'94까지 실적	'95 시행 계획				'96 이후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군				개	양여금	사업비 <td>사업량</td> <td>사업비</td> <td>사업량</td> <td>사업비</td> <td></td>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 사업량 : 개소 수 기입

※ 비 고 : 환공 개소 수 기입

집단마을조성사업 (공공계획)

1. 목 적

농어촌생활권의 중심마을을 근간으로 지원을 집중하여 기존마을정비와 분산된 마을의 집단화를 위하여 농어촌주택단지를 조성, 현대적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생산기반정비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병행, 연계추진함으로써 생활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미래지향적 농어촌 마을조성에 목적이 있음

2. 사업의 내용

가. 기본방향 : 발전가능성이 큰 정주생활권 면단위 중심마을을 대상으로 현대식 농어촌 주택단지, 상.하수도, 마을내 도로, 편익시설등을 농업 기반조성 및 소득원 개발과 병행, 연계 추진함

나. 장기 사업목표: 2004년까지 전국 정주생활권개발대상면에 790개의 집단마을을 조성함

3.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자(이하 "수탁시행자")에게 위탁 하여 시행 가능

나. 시장.군수는 집단마을조성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할 경우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단지조성과 병행하여 오폐수처리시설이 동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시장.군수는 수탁시행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4. 사업의 내용 및 지원조건

가. 관련법규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 내지 제39조의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
-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1조의 농어촌취락용지조성사업 및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나. 사업세부내용

- 현대적 생활기반시설을 갖춘 일정규모이상의 신규마을 조성(기존마을 재정비)
- 기반시설(택지조성, 단지진입로, 마을안길정비, 생활용수 및 배수, 전기·통신 시설등)과 현대식주택의 신축 및 개량
- 복지회관, 오락실, 공동주차장, 도서관등 주민편익시설
- 오폐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 환경보전시설
- 집하장, 농산물가공시설, 농기계수리소, 공동작업장, 공동건조장, 보관시설등 산업시설

다. 지원기준

- 지원규모: 지구당 3년 내외에 50억 수준(보조 20, 용자 30) 지원
- 전체 소요사업비중 보정지원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해당시·군(면)의 일반 정주권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구별 보정지원액이 소요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일반정주권사업비에 지원함
- 당부 소관 관련 예산사업(생산기반조성, 유통, 소득, 가공시설사업 등) 과 병행, 연계 지원

라. 지구별 추진계획

- '94까지 착수지구 : 32개지구('91착수 2, '92착수 13, '94착수 17)
- '95착수 예정지구 : 20개지구

마. 용자사업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및 주민(사업자)
- 지원대상사업 : 용지매수비, 주택신축자금
- 용자사업추진
 - 시장·군수는 용지분양자등이 직접 건축시 용자대상자를 확정하여 도지사에게 소요액을 보고하고, 용자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상황(토지감정등)을 검토하여 용지매입등 용자가 지원될 수 있도록 소요액 및 소요시기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용자 지원시 유의사항
 - 주택자금 용자금 지급은 택지분양자가 택지를 분양받은 후 1년이내에 준공된 주택에 한함
 - 대상자 선정시에는 기수혜여부, 타부문 용자 중복 지급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주택자금 용자대상 : 주거전용(겸용)주택에 한함
 - 시장.군수가 용자취급기관에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시에는 당해 시.군이 승인한 사업계획서 사본을 함께 통보하여야 함
- 농특회계 용자금 운용지침, 사업별 대상자 선정기준, 용자조건, 자금용도등 : 일반 정주권 용자사업<별첨2참조> 과 동일함

5.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가. 대상지구 선정

- 시장.군수는 집단마을조성사업 조사대상 예정지를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보고 (1개면 1개지구. 단 기개발된 면과 개발중인 시.군 제외)
-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보고한 신규착수 예정지중 사업추진여건이 양호한 지구에 대하여 의견을 첨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추천
- 도지사가 추천한 지구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이 예정지 조사후 지구 확정 통보

나. 사업계획의 수립 :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으로 구분

1) 기본계획

- 시장.군수는 사업 예정지 지구로 확정된 지구에 대한 기본조사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하여 수립함을 원칙으로 함
- 기본계획수립자는 사업대상지구에 대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사업목적에 부합 되도록 집단마을 단지조성, 오폐수처리시설, 기존마을정비계획, 주택건축과 연관사업(생산기반정비, 농어촌도로등)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및 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기획기술지원단)의 사전 검토를 받아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수립자가 제출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2) 실시계획

- 실시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립하고 오폐수처리시설 실시계획도 병행 수립함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3)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수탁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사업계획 수립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장.군수가 조정하고 도지사에게 결과 보고
 - 관련되는 다른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변경
 - 지형사정으로 인한 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 물가상승에 의한 사업비의 변경
- 중요한 사업계획의 변경(택지의 용도변경, 필지규모의 변경, 조성부지면적의 증감, 도로계획의 변경) 사업기간의 변경 및 사업비 재원비율의 변경에 대하여 도지사는 사전에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대상지 선정시 고려 사항
 - 농업진흥지역정비와 연계하여 농어촌마을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 교통,경제,문화의 중심지로서 발전 가능성이 큰 마을
 - 분산된 농어촌마을의 집단화로 토지이용의 효율화가 필요한 지역
 -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발의지가 있는 마을
 - 농업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로서 사업시행을 위한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감정가격에 의하여 용지매수 및 보상이 가능한 지역
 - 타부문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및 지가등 사업의 추진 효율성이 높은 지역
 - 가능한한 농업진흥지역밖의 지역, 면 정주생활권개발계획서상의 중심마을

다.사업의 시행

1) 용지매수 및 보상

- 시장.군수는 조사대상지구가 선정되면 해당주민들에게 감정가에 따라 용지매수 및 보상에 응하겠다는 동의서를 징구<별첨 1>
-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지매수및보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별법"의 제반 규정에 따름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을 위탁하는 경우 용지매수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함

2) 사업시행계획

- 사업시행자는 당해년도에 확보된 사업비에 의한 사업시행계획 및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 시장·군수는 매월말 월별 공정계획에 의한 사업시행 추진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익월10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별지 제2-3호 서식)

3) 주택등의 건축계획

- 주택등의 건축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건축할 수 있으며, 도지사(시장·군수)는 주택등의 건축시행방법에 대하여 농림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단지조성공사와 병행하여 주택등의 건축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시장·군수는 주택등의 건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분준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직접 주택등의 건축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등의 건설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름. 단,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용지로서 공급하여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개별로 건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
- 사업시행자는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직접 건축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활용과 단지전체와 조화를 이뤄 건축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사업시행자는 택지 분양자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4) 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 사업시행자는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절차를 행하고,사업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사업시행자는 용지매수 및 보상, 공사발주 및 재산관리(등기수속등)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
- 공사감리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감리 함

5) 재원조달 및 사업비 정산등

- 집단마을조성사업비로 확보된 재원은 총 사업비 범위내에서 필요한 용도에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집단마을조성사업의 재원 및 지원기준<별첨 2>
- 사업시행자는 본사업에 투자된 용자금 및 민자를 택지등 분양금과 임대료수입 등으로 회수할 수 있음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시행자와의 계약에 의거 수탁시행자의 보조사업비 지급 신청시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등으로 일괄 집행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주택건축을 직접 지도하거나 위탁시켜 지도하게 할 경우 주택등의 건축 및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일반관리비용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분양계획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수납하고, 주택등의 건설을 직접시행할 때에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에 따라 주택분양 대금을 수납하여 공사추진상황에 따라 주택시공자에게 지급함. 이경우 주택신축자금으로 지원되는 용자금은 중도금 또는 잔금의 일부 또는 전부로 충당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단지조성,오폐수처리시설등 부분별로 준공검사 및 사업비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며, 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6. 분양 및 시설의 유지관리

- 가. 집단마을조성사업으로 조성 및 설치한 택지,주택과 시설물의 분양은 농림수산부가 정하는"집단마을조성사업 농어촌주택등의 건축에 대한 지침 및 분양지침"에 따름
- 나. 사업시행자는 택지나 주택등의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분양을 시행하며(수탁시행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와 협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분양계획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다. 사업시행자는 분양대상자가 결정되면 시장.군수에게 분양대상자를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주택자금등 용자금이 지원되도록 조치함

- 라.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부분별 준공검사 포함)가 완료되면 공공시설물과 분양 대상이 아닌 토지등에 대하여 당해 시장·군수에게 인계인수하여 관리토록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마.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이익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바.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활용은 다음 순위에 따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 ① 당해지구에 설치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및 추가로 필요한 공동시설물의 설치
 - ② 당해지구 주민과의 협의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
 - ③ 집단마을조성사업지구와 인접한 기존마을의 정비
- 사. 조성용지 및 주택의 분양을 위해 최초 분양공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미 분양된 용지및 주택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며, 이후의 분양 방법 및 절차등은 농림수산부장관의 방침에 따라 시행하고, 사업시행자가 차입한 융자금은 기한내에 상환하여야 함

7. 설계감리등 요율

- 별도 시달하는 요율에 의함

8. 참고사항

- 가. 시장·군수는 집단마을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생산기반 및 소득기반시설이 종합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 나. 농어촌진흥공사는 집단마을조성사업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직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다. "집단마을조성사업주택등의건축에대한시행지침" [정주 51372-104('93.5.4)]은 별도 지시가 있을때까지 시행을 보류함
- 라. 본 요령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실시요령에 준함

9. '95 집단마을조성사업계획

(단위: 백만원)

	지 구 수		사 업 비			
	보조사업	용자사업	계	국고보조 (지방양여금)	지방비보조	국고용자 (농특회계)
	개소	개소				
경기	2	4	4,934	864	370	3,700
강원	8	9	16,340	3,458	1,482	11,400
충북	7	9	11,023	3,026	1,297	6,700
충남	5	6	8,287	2,161	926	5,200
전북	7	9	12,023	3,026	1,297	7,700
전남	4	5	6,070	1,729	741	3,600
경북	2	4	5,634	864	370	4,400
경남	2	4	4,034	864	370	2,800
제주	1	1	1,617	432	185	1,000
계	38	51	69,962	16,424	7,038	46,500

23.5 0.5 66.5

< 별첨 1 >

토지 및 지상물 매각동의서(안)

토지 및 지상물 매각동의서

_____군수(시장) 귀하

1. 귀군(귀사)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정주생활권개발 집단마을조성(오폐수처리시설)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본인 소유의 다음 토지 및 지상물 일체를,

2.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등 관련법령에 따른 감정보상액으로 매각할 것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동의합니다.

(보상 전이라도 우선공사 또는 사용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첨언함)

위 치			지 번	지 목	지 가 건	적 용 물	편 예 면	입 점 적	비 고
시 군	읍면동	리							

1 9 9

승락자 주소 : _____
 성명 (한자) :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첨부 : 인감증명서 (용도:사업동의용) 1부

< 별첨 2 >

집단마을조성사업의 재원 및 지원기준

(단위:%)

		재원별 비율		비 고
		보 조 (지방양여금등)	용 자 (농특회계)	
집단마을 조성사업	○ 용지확보 ○ 공사비 ○ 잡지출 ○ 사업관리비	- 100 100 100	100 - - -	발생이자등 포함 자재대, 지장전주이설비, 토취장복구비등 포함 이전등기비, 토지감정료 분양공고비등 포함 축양설계비, 공사감리비, 분양 주택건축관리, 경비, 국토이용계획 변경, 경비, 일반관리비 포함
오폐수처리 시설	○ 용지확보및 제공사비	100	-	
기존마을 정비	○ 기반시설사업 ○ 용지매수보상	100 100	- -	일반정주권개발비 및 집단 마을 조성사업비

< 별지 제2-1호 서식 >

지구 집단마을조성사업 시행계획

(수입)

(단위: 천원)

구 분	승인액	전년도까지 년도별예산액			금년도 예산액	내년이후 잔사업비	비고
		소계	년	년			
계		()	()	()	()	()	
보 조 - 국 지방양여금 - 지방비 용 자 기 타							

※ ()내서 집행액

(지출)

(단위: 천원)

구 분	승인액	전년도까지 년도별예산액			금년도 예산액	내년이후 잔사업비	비고
		소계	년	년			
계		()	()	()	()	()	
공 사 비 - 부지조성 - 도로 - 상수도 - 하수도 - 조경 - 전기통신 - 기타 자 재 대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 상 - 이 자 사업관리비 - 측량설계비 - 공사관리비 - 일반관리비 - 잡 지출 예 비 비 기 타							

※ ()내서 집행액

정주생활환경개발 공정계획(집단마을)

시공 입자 : (인)
 작 성 자 : (인)
 (금액단위 : 천원)

시업시행년월일 : 차공년월일 :

지구명 :

과 목	단위	승인액		(전년)까지		(금년)까지		(금년)이후		전도(%)	업 비 공 정 개 획												비고														
		총량	금액	총량	금액	총량	금액	총량	금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1	2	3	계	%	4	5	6	계	%	7	8	9	계	%	10	11	12	계	%							
공사비																																					
-부지조성																																					
-도로																																					
-상수도																																					
-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기타																																					
저재대																																					
용지매수비																																					
-용지매수																																					
-보상																																					
-이치																																					
사업관리비																																					
에비																																					
기타																																					

지구 집단마을조성사업 추진현황

1. 사업개요

- 총사업비 : 천원(보조: , 용자: , 기타 :)
- 규 모 : 평 (단독주택: 필지, 공동주택: /, 근린시설: 필지)
- 단지조성착공(예정) : 년 월 일
- 단지조성준공(예정) : 년 월 일
- 택 지 분 양(예정) : 년 월 일

2. 추진계획 및 현황

월말 현재

(단위: 천원)

구 분	승인액	기정산액	당년계획 (A)	추진실적(누계)		진도(%)	
				계획(B)	실적(C)	C/B	C/A
계		()					
공 사 비 - 부지조성 - 도로 - 상수도 - 하수도 - 조경 - 전기통신 - 기타							
자 재 대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 상							
사업관리비							
예 비 비							
기 타							
자 급 집 행	보 조 용 자 기 타						

※ 당년 계획은 전년도 이월액에다 당년 예산배정액을 합한 것임.
 ※ ()내서는 기집행액.

3. 사업시행부진사유(진도 70%미만인 공종에 대하여 작성)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공공계획)

1. 목 적

농어촌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청결한 생활공간을 만들며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보전함.

2. 사업추진방향

- 가. 기본방향: 전국 면단위 이하의 마을에 하수관로 설치를 하거나 하수관로를 통하여 수집한 하수의 처리시설 설치
- 집단마을조성등 생활기반이 정비된 마을 우선 지원
 - 수질오염이 극심하여 생활하수의 처리가 필요한 지역
- 나. 장기사업목표: 2004년까지 전국 정주생활권개발대상 면단위 지역에 790개소 설치

3.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의 위탁등은 집단마을조성사업과 동일

4. 사업의 세부내용 및 지원규모

- 가. 사업내용: 집단마을조성사업지구와 기존마을의 하수관로 및 오폐수처리장 설치
- 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수집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
 - 하수도통을 통해 수집한 생활하수의 처리를 위한 오폐수처리장 설치
- 나. 사업비 지원 : 지구당 4억원내외(국고 지원)
- 다. '95 추진계획 : 18개지구('94 착수지구 17, '92착수지구 1)
- ※ 지구별 사업비는 설계확정후 별도 시달

5.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

가. 대상지구선정

- 도지사(시장.군수)는 오폐수처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마을을 선정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농림수산부장관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지구 선정
- 대상지 선정시 고려 사항
 - 집단마을조성사업 지구 또는 기존마을과 병행하여 오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한 지구
 - 도로, 상수도등 생활기반이 비교적 정비되어 환경개선효과가 큰 마을
 - 농어촌 마을중 환경오염이 심하여 영농에 지장을 받고있는 마을

나. 사업계획의 수립 :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으로 구분

1) 기본계획

- 오폐수처리시설은 처리수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의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및 지역여건에 적합하고 유지관리비가 적게드는 방식으로 계획

< 방류수 수질기준 >

(단위: mg/ℓ)

생물화학적산소 요구량 (BOD)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부유물질량 (SS)	비 고
30이하 30이하	50이하 40 "	70이하 30 "	'95.12.31까지 적용기준 '96.1.1부터 적용기준

- 시장.군수는 사업예정지구에 대하여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함
- 오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은 집단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배제구역, 하수도 기본시설의 배치.구조, 처리장의 위치 및 처리공법, 처리용량 등을 포함하여야 함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름
- 기본계획수립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후 시장.군수 및 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기획기술지원단)의 사전검토를 받아 시장.군수에게 제출

2) 실시계획

- 시장·군수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제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시계획을 수립,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도지사는 현지여건, 계획의 타당성, 재원마련대책등을 검토하여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실시설계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이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등록된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립

3)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수탁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사업계획 수립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장·군수가 조정하고, 도지사에게 결과 보고
 - 관련되는 다른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변경
 - 지형사정으로 인한 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 물가상승에 의한 사업비의 변경
- 사업계획의 내용중 처리공법의 변경이나 처리용량의 변경(10%이상일 경우)에 대하여 도지사는 사전에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다. 사업의 시행

- 1) 용지매수 및 보상 : 집단마을조성사업과 동일
- 2) 사업시행계획 : 집단마을조성사업과 동일(별지 제3-1호, 제3-2호, 제3-3호 서식)
- 3) 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 사업시행자는 용지매수보상, 공사발주 및 재산관리(등기수속 등)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입주시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
 - 공사감리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감리

4) 재원조달 및 관리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시행자와의 계약에 의거, 수탁시행자가 보조사업비를 신청시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일괄 집행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는 동의서 징구 및 관련계획의 변경, 지도.감독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일반관리비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

6. 시설의 유지관리

- 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
- 나.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즉시 시장.군수에게 시설물을 인계함
- 다. 시장.군수는 성실하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시.군 조례를 정하여 자체 조달토록 함
- 라. 시장.군수는 시설의 유지및 처리수질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처리수의 수질을 측정하여야 하며 주민에 대하여도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함

7. 설계감리등 요율

-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조사설계, 공사감리, 관리비등의 요율은 집단마을 조성사업의 요율을 적용

8. '95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지구수	사업비 (농특회계)	비 고
경기	1	20	○ 설계대상지구는 '92착수지구 및 '94 착수지구임('92착수 1, '94착수 17) ○ 도별 사업비배정은 지구별 설계금액 (사업비) 확정후 사업비 규모와 지구 별 사업진도에 따라 2년차로 지원할 계획임
강원	3	60	
충북	5	100	
충남	2	40	
전북	3	60	
전남	1	20	
경북	1	20	
경남	1	20	
제주	1	20	
유보		2,040	
계	18	2,400	

< 별지 제3-1호 서식 >

지구 오폐수처리시설사업 시행계획

(수입)

(단위: 천원)

구 분	승인액	전년도까지 년도별			금년도 예산액	내년이후 잔사업비	비고
		소계	년	년			
계		()	()	()	()	()	
보 조 - 국 고 - 지방양여금							
용 자							
기 타							

※ ()내서 집행액

(지출)

(단위: 천원)

구 분	승인액	전년도까지 년도별			금년도 예산액	내년이후 잔사업비	비고
		소계	년	년			
계		()	()	()	()	()	
공 사 비 - 토목공사 · 오수관로 · 오수처리조 · 조경공사 · 부대공사 · 기 타 - 기계공사 - 전기공사 - 건축공사							
자 재 대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 상 - 이 자							
사업관리비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일반관리비 - 잡 지 출							
예 비 비							
기 타							

※ ()내서 집행액

정주생활권개발 공정계획(오페수처리시설)

시공 입자 : (인)
 적 성 자 : (인)
 (금액단위 : 천원)

과 목	단위	송인액		(천년)까지		(금년)계획		(금년)이후		진도(%)	원 별 공 정 계 획												비고				
		(천년)까지		(금년)계획		(금년)이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					
회 개																											
공 사 비																											
-토목공사																											
-오수관로																											
-오수처리조																											
-조경경사																											
-부대공사																											
-기 타																											
-기계공사																											
-전기공사																											
-건축공사																											
자 세 내																											
용지배수비																											
-용지배수																											
-포 상																											
-이 자																											
사업관리비																											
에 비 비																											
기 타																											

< 별지 제3-3호 서식 >

지구 오폐수처리시설사업 추진현황

1. 사업개요

- 총사업비 : 천원
- 규 모 : m²/일
- 공사착공(예정) : 년 월 일
- 공사준공(예정) : 년 월 일

2. 추진계획 및 현황

지구명: _____

월말 현재

구 분	승인액	승인액	승인액	추진실적(누계)		진도(%)	
				계획(B)	실적(C)	C/B	C/A
계		()					
공사비 - 토목공사 .오수관로 .오수처리조 .조경공사 .부대공사 .기타 - 기계공사 - 전기공사 - 건축공사 자재대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상 - 이자 사업관리비 예비비 기타							
자금 집행 보 조 용 자 기 타							

※ 계획은 전년도 이월액에다 당년 예산배정액을 합한 것임.
 ※ ()는 기 집행액.

3. 사업시행부진사유(진도 70%미만인 공종에 대하여 작성)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공공계획)

1. 목 적 : 경지정리 지구내의 주요 경작로를 확.포장하여 대형농기계의 영농작업에 영농작업에 편리하도록 하여 농업생산성을 제고시키고, 경작지와 농업가공. 저장.유통시설의 유기적 연결로 농업경쟁력 제고.

2. 추진방향 : 2010년까지 총 22,000km 확.포장('95계획 : 200km)

3.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농조구역 : 농지개량조합장
농조구역외 : 시장.군수

나) 사업비 지원기준 : 국고 80%, 지방비 20%

4. 사업시행대상 선정

가) 주요 간.지선농로중 당부에 사업대상지구로 보고한 지구의 노선중에서 선정

나) 사업시행지구 선정

- 시행주는 기본조사가 완료된 사업대상지구중 사업시행계획을 연차별로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사업시행대상지구를 선정 보고
- 도지사는 시행주의 보고에 따라 사업시행대상 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계획을 수립, 당부에 사업시행 요청
- 당부는 도지사가 요청한 사업시행대상지구에 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시행 지구를 확정하고, 예산을 배정
- 도지사는 당부에서 배정한 사업시행지구노선에 대하여 시행주에게 예산배정 하고, 당해년도 2월말까지 그 결과를 당부에 보고(별지 제4-1호 서식)

5.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보고

가) 시행주는 도지사로부터 배정받은 사업시행대상 지구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

나) 시행주가 시장.군수일 때는 시장.군수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에게 보고 하고, 시행주가 농조장인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수립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

- 다)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사업시행계획 보고와 농지개량조합장에게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결과를 취합하여 당해년도 사업을 확정된 후, 4월말까지 당부에 보고 (별지 제4-2호 서식)

6. 사업실시

가) 사업시행

- 시행주는 사업계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가능한 한 영농기 이전에 완공하여 영농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개시후 진척상황을 매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익월 10일 까지 도지사를 거쳐 당부에 보고(별지 제4-3호 서식)

나) 사업계획변경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행주는 사업계획변경을 도지사에게 승인요청하고, 도지사는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한 후 당부에 보고 단,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은 시장.군수가 변경계획을 확정된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당부에 보고(별지 제4-4호 서식)

7. 설계 및 공사감리 : 시행주 책임하에 시공

8. '95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고(농특)	지 방 비	
계		18,700,000	15,060,000	3,640,000	
확.포장	200 km	18,200,000	14,560,000	3,640,000	
경강 지역 농업 전진 계획 제	기원	29	2,639,000	2,111,200	527,800
	복합	7	637,000	509,600	127,400
	남북	11	1,001,000	800,800	200,200
	남북	30	2,730,000	2,184,000	546,000
	남북	31	2,821,000	2,256,800	564,200
	남북	36	3,276,000	2,620,800	655,200
	남북	28	2,548,000	2,038,400	509,600
	주	28	2,548,000	2,038,400	509,600
기본조사	2,000 km	500,000	500,000	-	

< 별지 제4-1호 서식 >

'95기계회경작로 확.포장사업 예산배정 결과 보고

(단 도)

(단위: 천원)

CODE NO	위 치	지 구 명	노 선 명	노 선 명	TYPE 별 사 업 량			사 업 비		시 행 주	비 고
					개	A	B	C	기 타		
계					km	km	km	km			

※ 사업물량은 소수점 1자리까지 표시
 ※ 비교란에 사업사업지구용 필도 필기한다.
 ※ A, B TYPE 시행시 수리시설개. 보수사업등으로 병행사업이 가능한 지구용 대상으로 한다.

< 별지 제4-2호 서식 >

기계회경작로 확.포장사업 시행 승인 보고

(단 도)

(단위:천원)

CODE NO	위 치	지 구 명	노 선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시 행 주	비 고	
				개	A	B	C	기 타	'96 이 후			
									국 고			지 방 비
계				km	km	km	km					

※ 사업물량은 소수점 1자리까지 표시
 ※ 사업사업 지구용 비교란에 표시

< 별지 제4-3호 서식 >

기계화경적로 확.포장사업 추진상황 보고

(단 도)

원재 (단위 : 천원)

군	지구수	노선수	년간개회		추진상황		진도		부진사유 및 대책방안	비고
			사업량 km	사업비	사업량 km	사업비	사업량 %	사업비 %		
계										

※ 사업분량은 소숫점 1자리까지 표시
 ※ 시,군구역, 읍,초구역을 구분하여 표시

< 별지 제4-4호 서식 >

'95기계화경적로 확.포장사업 계획변경 보고(신청)

(단 도)

CODE NO	위치		연장 TYPE	사업비		CODE NO	위치		인장 TYPE	사업비	변경 사유
	군	민		시구망노선명	연장 TYPE		사업비	군			
계											

※ 사업분량은 소숫점 1자리까지 표시
 ※ 시,군구역, 읍,초구역을 구분하여 표시

양축자금 지원(공공계획)

1. 사업의 목적

- 양축가에게 저리의 양축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양축가의 경영비 절감 도모(일반양축자금)
- 재해가 극심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 지원계획만으로 충분한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재해대책본부 지원계획과는 별도로 양축자금을 특별지원하여 재해양축농가의 자금지원해소등 재활기반 구축(특수목적 양축자금)

2. 사업신청자격(지원대상)

- 가. 일반양축자금 : 가축사육여건을 갖춘 양축농가
- 나. 특수목적 양축자금
 -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극심한 재해로 인하여 가축이 유실 또는 폐사한 양축농가

3.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 가. 자금의 용도
 - 양축농가의 사료구입비, 동물약품구입비등 가축사양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단기성 지원자금
- 나. 지원조건
 - 호당 지원한도
 - 일반양축자금 : 800만원 이내
 - 특수목적 양축자금 : 피해당시 조사된 가축피해액과 정부지원액(국고+융자금)의 차이. 단, 호당 10만원 미만은 제외

- 대출기간
 - 대출기간 : 1년 이내
 - 대출금 상환연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당초 약정기간을 포함하여 1년 6월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금리 및 이자징수 : 연 5%, 원금상환일에 후취

4.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가. 일반 양축자금

- 지원대상자 추천
 - 양축자금을 용자반고자 하는 양축가는 용자 추천신청서를 작성, 관할 축산契長(또는 축협조합 대의원)에게 신청
 - 축산契長은 축협조합원 여부에 불구하고 조합의 자금배정액 범위안에서 양축가별 양축규모와 자금사정, 그동안의 양축자금지원 여부등을 감안 「용자협의회」에서 지원순서와 지원액을 협의 조정하고 양축자금 지원 대상 추천서를 작성하여 대출조합에 제출
 - 「용자협의회」는 축협조합장이 각 구역별로 위촉하는 축산契長(또는 대의원), 읍·면·동의 축산담당공무원 1명, 축산후계자 대표 1명, 일반양축가 대표 2명으로 구성
 - 축산契가 조직되지 아니한 지역은 축협조합대의원선거규정에 의한 선거구 별로 위 요령에 의거 대의원이 추천
- 지원대상자 확정 및 공개
 - 축협조합장은 축산契長 또는 대의원이 「용자협의회」를 거쳐 추천한 자 중에서 대출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축협간행물 또는 게시판등에 공개하고 추천자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대출금의 지급
 - 대출금은 출자금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제하지 못하며,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 양축자금의 소비자금융을 방지하고, 현금 소지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하여 통장으로 지급하고, 자금 필요시 인출 사용토록 장려
 - 대출금을 지급한 때에는 용자대상자를 추천한 축산契長 또는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지원계획등 홍보
 - 축협조합장은 지역별 양축자금 배정액, 지원기준, 신청절차 및 방법등 지원계획을 관내 시·군·구·읍·면·동사무소등에 통보하고 이를 양축 농가에게 홍보하여야 함

나. 특수목적 양축자금(50억원)

- 중앙재해대책본부(풍수해대책법) 및 농림수산부(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복구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재해양축농가에 대하여 지원
- 세부지원요령은 별도 시달하는 요령에 의함

5. '95 지원규모(조달 및 운용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94(A)	'95(B)	증감 (B-A)
조 달	재 정 자 금	1,208	1,416	208
	한 은 차 입 금	832	624	△ 208
	축 협 자 금	1,960	1,960	-
계		4,000	4,000	-
운 용	일반 양축자금	3,950	3,950	-
	특수 양축자금	50	50	-

6. 기타

- 특수목적 양축자금은 사유 미발생시 축협중앙회장이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일반양축자금으로 전용 지원할 수 있음
-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용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축협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사업안내기관
 - 중앙 { 농림수산부 축정과(503-7281)
 { 축협중앙회 여신관리부(485-3141)
 - 지방 : 관할 축협조합

축산운영자금계정 지원(공공계획)

1. 설치배경 및 목적

- 농어촌구조개선사업등으로 축산부문에 시설자금은 집중지원되고 있으나 축산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은 별도 지원책이 없음
- 축협중앙회 및 동회원조합의 한정된 예수자원과 금리운용상 지원의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저리의 운용자금 재원을 별도로 확보하여 지원

2. 사업개요

가. 계정설치

- 축산운영자금 운영계정 설치근거 마련(농림수산부훈령 계정)
- 축협중앙회에 설치하되 중앙회장은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운영

나. 자원조성

- 축발기금, 축협중앙회 자금, 계정가입자 출자금 등

다. 운영방법

- 대출대상자 : 시설자금 지원을 받은 자로서 계정가입후 일정기간 경과한 자
- 대출한도 : 계정 조성규모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
- 대출조건
 - 금리 : 축발기금 일반금리 + 축협중앙회 수수료 수준 이상
 - 기간 : 3년이내

3. 향후추진계획

- 앞으로 작성될 축산운영자금계정 설치운영방안에 따라 추진

4.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 기관 : 농림수산부 축정과 (503-7281)
축협중앙회 여신관리부(485-3141)

재해대책(공공계획)

1. 목 적

- 재해예방의 사전준비 철저로 안정적인 축산업 영위
-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및 지원대책의 신속한 추진으로 피해 최소화 및 신속 복구

2. 사업 내용 및 지원조건

가. 지원근거 : 풍수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나. 지원대상 : 중앙재해대책본부(풍수해대책법) 및 농림수산부(농어업재해대책법)
에서 복구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재해양축농가

* 중앙복구지원 대상이 아닌 피해양축농가는 자력복구 실시(지방비 지원포함)

다. 재해복구비용 자원확보 방침

- 국고보조금 : 정부예비비 또는 농림수산부 기정예산에서 전·이용
- 융자금

재원별	비 목	금리	용 자 기 간		비 고
			거 치	상 환	
농특회계	재해대책비	5%	3년	7년	○축사기자재등 구조 개선성 복구비
축발기금	예 비 비	5	3	7	○가축·초지등 복구비

- 다만, 융자금재원 형편에 따라 재원이 변경될 수 있음
- 채권보전은 축협여신관리규정에 의함

라. 재해복구비용 부담 기준

구 분	단위	재 원	부담액 및 부담율	비 고
○ 축사·초지(유실 또는 전파·매몰)				
1) 축사	m'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당해년도 건조가격의	
- 중·소규모시설			15 %	
			5	
			60	
			20	
- 대규모시설 (600m ² 이상)		[융 자	50 %	
		[자부담	50	
2) 초지(유실)	ha	[융 자	70 %	
- 중·소규모시설			[자부담	30
			50 %	
- 대규모시설 (5ha이상)		[융 자	50	
		[자부담	50	
○ 가축(유실·폐사)	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어린가축 입식비	
			40 %	
			10	
			30	
			20	

* 피해시설물의 경우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제8조에 의거 본래의 목적 이외의 시설물이거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설치한 시설물 또는 적법한 절차 없이 타인에게 임대차한 시설물의 피해는 적용제외함.

마. 양축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제21조에 의거 50%이상 피해 양축농가에 대하여는 양축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2년간)
- 피해농가 양축자금 대출액은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농림수산부에 보고

3.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요령

가. 가축 및 축사관리

- 축사주위, 방목장, 분뇨처리등 배수로 정비
- 남은 축사 및 사료창고 보수
- 비상사료를 10일분이상 비축
- 가마니, 마대, 새끼등 준비
- 홍수, 폭설등에 의한 위험예상 지역의 축사 및 가축을 사전 조사하여 대책 강구

나. 가축방역 및 위생관리

- 긴급방역비 확보로 소독약, 예방약등 방역약품 사전 비축
- 소독기등 방역장비 사전점검
- 공수의등 동원체계 점검
- 폐사축은 신속히 소각 또는 매몰
- 침수지역은 축사등에 대한 소독실시
- 가축전염병 예찰을 강화하고 예방주사 실시

다. 초지 및 사료작물 관리

- 침수, 유실, 매몰등 피해예상지역은 배수로 정비
- 피해복구를 위한 인력, 장비, 사업비등의 신속한 지원
- 재파종 대상지역은 소요종자 알선 및 파종지도

라. 재해양축농가에 대한 지원 우선등

- 재해발생시 시·도지사는 피해 양축농가가 출하하는 가축에 대하여 도축(도계), 판매, 검사, 계류, 정산등 필요한 편의를 최대한 제공 협조
- 재해발생시 시·도지사는 종합지원대상 이외의 재해양축가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 관할 축협에 양축자금 또는 축협일반자금 우선지원 협조 요청
 - 지원요청을 받은 축협조합장은 타농가에 우선하여 지원

마. 기타 행정사항

- 피해복구 및 사후관리는 시·도지사 감독하에 관할시장·군수 주관으로 실시
- 시·도지사는 피해복구 완료와 동시에 별첨 양식에 의거 정산보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은 풍수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의 제규정에 의거 추진
-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사진촬영하여 복구지원시 활용
- 시·도지사는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양축농가들이 해야 할 일을 정리하여 관내 양축농가에 지도

4. 재해 양축농가에 대한 특별지원

- 지원대상
 - 재해내용이 극심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해
 - 피해내용중 가축이 유실 또는 폐사한 경우로서 호당지원액이 10만원 이상이 되는 양축농가
 - 지원대상가축 : 소, 말, 양, 돼지,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짐승, 가금
- 재 원 : '95 양축자금중에서 지원
- 지원기준
 - 호당지원액 : 피해당시 조사된 가축피해액-정부지원액(국고 + 융자금)
 - 호당지원한도(현행 800만원)를 초과 지원할 수 있으며 호당 10만원 미만은 제외
- 융자조건
 - 금 리 : 년 5%

(서식 1)

축산분야 재해복구비(국고보조금) 정산보고

1. 피해명 :

2. 피해일시 :

(단위 : 천원)

구분 시·도별	피해구분		복 구		정 산 내 역			반납액
			계획	실적	예산배정액	예산집행액	집행잔액	
	축 사		등					
	가 축	소 돼지	두 두					
		닭 기타	수					
	초 지		ha					
계								

(서식2)

축산분야 재해복구비 정산보고(총괄)

- 피해명 :
- 피해일자 :

(단위 : 천원)

시도 피해구분	복구내역		복 구 비 집 행						비고	
	계획	실적	계 회		실 적		중 감			
			국고	자담	국고	자담	국고	자담		
축 사	계회	실적	응발	축진	응발	축진	응발	축진		
			국고	자담	국고	자담	국고	자담		
가 속	계획	실적	응발	축진	응발	축진	응발	축진		
			국고	자담	국고	자담	국고	자담		
소 돼 담 기 타	계획	실적	응발	축진	응발	축진	응발	축진		
			국고	자담	국고	자담	국고	자담		
준 지	계획	실적	응발	축진	응발	축진	응발	축진		
			국고	자담	국고	자담	국고	자담		
합 계	계회	실적	국고	자담	국고	자담	국고	자담		

9. 임업·산촌지원사업

임업후계자육성(자율)

1. 목적

농산촌에 정착하여 임업을 경영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청장년을 임업후계자로 선발하고 이들에게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유림경영의 선도자로 육성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각종 정부지원사업의 우선배정
- 산림경영을 위한 기술, 재정, 장비, 세제 등 종합지원
- 시범경영기술보급으로 사유림경영 활성화 촉진

나. 장기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95 ~ '98					'99~2004
		소계	'95	'96	'97	'98	
사업량(명)	750	300	75	75	75	75	450
사업비 (용자)	15,000	6,000	1,500	1,500	1,500	1,500	9,000

※용자금액은 매년 후계자 1인당 2천만원 기준임

3. 사업신청자격

가. 자격요건

- 소유산림이 소재한 시·도안에 주소를 둔 45세미만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독립가 자녀
 - 10ha이상의 산림소유자(직계존속명의, 대부, 분수림 포함)
 - 농고의 임업분야이상의 졸업자는 5ha이상의 산림소유자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인정권자) : 시장·군수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1) 사업지원내용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산림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임업후계자에 대하여 다른 자에 우선하여 다음사항을 지원함.
 - 산림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 산림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
 - 국유림에 대한 분수림 설정
 - 경영실적이 우수한 임업후계자에 대한 포상

(2) '95지원규모

- 재 원 : 산림개발기금(융자)
- 사업량 : 75명
- 금액 : 1,500백만원

다. 용자조건

(1) 지원대상사업

임업후계자육성사업에 소요되는 산림사업비 및 산림사업용 기자재 구입비와 임야 매입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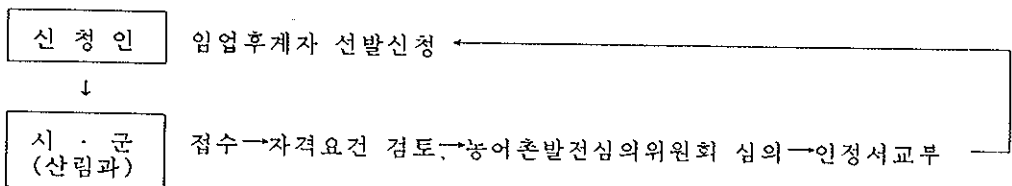
(2) 지원조건

- 용자한도액 : 1인당 1억원(10백만원까지 신용대출)
- 용자조건 : 연 3%, 5년거치 10년상환

(3) 지원방식

임업후계자가 산림사업 및 산림사업용 기자재 구입비와 임야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관할 임업협동조합에 용자 신청하면 현지확인후 종합심사하여 적격자 선정

라. 사업추진 체계도



5.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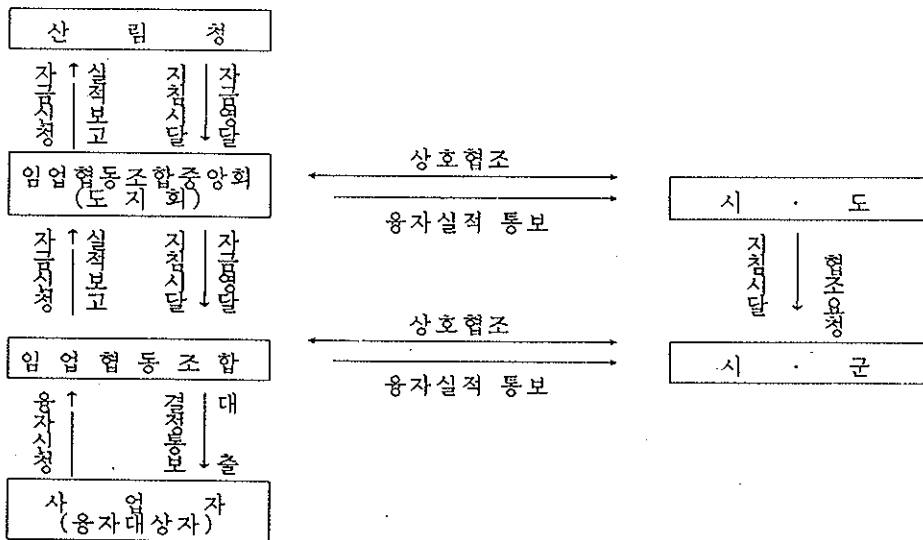
가. 임업후계자선발

- 산림법시행규칙 제9조의 9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임업후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임업후계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유 산림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함.
- 시장·군수는 임업후계자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임업후계자 실태조사를 하고 동 실태조사서를 첨부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이하"시·군심의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함.
- 시·군심의회는 임업후계자 실태조사서 내용을 파악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지확인을 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심의하고 심의 위원별로 임업후계자 선정심의를서를 작성함.
 - 임업후계자 선발요건에 적합 여부
 - 현지 정착의욕과 산림경영 사업추진 능력
 -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 장래 농산촌사회의 지도자로서의 자질 등
- 시장·군수는 시·군심의회 심의결과에 의한 임업후계자 선정심의를서를 종합 정리·검토하여 평균 60점이상인 자를 임업후계자로 선발하여 임업후계자 인정서를 교부함.

나. 용자대상자 선정절차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가 산림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임업협동조합에 신청하면 현지 확인후 종합 심사하여 선정함.

다. 사업추진체계도(용자)



6.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관할구역내의 선발된 임업후계자에 대하여는 개인별 임업후계자 현황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산림경영 실적등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관할 시·군임업협동조합장과 협조하여 임업후계자별로 산림공무원 1명과 임업기술지도원 1명을 전담지도원으로 지명하여 임업후계자에게 정부산림시책홍보와 산림경영 기술지도를 담당하도록 함.
- 임업기술지도원과 지도담당공무원은 임업후계자와 수시로 접촉하여 산림경영실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는 그에 따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산림사업 계획 대 실적조사를 할 때에 임업후계자 현황카드 기록사항의 변동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시·군에 비치된 현황카드에 기록하고 임업후계자 산림사업 실적보고서에 임업후계자별로 변동사항을 종합하여 시·도지사를 경유 산림청장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임업후계자 인정을 해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그결과를 시·도지사에게 경유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소유산림을 계획적으로 경영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경우
 - 소정기간내 임업후계자 교육을 미이수한 자
 - 산림법 시행규칙 제9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9. 사업효과

미래 임업을 담당할 후계자를 육성하여 임업의 계승, 발전 도모

8. 기타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중앙 : 산림청 자원조성국 기술지원과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영림지도부
 - 시·도 : 농정국 산림과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도지회
 - 시·군 : 산림과, 임업협동조합

산림개발사업단 및 작업단 (공공계획)

1. 목적

임도시설 자연휴양림조성등 특수 산림토목사업과 조림, 육림등 각종 산림작업을 산림 개발사업단 및 작업단에서 전담실행토록 하므로써 산림사업의 전문화를 통한 임업 생산성 향상도모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1) 작업단

- 산림사업 전문 기능인으로 육성
- 산주 위탁사업 및 정부 보조사업 중점대행
- 민유림 산림사업의 전담실행조직으로 육성

(2) 사업단

- 산림토목 사업의 전문실행 조직으로 육성
- 산림사업의 전문화, 기계화를 통한 임업생산성 향상

나. 연차별 계획

○ 장기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90	'91	'92	'93	'94	'95	96이후
○ 사업단								
-사업량	9개단	3	3	3	(3)	(3)	(3)	-
-사업비	6,110	1,404	1,299	1,304	701	701	701	
(국고보조)	6,110	1,404	1,299	1,304	701	701	701	
○ 작업단								
-사업량	231개단	20	40	40	41	-	31	59
-사업비	5,146	485	967	929	958	-	603	1,204
(국고보조)	5,146	485	967	929	958	-	603	1,204

※ ()는 시공장비 보강지원 계획임.

3. 사업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 사업단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
- 작업단 : 시·군임업협동조합장

나. 우선순위

- 사업단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9개단(본부1, 도지회8 ※제주도 제외)
- 작업단
 - 임업진흥촉진지역을 관리하는 시·군임업협동조합
 - 작업단 조직운영을 희망하는 시·군임업협동조합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시·군임업협동조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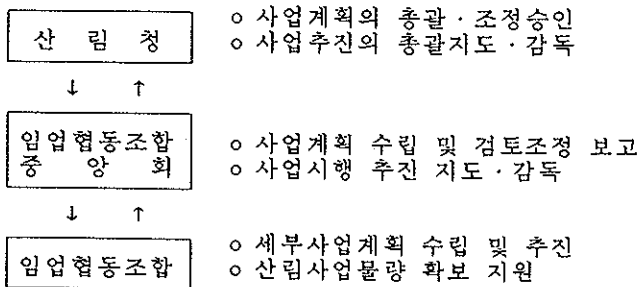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사업단 : 굴삭기, 불도자등 산림토목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장비
※1개단당 233,784천원
- 작업단 : 기계톱, 안정장비등 산림사업 기본장비 및 교육경비
※1개단당 25,969천원

다. 지원조건

- 재 원 : 일반회계
- 지원비율 : 국고 100%

라. 사업추진 체계도



5. 사업효과

- 산림작업 전문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민유림경영의 활성화 촉진
- 임도, 휴양림조성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산림토목사업을 수행하여 임업생산성 향상 및 산지자원화의 효율적 추진

6. 기타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중앙 : 산림청 자원조성국 기술지원과,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도 : 임업협동조합 도지회
 - 군 : 임업협동조합

7. '95조합별 지원계획

- 사업단 : 본부 3개사업소 (701백만원)
- 작업단 : 31개단 (603백만원/단당 19.5백만원)
 - 경기4, 강원3, 충북3, 충남2, 전북4, 전남1, 경북5, 경남7, 제주2

임업기능인 훈련 (공공계획)

1. 목적

산림작업단원을 대상으로 산림작업에 관한 전문기술훈련을 실시, 산림작업을 수행할 전문노동력의 안정적 확보와 산림작업의 질적 향상 도모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산림작업단 확대조직과 연계하여 3개 임업기능인 훈련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 훈련기관은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훈련비, 운영비 등을 국고지원
- 훈련이수자는 영림기능사자격을 취득한 전문직업인으로 육성

나. 사업목표 및 장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3	'94	'95	'96	'97
○ 사업량(명)						
-임업기능인양성	1,872	552	72	420	420	408
○ 사업비	5,406	1,185	1,269	927	983	1,042
-국고보조	4,490	1,185	1,118	687	728	772
-자부담	916	-	151	240	255	270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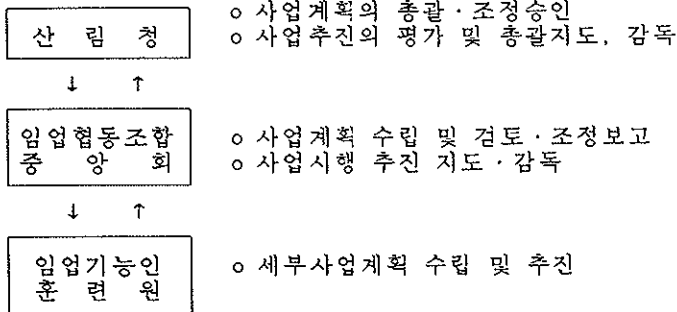
(1) 사업내용

- 전문임업기능인 양성 훈련사업
-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및 실연사업
- 임도·집재기계화 시범사업

(2) 지원규모

- 3개 임업기능인훈련원 기관운영비 및 인건비를 국고전액 보조

다. 사업추진체계도



5. 사업효과

- 산림사업 전문기능인을 양성 하므로써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 전문기술훈련을 실시 산림작업의 질적향상 도모로 산지자원화 촉진
-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는 산림작업기술 및 장비의 개발보급

6. 기타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중 앙 : 산림청 자원조성국 기술지원과,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교육기관 : 임업기능인훈련원(강릉, 진안, 양산)

7. '95훈련원별 지원계획

구 분	계	임업기계훈련원	임업기능인훈련원	임업기술훈련원
○ 사업량(명)	649	277	204	168
○ 사 업 비 (백만원)	927	643	132	152
- 국 고	675	477	109	89
- 자 부 담	252	166	23	63

민유림 조림사업 (자율)

1. 목 적

솔잎혹파리등 각종 피해임지와 경제적 가치가 적은 불량림을 정리하여 경제수종으로 조림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산주부담을 덜어주어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목재자원 증축과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자원가치가 낮은 천연림을 경제수종으로 갱신하여 목재생산기지로 육성
- 도시·공단주변지역에 환경조림을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나. 목 표

- 목재자급율 : ('93) 13% → (2004) 19%
- 인공림율 : ('93) 31% → (2004) 36%
- 사업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95 ~ '98					'99- 2004
		계	'95	'96	'97	'98	
○ 사업량(ha)	280,200	112,200	23,000	28,000	30,000	31,200	168,000
○ 사업비	815,774	330,548	58,456	80,871	88,971	102,250	485,226

3. 사업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 영림계획상 조림계획이 책정된 산림의 소유자
- 조림사업 사업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

나. 우선순위

- 미립목지(나무가 없는 산림)
- 산불 및 병해충피해지
- 수종갱신대상지
- 별채한 산림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산림소유자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1) 보조사업

- 지원내용 : 장기수, 대묘, 환경·맹아갱신조림사업에 소요되는 묘목등 자재는 현물로 보조하고, 식재비등 인건비, 기타 소요자금은 현금 보조
- 지원규모(국고보조 + 지방비보조)

구 분	ha당 사업비	ha당지원규모	총지원규모	비 고
계			52,572백만원	()내는지원비율
장 기 수	1,985천원	1,711천원 (86%)	35,202	
대 묘	5,958	5,958 " (100%)	2,979	
환경조림	5,958	5,958 " (100%)	13,703	
맹아갱신	978	765 " (78%)	688	

(2) 용자사업

- 지원내용
 - 조림사업비를 산림개발기금에서 용자지원
- 지원규모
 - 총 용자 규모 : 1,999백만원
 - 지원규모 : 사업단비중 실소요액(산주자력분)의 100%까지 (지원한도는 없음)
- 용자조건

구 분	금 리	용 자 기 간		
		계	거 치	상 환
장 기 수 기 타	년 3% "	35년 15	20년 10	15년 5

다. 사업실시요령

- 나무심을 예정지 정리작업
 - 나무심기에 지장을 주는 주변의 잡목 및 풀등을 나무심는해 2월이전까지 정리
- 자재확보
 - 묘목·비료 : 시·군에서 산지나무심기용 묘목·비료를 공급
 - 기 타 : 나무심기용 줄, 묘목·비료 망태기, 물수세미, 괭이, 삽등
- 묘목입시심기
 - 묘목이 수송되는 즉시 다발을 풀고 묘목의 끝부분이 북쪽으로 향하게 한 후 뿌리를 잘라서 심음
 - 묻는 깊이는 상록수는 잎이 묻히지 않을 정도로 묻고, 낙엽수는 묘목의 반절이 상이 묻히도록 한 후 단단히 밟아 건조방지
- 나무심기
 - 심을 나무의 크기에 따라 구덩이를 충분히 판후 곁흙과 속흙을 따로 모아놓고 돌·낙엽등을 가려냄
 - 부드러운 곁흙을 먼저 넣은 다음 묘목의 뿌리를 잘라서 곧게 세우고 곁흙부터 구덩이의 2/3 되게 채움
 - 묘목을 살며시 위로잡아 당기면서 밟아줌
 - 나머지 흙을 모아 주위 지면보다 약간 높게 정리한 후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낙엽이나 풀등으로 덮어줌
 - 나무심는시기
 - 남부지방 : 3월초순 ~ 3월하순
 - 중부지방 : 3월중순 ~ 4월초순
 - 북부지방 : 3월하순 ~ 4월중순

5. 사후관리

가. 주 체 : 산림소유자, 시·군(시·도) 및 산림청

나. 점검및방법

구 분	점 검 자	점 검 대 상	점 검 시 기	점 검 내 용
1차 검 목	시 장 · 군 수	당 년 조 림 지	조 림 당 년 도 6~7월	조 림 목 에 대 한 활 착 상 황 (활 착 율)
2차 검 목	시 · 도 지 사	조 림 후 3~ 5년 된 조 림 지	8~9월	식 재 분 수 에 대 한 현 존 분 수, 생 육 상 황, 사 후 관 리 상 황

다. 결과반영

- 활착율 80%미만 조림지는 다음년도에 보완식재
- 조림사업시책에 반영

6. 사업효과

- 목재자급율 향상
- 산림의 공익기능 향상
- 산주소득 증대

7. 기타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중 양 : 산림청 자원조성국 자원조성과
 - 시·도 : 녹지과, 산림과, 자원조성과
 - 시·군 : 산림(녹지)과, 임업협동조합
- 위탁조림제도 운영
 - 산림경영을 희망하나 시간과 기술이 없는 산주들이 시·군 임업협동조합에 위탁하면 산주대신 조림을 해주는 위탁조림제도 운영

8. '95 시·도별 지원계획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 담
계	23,000	58,456	26,743	25,829	5,884
서 울	10	178	23	155	
부 산	10	178	23	155	
인 천	10	119	15	104	
광 주	10	119	15	104	
대 전	10	119	15	104	
경 기	2,290	5,451	2,703	2,159	589
강 원	4,000	9,784	4,547	4,201	1,036
충 북	1,930	4,972	2,261	2,228	483
충 남	1,800	4,288	2,132	1,689	467
전 북	1,660	4,179	1,970	1,789	419
전 남	4,540	10,451	5,111	4,125	1,215
경 북	3,470	8,688	3,984	3,815	889
경 남	3,000	9,034	3,577	4,741	716
제 주	260	894	364	461	69

민유림 육림사업 (자율)

1. 목 적

- 체계적인 육림관리로 임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형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요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산주부담을 덜어주어 우량용재 생산 기반구축과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인공림은 조림후 벌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적기에 육림을 실행하여 우량용재림으로 유도
- 천연림은 이용가치가 있는 밀생 활엽수림을 중심으로 천연림보육 사업을 실행하여 우량임분으로 육성

나. 장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95 ~ '98					'99-2004
		계	'95	'96	'97	'98	
○ 사업량 (천ha)	1,459	595	156	144	153	142	864
○ 사업비	805,235	325,319	58,585	79,986	85,712	101,036	479,916

3. 사업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 영림계획상 육림계획이 책정된 산림의 소유자 ✓
- 육림사업 시업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

나. 우선순위

- 임업진흥촉진지역
- 보전임지
- 준보전임지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산림소유자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1) 보조사업

- 지원내용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에 소요되는 인건비, 기타소요자금을 현금 보조지원
- 지원규모(국고보조 + 지방비보조)

구 분	ha당사업비	ha당지원규모	총지원규모	비 고
계			38,610백만원	()내는 지원비율
풀 베 기	241천원	144천원 (60%)	11,126	
덩 굴 제 거			3,931	
- 신 규	227	187 " (83%)	3,613	
- 보 완	77	64 " (83%)	318	
어 린 나무 가 꾸 기	647	388 " (60%)	15,621	
천 연 림 보 육	660	528 " (80%)	7,932	

(2) 용자사업

- 지원내용
 - 옥립사업비를 산림개발기금에서 용자지원
- 지원규모
 - 총 용자 규모 : 3,500백만원
 - 지원규모 : 사업단비중 실소요액(산주자력분)의 100%까지(지원한도는 없음)
- 용자조건

구 분	금 리	용 자 기 간		
		계	거 치	상 환
장 기 수 타	년 3% "	35년 15	20년 10	15년 5

다. 사업실시요령

(1) 풀 베 기

- 시 기 : 6~8월
- 대 상 : 조림후 3~5년간 실시
- 방 법 : 조림목이 피압되지 않도록 잡초와 멍아목 제거

(2) 덩굴제거

- 시 기 : 2~11월
- 대 상 : 덩굴류에 의거 임목이 피해를 받고 있는 임지
- 방 법 : 인력이나 약제를 이용 덩굴제거

(3) 어린나무가꾸기

- 시 기 : 3~11월
- 대 상 : 조림후 5~10년된 임지
- 방 법 : 조림목이 피압되지 않도록 조림목 생육을 방해하는 잡관목 제거

(4) 천연림보육

- 시 기 : 3~11월
- 대 상 : 보육가치가 있는 우량밀생천연림
- 방 법 : 미래목을 선정하여 가지치기와 생육 방해목을 제거하며, 고사목이나 형질불량목 제거

5. 사후관리

가. 주 체 : 시·군, 도, 산림청

나. 점검및방법

- 점 검 자 : 육림담당 산림공무원
- 점검시기 : 년 1회
- 점검내용 : 사업실행의 적정여부

다. 결과반영

- 활착불량 조림지는 보식계획에 반영 보식
- 생육불량지는 비료주기 실시
- 육림작업이 필요한 임지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6. 사업효과

작 업 명	효 과
풀 베 기	잡초 및 맹아에 의한 조림목 피압방지로 생장촉진
어린나무가꾸기	잡관목등의 제거에 의한 조림목의 피압방지로 생장촉진
덩 굴 제 거	조림목 생장촉진및 용재가치제고
천 연 림 보 육	천연림의 생장촉진 및 형질향상

7. 기타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중 양 : 산림청 자원조성국 자원조성과
 - 시·도 : 녹지과, 산림과, 자원조성과
 - 시·군 : 산림(녹지)과, 임업협동조합
- 위탁육림제도 운영
 - 육림사업 희망산주가 시·군 임업협동조합에 위탁하면 산주대신 육림사업을 해 주는 위탁육림제도 운영

8. '95 시·도별 지원계획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 담
계	155,560	58,585	19,727	18,344	20,514
부 산	200	132	53	53	26
대 전	190	41	20	11	10
경 기	17,790	6,426	2,098	1,961	2,367
강 원	30,280	11,467	3,854	3,590	4,023
충 북	12,470	4,806	1,578	1,497	1,731
충 남	11,990	4,714	1,501	1,447	1,766
전 북	11,630	4,486	1,513	1,391	1,582
전 남	21,290	7,721	2,458	2,371	2,892
경 북	20,400	7,473	2,556	2,392	2,525
경 남	27,430	10,369	3,811	3,345	3,213
제 주	1,890	948	285	284	379

간 별 (자 율)

1. 목 적

나무가 뻗뻗하게 들어선 임분을 대상으로 숙아내기 작업을 실시하여 임목의 성장촉진과 건전한 임분 육성으로 우량용재 생산을 위한 간벌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영세산주의 소득증대에 기여

2. 추진방향

가.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 임업진흥촉진지역을 중심으로 단지화하여 집중실행
- 집단 간벌대상지에 임도시설 확대로 간벌 촉진
- 간벌기술개발보급 및 제도개선으로 간벌활성화

나. 사업목표 및 장기계획

- 간벌대상 임분 440천ha를 2004년까지 실시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천ha, 백만원)

구 분	합 계	'95 - '98					'99-2004
		계	'95	'96	'97	'98	
° 사 업 량	440	140	29	32	37	42	300
· 국 유 림	70	28	7	7	7	7	42
· 민 유 림	370	112	22	25	30	35	258
° 사 업 비	264,000	84,000	17,400	19,200	22,200	25,200	180,000
· 국 특 회 계	42,000	16,800	4,200	4,200	4,200	4,200	25,200
- 국 고 보 조	42,000	16,800	4,200	4,200	4,200	4,200	25,200
· 일 반 회 계	222,000	67,200	13,200	15,000	18,000	21,000	154,800
- 국 고 보 조	88,800	26,880	5,280	6,000	7,200	8,400	61,920
- 지 방 비 보 조	88,800	26,880	5,280	6,000	7,200	8,400	61,920
- 자 부 담	44,400	13,440	2,640	3,000	3,600	4,200	30,960

3. 사업신청자격

- 임업진흥 촉진지역내의 산림
-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소유산림
- 영세산주로서 간벌이 시급한 산림소유자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 주체 : 산주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1) 지원내용
- 보조사업 : 임업진흥촉진지역의 간벌집단화 단지
 - 용자사업 : 간벌 희망 산주

(2) 지원규모(1ha당)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 담
간벌사업	556 (100%)	223 (40%)	222 (40%)	11 (20%)

(3) 지원조건

- 용자한도 : ha당 556천원 범위내에서 실소요사업비 전액
- 용자조건 : 2년거치 1년상환, 년리 3%

5. 사업효과

- 임목의 축적증대와 형질향상을 촉진시켜 수확기간 단축
- 각종 산림재해에 대한 저항력 증진으로 건전임분 육성
- 낙엽등의 분해를 촉진시켜 지력증진 도모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기관 안내
- 중앙 : 산림청 영림과
- 도 : 농정국 산림과
- 군 : 산림과 및 임업협동조합

7. '95 시·도별 지원계획

(단위 : ha, 천원)

시 도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 담
합 계	21,525	11,972,635	4,789,054	4,789,054	2,394,527
서 울	-	-	-	-	-
부 산	-	-	-	-	-
대 구	-	-	-	-	-
인 천	-	-	-	-	-
광 주	-	-	-	-	-
대 전	50	27,811	11,124	11,124	5,563
경 기	2,600	1,446,172	578,469	578,469	289,234
강 원	3,000	1,668,660	667,464	667,464	333,732
충 북	2,300	1,279,306	511,722	511,722	255,862
충 남	3,200	1,779,904	711,962	711,962	355,980
전 북	2,890	1,607,475	642,990	642,990	321,495
전 남	2,100	1,168,062	467,225	467,225	233,612
경 북	2,585	1,437,829	575,132	575,132	287,565
경 남	2,300	1,279,306	511,722	511,722	255,862
제 주	500	278,110	111,244	111,244	55,622

※ 국유림 및 용자사업 간별은 제외됨.

조 립 용 묘 목 생 산 (공공계획)

1. 목 적

- 정부지정 묘목생산자에게 조립용 묘목생산자금을 지원하여 우량묘목을 책임생산케 하므로서 조립사업의 성과를 거양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정부계획 조립용 묘목생산자중 자금사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용자지원

나. 장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5	'96	'97	'98	'95~'98	'99~2004
○ 사업량 (백만본)	40.4	75	75	75	300	450
○ 사업비 계	9,571	17,769	17,769	17,769	62,878	106,614
- 국고용자	6,700	12,438	12,438	12,438	44,014	74,628
- 자부담	2,871	5,331	5,331	5,331	18,864	31,986

3. 사업신청자격

- 산림법제45조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종묘판매업 등록을 한 자중 정부지정묘목 생산자로 지정을 받은 자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정부지정 묘목생산자

나. 사업내용 및 지원내용

(1) 사업별 지원내용

- 지원규모
 - 묘목 1천본당 149천원
 - 포자구입은 실구입가격의 70%
 - 기계는 실구입가격
- 사업실시방법
 - 정부조립계획에 의거 시·도지사가 정부지정 묘목생산자별로 사업량을 지정 책임생산케 한후 정부에서 생산량(지정량)을 전량 수급함.

(2) 지원조건

- 재원별 지원비율 : 용자지원 70%, 자부담 30%
- 지원한도
 - 사업비 총액의 100백만원 이내
- 용자조건(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금 리 : 년 5%
 - 상환기간 : 5년(3년거치 2년상환)

5.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 조합지정양묘 : 도지사
- 한국양묘협회지정양묘 : 한국양묘협회장이 도별 배정계획을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 통보, 임업협동조합장이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지원대상자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

6.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책임자 : 한국양묘협회장, 임업협동조합장

나. 사후관리절차

- 묘목생산실태 및 자금의 적정사용여부점검
- 묘목생산 실태에 따라 묘목수급량 조절

7. 사업효과

- 우량한 묘목을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 공급하므로 조림사업 성과거양
- 정부지정 묘목생산자에게 필요한 양묘자금을 지원하므로 우량한 조림용 묘목 책임 생산
- 농한기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

8. 기타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중 앙 : 산림청 자원조성국 자원조성과
 - 시·도 : 농정국 산림과 (녹지과)
 - 시·군 : 산림과 (녹지과)

9. '95 시·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본,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자 부 담
계	40,400	9,571	6,700	2,871
경 기	4,220	1,000	700	300
강 원	4,520	1,071	750	321
충 북	3,620	857	600	257
충 남	4,820	1,143	800	343
전 북	3,010	714	500	214
전 남	9,050	2,143	1,500	643
경 북	6,040	1,429	1,000	429
경 남	4,820	1,143	800	343
제 주	300	71	50	21

※ 국고보조는 농특 용자금임.

산림병해충 방제 (공공계획)

1. 목 적

솔잎혹파리, 솔경질각지벌레, 잣나무넓적잎벌, 밤나무해충 등의 각종 산림병해충의 피해로부터 자원손실을 방지하고 자연생태계 균형유지와 국토경관 보전 및 산림 소득증대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적기에찰, 조기발견, 적기방제로 방제효과 증대
- 솔잎혹파리, 솔경질각지벌레 등 방제사업은 우량소나무림 집단지 관광사적지, 국.철도변 등의 특정지역을 기준으로 집중방제 추진
- 잣나무 넓적잎벌, 밤나무 해충 등은 산주의 산림소득 사업이므로 항공방제 대상지 선정 및 항공기 우선투입으로 적기방제 실시
- 산림병해충 방제에 따른 대국민 홍보강화로 참여의식 고취

나.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95 ~ '98					'99~ 2004
		계	'95	'96	'97	'98	
○ 사업량 (천 ha)	3,321	1,143	201	314	314	314	2,178
○ 단가(천원)	192	192	192	192	192	192	192
○ 사업비계	597,106	217,468	38,629	59,613	59,613	59,613	379,638
- 국고보조	307,086	122,622	19,368	34,418	34,418	34,418	184,464
- 지방비보조	284,020	94,846	19,261	25,195	25,195	25,195	189,174
- 자부담	6,000						6,000

※ 전체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으로 영림서분 포함.

3. 사업신청자격

가. 대상사업

- 술잎혹파리 및 술겉질각지벌레의 피해목벌채, 밤나무 해충방제

나. 대상지

- 소생가망이 없는 피해도 "중"이상지역은 벌채 제거후 병해충에 강한 경제수종으로 갱신
-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는 밤나무 재배자가 시.군.산림과에 신고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 주체

- 시.군.구(산림과, 녹지과)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95사업별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술잎혹파리 피해목벌채				술겉질각지벌레 피해목벌채			
	사업량 (ha)	사업비 (보조)			사업량 (ha)	사업비 (보조)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5,210	2,254	839	1,415	3,570	1,544	575	969
광주	-	-	-	-	50	22	8	14
경기	150	65	24	41	-	-	-	-
강원	3,000	1,298	483	815	-	-	-	-
충북	500	217	81	136	-	-	-	-
충남	900	389	145	244	-	-	-	-
전북	100	43	16	27	100	43	16	27
전남	-	-	-	-	3,190	1,380	514	866
경북	110	48	18	30	-	-	-	-
경남	-	-	-	-	230	99	37	62
제주	450	194	72	122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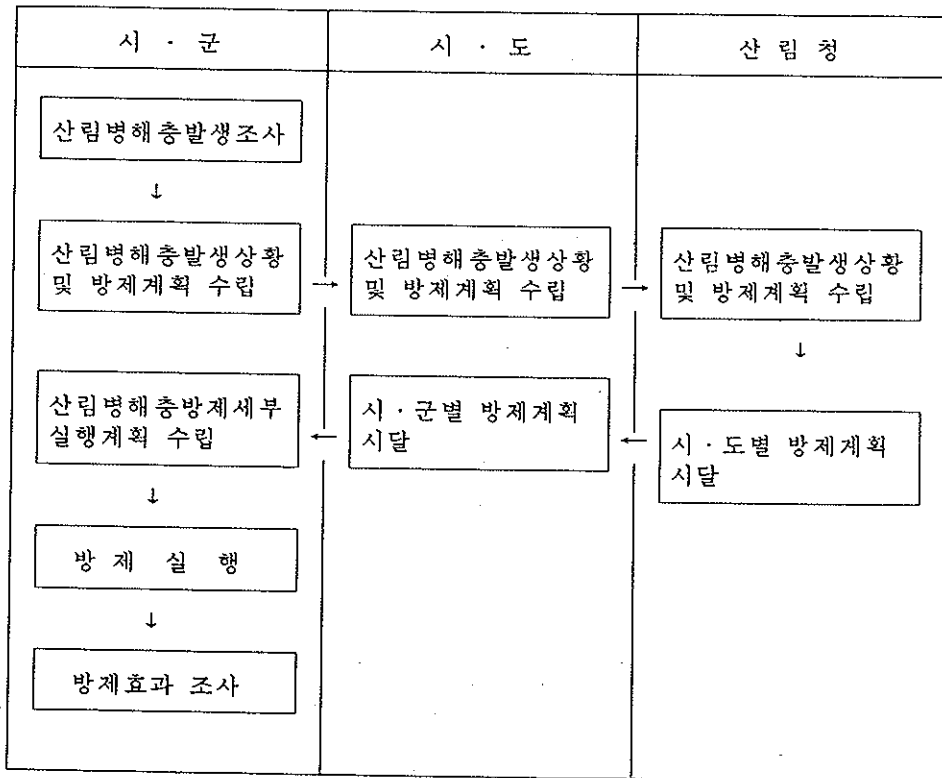
다. 지원조건

○ 재원별 지원비율

- 솔잎혹파리 피해목벌채
 - 솔껍질각지벌레 피해목벌채
- } ha당 인건비 10인 지원 (322,000원)
(국고보조 50%, 지방비보조 50%)
- 밤나무 해충방제 : 헬기지원 (헬기지원 가능범위내에서 항공방제 지원)

○ 사업실시기간 : 5월~11월

라. 사업추진 체계도



5.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 시·군에서 방제사업 가능 대상지 조사

- 피해목별채

- 술잎혹파리, 술겉질각지벌레 피해발생지로서 해당 시·군의 별채대상 물량 배정 범위내에서 피해도 "중"이상 지역

-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 밤나무해충은 소유자가 자력으로 방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상방제가 어려운 1단지 5ha이상 집단조림지(그 구역내에 게재된 소면적 재배지 포함)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항공방제를 희망할 경우 헬기지원

※약제와 부대경비는 산주부담

6. 사후관리

- 피해목 별채지(개별)는 갱신조림을 위하여, 조림예정지 정리작업 및 조림계획 수립

7. 사업효과

- 산림자원의 경제적 손실방지로 산주의 소득보장
- 자연경관 보존으로 공익기능 유지
- 자연생태계 균형유지로 국민정서 함양

사유림협업경영(자율)

1. 목적

영세사유림을 대상으로 일정규모의 협업체를 자율적으로 조직, 생산기반 및 자본을 집중 투자하는 한편 공동생산 및 가공판매등의 협업활동을 통하여 산주소득증대와 사유림경영의 활성화를 도모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영세사유림의 경영구조개선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집중추진
- 임업진흥촉진지역에 우선적으로 협업체 설립 확대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현지위주의 협업경영지도 실시
- 협업체 운영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재정·행정·기술의 종합지원

나. 사업목표 및 장기계획

(1) 사업목표

- 임업진흥단지별 1개협업체 설립운영
-2004년까지 전국 515개 협업체

(2) 년차별 추진계획

구 분	계	77-'91	'92	'93	'94	'95-'98	'96-2004
사업량 (협업체)	515	109	31	31	16	148	180
사업비 (백만원)	44,846	4,879	1,196	1,269	1,362	12,782	23,358

3. 사업신청자격

- 신청자격 : 협업체
- 우선순위 : 임업진흥촉진지역내 협업체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협업체회원(산주)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1) 사업내용

- 사유림협업경영사업은 10ha미만의 산주가 96%를 점하는 사유림의 소유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75년부터 10년간 한·독임업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된 모델을 전국에 확대하고 있는 사업임
- 구역단위 : 1개 협업체당 3,000ha 규모
- 구성주체 : 산림소유자(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의사)
- 경영방식 : 산주 자율적으로 경영(10년간 영림계획작성하되 연차별 실행, 계획은 산주의사에 따라 협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정부지원 : 전문지도원 배치 및 경영지도, 산림작업단 조직 등
- 지도방식 :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방식

(2) 지원내용

- 협업지도원 배치에 따른 지도원 급여 및 운영비를 국고보조 지원
- 산림작업단 조직운영을 위한 임업장비 지원
- 협업체 공동소득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등 지원

다.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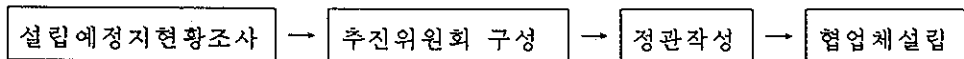
(1) 재원 : 일반회계(국고보조)

(2) 지원비율

- 지도원급여 : 100%('94 - 80%)
- 운영비 : 100%
- 산림사업비 : 인건비 30%
- ※ '95 : 공동소득사업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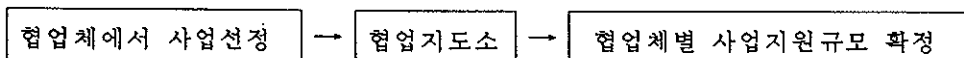
라. 사업추진 체계도

(1) 협업체 설립



(2) 협업경영지도 : 임업협동조합 계통조직에 협업지도원 배치운영

(3) 공동소득사업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가. 대상자 선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영립계획상의 사업계획 여부
- 사업의 시급성 여부

나. 사업신청후 대상자 확정까지 절차

- 사업타당성 검토 : 임업협동조합장
- 대상지 최종 확정권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

※ 임업협동조합 계통조직이 주관이 되어 추진하되 각도, 군에서 적극 지원

3. 사후관리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1차적으로 협업체 육성의 책임을 지고 사후관리
- 산림청에서 수시로 지도감독 및 협업경영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7. 사업효과

- 사유림 경영구조 개선 및 협업체 공동사업 실시로 산주경영참여 의욕 고취
- 사유림경영 활성화로 산지자원화에 기여

3. 기타참고사항

가. 사업안내기관

- 중 앙 : 산림청 자원조성국 기술지원과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영립지도부
- 시·도 : 농정국 산림과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도지회
- 시·군 : 산림과, 임업협동조합

산림경영장비지원(자율)

1. 목 적

산주등 산림경영장비 구입희망자에게 장비구입비 용자지원을 통하여 산주의 임업경영 의욕을 높이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농산촌 소득증대 및 임업기계화를 촉진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용자지원 확대로 산주자율경영체제 유도
- 임업기계화 추진 시책과 연계하여 민간부문 임업기계화 촉진
- 소경재 이용 촉진

나. 장기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목 표	'92	'93	'94	'95	'96	'97	'98이후
○ 사업량	100명	10	10	10	10	10	10	40
	- 장비대수	30대	30	30	30	30	30	120
○ 사업비계	9,500	950	950	950	950	950	950	3,800
	- 국고보조	6,650	665	665	665	665	665	2,660
	- 자 담	2,850	285	285	285	285	285	1,140

3. 사업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농어촌 발전 계획 및 정주생활권 개발대상 지역의 소재산주 및 산림경영장비 구입 희망자(단체포함)

나. 우선순위

산림경영장비구입 희망자중 당해년도 영림계획상 산림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산주 및 산림경영을 희망하는자를 우선 선정 지원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 주체 : 산림소유자 및 산림경영장비구입 희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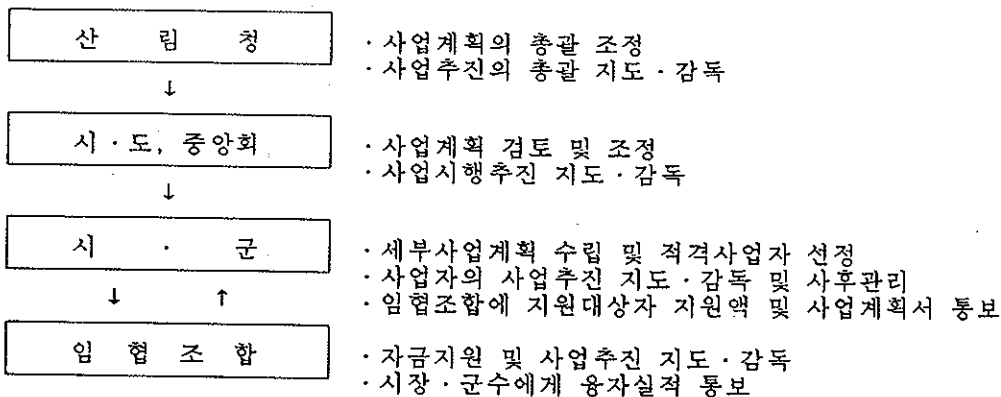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사업별 지원 내용 : 소경재 집재장비(하산장비, 상차기, 소운반장비)
- 지원규모
 - 사업량 : 100명(10명/년)
 - 지원금액 : 6,650백만원(665백만원/년)

다. 지원조건

- 재원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비율 : 국고보조 70%, 자담 30%
- 용자조건
 - 금 리 : 연 3%
 - 용자기간 : 10년(3년거치 7년상환)
 - 용자한도액 : 100백만원이내

라. 사업추진 체계도



5.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가. 대상자 선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대상자 선정권자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 수행능력, 자담능력, 사업계획등을 6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나.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 선정권자 : 시장, 군수
- 선정기준 : 소재산주 및 산림경영장비구입 희망자(단체포함)
- 선정절차 : 사업자신청 → 심사(시장, 군수) → 선정결과를 지원대상자 및 관할
입업협동조합장에게 통보

6. 사업효과

- 농산촌 인력난에 대처하고 산지자원화 효율적 추진
- 산주농민의 겸업입업을 통한 정주권기반 조성 및 농산촌 소득증대 증진
- 간벌 소경재 피해목등 미활용 임목의 이용촉진
- 산림작업의 기계화 실행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7. 기타 참고사항

- 사업추진주관 부서
 - 중앙 : 산림청 자원조성국 기술지원과 (TEL. 961-2374-5)
 - 도 : 농업구조정책국(산림국), 산림과(영림과)
 - 군 : 산림과, 입업협동조합

8. '95 시·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자 담
계	10명	950	665	285
강원	2	286	200	86
충청	2	143	100	43
충남	1	100	70	30
전남	1	57	40	17
경북	1	100	70	30
경남	3	264	185	79

※ 국고보조는 농어촌구조개선 회계의 용자지원임.

임 도 시 설 (자 율)

목 적

산림경영의 기반시설인 임도시설 사업비를 지원, 이를 확충함으로써 임업생산성 향상 및 농산촌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추진방향

가.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 임도시설 기본계획에 따라 임업진흥촉진지역에 집중시설
- 조림, 육림, 간벌, 목재생산임지 우선 시설로 활용도 제고
- 기존도로와 연계하여 순환식, 관통식 및 지역완결형으로 건설

나. 사업목표 및 장기계획

- 목 표 : 2010년까지 56,000km를 시설하여 임도밀도를 10m로 제고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합 계	'95 - '98					'99-2004
		계	'95	'96	'97	'98	
° 사 업 량	19,000	7,920	1,980	1,980	1,980	1,980	11,080
- 국유림	4,000	1,600	400	400	400	400	2,400
- 민유림	15,000	6,320	1,580	1,580	1,580	1,580	8,680
° 사 업 비	920,000	384,000	96,000	96,000	96,000	96,000	536,000

3. 사업신청자격

가. 보조사업

- 임도사업 기본계획에 의한 간선임도망(노선)이 선정된 지역
- 임업진흥촉진지역
- 임업경영상 이용도가 높고 보속생산이 가능한 산림
- 독립가, 임업후계자 소유산림

나. 용자사업

- 자력으로 임도를 시설하고자 하는 산주 또는 산림경영자
- 보조사업 대상지는 산주 자부담분(사업비의 10%)을 용자 희망하는 산주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 주체

- 보조사업 : 시·군
- 용자사업 : 산주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1) 지원내용

- 보조사업 : 간선임도망 노선에 선정된 임지에 지원
- 용자사업 : 산주 개인에게 지원

(2) 지원규모(km당)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 담
임도시설	49,000 (100%)	24,500 (50%)	19,600 (40%)	4,900 (10%)

(3) 지원조건

- 용자한도 : km당 49,000천원 범위내에서 실소요사업비 전액(1인당 2억원 한도)
- 용자조건 : 5년거치 10년상환, 년리 3%

5. 사업효과

- 산림사업의 기계화 추진으로 생산비 절감
- 산림재해에 신속한 대처로 산림피해 경감
- 오지산림의 개발등 자원의 고도이용
- 주민교통편의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기관 안내
 - 중앙 : 산림청 영림과
 - 도 : 농정국 산림과
 - 군 : 산림과 및 임업협동조합

7. '95 시·도별 지원계획

(단위 : km, 천원)

시 도 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 담
전 국 계	1,480	72,520,000	36,260,000	29,008,000	7,252,000
부 산	15	735,000	367,500	294,000	73,500
대 구	4	196,000	98,000	78,400	19,600
대 전	22	1,078,000	539,000	431,200	107,800
경 기	70	3,430,000	1,715,000	1,372,000	343,000
강 원	154	7,546,000	3,773,000	3,018,400	754,600
충 북	100	4,900,000	2,450,000	1,960,000	490,000
충 남	145	7,105,000	3,552,500	2,842,000	710,500
전 북	160	7,840,000	3,920,000	3,136,000	784,000
전 남	250	12,250,000	6,125,000	4,900,000	1,225,000
경 북	280	13,720,000	6,860,000	5,488,000	1,372,000
경 남	270	13,230,000	6,615,000	5,292,000	1,323,000
채 주	10	490,000	245,000	196,000	49,000

- ※ 1) 지방비보조는 교부금으로 확보된 상태임.
 2) 국유임도 및 용자사업 임도는 제외함.

국유림확대집단화 (공공계획)

1. 목적

국유림을 확대집단화하여 집약적 산림경영으로 산업용재의 공급원을 확보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현재 전체 산림의 21% 수준인 국유림을 2040년까지 35%수준으로 확대하는데 있음.

2. 추진방향

가. 기본계획

- 국유림확대권역 설정으로 계획적 추진
- 권역내 요존국유림에 연결, 개재된 민유림 우선 매수
- 보존가치가 없는 국유지와 산림경영에 적합한 사유림교환
- 무주, 은닉(망실)재산의 적극 환수
- 재원은 보존부적합한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충당

나. 장기계획

구 분	'88	'93	'98	2040
국유림면적(천ha)	1,314	1,382	1,420	2,063
국유림비율(%)	20	21	22	35

3. '95 확대계획 : 16,600ha(239억원)

- 사유림매수 : 9,600ha
- 교환취득 : 1,000 "
- 무주, 은닉재산취득 : 6,000 "

1. 사유림 매수

가. 사유림매수대상지 선정요건

- 국유림안에 위치하여 매수함이 국유림경영관리상 적합한 산림
- 국유림에 연접되어있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입지조건으로 보아 매수함이 국유림경영상 적합한 산림
- 기념조림지, 시험림 또는 교육전시림으로 지정·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 기타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나. 매수대상지 제외

- 저당권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과 공법상 처분의 제한을 받고 있어 매수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는 산림
-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서로다른 산림
- 지적 및 위치가 관계공부와 부합되지 않는 산림
- 공유지분으로서 공유자 전원의 매도승락이 없는 산림
- 소송계류중에 있는 산림

다. 매수절차

- 매수예정지 실태조사(영림서)
- 산주의 매도승락서 징구(영림서)
- 매수대상지 선정보고(영림서 → 산림청)
- 매수대상지 결정(산림청 → 영림서)
- 감정평가(영림서)
- 매수가격 결정(영림서)
-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등기(영림서)

5. 국.사유재산 교환

가. 교환조건

- 교환대상재산은 일방의 가격이 타방가격의 75%이상 되어야 함
-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림의 면적은 처분하고자 하는 국유재산의 면적보다 커야 함

나. 교환대상 재산

- 취득대상재산
 - 국유림확대권역내 임야로서 산림경영적지
 - 저당권등 사권이 설정된 재산, 산림법 이외의 다른 법에 의해 시업이 제한되는 임야는 제외함
- 처분대상재산
 - 대부(분수림포함)목적이 달성된 재산
 - 공익·공공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다. 교환절차

- 국유재산관리계획반영(산림청 → 재무부)
- 국유재산관리계획 확정시달(재무부→산림청→영림서)
- 실태조사 및 가격감정등 교환집행준비(영림서)
- 교환계획보고(영림서 →산림청)
- 감사원보고 및 교환집행지시(산림청→감사원, 영림서)
- 교환집행(계약)
- 처분재산의 소유권 이전

라. 교환신청서 접수처리

- 취득대상 사유재산관할 영림서(관리소)접수시 국유재산소재 영림서(관리소)에 교환대상재산실태를 조회하여 처리(교환취득대상재산 실태조사서)
- 처분대상 국유재산관할 영림서(관리소)접수시 처분대상 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교환신청서와 조사서를 관할영림서에 송부(교환처분대상재산 실태조사서)

6. 무주, 은닉재산 취득

가. 무주부동산 신고

○ 신고대상 재산

- 등기부, 기타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고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무주의 부동산

○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발견하여 신고한 무주부동산의 국가귀속(국등기완료)이 확인된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필지별로 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5/1,000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

나. 은닉재산의 신고

○ 신고대상재산

- 등기부, 기타 공부상 국가 이외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고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은닉된 국유재산

○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하여 국가귀속(국등기완료)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1,000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

다. 은닉재산 자진환수자등에 대한 특례

은닉재산의 자진환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등기부 기타 공부상 국가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유재산을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국가에 환수한 자에게 같은 재산을 매각토록 함.

라. 환수방법

무주 또는 은닉재산이 확인되면 국유재산법 제1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청 지정을 받아 국명의로 등기

영림계획 (공공계획)

1. 목 적

임업진흥촉진지역 및 일반지역 소규모영세산주 산림을 대상으로 영림계획 작성경비를 지원, 조림·육림·벌채·임도시설등 계획적인 산림사업을 유도하므로서 임업의 장기성 극복 및 산림의 생산성 제고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정밀한 산림조사로 계획의 정확도 제고 및 산주의 경영의사를 반영한 영림계획 수립
- 사유림영림계획 작성경비 정부보조(국고 50%, 지방비 50%)
- 영림계획은 10년마다 10년계획기간으로 작성·운영

나.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천ha)

구 분	계	'95	'96	'97
영림계획	667	176	170	321

3.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영림계획작성자

- 산주가 직접 작성 또는 조합에 위탁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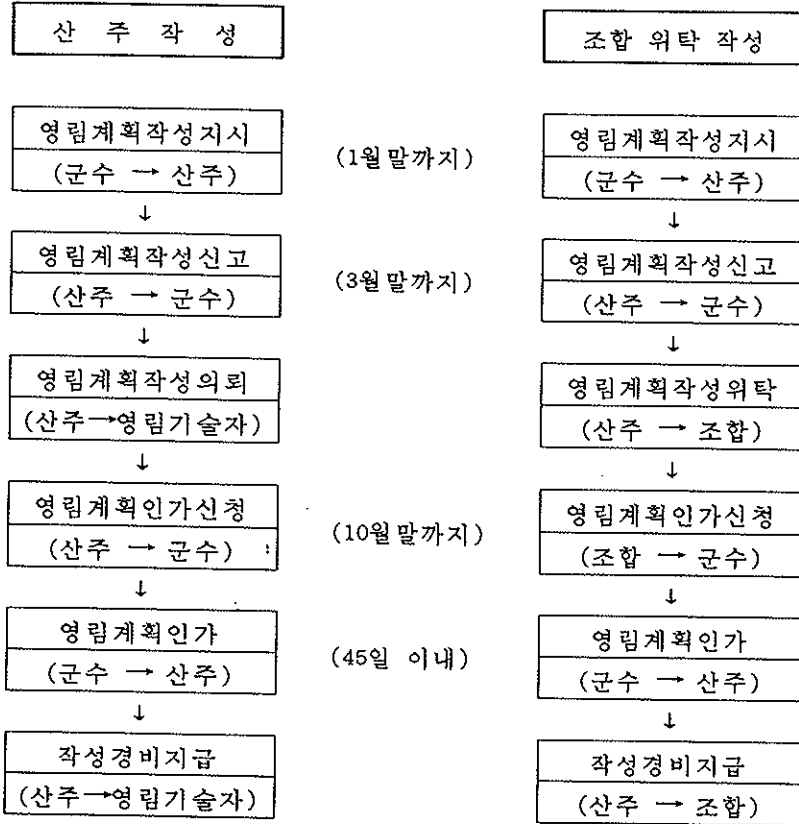
나. 영림계획 작성내용

- 조림 : 조림할 수종, 면적, 수량 및 시기
- 육림 : 풀베기, 가지치기, 솎아주기, 비료주기, 천연림보육등 육림작업의 면적 및 시기
- 벌채 : 벌채할 수종, 면적, 수량 및 시기
- 임도 : 임도의 노선, 연장거리, 시설년도
- 기타 산림부산물 생산, 임간방목, 임간약초재배, 관상수재배, 자연휴양림조성 등 산림소득사업에 관한 사항

다. 지원조건

- 영림계획작성경비 보조 : ha당 5,900원 [국고보조 : 2,950원 (50%)
지방비보조 : 2,950원 (50%)]

라. 사업추진체계도



4. 사후관리

영림계획대로 사업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임의로 하여금 대집행토록 하고 그 비용은 산주가 변상

5. 사업효과

영림계획을 수립, 계획대로 산림시업을 하므로써 산림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이용·개발하므로 농산촌 소득향상에 기여

6. 기타참고사항

- 중 앙 : 산림청 산림경영국 경영계획과(02-961-2432)
- 도 : 농정국 산림과
- 군 : 산림과

7. '95년도 도별 사업계획 내역

(단위 : ha, 천원)

도 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계	175,763	1,037,001	518,520	518,501
경 기	12,090	71,331	35,666	35,665
강 원	8,690	51,271	25,635	25,635
충 북	5,863	34,591	17,295	17,295
충 남	17,350	102,365	51,183	51,182
전 북	12,700	74,930	37,465	37,465
전 남	10,480	61,832	30,916	30,916
경 북	61,660	363,794	181,897	1 81,897
경 남	46,930	276,887	138,443	1 38,444

사 방 사 업 (공공계획)

1. 목 적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이를 보전하여 산림자원조성 기반구축 및 재해예방등 공공 이익 증진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상류산지와 연계하여 계통적으로 실시
산정 → 산복 → 댐 → 야계
- 황폐산지 및 해안모래언덕은 2004년까지 복구완료
- 재해예방을 위하여 야계사방 및 사방댐을 점진적으로 확대 실행

나. 연차별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5계획	'96 ~ '98			'99-2004	합 계
		'96	'97	'98		
○ 사 업 량						
- 산지사방 (ha)	160	170	170	170	1,380	2,050
- 예방사방 (ha)	40	70	60	60	420	650
- 해안사방 (ha)	10	10	10	10	-	40
- 야계사방 (km)	112	160	170	170	1,200	1,812
- 사방댐 (개소)	42	90	90	90	900	1,212
○ 사 업 비 (국고보조)	14,105	21,895	22,284	22,284	182,795	263,363

3. 사업의 신청

- 시·도지사(산림환경연구소)가 현지를 조사 신청이 원칙임.
- 지역주민도 생활에 불편이 있거나 재해의 발생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조직 계통을 통하여 사업실행을 요청할 수 있음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산림환경연구소)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1) 산지사방

- 자연황폐지, 밀린땅, 산사태발생지에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공작물의 시설 및 지피식생을 위한 풀씨를 뿌리고 나무를 식재하는 공사임.
- ha당 지원 : 21,422천원

(2) 예방사방

- 인가, 산업시설주변으로 산사태가 발생하면 인명·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임.
- ha당 지원 : 31,645천원

(3) 해안사방

- 해안모래언덕의 이동 및 모래날림방지를 위한 울타리시설과 나무를 식재하는 공사임.
- ha당 지원 : 10,455천원

(4) 야계사방

- 산간 황폐계곡의 산기슭을 고정하고 물의 흐름을 완화시켜 계상의 침식방지 및 계류를 정비하는 공사임.
- km당 지원 : 87,225천원

(5) 사 방 댐

- 황폐계천의 토사·자갈이 하류로 유출되지 않도록 공작물 설치하는 공사임.
- 개소당 지원 : 126,235천원

다. 지원조건

- 재원별 지원비율 : 국고 70%, 지방비 30%
- 시·도에 자본이전

5. 사업실행

- 실행주체
 - 특별시, 직할시 : 녹지과
 - 8개도 : 산림환경연구소, 제주도 : 산림과
- 실행방법
 - 산지사방, 해안사방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영공사로 실행
 - 야계사방, 사방댐은 임업협동조합 계통조직에 위탁 실행

6. 사후관리

- 산지사방, 해안사방지는 시공후 3년간 추비사업 실행
-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수시로 현지를 점검하고 호우등으로 훼손이 있을 때에는 보수작업 실시

7. 사업의 효과

- 목재생산 기반조성구축, 토사유출·모래날림방지로 국토보전 및 산업시설의 재해예방

8. 기타 참고사항

- 사업실행의 담당부서
 - 중앙 : 산림청 자원조성국 치산과
 - 특별시, 직할시 : 시청 녹지과
 - 도(산림환경연구소) : 사방사업과(사업실행 부서)
- 기타 참고사항
 - 사방사업은 특정개인에게 보조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토보전 및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국가에서 실행하는 사업임.
 - 개인 또는 공공단체에서도 사·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기소유 토지안에서 사방사업을 실행할 수 있음.

9. '95, 시도별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사 업 량					사 업 비		
	산 지 (ha)	예 방 (ha)	해 안 (ha)	야 계 (km)	사방댐 (개소)	계	국 고 보 조	지방비 보 조
계	160	40	10	112	42	20,150	14,105	6,045
부 산	-	-	-	2	-	174	122	52
경 기	12	4	10	9	3	1,682	1,177	505
강 원	20	4	-	18	5	2,783	1,948	835
충 북	-	2	-	8	3	1,156	809	347
충 남	3	5	-	9	4	1,516	1,062	454
전 북	7	5	-	14	6	2,296	1,607	689
전 남	4	4	-	14	6	2,197	1,538	659
경 북	107	9	-	21	9	5,700	3,990	1,710
경 남	7	7	-	17	6	2,646	1,852	794

산림환경기반조성 (공공계획)

1. 목 적

국가지리정보시스템(GIS)을 구축하여 산림자원의 과학적 관리기반을 조성하고 산림유전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산성우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산림피해 방지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산림환경자원의 과학적 관리기반 조성을 위한 산림환경정보시스템 구축
- 희귀·멸종위기 및 특산식물 등 국내 고유 산림자원의 보전 관리 강화
- 산성우 등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산림피해실태 파악 및 방지대책 강구
-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고조되고 있는 산림환경관련 국제회의 적극 참여

나. 연차별 계획

(단위 : 과제, 백만원)

구 분	합 계	'94 까지	'95 ~ '97			'98 ~ 2001	
			계	'95	'96		'97
사업량	1	1	1	1	1	1	
사업비	19,308	30	11,816	2,359	4,470	4,987	7,462

3. 사업시행 주체 및 내용

가. 사업시행주체 : 임업연구원 및 시·도

나. 사업 내용

- 산림환경정보시스템 구축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도모와 합리적인 산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전산 및 GIS 구축

- 산림환경의 보전 및 육성
경제·사회·문화·역사적으로 귀중한 산림 동·식물자원의 훼손 및 멸종을 방지하고 우리나라 고유종의 영구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도모를 위한 현지의 보전시설 확충
- 산림환경 관련 국제회의 참석 등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가속되고 있는 지구환경보전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앞으로 환경보전과 무역규제가 연계될 그린라운드 대비

4. 사업효과

- 산림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므로써 적지적수(適地適樹)의 판정, 산림의 타용도 전용등 산림경영·산지이용에 합리적 판단근거 제공
- 귀중한 산림생물자원의 멸종을 방지하고 산성우 및 각종 환경오염에 대한 산림환경자원의 보전관리 강화
- 산림환경관련 각종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향후 무역규제와 연계될 그린라운드 대비

5. 기타 참고사항

- 사업 안내기관

[중 앙 : 산림청 자원조성국 자원조성과
 산림청 산림경영국 경영계획과
 시·도 : 시·도 산림(녹지)과

6. '95 시·도별 지원계획

(단위 : ha, 천원)

시·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계	1,100,000	1,778,808	1,778,808		
경	104,061	174,888	174,888		
강	212,329	329,258	329,258		
충	90,025	155,116	155,116		
청	86,049	144,556	144,556		
남	74,539	133,196	133,196		
북	133,799	218,355	218,355		
경	232,557	358,835	358,835		
북	166,641	264,604	264,604		
경					

※ 임업연구원 지원계획은 제외됨

단기소득임산물생산 및 시설(자율)

1. 목 적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능가 소득증대
- 단기소득임산물의 상품가치를 높이고 출하를 조절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 특발균상재배로 표고재배 국제경쟁력 제고

2. 추진방향

가.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성 증대
- 특발균상재배로 표고재배 경쟁력 증대

나. 장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5	'96	'97	'98	'99이후
사업비 (국고용자)	53,270	10,654	10,654	10,654	10,654	10,654

※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음. 사업량은 "사업내용" 참조

3. 사업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나. 우선순위

- 주산단지내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우선지원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 지원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나.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1)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량	사업단가	사 업 비	재 원 별	
				국고보조	자 담
계		원	백만원 15,221	백만원 10,654	백만원 4,567
표고버섯	50천㎡	160,000	8,000	5,600	2,400
산나물, 산약초	70천㎡	2,700	189	132	57
산과실	5천본	1,800	9	6	3
건조기	50대	3,000,000	150	105	45
임산물저장시설	4천㎡	840,000	3,360	2,352	1,008
야생화재배	7ha	73,300	513	359	154
톱밥균상재배	10개소	300,000,000	3,000	2,100	900

(2) 지원한도

- 임산물저장시설 · 톱밥균상재배 : 3억이내
- 기타사업 : 1억이내

(3) 지원조건

- 지원비율 : 국고용자 70%, 자담 30%
- 조 건 [임산물저장시설 : 3년거치 7년상환
기 타 사 업 : 2년거치 3년상환

5. 기타 참고사항

- 중앙 : 산림청 임업정책국 이용과
- 도 : 농정국 산림과
- 시·군 : 산림과

6. '95 시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자부담
계	15,221	10,654	4,567
경 기	1,483	1,038	445
강 원	139	97	42
충 북	1,400	980	420
충 남	5,610	3,928	1,682
전 북	747	523	224
전 남	1,919	1,343	576
경 북	1,963	1,374	589
경 남	1,865	1,305	560
제 주	95	66	29

※ 시도별 지원계획은 변동될 수 있음.

조경수·분재소재생산 (자 율)

1. 목 적

- 조경수 및 분재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므로써 우량한 소재를 생산하여 농외소득증대

2. 추진방향

가.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 농어촌발전계획 및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지역 우선지원
- 조경수 및 분재소재 생산자중 자금사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용자지원

나. 장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5	'96	'97	'98	'95~'98	'99~2004
○ 사업량(ha)	155	200	265	250	865	1,500
○ 사업비 계	11,376	12,200	16,256	15,306	52,921	91,836
- 국고용자	7,963	8,540	11,380	10,714	37,039	64,284
- 자 부 담	3,413	3,660	4,876	4,592	15,882	27,552

3. 사업신청자격

- 1ha이상의 포지를 가지고 3년이상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판매한 경험이 있는 자
- 기타 조경수 및 분재소재 생산 농민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조경수 및 분재소재생산자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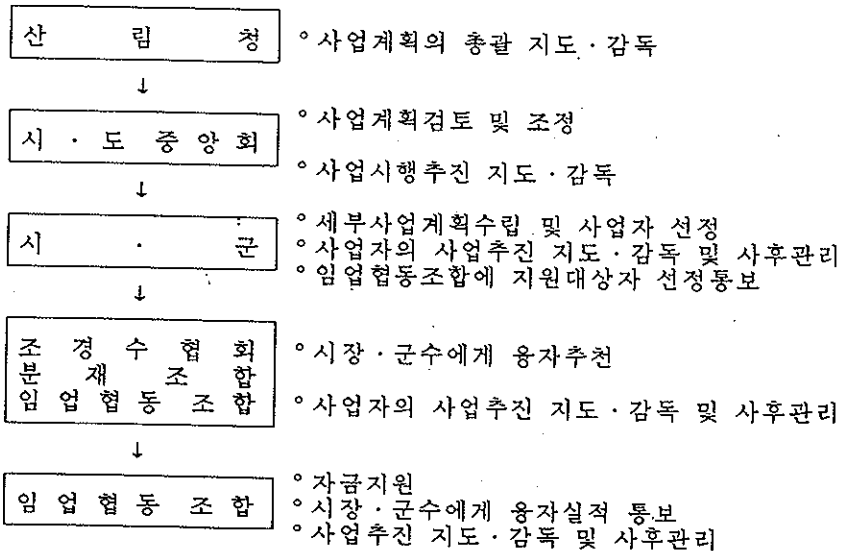
(1) 지원내용

- 지원규모
 - ha당 73,400천원

(2) 지원조건

- 재원별 지원비율 : 국고보조(용자) 70%, 자부담 30%
- 지원한도
 - 사업자 1인당 조경수 소재생산 100백만원, 분재소재생산 50백만원
- 용자조건
 - 금 리 : 년 5%
 - 상환기간 : 10년(3년거치 7년상환)

라. 사업추진체제도



5.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 사업자가 용자신청시 조경수협회장, 분재조합장, 임업협동조합장의 생산확인(추천)을 받아 시장·군수에게 신청
- 시장·군수는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후 대상자 확정

6. 사업효과

- 영세한 소재생산업의 건전한 육성
- 조경수 및 분재소재생산농민의 농외소득증대
- 우량한 소재를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 공급함으로써 유통질서 확립
- 농한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7. 기타참고사항

- 조경수수종 : 계수, 고광, 느티, 때죽, 산철쭉, 서나무, 왕벗, 은행, 다산홍, 회화, 버즘나무등
- 사업안내기관
 - 중 앙 : 산림청 자원조성국 자원조성과
 - 시·도 : 농정국 산림과 (녹지과)
 - 시·군 : 산림과 (녹지과)

8. '95 시·도별 지원계획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농특용자금	자 부 담
계	155.00	11,376	7,963	3,413
부 산	0.57	42	29	13
광 주	0.83	61	43	18
대 전	0.29	22	15	7
경 기	26.36	1,936	1,355	581
강 원	12.84	943	660	283
충 북	10.22	751	526	225
충 남	11.76	864	605	259
전 북	23.82	1,750	1,225	525
전 남	23.10	1,697	1,188	509
경 북	18.19	1,336	935	401
경 남	22.79	1,674	1,172	502
제 주	4.23	300	210	90

※ 시·도별 지원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임 목 생 산 (자 율)

1. 목 적

벌채를 하고자 하는 산주에게 벌채생산비를 사전용자 지원하여 국내 산업용재를 원활히 공급

2. 추진방향

- 피해목 및 수종갱신 벌채 우선 실행
- 대면적 개별을 지양하고 소구역 벌채
- 산림자원 증축을 위하여 벌기령을 연장, 대경재생산 유도

3. 사업신청자격

- 임업진흥지역 임지 및 영세산주
-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 영림계획상 당해년도 벌채계획 임지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 주체 : 산주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1) 지원내용
 - 당해년도에 벌채를 하고자 하는 산주에게 벌채사업비 용자지원
- (2) 지원규모
 - 입목채적 m^2 당 35천원 용자
 - 지원한도액 : 1인당 50,000천원 이내
- (3) 용자조건
 - 2년거치 1년상환, 년리 3%

5. 기타 참고사항

- 사업기관 안내
 - 중앙 : 산림청 영림과
 - 도 : 농정국 산림과
 - 군 : 산림과 및 임업협동조합

임산물가공이용시설지원(자율)

1. 목 적

국내산 임산물의 가공을 위한 노후시설의 교체 및 신·증설 사업을 지원하여 생산성향상 및 소득증대 도모

2. 추진방향

가.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 노후시설교체로 시설현대화 촉진, 신품목개발 가공시설 지원

나. 장기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95	'96	'97	'98	'99이후
사업량	101	20	20	17	20	24
사업비	69,419	6,810	8,172	15,171	17,848	21,418

※ 사업량,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신청자격

가공이용시설을 신설 또는 시설교체·증설코자 하는자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개인, 생산자단체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사업설계비의 70%이내(토지구입비등 제외)

다.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용자 70%, 자부담 30%
- 용자기간 : 10년(3년거치 7년상환)
- 금 리 [5% : 산주, 해당법인
8% : 5% 이외의 자

5. 사업효과

국내산 임산물의 이용촉진 및 신제품개발로 국제경쟁력 강화

6. 기타 참고사항

- 중 앙 : 산림청 이용과
- 도 : 농정국 산림과
- 시·군 : 녹지과, 산림과

7. '95 시·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시·도 별	국고보조(용자)	자 부 담	총 사업비
계	6,810	2,919	9,729
대 전	450	193	643
경 기	275	118	393
강 원	1,715	735	2,450
충 북	2,950	1,264	4,214
충 남	175	75	250
전 북	200	86	286
전 남	291	125	416
경 북	454	194	648
경 남	300	129	429

※ 시·도별 지원계획은 변동될 수 있음.

임산물이용원자재구입자금(자율)

1. 목 적

- 국내산 임산물의 원자재 이용확대로 농산촌 생산자의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고 적정판매 보장으로 소득증대에 기여

2. 지원방향

가.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 국내산 임산물을 가공원자재로 구입하는 자에게 자금용자 지원

나. 장기계획

(단위 : 천 m²)

구 분	계	'95	'96	'97	'98	'99이후
사업량	610	73	106	127	152	152
사업비	68,199	4,221	12,495	15,171	18,156	18,156

3. 사업신청자격

- 임산물가공업등록자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허가를 받은 공장 소유자
- 상기자중 간벌소경재를 구입하는자 우선지원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개인, 생산자단체

나.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한도 : 1㎡당 83천원 (1인당 500백만원 이내)
 - [국고보조(용자) : 58천원/㎡ (70%)
 - 자 부 담 : 25천원/㎡ (30%)
- 용자기간 : 5년(3년거치 2년상환)
- 금 리 : 5.5%

5. 사업효과

국내산 임산물의 이용촉진 및 신제품개발로 국제경쟁력 강화

6. 기타 참고사항

- 중 앙 : 산림청 이용과
- 도 : 농정국 산림과
- 시·군 : 녹지과, 산림과

7. '95 시·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시·도 별	국고보조(용자)	자 부 담	총 사업비
계	4,221	1,809	6,030
인 천	410	176	586
대 전	103	44	147
경 기	388	166	554
강 원	1,180	506	1,686
충 북	236	101	337
충 남	288	123	411
전 북	461	198	659
전 남	352	151	503
경 북	393	168	561
경 남	410	176	586

※ 시·도별 지원계획은 '93기준이며 변동될 수 있음.

표고재배시설 현대화 (자율)

1. 목 적

- 집약적인 현대화 시설재배를 통한 표고버섯 전업농육성으로 국제경쟁력을 증대하고 고부가가치 상품생산 및 생산성 증대

2. 추진방향

가.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 표고버섯의 연중생산체계 확립
- 노지재배방식을 시설재배방식으로 전환
- 생산성증대를 위한 톱밥균상재배시설 설치

나. 장기계획

(단위 : 천㎡, 백만원)

구 분	계	'95	'96	'97	'98	'99이후
사업량	1,040	208	208	208	208	208
사업비 (국고 보조)	6,880	1,376	1,376	1,376	1,376	1,376

3. 사업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 표고재배자 및 단체

나. 우선순위

- 주산단지에 우선지원
- 생산자조직(법인)에 우선지원
-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 20,000본이상 표고재배자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표고재배자 및 단체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지원한도 : 50백만원 이내, 단 생산자단체는 사업계획의 30%
- 지원규모 : m²당 22,000원의 30%금액, 단 시설계획에 따라 m²당 단가조정가능
 - [국고보조(용자) : 6,600원/m² (30%)
 - 자부담 : 15,400원/m² (70%)

5. 사업효과

- 표고버섯 전업농 육성
- 표고버섯 품질향상 및 생산성증대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
 - 중앙 : 산림청 임업정책국 이용과
 - 도 : 농정국 산림과
 - 군 : 산림과

7. '95 시·도별 지원계획

(단위 : 천m²,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자 담
계	208	4,586	1,376	3,210
경 기	30	667	200	467
강 원	4	83	25	58
충 북	30	667	200	467
충 남	45	1,000	300	700
전 북	30	667	200	467
전 남	30	666	200	466
경 북	23	500	150	350
경 남	16	336	101	235

※ 시·도별 지원계획은 변동될 수 있음.

밤 저장 시설 (자율)

1. 목 적

- 밤의 홍수출하를 방지하여 밤가격 안정도모
- 저장밤의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 도모
- 저장시설 확충으로 중간상인의 횡포를 방지하여 유통구조 개선

2. 추진방향

가.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
- 유통구조개선으로 밤산업의 경쟁력 증대

나. 장기계획

(단위 : m², 백만원)

구 분	계	'95	'96	'97	'98	'99이후
사업량	27,500	5,500	5,500	5,500	5,500	5,500
사업비 (국고 보조)	5,825	1,165	1,165	1,165	1,165	1,165

3. 사업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 밤 재배자 및 단체

나. 우선순위

- 주산단지에 우선지원
- 생산자조직(법인)에 우선지원
-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 밤 10ha이상 재배자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밤 재배자 및 단체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지원한도 : 40백만원 이내, 단 생산자단체는 사업계획의 30%
- 지원규모 : m²당 706,000원의 30%금액
 - [국고보조(용자) : 211,800원 (30%)
 - 자 부 담 : 494,200원 (70%)

5. 사업효과

- 밤의 유통구조개선
- 품질향상을 통한 소득증대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
 - 중앙 : 산림청 임업정책국 이용과
 - 도 : 농정국 산림과
 - 군 : 산림과

7. '95 시·도별 지원계획

(단위 : m², 백만원)

시·도 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자 담
계	5,500	3,883	1,165	2,718
충 남	1,416	1,000	300	700
전 남	850	601	180	421
경 남	3,234	2,282	685	1,597

※ 시·도별 지원계획은 변동될 수 있음.

핑이용 가공시설 (자율)

1. 목 적

핑 이용가공 및 저장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을 용자지원하여 생산된 핑의 수급을 조절함으로써 가격안정에 기여하고국민이 선호하는 기호식품의 개발로 핑 수요를 대폭 늘려 핑 사육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핑의 홍수 출하기에 수매비축한 핑을 제품으로 가공, 연중공급함으로써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권역별로 18개소의 핑이용가공 시설을 설치

나.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94까지	'95계획	'96이후
사 업 량	18	4	2	12
사 업 비	630	2,216	126	6,000

3. 지원대상 및 대상자 선정

가. 지원대상자

- 핑사육자로서 핑 이용가공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자 하는 자
- 핑이용 가공식품을 제조판매코자 하는 자

나. 선정절차

- 신청 (사업자) → 심사 결정 (시장, 군수) → 결정내역 통보 (신청자, 임업협동조합)

4. 자금용도 및 지원조건

- 자금용도 : 껍 이용가공및 저장시설 설치
- 지원한도 : 설계금액의 70%이내
- 지원기준 : 용자 70%, 자부담 30%
- 용자조건
 - 금 리 : 연 5%
 - 용자기간 : 10년 (3년거치, 7년상환)

5. 사업효과

- 껍 공급의 안정적 수급
- 향토식품 개발로 시장개척
- 껍 생산 가격보장 및 사육농가의 소득증대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공공계획)

1. 목 적

- 임협계통조직에 임산물직매장등 유통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유통단계 축소 및 중간상인을 배제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임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적정가격이 보장되는 유통체계 확립

2. 추진방향

가.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 산지 및 소비지에 유통기반시설의 체계적 설치·운영
- 임업협동조합 계통조직을 유통전담기관으로 육성

나. 연차별 설치계획

(단위 : 개소)

시 설 별	계	'95	'96	'97	'98	'99이후
계	69	8	9	11	11	30
임산물 직매장	34	3	4	4	4	19
목재집하장	23	3	3	5	5	7
임산물가공공장	5	1	1	1	1	1
임산물저장시설	7	1	1	1	1	3

3. 사업신청자격

가. 대상지역

- 임산물 직매장 : 임산물 다량생산 및 소비지역
- 목재 집하장 : 국산재의 계속생산 및 집하중심지역
- 임산물가공공장 : 가공원료 조달 및 노동력 확보가 용이한 지역
- 임산물저장시설 : 단기소득임산물 다량생산지역

나. 대상자 : 임협조합 또는 임협중앙회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 지원내용 : 유통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매입비(목재집하장에 한함), 건축비, 기계장비구입비

○ 지원조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70%, 사업자부담 30%

- 기 타 : 사업비부담능력이 있고 유통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임업협동조합중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선정

5.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가. 대상자 선정시 고려해야할 사항

- 유통시설별 취급품목의 지역생산여건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수행 능력
- 재정상태 및 자부담능력등

나. 사업신청후 대상자 확정까지의 절차

- 사업타당성 검토자 : 임협중앙회장 ✓
- 대상자의 최종확정권자 : 산림청장 ✓

6.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 책임자 : 임협중앙회장

나. 사후관리절차

- 산림청 : 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도감독 총괄
- 임협중앙회 : 사업비 배정 및 집행, 운영, 보고
- 임협조합 : 사업수행 및 보고

다. 점검 및 방법

- 점검자 : 임협중앙회
- 점검시기 : 상·하반기 연 2회
- 점검내용 : 보조목적사업 수행여부, 지원시설 및 장비의 활용여부등

라. 결과반영

- 임산물유통구조개선 및 유통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한 정책반영

7. 사업효과

- 국내임산물 생산자의 소득제고와 경쟁력 향상
- 국내임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

임산물 포장개선 (공공계획)

1. 목 적

단기소득임산물 포장개선을 위한 포장기계의 구입·운영으로 거래과정에서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상품가치를 높여 생산자 소득증대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임업협동조합 계통조직의 유통사업 현대화와 연계 실시
- 단기소득임산물 주산단지 지역에 우선지원
- 품목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포장제품 개발 및 규격제품 판매유도

나. 장기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95	'96	'97	'98	'99이후
사업량	86	15	17	18	18	18
사업비 (국고보조)	544	79	105	115	120	125

※ 사업량,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 단기소득임산물 포장용 기계설치를 희망하는 임업협동조합 계통조직
- 임산사업소, 미생물사업소, 도지회, 시·군임업협동조합, 특수회원등

나. 우선순위

- 단기소득임산물 주산단지가 지정된 지역의 임업협동조합 우선지원
- 임산물직매장등 유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임업협동조합계통조직
- 공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임업협동조합 계통조직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 지원내용 : 단기소득임산물 포장용 기계구입에 필요한 자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5. 사업효과

- 단기소득 임산물의 품등별 규격출하로 상품가치 제고
- 수입 임산물과의 차별화로 시장(가격)경쟁력 향상
- 궁극적으로 생산자의 이익 증진

6.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 사업타당성 검토 : 임협중앙회장
- 대상자의 최종확정 : 산림청장

표고중균 생산시설(공공계획)

1. 목 적

고소득작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표고버섯재배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미생물사업소에 표고중균생산시설을 지원하여 우량표고중균을 생산·공급토록 하므로써 농가소득증대 도모

2. 추진방향

가.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 고품질·다수확 우량중균의 생산
- 우량중균 보급으로 생산자 소득향상

나. 장기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95	'96	'97	'98	'99이후
사 업 량	1	1	(1)	-	-	-
사 업 비 (국고보조)	3,596	1,430	2,166	-	-	-

※ 사업량,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음. 1개소에 년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3.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지원내용 : 표고중균생산시설 설치비
- 지원비율 : 국고 보조 100%
- 규 모 : 연면적 4,500㎡

4. 사업효과

- 고품질·다수확 우량종균의 개발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
- 생산설비의 고성능화로 생산성 제고
- 우량종균 생산공급으로 국산품 차별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

5. 사업실시절차

- 사업계획작성 : 임협중앙회 미생물사업소장
- 사업계획검토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
- 사업계획확정 : 산림청장

임산물종합처리장 설치(공공계획)

1. 목 적

산지유통시설과 연계하여 집하, 가공, 판매등 종합유통센터 기능을 갖춘 임산물종합처리장을 설치하여 임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으로 생산자 소득향상과 소비자 편의도모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산지유통시설과 연계하여 권역별로 3개소 설치
 - 수도권(서울), 남부권(부산), 중부권(대전)
- 추진방향
 - 간벌채등 불량소재활용 → 목재자급도 및 산주소득 제고
 - 임산물의 규격화·고품질화 → 부가가치제고 및 경쟁력 강화
 - 유통조직의 체계화·조직화 → 임협조합을 유통전담기관으로 육성

나. 연차별 설치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단 위	계	'95	'96	'97
사 업 량	개소	3	1	1	1
사 업 비 (국 고)	백만원	36,674	7,700	14,487	14,487

3. 사업신청자격

가. 대상지역

- 임산물수요가 많고 집하등 공급이 용이한 수도권등 대도시주변 인접지역

나. 대상자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사업내용

- 임산물종합처리장 설치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건축시설비, 기계장비구입비 지원

다. 지원조건

- 부지매입비 : 국고용자 70%, 자부담 30%
- 건축시설 및 기계장비 : 국고보조 100%

5.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가. 대상지 선정시 고려해야할 사항

- 설치지역의 임산물소비량 및 공급여건등

나. 대상지 확정절차

- 사업타당성 검토 : 임협중앙회장
- 대상지 확정 및 사업계획 승인 : 산림청장

6. 설치효과

- 전국적인 임산물 유통망 구축으로 값싸고 신선도가 높은 임산물 공급
- 미이용 목재자원의 이용촉진으로 산주소득 및 목재자급도 제고

자연휴양림 조성 (자율)

1. 목 적

산림내에 휴양공간을 조성하여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농산촌 지역사회 균형발전 및 산주 소득증대 도모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입지여건을 고려, 다양한 휴양공간을 조성하프로서 국민휴양수요 충족
-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
- 입상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산림경영 병행 추진
- 2000년까지 100개소 조성목표로 추진

나. 연차별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합 계	'94까지	'95 ~ '98				'99~ 2004	
			계	'95	'96	'97		'98
○ 사업량	100	52	20	5	5	5	5	28
○ 사업비	140,678	35,078	43,200	11,716	10,800	10,800	9,884	62,400

3. 사업신청자격

- 다음 각호의 기준에 부합한 산림으로써 휴양림 예정지 적지평가조사 결과 조성가능지 이상으로 평가된 산림을 소유한 자
 -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임상이 울창한 산림
 -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산림
 - 계곡과 함께 수원이 풍부한 산림
 - 1단지 구역면적이 국·공유림은 100ha이상, 사유림은 30ha이상의 산림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산림소유자

- 국유림 - 영림서 및 관리소
- 공유림 - 시·도 및 시·군
- 사유림 - 산림소유자

나. 사업내용

- 국민휴양수요 충족을 위하여 산림내에 각종 편의시설물 설치
- 편의시설의 종류 : 산책로, 야영장, 산림욕장, 순환로, 등산로, 산막, 관리사
체력단련시설, 취사장, 화장실, 자연관찰원등

다. 지원규모 및 지원한도

- 국유림 : 개소당 12억원 (전액 국고보조)
- 공유림 : 개소당 12억원 [국고보조 840백만원 (70%)
지방비 360 " (30%)
- 사유림 : 설계금액의 70%까지 용자지원 (용자 70%, 자담 30%)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조건 : 3년거치 7년상환 (년 3%)

5. 사업효과

- 산림의 다목적경영을 통한 소득증대
- 도시민의 휴양지출을 산촌주민의 소득원화
- 휴양림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도모
- 급증하는 휴양수요를 산림에 흡수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중 앙 : 산림청 자원조성국 자원조성과
도 : 시·도 산림(녹지)과
군 : 산림과

7. '95 시·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계	3(17)	8,568,372	2,269,026	1,499,346	3,360,000	1,440,000
대 전	(1)	800,000	-	-	560,000	240,000
경 기	(1)	800,000	-	-	560,000	240,000
강 원	(1)	41,400	28,980	12,420	-	-
충 북	(1)	308,572	154,286	154,286	-	-
충 남	(3)	321,400	168,980	152,420	-	-
전 북	1(2)	1,785,000	612,500	372,500	560,000	240,000
전 남	1(4)	2,600,000	620,000	380,000	1,120,000	480,000
경 북	1(2)	958,400	607,480	350,920	-	-
경 남	(2)	953,600	76,800	76,800	560,000	240,000

※ 영림서 지원계획은 제외되었으며
 ()는 보완·사전설계, 용자사업 개소수임.

산림박물관 건립 (공공계획)

1. 목 적

지방산림박물관을 권역별로 건립하여 산림에 대한 자연학습 교육 및 산림사료의 영구적 보전 전시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2000년까지 권역별(수도, 중부, 영남, 호남)로 1개소씩 건립
- 우리나라 전통양식으로 건립
- 산림훼손의 최소화로 자연경관 유지보전

나. 연차별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합계	'94 까지	'95 ~ '98					'99~ 2004
			계	'95	'96	'97	'98	
○ 사업량	4	2	1	1	-	-	-	1
○ 사업비	33,721	17,721	8,000	2,000	2,000	2,000	2,000	8,000

3. 사업신청차격

장기계획에 반영된 해당권역 도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시·도

나. 사업내용

- 전시관, 박물관, 내부전시물 및 각종 부대시설 설치등
- 사업실시방법 :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건립
- 사업기간 : '94~'98(5년)

다. 지원규모

- 개소당 20억원
 - 국고보조 : 10억원 (50%)
 - 지방비보조 : 10 " (50%)

5. 사업효과

산림사료의 영구적 보전·전시를 통한 산림문화창달과 대국민 자연학습장제공

6. 기타 참고사항

사업안내기관 [중앙 : 산림청 자원조성국 자원조성과
 도 : 시·도, 산림(녹지)과

7. '95 시·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천원)

시·도별	사업량	사업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계	1	2,000,000	1,000,000	1,000,000
경 남	1	2,000,000	1,000,000	1,000,000

지방수목원 조성 (공공계획)

1. 목 적

산림과 인간생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향토수종 및 가치있는 유전자원 보전·전시로 대국민 자연학습장 제공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2000년까지 각도별 1개소씩 9개소 조성
- 지역향토수종, 각종 희귀식물등 가치있는 산림자원 보전
- 산림훼손의 최소화로 자연경관 유지보전

나. 연차별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합계	'94 까지	'95 ~ '98				'99~ 2004	
			계	'95	'96	'97		'98
○ 사업량	9	6	2	2	-	-	-	1
○ 사업비	28,529	13,529	10,000	207	3,000	3,000	3,793	5,000

3. 사업신청자격

장기계획에 따라 각도별 1개소씩 조성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시·도

나. 사업내용

- 전시원, 은실, 교육동, 묘포장, 관리사, 주차장, 관찰로, 순찰로, 조경사업등
- 사업실시방법 :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조성
- 사업기간 : '95-'98 (4년)

다. 지원규모

- 개소당 30억원
 - 국고보조 : 15억원 (50%)
 - 지방비보조 : 15 " (50%)

5. 사업효과

향토수종 및 가치있는 유전자원의 보전·전시로 대국민 자연학습장 제공

6. 기타 참고사항

사업안내기관 [중앙 : 산림청 자원조성국 자원조성과
 도 : 시·도, 산림(녹지)과

7. '95 시·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천원)

시·도별	사업량	사업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계	2	207,000	103,500	103,500
충북	1	103,500	51,750	51,750
경북	1	103,500	51,750	51,750

※ '95 사업비는 사전설계비로 '96년에 사업착수

산촌종합개발(공공계획)

1. 목 적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한계농지를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다목적 소득원개발과 쾌적한 정주생활환경을 조성하므로써 산촌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산촌의 지리적·경제적 특수성을 감안 농업·임업·임간축산등 다목적 소득원개발
- 산촌지역의 수려한 산림자원을 최대한 활용 자연휴양림, 산림욕장등 산촌휴양지를 개발, 도시휴양수요 유치
- 산촌지역주민을 지역개발 담당주체로 육성 지원하여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 (농번기에는 농업에 종사, 농한기에는 임업에 참여)

나.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계	'95	'96	'97	'98	2004까지
사업량	150개 마을	1	3	11	15	120
사업비	4,340 억원	22	66	242	330	3,680

3. 대상지역 선정기준

- 산촌개발사업은 「산촌정주권개발」과 연계추진 원칙
- 산촌정주권개발사업이 완료(또는 추진중이거나 계획중)되었거나, 정주생활이 정비된 도시지역과 같은 생활권역에 속해 있는 산촌마을
- 주변경관이 아름답고 휴양림이 조성되어 있거나, 휴양지로서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
- 농림수산부, 내무부등의 기존계획과 연계 사업추진이 용이한 곳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군수

나. 사업내용 및 지원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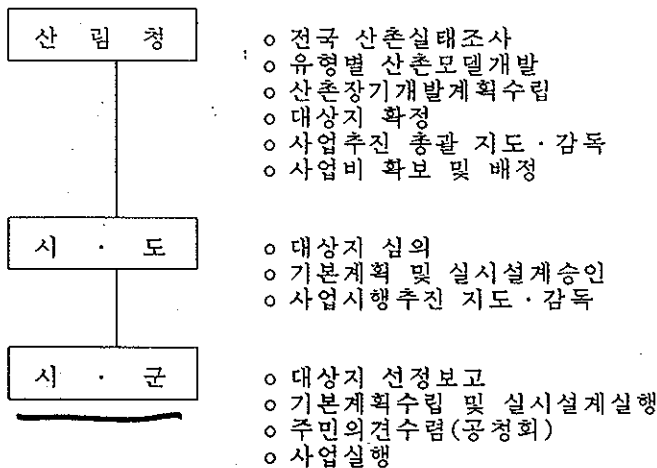
(1) 사업내용

- 산촌마을에는 산림소득사업과 기반시설등을 지원
- 주변산림에는 임도, 휴양림, 간벌등 산림사업을 실행
- 중심마을에는 생활환경개선 및 목재집하장·제재소등의 목재가공·이용시설 등을 지원

(2) 지원재원

- 소득기반조성 및 주거환경정비 : 국고보조
- 산촌휴양시설 : 국고보조
- 소득원사업 및 주택구조개선 : 국고융자

다. 사업체계도



5. 기타 참고사항

- 중 앙 : 산림청 산림경영국. 경영계획과
- 도 : 농정국 산림과
- 군 : 산림과

산림종합전시관 건립(공공계획)

1. 목 적

산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및 목재가공품을 종합적으로 전시·홍보하여 임산물 소비촉진과 이용의 극대화로 생산자 소득증진 및 가공기술 발전도모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산림의 현황, 기능, 임업, 정부시책등 시청각 자료를 비치
- 전시를 통하여 대 국민교육장으로 활용
- 국내산 임산물 이용확대와 수요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전시, 판매 및 가공기술 개발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4	'95	'96
산림종합전시관 건립	1,992	32	980	980

3.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임업연구원

나. 사업내용

- 건립장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월곡동 산7-4(홍릉수목원 내)
- 사업기간 : '94~'96(3개년)
- 산림종합전시관 규모

(단위 : 평)

부 지	계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전 망 대
시설면적	491.44	87.64	166.03	208.87	28.9
용 도	-	전기, 기계실, 창고, 관리실	전시홀, 제1 제1 전시실	영상전시실, 제2~4전시실	전망대

- 특징 : 건물자체가 목구조 전시물로서 한국 고유의 역사적 특징과 각국의 목구조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대규모 한국전통 및 현대적 목구조 건축

다. 지원조건 : 국고 100%

4. 기대효과

- 임산물의 소비촉진과 이용의 극대화로 농산촌 소득증진
- 국산재의 고부가가치 이용과 용도개발로 간벌재등 국산재의 수요확대
- UR 개방이후 수입임산물의 국내시장 점유억제 및 국산재 대체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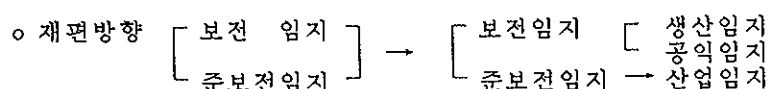
산지이용체계재편 (공공계획)

1. 목 적

- 보전위주로 편성된 산지이용체계를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산지의 이용도 증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지이용질서를 확립하며, 산지이용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산지관리제도 확립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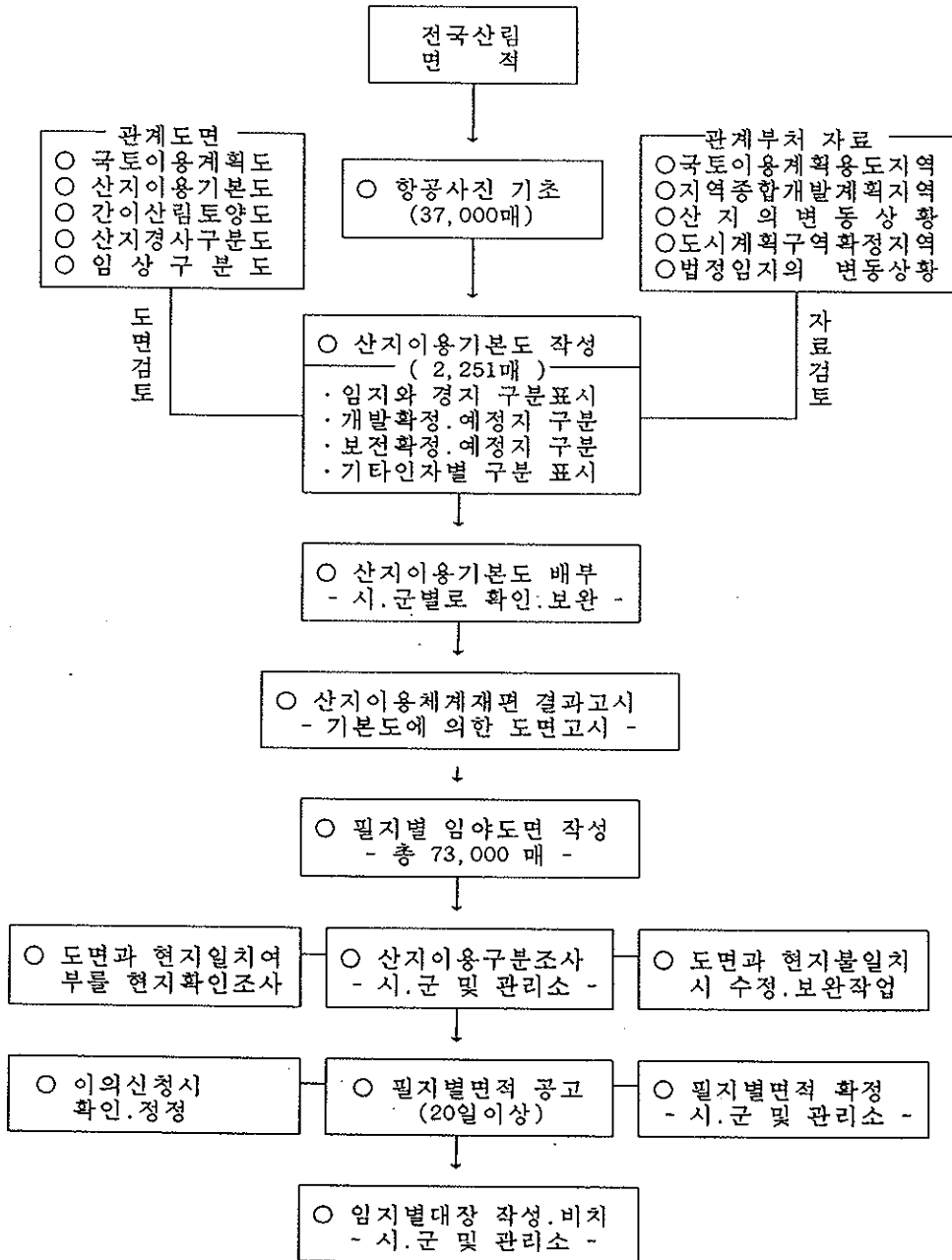
○ 구분기준

- 생산임지 : 토양이 비옥하고 기계확작업이 가능하여 목재등 임산물 생산에 적합한 지역
- 공익임지 : 국민보건 및 산림환경기능의 유지증진이 필요한 지역
- 산업임지 : 개발용도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었거나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

나.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계	'93	'94	'95	'96	'97
사업량(천ha)	6,500	6,500	6,500	6,500	6,500	6,500
사업비(국고)	2,750	112	59	565	1,206	808

3. 사업추진 체계도



4. 임지별 관리방향

○ 생산임지

- 목재생산등 소득증대를 주목적으로 한 경제림의 조성·관리
- 사유림 경영에 대한 보조·용자·세제·기술의 집중지원
-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한 조림·벌채사업등 시업규제완화

○ 공익임지

- 산림환경기능의 유지증진을 위한 환경림의 조성·관리
- 국고 및 지방비 투자에 의한 정부주도의 산림관리

○ 산업임지

-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의 원활한 공급체계조성
- 개발 미확정임지는 영림계획에 따라 산주자력으로 산림경영

5. 사업효과

- 산림에 대한 보전과 개발대상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중복부자방지와 산림관리의 효율성 증대
- 산업임지에 대한 규제완화로 토지공급기능 확충
 - 생산·공익임지 : 임업생산기반조성과 자연환경보전등을 위하여 국·지방비 집중투자
 - 산업임지 : 산주자력에 의한 단기소득 산림경영 유도

6. 기타 참고사항

- 중 양 : 산림청 산림경영국 경영계획과
- 도 : 농정국 산림과
- 군 : 산림과

해외산림개발(공공계획)

1. 목 적

전세계적인 산림보전 운동의 확산 및 산림자원 보유국가들의 자국 목재산업 육성정책에 따른 외재 도입여건의 악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동남아, 대양주, 남미등 해외에서 장기·안정적인 목재공급원을 확보하여 국내 목재산업보호·육성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해외조림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 투자유망국가와 교류협력 강화
- 2040년까지 70만ha의 해외조림지 조성

나. 연차별 계획

(단위: 천ha, 백만원)

구 분	합계	94까지	'95 ~ '98				'99~	
			계	'95	'96	'97	'98	2004
사업량	89	3	26	5	5	8	8	60
사업비	50,358	2,198	14,560	2,800	2,800	4,480	4,480	33,600

3. 지원대상자 선정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에 의거 산림청장의 해외조림사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사업비에 대한 용자지원 대상자 선정
 - 사업의 규모·조림수종 및 성공가능성
 - 국내외 관련연구기관 또는 투자자문회사가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사업
 - 조림대상국가의 정부기관 또는 우리나라 공관장이 인정하는 사업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 주체

해외자원개발사업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개인

나. 사업내용

- 목재생산을 위한 해외조림지 조성(조림 및 육림)
- 세부사업내용 : 조림예정지 정리, 묘목생산, 식재, 비료주기, 풀베기, 병해충방제, 임도시설, 조림지 사후관리등

다. 지원(융자)내용

- 재 원 : 산림개발기금
- 금 리 : 연 3%
- 융자기간
 - 속성수 : 10년(7년거치 3년상환) ~ 15년(10년거치 5년상환)
 - 장기수 : 25년(15년거치 10년상환)
- 융자비율 : 조림 소요액의 70%까지

5. 사업효과

- 목재의 장기·안정적인 공급원 확보
- 투자대상국에 대한 임업기술전수로 협력 증진
- 세계적인 환경보전운동에 동참

6. '95 지원계획

(단위: ha, 백만원)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융자	자부담	
5,000	2,800	1,000	1,800	

7.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산림청 임업정책국 국제협력과

임업기술지도 (공공계획)

1. 목적

임업기술의 보급체계를 확립하여 전체산림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림 산주를 대상으로 임업기술지도를 통해 산림경영 개선과 임산업을 육성하며, 임업정책의 대국민 홍보 강화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개발된 임업기술을 산림경영자에게 바로 연결시켜 실용화하도록 기술보급체계 개선
- 임업기술지도원을 산림경영 주체별로 지정하여 경영책임지도 및 행정편의 제공
- 기술지도원에 대한 교육 강화

나. 연차별 계획

구 분	계	'93	'94	'95	'96	'97
○ 사업량						
-지도원급여(명)	787	(787)	(787)	(787)	(787)	(787)
-산림지발간 (천부)	1,534	276	277	327	327	327
-경영회보발간 (천부)	50.4	25.2	25.2	-	-	-
-산주연찬회 (천명)	32	16	16	-	-	-
-지도장비 구입 (대)	120	30	30	30	30	-
○ 사업비(백만원)	31,972	7,141	6,065	6,377	6,377	5,012
-국고보조	23,246	4,007	4,706	4,925	4,925	4,683
-자부담	8,726	3,134	1,359	1,452	1,452	1,329

3.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시·군임업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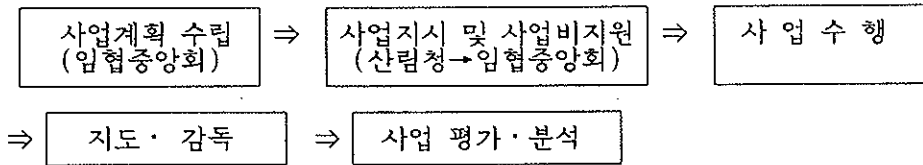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사업내용
 - 입업기술지도원 배치(141개조합) : 787명
 - 입업기술지도 홍보자료 발간
 - 산림청 : 23,000부/월(연 276천부)
 - 산림경영회보 : 2,100부/월(연 25,200부)
 - 산주연합회 14천명/년(141개조합×100명)
 - 입업기술지도장비(찍차)배정 : 30대/년
- 사업대상
 - 입업기술지도원 배치 및 산림지 발간, 지도장비 배정 : 임협중앙회
 - 산림경영회보 발간 : 한국독립가협회
- 지원내용
 - 입업기술지도원 배치에 따른 지도원급여 지원
 - 입업기술지도홍보자료(산림지, 산림경영회보) 발간비 지원
 - 입업기술지도장비(찍차) 구입비 지원

다. 지원조건

- 재원 : 일반회계
- 지원비율
 - 지도원 급여 : 80%
 - 산림지, 산림경영회보 발간 : 70%
 - 입업기술지도장비(찍차)구입 : 70%

라. 사업추진체계도



4. 사업효과

산주들의 산림경영지도 및 입업기술 홍보자료 발간보급으로 산주의 투자의욕 고취 및 계획적인 산림경영 유도

5. 기타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총 양 : 산림청 자원조성국 기술지원과
 - 시·도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영림지도부
 - 시·군 : 임업협동조합

임업기술개발(공공계획)

1. 목 적

- 지구환경 보전과 국산재 자급도 제고 및 농산촌 소득향상
- 신제품개발과 우량종자 생산보급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산·학·관·연이 협동으로 추진하여 산지자원화 10년계획과 연계한 정책 및 기술개발

나. 연차별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계	'92	'93	'94	'95	'96	'97	'98이후
사업량(과제)	1,411	72	95	85	90	118	118	833
사업비	181,756	8,059	7,149	9,510	10,144	13,353	14,770	118,771
-임업연구	69,134	3,833	2,884	3,320	3,396	5,009	5,486	45,206
-조사사업	8,345	254	156	427	423	545	594	5,946
-시험립관리	13,726	572	599	635	604	1,057	1,152	9,107
-수목원관리	25,992	939	1,020	1,195	1,538	1,989	2,168	17,143
-육종연구	64,559	2,461	2,490	3,933	4,183	4,753	5,370	41,369

3. 사업내용

- 임업시험연구
 - 산림환경보전과 공익기능유지 증진
 - 산림의 생산력 증진과 임업생산성 향상
 - 임산자원의 고도이용과 단기임산 소득원 개발
 - 산지이용의 합리화와 산림자원의 합리적 관리
 - 임업경영의 합리화와 임업경제구조·제도개선
 - 산림문화의 정립과 개발
 - 해외임업협력
 - 해외임업협력

- 임목육종연구
 - 주요향토수종의 신품종 육성
 - 우량품종간 교잡 및 적응성 검정을 통한 우량품종 육성
 - 농산촌 단기소득증대를 위한 유실수 및 특용수 육종
 - 첨단기술을 응용한 우량신품종 대량증식 기술개발
 - 채종원에 의한 경제수종의 개량종자 생산보급

4. 사업효과

- 단기임산 신소득작목 및 임산 신물질 개발로 농산촌 소득증대
- 산림생물 다양성 보전·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기술 개발
- 환경관계 국제협약 대응책 수립
- 산림작업의 성력·기계화 및 생산기술 개발로 임업생산성 향상
- 주요 경제수종 및 유실수 신품종개발로 농가소득증대 및 목재수급 자립기반 조성

5. '95자원계획

- 임업시험연구 : 5,961백만원
 - 임업연구 : 3,396 "
 - 조사사업 : 423 "
 - 시험림관리 : 604 "
 - 수목원관리 : 1,538 "
- 임목육종연구 : 4,183백만원

임업협동조합육성 (공공계획)

1. 사업목적

산림소유자와 산림경영자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산림의 보호와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

2. 사업내용

가. 주요사업

- 기술지도사업
 - 사유림의 임업기술지도·협업경영지도·홍보
- 자원조성사업
 - 영림계획작성·조림·육림·보호등 자원조성
- 임산물생산사업
 - 임산물생산·수집·공판·무역, 유통구조개선
- 산림개발사업
 - 임도·사방·훼손지복구등 산림토목, 산림개발사업단 및 작업단 운영
- 자금용자사업
 - 산림개발기금·농어촌발전특별회계 자금등 산림투자사업비 용자지원

나. 사업대상 : 전국 141개 임업협동조합

다. 지원조건 및 추진방식

- 임업협동조합 상무급여 기본급 보조
 - 국고보고 25%, 자부담 75%

○ 조합운영비 보조 : 국고보조 50%, 지방비 보조 50%(조합유형별 차등 보조)

※ 기초 18백만원, 보통 12백만원, 정상 60백만원

○ 작업단 사업비등 용자 : 60개조합에 평균 50백만원

{ 조합당 50백만원
 용자기간 : 1년
 이 자 율 : 년리3%

3. 연차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5	'96	'97	계
사업량(조합)	(141)	(141)	(141)	(141)
사업비 계	5,700	5,700	5,700	17,100
- 국 고	939	939	939	2,817
- 기금 용자	3,300	3,300	3,300	9,900
- 지 방 비	678	678	678	2,034
- 사업자부담	783	783	783	2,349

4. 사업실행주체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5.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절차

- 보조금은 분기별 보조액을 개산금 신청하고 정산보고서는 다음년도 1월 10일까지 제출
- 보조금은 시·도, 시·군·구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 계통을 통하여 시·군 임업협동조합에 교부
- 보조금 최종 수령자 : 시·군 임업협동조합

6. 사업감독 및 사후조사

- 사업실적의 확인 및 감독은 서류심사 또는 현지확인등의 방법에 의거 조사 실시

7.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 보조사업 위법부당사항 발견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치

산불방지대책 (공공계획)

1. 목 적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 하므로써 산림자원손실 및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최대한 방지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 발휘

2. 사업내용

가. 기본방향

- 예방위주의 산불방지대책 적극 강구
- 진화조직의 정비와 장비 현대화로 조기진화체제 구축
- 지역별 책임담당자에 의한 산림피해 예방활동 강화
- 부정임산물 반출 및 거래행위등 불법 산림피해 단속 강화

나. 주요사업내용

- 헬기도입 : '97까지 27대 확보 (도당 3대 기준)
- '94 현재 19대 (대형 4, 중형 13, 소형 2)
- 경비행기를 이용한 공중감시체계 구축
- 지상진화장비 확대 보급
- 지방격납고시설 (호남권, 중부권)
- 공익근무요원 13,173명을 시·도·영림서별로 배치하여 산불감시 및
임산자 계도, 산림내 취사 밀렵행위등 감시

3. 연차별 계획

가. 사업량

구 분	단위	계	'93	'94	'95	'96	'97	비고
○ 헬기도입(운영)	대	11(27)	2(18)	1(19)	3(22)	3(25)	2(27)	
○ 경비행기도입	"	8	-	-	1	3	4	
○ 산불감시원	명	250	250	250	250	-	-	
○ 동력펌프	대	770	70	70	70	280	280	
○ 휴대용무전기	"	2,150	400	400	450	450	450	
○ 공익근무요원	명	22,150	-	-	13,173	22,150	22,150	
○ 밤비바켓	개	15	-	-	5	5	5	
○ 무인감시시스템	대	15	-	-	-	5	10	
○ 산불진화모니터	"	40	-	-	-	20	20	
○ 진화급식비	명	60,000	-	60,000	40,000	60,000	60,000	
○ 산불예방활동비	"	579	-	-	-	579	579	
○ 산림방재차	대	53	-	-	3	25	25	
○ 소화약제	ha	480	-	120	120	120	120	
○ 무선중계소	개소	12	-	-	4	4	4	
○ 산불감시시설 등		452	64	64	64	130	130	

나.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3	'94	'95	'96	'97	
계	127,924	8,002	7,841	31,221	42,990	41,540	
사 업 별							
○ 헬기도입(운영)	58,513	6,745	6,073	15,229	16,433	14,033	
○ 경비행기도입	1,000	-	-	200	600	800	
○ 산불감시원	1,589	445	636	508	-	-	
○ 동력펌프	2,190	330	330	330	1,320	1,320	
○ 휴대용무전기	636	48	48	180	180	180	
○ 공익근무요원	55,423	-	-	13,427	20,998	20,998	
○ 밤비바켓	144	-	-	48	48	48	
○ 무인감시시스템	2,250	-	-	-	750	1,500	
○ 산불진화모니터	600	-	-	-	300	300	
○ 진화급식비	800	-	-	200	300	300	
○ 산불예방활동비	324	-	-	-	162	162	
○ 산림방재차	630	-	-	90	750	750	
○ 소화약제	324	-	-	108	108	108	
○ 무선중계소	180	-	-	60	60	60	
○ 산불감시시설 등	3,321	434	754	841	981	981	

헬기운영 (공공계획)

1. 목 적

농산촌의 인력감소, 고령화등으로 인력에 의한 산불진화, 병해충방제가 어려우므로
연차적으로 헬기를 확보하고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산불의 조동진화 및 산림병해충의
방제등에 적극 활용,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므로써 산주소득증대에 기여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에 헬기 적극 활용
- 산불진화장비의 현대화로 조기진화체제 구축
- 산림병해충 피해확산 저지를 위한 항공방제 확대

나. 연차별 계획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계	'95	'96	'97	'97이후
사업량 (헬기운영)	27	22	25	27	27
사업비	35,728	8,029	9,233	9,233	9,233

3. 사업내용

-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헬기지원
- 기타 산림사업을 위한 다목적 헬기지원

4. 사업효과

- 산불진화 및 산림병해충의 적극 방제로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
- 밤나무해충등의 항공방제 지원으로 산촌주민 소득증대에 기여

야생조수 보호(공공계획)

1. 목 적

야생조수의 보호증식으로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며 조수의 서식밀도 유지와 유해조수로 부터 농림어업의 보호를 위한 수렵장 운영

2. 추진방향

○ 야생조수의 보호증식으로 자연생태계 균형유지

- 조수보호구역 확대설정

	'94	2004
· 조수보호구	581개소 (121,786ha)	→ 625개소 (139,572ha)
· 특별보호지구	104 " (3,702ha)	→ 125 " (4,636ha)

- 야생조수의 적정밀도 유지 (단위 : 마리/100ha)

· 꿩: 20, 멧비둘기: 30, 멧토끼: 20, 고라니: 5, 멧돼지: 5

- 조수서식 실태조사로 효율적인 조수행정 추진

· 고정조사구 : 134개소, 4,020ha

○ 수렵장 적정운영

- 고정수렵장 : 제주도, 경남 거제군 (강원도 1개소 '96년도 개장 추진중)

- 순환수렵장 : 매년 2개도씩 설정 운영 (단 경기도, 제주도 제외)

3. 사업내용

가. 조수보호구역 확대설정 및 서식환경 조성

○ 조수가 서식하는 산림과 철새도래지 등에 조수보호구를 확대설정

○ 야생조수 서식환경조성을 위해 조수보호구역내에 먹이식물식재, 보호구표지판등 설치

나. 야생조수 실태조사

효율적인 조수보호 및 수렵행정 추진을 위하여 야생조수의 서식실태조사를 전국 주요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고정조사구 134개소(4,020ha)에서 매월 2회 실시

가. 조수의 인공증식·방사

야생조수를 인공증식·방사하여 자연생태계의 균형유지에 기여

라. 야생조수 불법포획 단속 및 홍보활동 강화

- 유급조수 보호원을 증원하여 밀렵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체제의 강화
- 불법포획 등 위법행위자 단속강화
- 보호단속요원에 대한 교육강화로 자질향상

마.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조수(CITES) 보호

-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조수는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지정·고시 (총 684품목)
-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의 수출입은 금지 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거래토록 조치
- CITES교역 위반품목에 대하여는 몰수

바. 유해조수구제

- 유해조수의 실태를 조사하여 계획적인 구제로 농림어업의 피해 최소화

사. 수렵장 운영

- 수렵장의 운영으로 야생조수 직접서식밀도 유지와 농림어업의 보호
- 시범수렵장은 순종멧돼지 사육기술 개발 및 종돈보급장 위주로 운영

아. 조수행정의 국제화

- 철새, 멸종위기 조수 등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야생조수보호를 효과적으로 추진
 - 한.러철새 보호협정 이행철저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준수
- 조수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가입 점진적 추진
- 야생조수에 관한 지식, 기술, 정비 등의 상호교류

자.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

- 중요 천연림과 최고령 수목등을 발굴,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지정 확대
-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중 수간이 부패되었거나, 구멍 등이 생긴 보호수는 외과수술 실시
-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에 대한 홍보활동 전개

4. 자금지원 및 집행관리

가. 자금지원

- 야생조수 서식실태조사 (국고보조 100%)
- 서식환경조성 (국고보조 50%, 지방비보조 50%)
- 보호수 외과수술 (국고보조 30%, 지방비보조 70%)
- 시범수렵장 운영 (국고보조 100%)

나. 집행관리

-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추진 및 관리
- 시범수렵장은 강릉영림서에서 운영

5. 연차별 사업계획

가.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95~'99					
	계	'95	'96	'97	'98	'99
계	1,690	338	338	338	338	338
-일 반	1,315	263	263	263	263	263
· 국고보조	905	181	181	181	181	181
· 지방비보조	410	82	82	82	82	82
-국 특	375	75	75	75	75	75

나. 사업량

구 분	계	'95	'96	'97	'98	'99
○ 새집달기 (개)	14,215	2,843	2,843	2,843	2,843	2,843
○ 먹이식물식재 (본)	49,500	9,900	9,900	9,900	9,900	9,900
○ 보호구표지판 (개)	610	122	122	122	122	122
○ 경계표지판 (개)	3,050	381	381	381	381	381
○ 보호수외과수술 (본)	200	40	40	40	40	40
○ 서식실태조사 (명)	18	18	18	18	18	18
○ 시범수렵장 운영(개소)	1	1	1	1	1	1

산 지 정 화 (공공계획)

1. 목 적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보전

2. 추진방향

- 푸른산 사랑운동 지속적 전개
- 산지오염 확산방지와 쾌적한 휴식공간을 위한 편익시설 확충 및 감시인력 보강
- 산림내 행락질서 위반자 등 단속강화

3. 사업 내용

가. 사업시행 주체 : 지방자치단체, 영림서

나. 주요 사업내용

- 푸른산 사랑운동 추진
 -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전국일제 실시
- 편익시설 확충 및 감시인력 보강
 - 화장실, 이동식 쓰레기장 등 : 시·군당 10개소이상 설치
 - 공익근무요원 또는 산지정화 감시원 배치 : 시·구·읍·면당 10명이상 배치
- 산림내 취사행위 등 단속강화
 - 법질서 확립차원의 강력한 단속으로 경각심 고취
 - 행락철 취약지 위주 집중단속 실시

4. 기대효과

푸른산 사랑운동 등 산지정화사업의 지속적 실시로 깨끗한 산림환경유지 및 국토
경관 보존

간벌재(소경재)활용장비지원(공공계획)

1. 목 적

임목벌채시 산림내에 버려지고 있는 간벌재등 미이용 불량소경재를 수집하여 산림원자재로 공급하프로서 국내 목재자원의 이용촉진 및 산주소득 증대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간벌재등 국내산 불량소경재의 생산비 절감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지원
- 국산재 생산·유통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임업협동조합계통조직에 우선지원

나. 연차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95	'96	'97	'98	'99이후
사 업 량	175	10	15	15	15	120
사 업 비 (국고용자)	18,744	1,071	1,607	1,607	1,607	12,852

3. 지원대상

- 목재집하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임업협동조합
- 국산재 생산이 많은 협업경영지도소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가. 사업시행주체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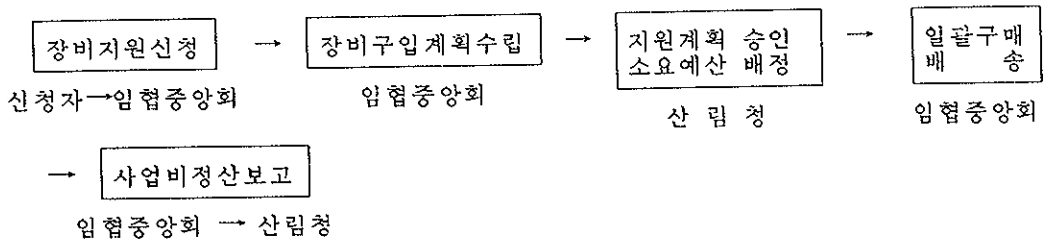
- 국산재의 하산·집재·운반에 필요한 기계장비(집재기, 굴삭기, 덤프트럭등)
- 국산재의 가공이용촉진을 위한 기계장비(톱밥제조기등)

다. 지원조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 국내산 간벌소경제의 생산·유통량이 많고 목재집하장이 설치된 임협에 우선지원

5.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가. 지원체계



나. 대상자 선정시 고려해야할 사항

- 신청 기계장비의 연중 활용을 위한 전문작업단 고용과 목재생산 가능량
- 신청자의 재정상태, 자부담 능력등

6. 지원효과

- 국내 목재자원의 효율적 이용촉진으로 목재자급도 제고
- 간벌촉진을 유도하여 산주소득증대 및 용재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조성

7. 기타 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중앙 : 산림청 임업정책국 이용과
 - 도 : 시도 산림(녹지)과
 - 군 : 산림과

다목적 산림경영시험단지조성 (공공계획)

1. 목적

우량 목재생산을 위한 용재림 조성, 단기소득 임산물생산, 목재가공·유통, 산림의 국민 생활이용, 임업시험연구등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의 증진 및 다목적이용 시범단지 조성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국유림에 10년계획으로 추진
- 입지여건을 감안, 각종 기능별로 구분·조성
- 단지내의 모든사업과 산림작업은 시험연구와 연계실행

나. 사업목표 및 장기계획

(1) 사업목표

- 강원도 홍천군 내면, 평창군 봉평면 일원 국유림 24,480ha에 '95-2004년까지 다목적산림경영 시범단지 조성
 - 투자규모(타당성조사 결과) : 1,292억원
 - 정부투자 : 1,265억원<기존사업 501(40%), 신규사업 764(60%)>
 - 민간투자 : 27 "

(2)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계	'93	'94	'95	'96	'97
○ 사업량						
-타당성조사 용역 (건)	1	1	-	-	-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건)	1	-	-	1	-	-
-단지조성 (ha)	24,480	-	-	-	24,480	(24,480)
○ 사업비(백만원)	27,475	90	-	476	12,866	14,043
-일반	15,106	-	-	399	5,850	8,857
-국특	12,369	90	-	77	7,016	5,186

3. 사업내용

- 4대구분에 따른 세부사업별 기능구분 · 개발
 - 기본시험림 : 2,879ha
 - 유전자보존림, 육종검정림, 조림 · 육림시험, 야생동물시험
 - 다목적경영림 : 11,735ha
 - 용재림, 보건휴양림
 - 학술보존림 : 5,631ha
 - 자연보존림 : 4,235ha
 - ※ 임산물 가공 · 유통시설은 단지내 임지여건을 감안하여 규모 및 위치 선정

4. 사업추진체계

- 산림행정기관, 학계, 산하단체등 관계임업인이 공동참여하여 추진
 - 총괄 : 산림청
 - 주관 : 임업연구원, 원주 · 강릉영림서
 - 지원 : 임목육종연구소, 광림공사등
- 추진점담기구 구성 - 실무작업단, 지원대책 및 자문위원회

5. 사업계획수립

'95년도에 기본조사설계를 실시하여 단지조성의 전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6. 사업효과

- 산림의 경제적 ·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한 다목적 경영 선도
- 국민정서 함양 · 휴양공간의 제공
- 청소년의 수련 · 자연학습장으로 활용

7. 기타참고사항

- 사업안내기관 : 산림청 자원조성국 기술지원과

임업통계조사 (공공계획)

1. 목 적

임업정책수립 기초자료 및 연구자료등의 확보를 위한 산림통계 조사 실시

2. 추진방향

- 산림기본통계조사의 계속추진
 - 산림기본통계조사 - 산림면적, 임목축적조사
 - 임산물생산통계조사 - 임산물생산량 생산액 조사
 - 탐 수확예상량 조사 - 작황 및 수확예상량 조사
- 산림경영실태조사 실시
 - 주요임산물 생산실태 및 재배자의식등 조사
 - 연도별 조사계획(5년주기 반복조사)

구 분	'95	'96	'97	'98	'99
○ 사 업 명	주요임산물 생산실태조사	단기소득 임산물생산 실태조사	목재생산 및 유통실태조사	조경수·분재 재배실태조사	사유림경영 실태조사
○ 대상(명)	20,000	7,000	7,000	5,000	20,000
○ 소요예산 (천원)	49,509	70,000	70,000	70,000	70,000

※ 소요예산은 현지조사 여비 및 결과보고서 발간 수용비임.

3. 사업내용

가. 산림기본통계조사

- 산림기본통계조사
 - 조사기관 : 시·군·구, 영림서, 관리소
 - 내 용 : 1년간 산림면적과 임목축적의 증감내역
- 임산물생산통계
 - 조사기관
 - 생산량 : 시·군·구, 영림서, 관리소, 임연, 육연
 - 가격 : 산림청, 시·도, 영림서, 임연, 육연
 - 조사대상 : 산나물류(6월말), 종실류(10월말), 기타(12월말)
 - 조사대상 : 37품목
- 밤 수확 예상량 조사
 - 조사기관
 - 협지조사 : 74개 시·군 표본조사
 - 수확예상량 추계 : 도(특·직할시, 제주제외)
 - 조사시기 : 9월초
 - 조사내용 : 작황, 결실량, 수확예상량조사

나. 산림경영실태조사(주요임산물생산 실태조사)

- 조사시기
 - 1단계 : '95. 1~3월(3개월)
 - 2단계 : '95. 7~9월(")
- 조사대상 : 임업생산액의 비중이 높고 시장성이 있는 종실류(밤, 호도, 대추), 약제류(산수유, 오미자), 버섯류(버섯)등 6개 품목
- 조사방법
 - 1단계(시·군·구) : 재배자별 면적, 본수 표본조사
 - 2단계(시·군·읍) : 20,000명 표본조사
- 조사내용
 - 재배면적, 본수등 재배현황
 - 생산 및 판매현황
 - 자금, 노동투입 및 재배자 의식조사

특정연구개발(공공계획)

1. 목 적

산지의 효율적 개발·이용 및 임업생산 현장애로 타개 기술개발로 농산촌 소득증대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산·학·관·연이 협동으로 구성

나. 사업내용

(금액 : 백만원)

구 분	계	'92	'93	'94	'95	'96	'97	'98이후
사업량(과제)	50	4	4	3	3	4	4	28
사업비	3,916	294	294	294	334	300	300	2,100

3. 사업시행주체 및 내용

가.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관 직접 실행사업
- 임업연구원, 임목육종연구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각도 산림환경연구소

나. 사업내용

- 농산촌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실용적 기술
- 임업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 기술
- 생산현장애로 타개기술
- 임산자원의 (향토수종)의 발굴·이용 기술

4. 사업효과

- 단기임산 신소득 작목 및 임산 신물질 개발로 농산촌 소득증대
- 산림작업의 성력·기계화 및 생산기술 개발로 임업생산성 향상
- 주요 경제수종 및 유실수 신품종개발로 농가소득증대 및 목재수급 자립기반 조성

5. '95지원계획

- 임업분야 특정연구 : 334백만원

임업기술전문학교 설립 (공공계획)

1. 목적

- 전문대학급 「임업기술전문학교」를 설립, 실용·실기위주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임업전문경영 인력을 양성
- 정주권 개발의 기간인력 확보

2.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임업기술전문학교설치령 제정 2년제 국립전문대학급 각종학교 설립
- 소수정예를 대상으로 집합적 실습교육 실시
- 정부주도에 의한 산·학·연 협동체제 구축, 실용교육 기반조성
- 병역특례 인정등 정부지원에 의한 교육훈련 및 졸업생 관리
- 이론과 실기·실습을 겸행지도 할 수 있는 교원 직제구성

나. 사업목표 및 장기계획

- 장기계획
 - '97임업기술전문학교 개교
 - 2004년까지 297억원을 투자, 신규 경영전문인력 480명 양성
 - 새로운 임업교육모델 개발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5	'96	'97	'98	'99이후
○ 사업량	1,200명	-	-	80	160	960
○ 사업비	29,652	2,796	9,792	2,133	2,133	12,798
(농특)	29,652	2,796	9,792	2,133	2,133	12,798

3. 사업내용

가. 사업시행주체 : 산림청

나.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1) 사업내용

- 국립전문대학급 2년제 “각종학교” 설립
- 실기실습위주의 교육실시
- 정부지원에 의한 교육 및 졸업생관리와 자영기반 지원을 통한 자영자 양성

(2) 지원규모

- 입학기술전문학교설립운영비 전액 국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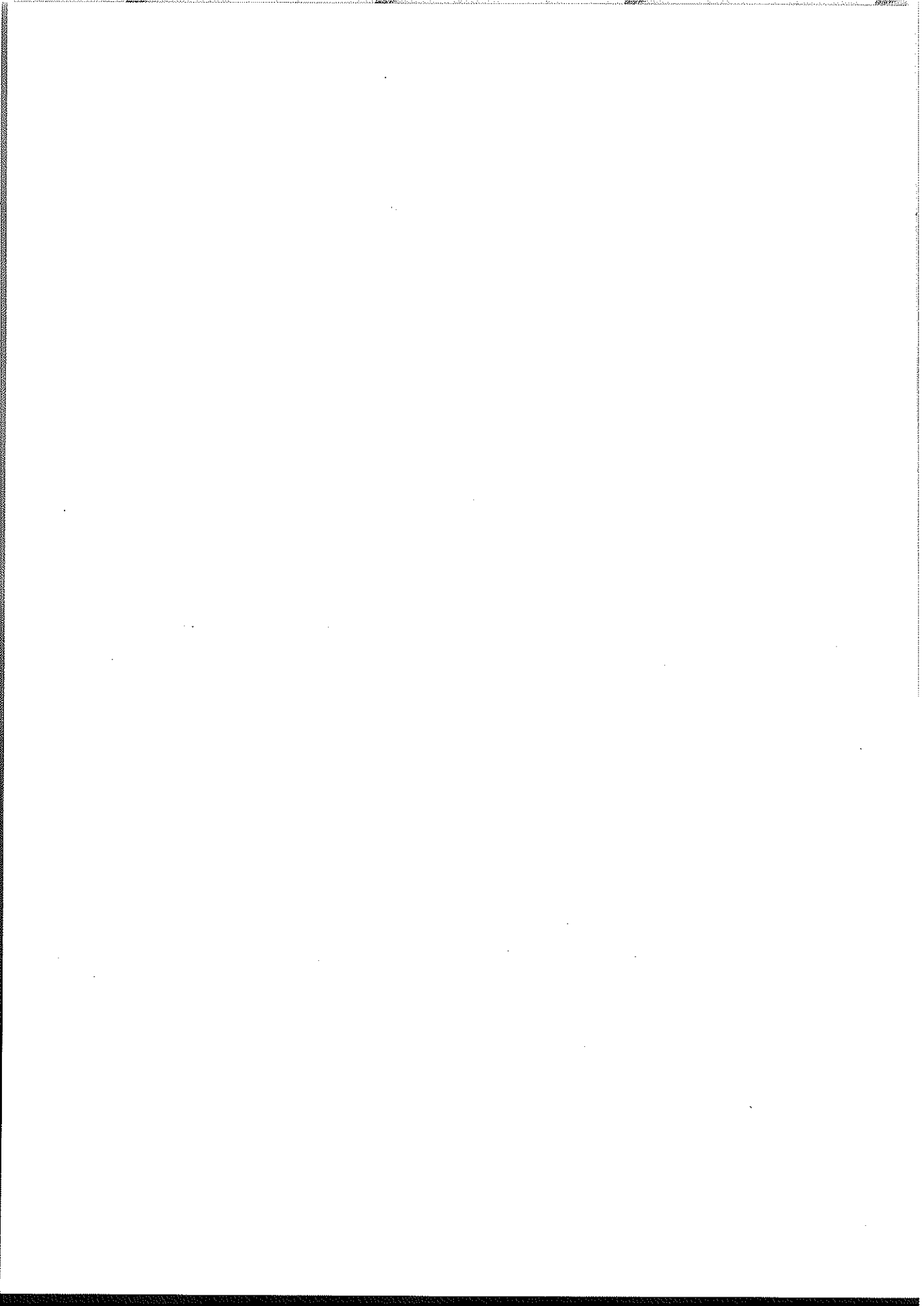
4. 단계별 추진계획

- 1단계 ('94)
 - 학교설립 · 기본계획 수립
 - 입학기술전문학교설치령 제정
- 2단계 ('95)
 - 학교설립 기본조사
 - 학교설립 · 세부계획 수립
- 3단계 ('96)
 - 학교부지 선정, 기본 · 실시설계 및 착공
 - 교수진 선발
- 4단계 ('97)
 - 학교시설 및 부대시설 준공
 - 학생선발 및 개교

5. 사업효과

- 농산촌 정주권의 기간인력확보 및 전문인력에 의한 산지자원화 촉진
- 농산촌 구조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모델 제시

10. 어업·어촌지원사업



내수면 어업개발 사업 (자율)

1. 목 적

- 어민들의 내수면어업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2. 추진 방향

- 담수어 집약생산 시설확충으로 내수면 양식업계 활성화 도모(지속추진 사업)

3. 사업 신청자격

- 담수어 육상양어장시설 : 내수면양식어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자
- 담수어 유통시설 : 내수면어업단체 또는 양식어민 3인이상의 협업체
- 가두리양식장 육상전환 : 상수원보전특별지역(팔당호, 청평호, 대청호)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경영하는 자가 육상양식 이전을 희망하는 자
- 양어장 수질정화시설 : 내수면 양식면허를 받고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자

4.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가. 사업 집행주체 : 시·도지사 (집행주체가 필요시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

나. '95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	자담
담수어육상양어장	12개소	2,400	-	-	1,680	720
담수어 유통시설	2개소	1,000	-	-	700	300
가두리육상양식장	5개소	2,500	500	250	1,000	750
양어장 수질정화	20개소	1,000	200	100	400	300

5. 사업안내 기관

- 중 양 : 수산청 생산국 자원조성과
- 시·도 : 수산과(농정국 수산진흥관실)
- 시·군 : 수산과

수산양식사업(자율)

1. 목 적

○ 어민들의 수산양식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2. 추진방향

○ 부가가치가 높은 어패류 종묘생산 및 양식시설 확대개발(지속추진 사업)

3. 사업 신청자격

○ 양식어업을 경영코자하는 어민단체(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및 개인

4. 사업 내용 및 지원규모

가.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 (집행주체가 필요시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

나. '95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융자	자담
<양식어장지원>						
어류양식	13개소	1,300			1,040	260
패류양식	35ha	1,300			1,040	260
어패류종묘배양장	6개소	1,200			960	240
김유기산처리제	2,000톤	2,600	780	780		1,040
어장정비·정리	250ha	1,250	1,000	250		
개량부자	417천개	1,250	500		500	250
사료저장고	6개소	600			480	120
사료제조기	5대	75			60	15
<양식어장개발, 농특세사업>						
어류양식	15개소	1,500	600		600	300
패류양식	1,750ha	6,250	2,500		2,500	1,250
종묘중간배양장	2개소	1,000	400		400	200

5. 사업안내 기관

- 중 양 : 수산청 생산국 증식과
- 시·도 : 수산과(농정국 수산진흥관실)
- 시·군 : 수산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공공계획)

1. 목적

- 어선세력을 자원수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 지속적인 생산증대로 어민소득증대

2. 추진방향

- 1994년 - 2004년까지 연근해어선 130천톤 감척
- 연차별 투자계획('99 이후는 추후확정) (단위: 억원)

	계	'94까지	'95	'96	'97	'98
금 액	1,084	58	136	231	302	357
척 수(톤)	58,000	644	1,354	14,762	19,074	22,402

3. 사업 신청자격

-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자 다만 다음어선 소유자는 제외
 - ① 어선의 방치상태로 보아 조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어선
 - ② 1년이상 조업실적이 없는 어선
 - ③ 어선은 없고 허가장만 소지한 경우
 - ④ 다른 법령에 의거 보상대상으로 선정된 어선

4.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가. 사업집행주체: 시·도지사
- 나. '95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융자	자담
계	230척, 2,064톤	13,566	9,688	2,315	1,250	313
연안어업	223 , 1,224	11,575	9,260	2,315	-	-
근해어업	7 , 840	1,991	428	-	1,250	313

5. 사업안내 기관

- 중 앙 : 수산청 생산국 연근해과
- 시·도 : 수산국 생산과, 농림수산국 수산과

어장환경 정화사업 (공공계획)

1. 목적

- 수산생물의 서식을 위한 어장환경을 정화하여 어민소득 증대 도모

2. 추진방향

- 전국 연안 앞바다 어장을 지속적으로 정화하여 생산성 향상
- 연차별 투자계획('99 이후는 추후확정) (단위: 억원)

	계	'94까지	'95	'96	'97	'98
금 액	510	76	67	95	117	155
면적(천ha)	205	52	40	34	40	39

3. 사업 신청자격

-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소유 면허어장내 오염물 수거처리, 해적생물구제, 어장바닥갈이등 어장환경 개선사업 희망자

4.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가. 사업시행 주체 : 시.도지사(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집행)
- 나. '95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	자담
어장정화	40천ha	6,728	5,382			1,346

- 다. 사업별 단위 면적당 지원 기준
 - 해조류 어장 : 100천원/ha
 - 패류.공동어장 : 150 "
 - 수하식.채묘장 : 750 "

5. 사업안내 기관

- 중 앙 : 수산청 생산국 어장보전과
- 시. 도 : 수산국(농림수산국)수산과
- 시. 군 : 수산과 수산계

어항조성(공공계획)

1. 목적

- 어선의 안전수용능력 제고 및 어획물의 신속한 양륙처리 도모

2. 추진방향

- '98년 까지 100개 항 개발
 - 국가관리항 : 31 "
 - 지방관리항 : 69 "

3. 사업내용 및 규모

가. 사업집행주체

- 1.3종 어항(국가관리 항) : 수산청장
- 2종 어항(지방관리 항) : 시·도지사

나. '95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 고	국고보조	지방비 부담
계	85 개항	150,467	112,967	-	-
1.3종 어항	29	112,967	112,967		
2종 "	56	37,500	-	18,750	18,750

4. 사업안내 기관

- 중 양 : 수산청 시설국 어항과
- 시·도 : 수산과(전남, 경남은 생산과)

수산자원조성(공공계획)

1. 목적

- 수산자원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어획증대 도모

2. 추진방향

- 인공어초 시설 : '98년까지 67천ha 시설
- 종묘배양장시설 : " 8개소 건설
- 종묘생산방류 : " 15백만 마리 방류

3. 사업내용 및 규모

가.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

나. '95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 고	국고보조	지방비 부담
계		60,651	-	43,304	17,347
인공어초시설	17천ha	42,986	-	34,389	8,597
종묘배양장	5개소	17,500	-	8,750	8,750
종묘방류	3백만미	165	-	165	-

4. 사업안내 기관

- 중 양 : 수산청 생산국 자원조성과
- 시·도 : 생산과(전남,경남은 생산과)

지도선 건조사업(공공계획)

1. 목적

- 안전조업 지도로 자원보호 및 해란사고 예방

2. 추진방향

- '98년 까지 지도선 21척 건조

3. 사업내용 및 규모

가. 사업집행주체

- 전국 어업지도선 : 수산청장
- 시.도 어업지도선 : 시.도지사

나. '95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 고	국고보조	지방비 부담
계	5 척	6,650	3,420	1,615	1,615
전국어업지도선	1 척	3,420	3,420	-	-
시.도 "	4 "	3,230	-	1,615	1,615

4. 사업안내 기관

- 중 양 : 수산청 생산국 지도과
- 시.도 : 수산과(전남,경남은 생산과)

굴폐각처리공장건립 (공공계획)

1. 목적

- 굴폐각을 처리하여 양식생산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함

2. 추진방향

- 굴폐각을 처리하여 어장환경을 정화하고 비료로 재활용 추진('95년 사업)

3. 사업 신청자격

- 굴폐각 처리기술 및 경영능력을 보유한 수협 또는 어촌계

4.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가. 사업시행 주체 : 경상남도지사

나. '95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융자	자담
굴폐각처리공장	1개소	7,800	1,170	1,170	3,120	2,340

- 사업규모 : 1개소(부지 10,000평, 연건평 1,700평)
- 사업비 : 78억(국고15%, 지방비15%, 융자40%, 자담30%)
- 제품생산 : 연간 폐각 70천톤을 처리하여 50천톤의 석회비료, 사료등 생산

5. 사업안내 기관

- 중앙 : 수산청 생산국 어장보전과
- 지방 : 경상남도 수산국 생산과

경제성 어선건조 (자율)

1. 목 적

- 노후어선을 경제성 있는 현대화된 어선으로 대체하여 안전조업 도모

2. 추진방향

- 노후어선 294,711톤의 24%에 해당하는 69,330톤을 2004년까지 대체 건조

3. 사업신청 자격

- 조업 또는 위판실적이 있는 연근해어선으로서 40톤미만은 합성수지(FRP)어선으로, 40톤이상은 합성수지(FRP)어선 또는 강선으로 건조하고자 하는자
 - 피대체 어선은 자진폐선 처리하거나 무상으로 어초에 제공하여야 함

4.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가. 사업집행주체 : 수협중앙회(또는 회원조합)

나. '95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	자담
경제성어선 건조	4,400톤	29,040			23,232	5,808

5. 사업안내 기관

- 중 양 : 수산청 시설국 어선과, 수협중앙회
- 시.도 : 수협중앙회 도지회
- 시.군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어선장비 및 설비개량 (자율)

1. 목 적

- 어선 장비·설비의 현대화로 조업능률향상 및 어업경영개선

2. 추진방향

- 기존재래식 노후장비 및 냉동설비, 발전설비, 양망설비 등의 노후로 어업경영 개선 안전조업 확보등에 자장이 초래되어 이를 대체 지원

3. 사업신청 자격

- 연근해어업 허가가 있는 어선소유자로서 조업 또는 위판실적이 있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
 - 노후장비, 설비의 대체 및 신규로 장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어로설비의 기계화, 자동화를 위한 양망기, 양승기등 유압기계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어선의 냉동, 발전, 어획물 처리 설비등의 시설하고자 하는 자
 - 어선의 선체구조 개량 및 주거시설 개선을 위한 개조를 하고자 하는 자

4.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가. 사업집행주체 : 수협중앙회(또는 회원조합)

나. '95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	자담
어선장비 및 설비개량	150척	7,500			6,000	1,500

5. 사업안내 기관

- 중 앙 : 수산청 시설국 어선과, 수협중앙회
- 시.도 : 수협중앙회 도지회
- 시.군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어선기관대체 (자율)

1. 목 적

- 저효율 육상용 및 노후기관을 선박용기관으로 대체하여 어민의 조업안정성 확보

2. 추진방향

- 3,158,300마력의 저효율기관 14%에 해당하는 432,000마력을 2004년까지 대체

3. 사업신청 자격

- 연근해 어선으로서 500마력이하의 다음 선박용 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자

- 1) 소구 및 육상용 기관등을 대체코자 하는자
- 2) 노후된 기관을 대체코자 하는자
- 3) 무동력어선에 신규로 기관을 설치코자 하는자

- 소형어선, 저마력기관대체자, 어민후계자, 국산기관사용자를 우선 지원하되 사업수요를 감안하여 지원

4.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가. 사업집행주체 : 수협중앙회(또는 회원조합)

나. '95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	자담
어선기관 대체	30천마력	4,800			3,840	960

5. 사업안내 기관

- 중 앙 : 수산청 시설국 어선과, 수협중앙회
- 시.도 : 수협중앙회 도지회
- 시.군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노후어선 대체 (자율)

1. 목 적

- 어민들이 노후어선을 경제성있는 합성수지(FRP)어선으로 대체토록 지원

2. 추진방향

- 노후어선 26천톤의 20%에 해당하는 14천톤을 8톤미만 합성수지어선으로 2004년까지 대체 건조

3. 사업신청 자격

- 목선 선령 16년(FRP, 강선은 21년)이상 노후어선 대체자
 - 다만, 목선 선령 16년미만인 어선이라도 노후로 인한 해난사고 위험이 있다고 한국어선협회의 노후어선 사실확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어업허가가 가능한 피해어선 복구나 폐선처리한 어선 대체자

4.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가.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

나. '95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	자담
노후어선 대체	1,000톤	6,600	1,320		3,960	1,320

5. 사업안내 기관

- 중 양 : 수산청 시설국 어선과
- 시·도 : 수산국(수산국) 수산과(어업진흥과)
- 시·군 : 수산과(산업과 수산계)

어선용기계 공급 (자율)

1. 목 적

- 어민의 부담 경감과 어선의 기계화를 촉진하여 경쟁력 제고 및 어업경영 개선

2. 추진방향

-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경영 개선을 위한 어선용기계의 보급확대 및 노후기계대체

3. 사업신청 자격

- 기존의 노후장비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설치코자 하는자
- 노후어선 대체를 위한 신조어선에 장비를 설치코자 하는자
- 어선규모가 적고 선령이 낮은 어선소유자로 어선용기계의 해당 구입비가 2,000 천원 이하 인자, 어민후계자, 국산장비의 설치를 희망하는자에 우선지원

4.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가. 사업집행주체: 시·도지사
- 나. '95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	자담
어선용기계 지원	4,000대	7,635	1,909	1,909	2,291	1,526

5. 사업안내 기관

- 중 양 : 수산청 시설국 어선과
- 시·도 : 수산국(식산국) 수산과(어업진흥과)
- 시·군 : 수산과(산업과 수산계)

양식용기자재 공급 (자율)

1. 목 적

- 양식용기자재의 공급을 지원하여 어민의 부담을 경감

2. 추진방향

- 단위면적당 생산성 향상을 위한 최첨단 고밀도 집약양식화 촉진
- 장기 계획

(단위 : 억원)

사 업 별	'93 까지	연 차 별 투 자 계 획					
		계	'94	'95	'96	'97	'98
양어용 기자재 공급	- (대)	86 (7,130)	16 (1315)	16 (1315)	18 (1500)	18 (1500)	18 (1500)

3. 사업 신청 자격

- 양식어업 면허를 받고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자(해면, 내수면)

4.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가. 사업집행주체: 시·도지사(시·군)

나. '95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	자담
양식용 기자재공급	1,315 대	1,565	391	391	470	313

5. 사업안내 기관

- 중 양 : 수산청 생산국 자원조성과
- 도 : 수산국(식산국) 수산과(어업진흥과)
- 군 : 수산과(산업과 수산계)

어선용기자재 생산업체 지원 (공공계획)

1. 목 적

- 어선용기자재 생산업체의 안정운영을 위한 자금지원

2. 추진방향

- 어선용기자재 생산업체 70여개 업체중 50개업체(71%)를 2004년까지 지원

3. 사업신청자격

- 오징어자동조상기, 집어등, 안정기, 어로용유압기기(원치, 양팡기, 양승기등)등을 제조하거나 제조하고자 하는 업체
- 어선용 발전기, 냉동설비, 어획물처리설비등을 제조하거나 제조하고자 하는업체
- 항해, 구명, 소방설비등을 제조하거나 제조하고자 하는 업체
- 어선의 현대화 추진을 위하여 합성수지(FRP)소형어선(40톤급이하)을 건조하거나 건조하고자 하는 업체
- 정부의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

4.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가. 사업집행주체 : 수협중앙회

나. '95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	자담
어선용 생산업체 지원	5개사	1,500			1,200	300

5. 사업안내 기관

- 중 양 : 수산청 시설국 어선과, 수협중앙회
- 시.도 : 수협중앙회 도지회

수산물기술개발사업(공공계획)

1. 목적

- 수산물 생산, 가공기술의 개발 및 보급으로 어민소득 증대도모

2. 추진방향

- 경쟁력 있는 양식품종 연구 개발
- 산업과 직결되는 실용기술 개발
- 새로운 연구개발 기술의 신속한 보급

3. 사업내용 및 규모

가. 사업집행주체 : 수산청장

나. '95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고	국고보조	지방비 부담
계		30,237	30,237	-	-
시험연구	53개과제	6,417	6,417	-	-
연구기반조성	3개사업	18,568	18,568	-	-
첨단양식기술개발	10개과제	2,643	2,643	-	-

4. 사업안내 기관

- 중 양 : 수산청 생산국 연근해과, 국립수산진흥원 연구기획과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자율)

1. 목 적

-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지 유통기능을 강화하여 어민소득 증대

2. 추진방향

- 산지와 소비지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륙지공판장, 수산물직판장, 활어 및 냉동차량 등 유통기반시설 확충으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가격안정 도모
- 연차별 투자계획('99 이후는 추후확정) (단위: 억원)

	계	'94까지	'95	'96	'97	'98
금 액	878	254	117	145	169	193

3. 사업신청자격

- 내륙지 공판장 : 수협중앙회
- 수산물 직판장 : 지구별 및 업종별 수협, 어촌계
- 활어 및 냉동차량 : 지구별 및 업종별 수협, 수협중앙회

4.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가. 사업집행주체
- 내륙지공판장 : 수협중앙회
 - 수산물직판장 : 시·도지사
 - 활어 및 냉동차량: 수협중앙회
- 나. '95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내륙지 공판장	(1)개소	8,878	1,776		4,439	2,663
수산물 직판장	5개소	2,000	390		800	810
활어 및 냉동차량	10대	150	-		120	30

5. 사업안내 기관

- 중 앙 : 수산청 어정국 어정과, 수협중앙회
- 시·도 : 수산국(식산국) 수산과(어업진흥과)
- 시·군 : 수산과(산업과 수산계)

수산물유통 보급시설(자율)

1. 목 적

- 어민들의 산지 어획물의 신속한 양육 판매 지원

2. 추진방향

- 새로운 시설수요 및 부족시설 확장 및 노후시설의 현대화
- 위판장내 폐수처리 시설로 항내 오염 방지
- 연차별 투자계획('99 이후는 추후확정) (단위:억원)

	계	'94까지	'95	'96	'97	'98
금 액	364	182	38	40	47	57

3. 사업신청자격

-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4.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가.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군)
- 나. '95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	자담
○ 선어위판장	1,120평	923	277		369	277
○ 활어위판장	200평	371	111		148	112
○ 폐수처리시설	1개소	200	60		80	60
○ 급유·급수시설	10050D/M	513	154		205	154
○ 급유·급수선	1척	1,800	450		450	900

5. 사업안내 기관

- 종 양 : 수산청 시설국 시설과
- 시·도 : 수산국(식산국) 수산과(어업진흥과)
- 시·군 : 수산과(산업과 수산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자율)

1. 목적

- 우리 수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어민소득 증대

2. 추진방향

- 산지의 어촌계·수협·생산자단체가 가공산업 참여로 유통단계 축소, 수산물 출하, 수급조절로 가격지지 및 국제 경쟁력 제고

3. 사업신청자격

- 대상 : 국내수산물을 주 원료로 사용하여 어촌지역에서 수산물 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인 어촌계, 수협
- 자격 : 건축허가가 가능한 시설부지를 확보하고 자담 및 경영능력이 있는 생산자단체

4.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가.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

나. '95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	자담
산지가공시설	6개소	4,620	2,310		1,386	924

5. 사업안내 기관

- 중 양 : 수산청 어정국 제조과
- 시. 도 : 수산국(식산국) 수산과(어업진흥과)
- 시. 군 : 수산과(산업과 수산계)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자율)

1. 목 적

○ 수산물의 처리저장·가공시설을 지원하여 어가지지로 어민소득증대에 기여

2. 추진방향

○ 수입개방화에 대비, 수산물 가공시설 확충, 시설의 현대화·자동화 지원

○ 연차별 투자계획('99 이후는 추후확정) (단위: 억원)

	계	'94까지	'95	'96	'97	'98
금 액	3,296	514	453	689	801	839

3. 사업신청자격

○ 어촌계, 수협, 어민, 일반업체

4.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가. 사업집행주체 : 수협중앙회

나. '95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계	15개소	16,750			13,400	5,600
냉동·냉장신설	9	13,500			10,800	2,700
냉동·냉장보수	5	1,250			1,000	250
특수가공시설	1	2,000			1,600	400

5. 사업안내 기관

○ 중 앙 : 수산청 어정국 제조과, 수협중앙회

○ 시.도 : 수협중앙회 도지회, 냉동물제조수협

수산물 종합가공단지조성 (공공계획)

1. 목적

- 원양어업 전용부두 확보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신속한 양륙체제 확립

2. 추진방향

- 수산물 처리저장.가공시설의 현대화, 자동화 계열화 유도

3. 사업신청자격

- 부산 감천항 원양어업 전용부두 배후매립지의 수산물종합가공단지내에 건축허가가 가능한 시설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자

4.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가. 사업집행주체 : 수협중앙회

나. '95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 자	자 담
계	10개소	28,571			20,000	8,571
○ 공동이용시설 신설	8	9,171			6,420	2,751
- 업무및복지시설신설	3	2,858			2,001	857
- 전기.통신시설신설	2	4,300			3,010	1,290
- 공해방지시설신설	2	1,000			700	300
- 하역시설신설	1	1,013			709	304
○ 처리 저장.가공시설	2	19,400			13,580	5,820

5. 사업안내 기관

- 중 앙 : 수산청 어정국 제조과, 수협중앙회
- 시.도 : 수협중앙회 도지회

수산물가공업체운영자금(공공계획)

1. 목 적

- 국내 수산물을 원료로 한 수산물 가공업체를 지원 어민소득증대

2. 추진방향

- 가공업체가 국제경쟁을 갖도록 지원

3. 사업신청자격

- 정부의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
- 국내 원료로 신제품 개발하는 업체
- 어촌특산품 가공품 개발하는 업체
- 생산자와 가공자와의 연계가 있는 업체
- 수출주요업체 및 EU 등록업체

4. 사업내역 및 지원규모

가. 사업집행주체 : 수협중앙회

나. '95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단위:백만원)

사업명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	자담
계	11,180			11,180	
냉동냉장업	3,610			3,610	
동조립제조업	2,900			2,900	
연제품제조업	3,300			3,300	
해조가공업	750			750	
조미가공업	420			420	
기타가공업	200			200	

5. 사업안내 기관

- 중 양 : 수산청 어정국 제조과, 수협중앙회
- 시.도 : 수협중앙회 도지회

어촌관광개발사업 (자율)

1. 목 적

- 도시민의 레저수요를 어촌으로 흡수하여 어민소득증대 도모

2. 추진방향

- 지원대상 어촌계의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단위사업 지원
- 부존관광 자원의 개발효과가 기대되는 어촌계 육성
- 자연경관이 수려한 어촌에 활어횃집, 휴게소, 숙박시설, 관광선, 낚시터 등 관광 편의시설을 지원, 어업외소득 증대 도모

○ 연차별 투자계획('99 이후는 추후확정) (단위:억원)

	계	'94까지	'95	'96	'97	'98
금 액	140	3,310	20	24	29	35
개 소	139	32	20	24	29	35

3. 사업신청자격

- 어촌계

4.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가.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 (시장·군수)
- 나. '95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	자담
어촌관광개발	20개소	2,000	-	600	1,200	200

30 50 10

5. 사업안내 기관

- 중 앙 : 수산청 어정국 협동조합과
- 도 : 수산국(수산국) 수산과(어업진흥과)
- 군 : 수산과(산업과 수산계)

어촌종합개발사업 (공공계획)

목적

- 어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득원을 개발하여 어촌의 생활여건을 개선

추진방향

- 적지 및 협업능력을 갖춘 어촌에 대하여 특성에 맞는 소득사업 지원
- 장기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95 ~ 98				'99 ~ 2004	
		소계	'95	'96	'97		'98
권역수	150	60	15	15	15	15	90
사업비	530,000	210,000	52,500	52,500	52,500	52,500	320,000
국고	265,000	105,000	26,250	26,250	26,250	26,250	160,000
지방비	238,500	94,500	23,625	23,625	23,625	23,625	144,000
자담	26,500	10,500	2,625	2,625	2,625	2,625	16,000

사업신청자격

- 어촌계 및 수협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가.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다만, 권역의 설정이외의 사항은 시장·군수에게 위임가능)

나. '95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별	사업량	사업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용자	자담
어촌종합개발	15개권역	52,500	26,250	23,625		2,625

50 45 5

사업안내 기관

- 중앙 : 수산청 어정국 협동조합과
- 시·도 : 수산국(수산국) 수산과(어업진흥과)
- 시·군 : 수산과(산업과 수산계)

어민복지회관건립 (공공계획)

1. 목 적

- 어민 및 어선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2. 추진방향

- 전국 65개 지구별수협에 1개소씩 현대적 종합시설을 갖춘 어민복지회관 건립 (부지확보는 사업자 부담)
- 연차별 투자계획('99 이후는 추후확정) (단위: 억원)

		계	'94까지	'95	'96	'97	'98
금	액	232	38	11	36	72	75
개	소	80	15	4	12	24	25

3. 사업 신청자격

- 지구별 수협

4.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가.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집행)

나. '95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융자	자담
어민복지회관	4개소	1,080	1,080			

다. 주요시설

- 숙박시설, 이·미용실, 목욕탕, 구판장, 예식장(회의장 겸용) 등 후생복지를 증진할수있는 시설로서 세부 시설내용은 지원대상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집행주체가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함

5. 사업안내 기관

- 중 양 : 수산청 어정국 협동조합과
- 시. 도 : 수산국(수산국) 수산과(어업진흥과)
- 시. 군 : 수산과(산업과 수산계)

농 립 수 산 사 업

시기 기관별	사 업 준 비 년 도 (전)			
	전전년 12월	1 ~ 3월	4 ~ 6월	7 ~ 9월
농 어 민 및 생 산 자 체	사업계획수립 및 신청	상 시 영 농 어 구 상 및 신 청		
유 관 기 관 (읍·면사무 소 및 농(어) 촌 지 도 소, 농 수 축 협 동 진 공)	공 고	- 제시된 통합실시요령내용을 참고하고 관련기관의 자문을 얻어 사업계획서 작성 - 읍·면, 시·군, 지도소, 농·수·축협, 농어촌진흥공사에 접수		
	-투융자계획 -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신청기간, 장소, 절차등 ⇒20일이상 각기관 게시판 게시 및 반상회보게재	신 청 (1.15)	계 획 수 립 지 원 -농어민 및 생산자단체 사업계획상담 및 수립지원 -시·군, 도 및 중앙의 투자계획 전산프로그램운영 및 취합자료분석지원(농어촌진흥공사 지원단)	
시 · 군		취합조정 -우선순위결정 -사업규모결정 -대상자선정 -시군농발심의회의 ⇒결과공개		
도	(공공계획추진사업) 신청접수 : 전전년 8.31	사업계획제출및 예산요구(2.15)	종합조정 -도계획(안)작성 -도농발심의회의 ⇒결과공개	
		도농어촌발전계획제출 및 예산요구(3.15)		
중 앙		검토조정 예산 확보 및 도별가내시	- 각국은 농발계획을 기초로 각년도 예산요구안 작성→기획관리실제출	

추진흐름도

